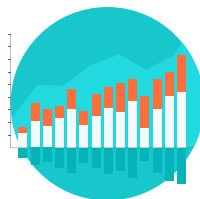


# 국가통계 이해



<http://sti.kostat.go.kr>





# 국가통계 이해

---

1부. 국가통계 개요	5
2부. 통계제도	63
3부. 인구통계	125
4부. 경제통계	193
5부. 사회통계	245
6부. 국가통계 활용	315





# 1부

---

## 국가통계 개요

# 1부. 국가통계 개요

## 목차

학습과목의 개요 .....	7
<b>제1장. 국가통계의 의의 및 구분</b>	
1-1. 국가통계의 의의 .....	9
① 통계의 의미 .....	9
② 국가통계의 의미 .....	10
③ 국가통계의 기능 .....	11
④ 국가통계가 갖추어야 할 속성 .....	11
⑤ 통계부실로 인한 정책상 문제점 .....	14
1-2. 국가통계의 구분 .....	16
①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구분 .....	16
② 자료처리 과정에 따른 구분 .....	17
③ 통계법에 의한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	17
④ 계속 작성 여부에 따른 구분 .....	18
⑤ 작성주기에 따른 구분 .....	18
⑥ 조사대상의 포괄범위에 따른 구분 .....	18
⑦ 통계작성 지역에 따른 구분 .....	19
⑧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따른 구분 .....	19
⑨ 통계작성 분야에 따른 구분 .....	19
⑩ 작성대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구분 .....	20
⑪ 물가의 영향력 포함 여부에 의한 구분 .....	20
⑫ 국가의 범위에 의한 구분 .....	20
<b>제2장. 국가통계 작성</b>	
2-1. 국가통계 작성 현황 .....	23
① 통계작성 기관 .....	23
② 국가통계작성 현황 .....	23
2-2. 국가통계 작성 과정 .....	27
① 국가통계 작성 과정 .....	27
② 표본 추출법 .....	34
<b>제3장. 국가통계 사례</b>	
3-1. 저출산과 베이비붐 .....	37
① 초저출산율 국가 .....	37
② 두 차례 저출산계획 예산, 60조원 .....	39
③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	41
④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	45
3-2. 고령화와 삶의 질 .....	49
① 노인성 만성 질환 .....	49
② Well-dying .....	52
③ 소득과 행복의 관계 .....	55
<b>연구과제 또는 연습문제</b> .....	61
<b>참고 자료</b> .....	62

## 국가통계 개요 과목의 개요

---

<b>학습 목표</b>	국가통계의 의의, 기능, 역할 등을 이해하고 국가통계의 종류와 특성을 숙지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 작성 과정의 학습을 통해 통계작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b>선수학습</b>	통계법, 조사방법론, 기초 통계학
<b>주요 용어</b>	국가통계, 통계법, 조사통계, 보고(행정)통계, 지정통계, 보고통계, 통계작성 과정, 통계조사의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표본설계
<b>학습과목의 내용요약</b>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의의, 종류, 제도 등을 서술하고, 또한 국가통계의 작성과정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관리, 자료처리, 조사방법, 표본추출, 기준설정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난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베이비붐 등의 사회현상을 핵심 통계로 활용하여 사례 형식으로 살펴본다.



## 1-1.

## 국가통계의 의의

### 학습목표

- 국가통계의 의미, 기능, 역할 등을 이해할 수 있다.

### 1 통계의 의미

통계의 의미는 첫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통계자료, 통계수치를 가리킨다. 둘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통계학이라는 학문체계를 가리킨다. 셋째, 전문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값을 뜻하는 통계량(statistic의 복수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가 흔히 ‘통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의 의미인 수치화된 통계자료를 뜻한다. 즉, 통계자료란 ‘집단에 관한 수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집단이란 실제와 관련된 집합을 말하며, 집합이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통계수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통계의 대상 범위인 집단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계는 집단에 대해 집단의 현상을 체계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통계는 전체 집단 또는 부분 집단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를 특정하는 특정 개체의 개별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계의 대상은 집단이며, 또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계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집단의 현재, 과거, 미

래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고, 그 집단만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여 타 집단과의 비교도 할 수 있다.

## 2 국가통계의 의미

앞서 설명한 통계를 정부가 만들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라고 하며, 정부통계 또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라고도 한다. 지난 과거에서는 UN에서 제시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란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1-1>  
UN의 정의(1994)  
- Fundamental  
Principle of Official  
Statistics

Official statistics are collected by government to inform debate, decision making and research within government and by wider community

그러나 정부기관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만든 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통계는 원칙적으로 국가통계에서 제외된다. 통계법 제3조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에서 사전에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따라서 다음의 자료는 국가통계의 범위에서 제외 (제7차 국가통계위원회 (2012.12.23) 에서 채택)

- √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는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 √ 통계작성 목적이 아닌 행정업무 추진 및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작성·집계하는 자료는 외부로 발표하더라도 통계법 적용에서 제외. 예를 들어,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보고 또는 제출 받은 실적 등의 단순 집계자료는 제외된다.
- √ 만족도 조사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조사는 외부로 발표하더라도 통계법에서 제외된다.

### 3 국가통계의 기능

통계는 원래 국가가 조세징수나 징병의 기초자료로 인구나 농축산물의 통계를 작성한 데이터에서 비롯되었으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크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현대에도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통계의 주요 기능은 크게 사회통합 기능과 정책수립·평가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사회통합 기능은 국가통계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회구성원들은 이에 따라 공통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정부의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수립·평가 기능은 국가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4 국가통계가 갖추어야 할 속성

국가통계는 정책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및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및 명확성 등과 같은 6개의 속성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계청에서는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한 정기품질진단을 통해 이러한 국가통계의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 1. 관련성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과 관련 행정자료 활용 측면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용자 관점 측면은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상황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지를 의미하고 있다.

#### 2. 정확성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기획,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 3. 시의성/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정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통계자료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필요한 시점 또는 요구되는 시점에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정책관리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 4. 비교성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특히, 매년 또는 매월 조사하고 있는 통계의 경우 시계열 비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5. 일관성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 사회현상에 관해 작성된 다른 통계자료와의 유사 또는 근접한 정도를 말하며,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다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통계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6. 접근성/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 공식(국가)통계의 기본원칙

UN에서는 통계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공표, 활용함에 있어 '공식(국가)통계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 of Official Statistics)'을 정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원칙은 많은 논의를 거쳐 1994년 UN 통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UN 총회에서 승인된 것이다. 이 원칙은 모두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계의 중요성, 통계작성의 전문성, 통계의 활용, 통계자료의 수집, 개인정보의 비밀보호, 통계기관들 간의 업무조정 필요성, 통계자료의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활동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원칙이다.

### < UN의 공식(국가)통계의 기본원칙 10개 조항 >

#### 제1조

경제·사회·인구 및 환경 현황에 대한 공식(국가)통계는 민주사회의 정보시스템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정부, 경제단체와 국민이 이 용해야 하는 공식(국가)통계는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정부통계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 제2조

공식(국가)통계가 신뢰를 얻으려면 통계자료의 수집, 처리, 저장 및 공표에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제3조

자료의 올바른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기관은 자료의 출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

통계기관은 통계의 잘못된 분석과 잘못된 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제5조

통계는 통계조사나 행정기록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료 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기관은 통계의 품질, 시의성, 비용 및 응답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제6조

통계기관에 의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는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목적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

통계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조치 등을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통계기관등 간의 업무조정은 통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9조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한 국가의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 5 통계부실로 인한 정책상 문제점

정확성·신뢰성을 위시한 통계의 여러 속성을 제대로 갖춘 통계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객관적인 판단 방향을 제공해주는 정보인 동시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이자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의 입안과 결정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서도 역시 그러한 통계가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해당 분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대책들이 마련된다거나, 새로운 수요를 가진 정책 형성에 활용할 통계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리고 만약 기존의 통계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용·남용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고객들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 통계의 부실로 인해 각종 정책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의 실패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어 사회적 불안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정에서 통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유형은 크게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형성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통계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그 통계들을 정책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경우’, ‘부정확하거나 사업목적에 부적절한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에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공해야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집단 중 일부를 누락시키지 않아야한다. 또한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통계를 여러 정부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발표함으로써 통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도 없어야한다.

### 잘못된 통계와 정책실패 사례 - 외환보유액

정부에서 1997년 11월 외환보유고 305억 달러로 발표했으나 가용외환보유고는 사실상 바닥수준이라고 보도

		95	96	97	98	99	2000
외환 보유액	가용기준 (억 달러)	294	294	89	485	741	962
	구기준 (억 달러)	327	332	204	520	-	-

### 잘못된 통계와 정책실패 사례 - 어획량

한일어업협상 실무회의시 기초통계의 부족

- 근해의 어장별/어획량별 공식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아 한일협정 과정에서 문제발생(1999년)
- 어업통계에서 쌍끌이조업, 복어채낚기, 갈치채낚기에 대한 자료 누락

	당초 통계자료	사후 추정
쌍끌이 선단 연간 어획량	0	6,500 톤
복어채낚기 연간 어획고	0	300억 원

## 1-2.

# 국가통계의 구분

### 학습목표

- 다양한 국가통계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여 통계작성시 분류기준에 맞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1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구분

### 1. 조사통계

조사통계란 분석대상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모두를 조사하거나, 일부를 뽑아 조사하여 그 결과인 조사표상의 기록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말한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은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 가구,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5년 11월말 현재 국가통계의 44.1%인 415개의 국가통계가 조사통계에 해당된다.

통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일정한 조사표에 따라 조사대상이 되는 집단의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조사표상의 기록을 통계기록이라고 한다. 통계기록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행정상의 목적, 특히 제공자 개인의 행정상의 이용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2. 보고(행정)통계

보고통계란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통계이다. 조사통계와 같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통계로 그 활용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5년 11월말 현재 국가통계 중 가장 많은 447종(47.6%)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고통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해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 신고, 등록, 신청 등 서류상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집계함으로써 작성한 통계이며, 이러한 기록을 행정기록이라고도 한다.

조사통계와 달리 보고통계는 전수조사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응답자에게 별도의 응답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누락, 신고자의 부정직, 신고내용의 부정확 등은

보고통계의 품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작성되고 있는 보고통계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의 정비는 향후 국가통계 발전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 ㉒ 자료처리 과정에 따른 구분

### 1. 1차통계

1차통계란 통계집단 또는 그 부분집단에 속하는 개체의 수 또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일반적으로 통계조사 결과로부터 직접 얻은 통계이다. 각종 통계조사보고서에 통계표로 나타난 통계의 대부분이 1차 통계이다.

### 2. 2차통계

2차통계는 가공통계라고도 하며, 1차통계에 어떤 연산을 하여 얻은 통계로 1차통계에 비하여 분석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2차통계에는 집단의 특성값인 대푯값(평균)뿐만 아니라 물가지수, 경기지수 등의 지수, 추계인구, 국민소득통계 등 추계에 따른 통계도 포함된다. 2차통계 이용 시에는 통계작성에 적용된 기초자료, 가정, 기준, 작성기법상의 제약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 ○ <표 1-2> 가공통계

가공통계는 1차 통계를 가공하여 만들어 내는 통계를 말한다. 1차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만들어 내는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와 같은 통계가 이에 해당되는데 현재 78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통계도 조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데이터 처리나 분석을 위한 기법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어 앞으로 그 활용 분야가 기대되는 통계이다.

## ㉓ 통계법에 의한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 1. 지정통계

지정통계란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은 통계 중 작성기관의 신청에 따라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통계를 말한다. 지정통계는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통계법에 따라 응답

의무가 부여되므로 엄격하게 지정하며, 전체 통계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다.

**<표 1-3>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2. 일반통계

일반통계는 국가승인 통계 중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나머지 통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통계란 편의상 사용하는 것일 뿐 통계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 4 계속 작성 여부에 따른 구분

계속 작성 통계란 사전에 정해진 해당 통계의 작성 주기에 따라 계속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현재 작성 중인 대부분의 통계가 해당된다. 1회 한 통계란 특별한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 단 1회만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1회 한 통계도 반드시 사전에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5 작성주기에 따른 구분

통계를 작성하는 주기에 따라 일별, 순기별(10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주기, 수시 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6 조사대상의 포괄범위에 따른 구분

전수 통계란 작성하고자 한 대상 전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

는 통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본통계란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오늘날 일부 전수통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표본 통계이며, 통계작성 비용,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계작성 및 자료 이용의 시의성, 통계의 정확성 등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㉗ 통계작성 지역에 따른 구분

전국단위 통계란 전국을 통계작성 대상 지역으로 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전국을 나타내는 통계와 함께 경우에 따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함께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단위 통계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며, 간혹 중앙 정부에서도 특정 목적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표본 조사 여부, 통계작성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등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통계가 해당되며 예를 들어, 서울시 민보건지표조사, 광진구사회조사, 여주군 농업환경조사, 경상남도 경기종합지수 등이 있다.

## ㉘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따른 구분

정태통계란 특정 시점(예: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총조사 실시년도의 11월 1일 0시)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동태통계란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하며, 예를 들어, 2015년 1월(1월1일 ~ 1월 31일)에 생산된 반도체 물량 등이 해당된다.

## ㉙ 통계작성 분야에 따른 구분

통계를 작성하는 분야를 구분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전통적으로 경제, 사회, 인구, 복지, 고용, 무역, 물가, 농업 통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통계조정 DB)에서 국가통계의 승인 및 관리 등을 위해 통계를 아래의 32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 가계소비(소득), 건설, 경기, 고용, 과학, 광공업, 교육, 교통, 국민계정,

국제수지 · 외환, 금융, 기업경영, 농림, 도소매, 무역, 문화, 물가, 보건, 복지, 서비스, 수산, 시 · 도 기본 통계, 에너지, 인구, 재정, 정보통신, 주택, 지역계정, 토지, 환경, 기타

## 10 작성대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구분

물량통계란 조사대상의 물량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금액통계란 조사대상을 금액으로 평가, 파악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물량통계의 경우 필요에 따라 또는 물량으로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경우 금액으로 조사한 내용을 혼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매을 작성 중인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총 613개 품목 중 101개 품목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 11 물가의 영향력 포함 여부에 의한 구분

경상가격 통계란 물가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가격으로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불변가격 통계란 경상가격으로 조사된 자료에서 물가의 영향을 제거한 통계를 말한다. 개념상 불변가격통계는 실질 통계, 물량통계와 동일한 의미이며, 경기동향 파악, 성장률 분석 등에 이용된다.

• 불변가격 = 경상가격 ÷ 해당 물가지수

예) 실질수출액 = 경상금액 수출액 ÷ 수출물가지수

## 12 국가의 범위에 의한 구분

국내통계란 해당 국가 내의 조사대상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국제통계란 다른 국가의 조사대상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표 1-4>  
UN의 통계영역  
표준분류 체계

인구 및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자원 및 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동태통계</li> <li>인구센서스 및 특수집단별 인구통계</li> <li>주택통계</li> <li>노동통계</li> <li>교육/직업훈련 통계</li> <li>문화 통계</li> <li>가구 소득/지출/분배 통계</li> <li>사회보장 통계</li> <li>보건 통계</li> <li>여성 통계</li> <li>기타 (범죄통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계정</li> <li>농업/임업/어업</li> <li>산업</li> <li>에너지</li> <li>도/소매업(유통통계)</li> <li>국제무역(상품/서비스)</li> <li>교통</li> <li>정보통신</li> <li>관광</li> <li>기타 서비스</li> <li>금융/보험</li> <li>재정</li> <li>국제수지</li> <li>물가</li> <li>과학/기술/특허 통계</li> <li>기타 경제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환경 통계</li> <li>자원/환경계정</li> <li>기상통계</li> </ul>
방법론	조직 전략 및 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타 데이터</li> <li>각종 표준분류</li> <li>자료 소스</li> <li>데이터 내검/연계</li> <li>데이터 보급/관리</li> <li>데이터 비밀보호/제공</li> <li>데이터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조직 구축 및 원칙 설정</li> <li>통계활동의 조정</li> <li>통계 품질관리</li> <li>성과의 측정</li> <li>인적자원 개발/관리</li> <li>외국/국제기구와의 협력</li> <li>개발도상국 기술협력/역량강화 지원 활동</li> </ul>	



### 2-1.

## 국가통계 작성 현황

#### 학습목표

- 국가통계의 작성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1 통계작성 기관

통계작성기관은 크게 정부기관과 민간지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정부기관은 다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2015년 11월 1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을 포함하여 43개 기관이 통계를 작성한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통계청은 국가통계행정을 종합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특정한 행정업무에 국한되어 이용되기 보다는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산업활동동향, 물가동향, 고용동향, 서비스업동향 등 국가 기본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생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법에 의거한 통계의 정책, 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 2 국가통계작성 현황

#### 1. 작성 기관별 현황

201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국가통계를 통계작성기관별로 살펴보면, 394개의 통계작성기관에서 940종을 작성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계작성 기관은 정부기관이 303개(76.9%)이고 지정기관이 91개(23.1%)이며, 정부기관에서 772종(82.1%), 지정기관에서 168종(17.9%)을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전체 통계의 6.2%인 58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2-1>에 제시하고 있다.

**<표 2-1>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 현황**  
(2015년 11월 1일 현재)

구분	작성 기관수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94	940	91	849	415	447	78
정부기관	303	772	73	699	312	401	59
중앙행정 기관	43	343	56	287	171	140	32
통계청	1	58	40	18	41	2	15
이외기관	42	285	16	269	130	138	17
지방자치 단체	260	429	17	412	141	261	27
지정기관	91	168	18	150	103	46	19
금융기관	8	23	10	13	9	6	8
공사/ 공단	27	47	0	47	20	25	2
연구기관	19	37	2	35	32	3	2
협회/ 조합	21	33	4	29	28	3	2
기타기관	16	28	2	26	14	9	5

## 2. 작성 방법별 현황

<표2-1>에서 작성방법별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통계가 415종(44.1%), 보고통계가 447종(47.6%), 가공통계가 78종(8.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정통계는 91종(9.7%), 일반통계는 849종(90.3%)이다.

## 3. 작성 부문별 현황

<표2-2>의 작성부문별 현황을 보면 보건, 사회, 복지 관련 통계가 201종(21.4%)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기업경영이 90종(9.6%)이다.

<표 2-2>  
 부문별 통계작성  
 현황  
 (2015년 11월 1일 현재)

구분	작성 통계수	구성비 (%)	종류별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940	100	91	849	415	447	78
인구	28	3	3	25	3	22	3
고용.임금	37	3.9	7	30	29	7	1
물가.가계소비(소득)	16	1.7	9	7	15	1	0
보건.사회.복지	201	21.4	6	195	151	45	5
환경	26	2.8	1	25	11	13	2
농림.수산	49	5.2	9	40	29	17	3
광공업.에너지	31	3.3	3	28	20	8	3
건설.주택.토지	40	4.3	2	38	14	20	6
교통.정보통신	47	5	4	43	21	23	3
도소매.서비스	16	1.7	6	10	14	2	0
경기.기업경영	90	9.6	27	63	63	4	23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2	5	16	0	0	21
재정.금융	17	1.8	1	16	2	15	0
무역.외환.국제수지	11	1.2	3	8	0	4	7
교육.문화.과학	54	5.7	3	51	40	13	1
기타 (시도기본통계포함)	256	27.2	2	254	3	253	0

#### 4. 작성주기별 현황

<표 2-3>의 작성주기별 현황을 보면, 월 이하 통계가 112종(11.9%), 분기별로 작성되는 통계 31종(3.3%), 반기 25종(2.7%), 연간 636종(67.7%), 1년 이상 136종(14.5%)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통계가 전체 작성통계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작성주기별 통계작성  
현황  
(2015년 11월 1일 현재)

구분	작성 기관수	작성 통계수	작성 주기별				
			월 이하	분기	반기	연간	1년 이상
계	394	940	112	31	25	636	136
정부기관	303	772	72	20	18	551	111
중앙행정 기관	43	343	58	12	15	194	64
통계청	1	58	15	3	2	30	8
이외기관	42	285	43	9	13	164	56
지방자치 단체	260	429	14	8	3	357	47
지정기관	91	168	40	11	7	85	25
금융기관	8	23	11	6	2	4	0
공사/공단	27	47	9	2	1	27	8
연구기관	19	37	4	0	3	20	10
협회/조합	21	33	7	1	1	20	4
기타기관	16	28	9	2	0	14	3

## 2-2.

# 국가통계 작성 과정

### 학습목표

- 국가통계의 작성 과정을 이해하고 작성과정의 숙지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1 국가통계 작성 과정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은 통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보고(행정)통계와 가공통계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반면, 조사통계의 경우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을 거쳐 통계가 작성된다.

이와 같이 조사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성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① 통계조사 실시 요건 검토, ② 통계조사의 기획 및 준비, ③ 자료 수집, ④ 자료 처리 ⑤ 자료 분석 및 제공(공표) 등의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보고(행정)통계와 가공통계는 앞의 과정 중 ①과 ②의 과정이 생략된다.

### 1. 통계조사 실시 요건 검토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비용)이 소요되고, 응답자들에게는 새로운 응답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요건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그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1) 새로운 통계의 작성 필요성

새로이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사용 목적은 무엇이며, 수요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한다면 1회성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 (2) 새로운 통계조사의 실시 필요성

새로운 통계를 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자료를 가공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지, 반드시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면 기존의 통계조사에 일부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3) 통계조사 실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여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리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정확한 통계조사의 실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조사환경의 적합성

현재의 조사환경이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휴가철이나 농번기, 파업기간, 특이한 여건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5) 자료이용의 시의성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적기에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통계자료가 연내에 필요하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다음 해 상반기에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자료이용의 시의성이 저하되어 통계의 필요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조사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통계조사의 기획 및 준비

통계조사 실시 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통계조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 결정하는 것으로 통계작성을 위한 기반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과 내용을 의미한다.

통계조사의 기획 및 준비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사목적의 결정과 조사사항 및 집계사항의 선정, 조사모집단과 조사규모의 결정, 조사시기의 결정, 조사방법, 조사실시체계의 결정, 집계표(결과표)의 작성, 조사표 및 조사관련 서류의 설계, 시험조사의 실시, 조사구 설정, 표본설계와 표본추출, 예산 확보 및 배분, 조사실시에 필요한 법적 조치, 조사원 선발 및 훈련, 실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준비, 자료처리방법 및 시기의 결정, 자료처리 관련 장비 등 준비, 결과공표시기 및 범위의 결정, 보고서 작성, 자료제공방법의 결정, 조사 실시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이 단계는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국가통계 조사 방법**

통계조사 방법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통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정확성, 시의 적절하게 통계를 제공하는 신속성, 그리고 통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제성을 꼽는다. 이 세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①정확성을 강조하다 보면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신속성이 문제가 된다. 반면 ②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정확성과 경제성의 원칙과 배치되기 쉽다. 그렇다고 ③경제성만 생각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가지 요소의 균형과 조화가 통계 조사의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정확한 통계를 원한다면 신속성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며 시의적절한 통계 제공이 관건이라면 어느 정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감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성에 의해 정확성과 신속성이 결정된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 조사 방법은 크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전수조사란 조사 대상 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고 ②표본조사란 조사대상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대상 집단 전체를 조사한 것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전수조사는 정확성은 높은 반면 비용이 많고 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채택하기 힘든 조사 방법이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드는 41종의 조사통계 중에서도 전수조사는 12종(29.3%)뿐이다. 반면 표본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할 수 있어서 그 활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점과 함께 표본조사 기법이 향상되어 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자료수집

전통적인 자료 수집방법은 조사자가 조사 대상에게 질문하여 그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작성하는 과정으로 조사실시를 위한 준비, 준비조사, 본조사, 기재 내용 검토 및 자료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 (1) 자료수집 준비

현장 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선발, 조사원 훈련, 조사표 및 조사 대상처 명부 배부 등이 포함된다. 준비조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으나 대규모 조사의 경우 준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조사관리

조사관리란 현장 조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누락이나 중복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조사준비와 준비조사가 완료되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장 조사는 조사 지침에 따라 빠짐없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원이 탁상조사를 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누락, 조사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의 보호, 조사 기간 내 조사완료 가능성, 응답자 부재 시 대처 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콜 센터의 설치·운영, 조사 현장에 대한 실사지도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생한 문제점 및 해소(대처) 방안은 모든 현장 조사원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원 관리의 필요성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계조사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책임감 있는 조사원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된 조사원이 빠지기 쉬운 ‘나 하나 짚이야...’하는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고 모든 조사원이 한 사람처럼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조사원이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 (3) 조사표 기재 내용의 검토 및 보완

현장 조사가 완료되면, 먼저 대상처의 조사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특정 항목의 조사 누락, 항목 간 연관관계 등을 점검하여 조사 누락이나 오류는 조사 현장에서 보완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보완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응답자를 만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규모 통계조사의 경우 단계(읍·면·동 → 시·군·구 → 시·도)별로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고 있다.

### (4) 조사표 제출 및 접수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조사표류와 입력 자료 등을 제출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조사표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조사 자료에 대한 보완이나 추가 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자료처리

자료 처리란 조사표 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기까지의 모든 작업 과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료처리 계획의 수립, 조사표류 접수, 부호화(coding), 조사표 내용 입력, 조사내용의 정확성 점검, 집계 및 자료의 연산 작업 등이 해당되며, 자료 처리는 수작업과 컴퓨터에 의한 작업이 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1) 자료처리 계획 수립

이 과정은 조사 기획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였던 자료처리 계획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 처리에 큰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으나 대규모 통계조사에서는 자료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 통계 조사의 경우 조사표류 관리 방법, 중앙 일괄 처리 또는 분산 처리(분산 처리의 경우 범위) 여부, 부호화 및 자료 입력 방법,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감안하고, 자료 처리 기간, 소요 인력과 예산, 전산장비, 자료처리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자료 처리 준비

### (가) 자료 처리 방법의 결정

자료 처리 방법은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과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의 경우 자료 처리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숙달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며, 소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분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조사표류 접수, 관리 등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사 자료 입력 시간 등의 단축이 가능하며, 오류의 수정과 보완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조사는 일괄처리, 대규모 조사는 분산처리 방법을 사용한다.

### (나) 자료 처리 장소 준비

자료 처리 장소에는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조사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까지를 포함한다. 장소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조사표류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조사표의 용지에 따라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셋째, 입력 준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 (다) 조사표류 접수

조사표류 접수란 조사 현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조사표류를 지정된 자료 처리 장소에 모으는 작업을 의미한다. 조사표류 접수 시 조사 현장에서 작성된 내용(조사표 매수 등)과 실제 접수 내용이 일치되는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함께 제출되는 부속서류에 대한 검토도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표류에 대한 접수가 완료되면, 조사 자료의 입력 작업에 대비하여 행정 구역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라) 자료 처리

자료 처리는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로 작성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호기입, 자료입력, 입력완료 내용의 정확성 검증, 내용 검토 및 최종 집계 포함된다.

## 5. 자료의 분석 및 제공(공표)

자료의 분석 및 제공은 집계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으로 통계작성의 마지막 단계이다. 집계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 실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계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집계된 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 통계표와 도표를 작성하여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집계 및 분석 결과는 잠정 결과 보고, 최종 결과 보고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심도가 높은 항목만을 먼저 집계하여 제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종 집계 결과는 언론 보도 이외에도 “00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와 같은 형태의 책자를 발간하고, CD-ROM, 디스켓, DB 등에도 수록,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대용량 자료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응답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한 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료 제공 수단인 보고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이용을 위해 조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사 목적, 조사 실시연혁, 조사 실시 법적근거, 조사 기준 시점, 조사 실시 기간, 조사 대상 지역,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조사 항목의 정의, 자료수집 방법, 조사 실시 체계, 표본 설계 개요, 표본오차, 용어 해설, 조사표 회수율, 조사 결과 분석 내용, 기타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 활용

국가통계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 국가 주요 인프라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여 만들어진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통계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공공재인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그 활용도를 높힘으로써 세금의 값어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를 각자 만들어 보급하고 있어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를 보

면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SS) 등을 꼽을 수 있다

## 2 표본 추출법

표본조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인용되는 것이 국물 간 맞추기이다. 국을 끓이면서 찌지 매운지 간을 볼 때 잘 섞은 다음 한 숟가락만 떠서 맛을 보아도 전체 국물의 맛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잘 섞이지 않았다면 한 숟가락을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 맛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판단한 맛으로 전체 음식의 간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부적절한 것이 된다. 가장 바람직한 표본은 그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이다. 표본오차를 줄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출방법이 중요하다.

표본을 뽑는 방법은 조사의 목적, 모집단의 성격 등에 따라 확률표본추출법과 비확률표본추출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통계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률표본추출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확률표본추출법은 단순임의추출법, 계통추출법, 층화추출법, 집락추출법으로 구분된다. ①단순임의추출법은 가장 기본적인 추출법으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추출단위도 0이 아닌 동등한 확률로 뽑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②계통추출법은 동일한 간격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집단 전체에서 골고루 추출할 수 있어 단순임의추출법보다 정도가 높다 ③층화추출법은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중복되지 않은 2개 이상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 단순임의추출법에 의해 추출하는 방법이다. ④집락추출법은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이들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집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추출단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통계에 대한 두가지 경구(警句)**

통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말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아마도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일 것이다. 이 말은 마크 트웨인이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왕 시대 수상을 지낸 디즈레일리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디즈레일리 수상이 한 말은 이렇다. '통계는 우리들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가장 자연스럽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런데 이 말을 마크 트웨인이 작가적 상상력과 어휘력을 발휘하여 대중들의 귀에 착 붙는 말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이 말은 도저히 없앨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통계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부정하고 변명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 즉 디즈레일리 수상이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경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 CBS 라디오, 1938년 10월 30일 저녁 시간,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며 단란한 식사 자리를 마치려 할 때 갑자기 드라마가 중단되고 뉴스 속보가 전해졌다.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전합니다.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화성인들은 뉴저지 주의 한 농장에 착륙했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은 뉴욕 시민들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청취자들은 집단 공황에 빠졌다고 한다. 라디오 드라마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뉴스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매스미디어 역사상 가장 큰 해프닝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1898년 출간된 영국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이다. 이 소설을 쓴 작가이자 미래학자였던 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언젠가 통계는 쓰거나 읽기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식견이 배어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 3-1.

## 저출산과 베이비붐

#### 학습목표

-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세로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통계가 주는 신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1 초저출산율 국가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미래의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 저서로 유명한 ‘피터 드러커’의 주제 역시 사람이다. 그는 미래의 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30년 내에 우리 사회에 쓰나미 같은 변화를 몰고 올 강력한 요인들이다. 이들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것 하나에 정책적 집중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 주장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에 대한, 100년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이자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빗 콜먼은 만약 인구가 없어져서 문을 닫아야 할 나라가 생긴다면 우리나라가 그 첫 번째 국가가 될 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런 암울한 경고는 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제4차 100세 이상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 아주대 최진호교수는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는 이를 회복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진 12개국은 10~20년 이상 1.5명 선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은 2.08명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율’로, 1.5명 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2.06명으로 떨어져 저출산율 국가가 되었으며, 15년 후인 1998년에는 1.5명 이하인 1.45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율 국가가 되었는데 그 후 17년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포럼 연구 결과대로라면 20년 후인 2018년에야 합계출산율 1.5명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이다.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정의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된다.(통계청 홈페이지)

#### 대체출산율(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

합계출산율이 2.1 수준일 때 이를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이라고 한다. 이는 평균 한 여자가 2.1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 0.1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함을 전제로 한다. 이 수준이 계속하여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인구증가율의 변동이 없는 상태가 된다.(국가통계의 이해)

196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명이었다. 그래서 6남매가 그 시대 가족의 상징이 되었고 TV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골목길이 아이들 뛰어 노는 떠들썩한 소리로 가득했던 우리나라가 불과 50여년 사이에 어찌다가 아이들이 적어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일까? 이런 국가적 재앙이 한·두가지 요인에 의해 생긴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맞는 것 같다. 관점을 달리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통계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제3공화국이 시작되던 1960년, 그때 우리나라의 지상 과제는 조상 전래의 가난을 벗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잘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이의 전체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파이라면 먹을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야 한사람이 먹을 파이의 양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경제개발계획이었고 가족계획이었다. 가족계획이란 부드럽게 불려서 그렇지 사실은 산아제한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모두 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60년, 8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8천불을 넘어섰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다.

한편에서는 1961년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이를 국가 시책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은 1996년, 인구의 질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신인구정책으로 대체되어 폐기되기까지 불과 3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선진국 형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UN에서도 인정한 대표적인 인구정책 성공 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득 수준이나 복지 혜택은 모두 이 두 사업 성공의 결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전체 파이는 커졌고 파이를 나눠먹을 사람의 숫자는 줄어서 한사람이 먹을 파이의 양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 공자님께서 세상만사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깨우쳐 주셨다. 지나치면 모자라는 거나 같다는 뜻이다. 파이를 나눠먹을 사람을 줄여 잘 살게는 되었는데 그 숫자를 너무 줄이는 바람에 이제는 오히려 줄이기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의 존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 **2** 두 차례 저출산계획 예산, 60조원

1983년 7월 29일 밤 10시 51분 28초, 4천만 명 째 대한민국 국민이 탄생하던 순간이다. 이 날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인구폭발 방지 범국민 결의 서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무려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신문과 TV, 라디오에서는 연일 대대적인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가족계획 협회에서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이전의 '두 자녀 낳기' 운동이 '두 자녀 이하 낳기' 운동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두 자녀 이하 단산 가정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는 1차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 불임 시술 영세민에게는 특별 생계비 지원과 의료보험을 통한 분만 급여비를 주되 수혜자녀를 두 자녀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불임시술 대상 연령도 종전에 44세에서 34세로 10년을 낮추기로 하는 등 1983년 한 해 동안에만 42만 6천명이 불임시술을 했는데 1982년의 28만 6천명보다 14만 명이 늘어난 것이었다.

1983년은 인구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시책 추진으로 계속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는 2.06명까지 떨어져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첫 번째 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구가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 해에 인구를 지금보다 더욱 더 열심히 줄이고 온 나라가 법석을 피운 것이다. 이러한 인구 줄이기 정책은 그 후에도 13년 동안이나 지속되다가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율 수준인 1.5명에 거의 근접하는 1.57명에 달하던 1996년에서야 폐기되었다. 가속도가 붙어 굴러 내리는 바위덩어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떨어지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초저출산율 1.5명 이하인 1.45명으로, 2005년에는 부부 2명에서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수준인 1.08명으로까지 떨어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 제1차 저출산계획으로 정부 예산 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1차 계획의 두 배에 달하는 40조원을 재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4년 합계출산율 역시 1.21명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또 다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한 제3차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이 헛수를 거듭할수록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앞으로 5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될지 모른다.

인구 정책은 그 전환 포인트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다. 이것은 자동차의 방향 전환과 비행기의 방향 전환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된다. 자동차는 좌회전, 우회전, 급정거가 가능하지만 비행기는

미리 멀리서부터 방향을 전환해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과 같다. 인구 문제는 20년을 한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세대(one generation)라고 한다. 인구의 구조가 달라지려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같이 여성 초혼 연령 29.8세, 첫째아 출산 30.97세인 세상에서는 한 세대가 20년이 아니고 30년이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긴 주기를 가진 인구정책은 무엇보다 멀리 보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5년 단위의 정책도 너무 길다고 3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는 조급함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압축성장의 시대에 인구 문제가 터닝 포인트에 맞춰 정책을 전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제야 지난 이야기 되 썩어 본들 소용없지만 다시 소를 사서 키워야 되는 입장이라면 또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되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좀처럼 회복될 줄 모르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의 발원 시점인 1983년으로 되짚어 올라가 보는 것이다.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만약 그때,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졌다는 통계의 경고와 그 의미를 뼈아프게 받아 들였더라면 이 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라는 또 다른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쓰이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통계의 파워’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통계는 없는지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③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인류와 전쟁은 한 배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좋은 만큼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한시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쟁이 이어졌지만 인류는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이젠 오히려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그 수가 늘어나서 2015년 현재 세계 인구는 73억 2천만명으로 2060년에는 100억명에 거의 육박하는 99억 6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끝난 후 전후 복구가 시작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 인구가 급격

히 불어나면서 베이비붐이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용인된 전쟁을 치르면서 성적 본능과 같은 원시본능이 발달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다. 또한 전쟁 중 살상으로 인해 끊어진 종족을 이어가려는 종족보존 본능이 강해져 출산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해체된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기회가 마련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6.25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시작해서 1963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인구는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두 차례로 나누어지므로 쌍봉세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두번째 베이비부머는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938만 명으로 첫 번째보다 규모가 더 크다.

사람 숫자가 많은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보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들 세대가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년들이 경쟁의 대열에서 도태되고 좌절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잦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경쟁력을 가진 거대한 인구 물결이 몰려오면서 그 앞에 있는 나이든 세대들은 경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에 휘말려 줄지에 삶의 주역자리를 빼앗긴 채 뒷전으로 내몰리는 일을 당했고, 물결의 뒤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경쟁력 강한 이들 세대들이 좋은 직장, 좋은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 뚫고 들어갈 힘이 없어 백수로 지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베이비부머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앞 세대와 뒷 세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64년까지 20년간 태어난 7,160만 명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만주 침략을 시작한 1929년부터 1938년까지 10년간 태어난 2,148만 명의 인구 물결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團塊)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부터 1949년까지 4년 동안 태어난 680만 명을 말하며(전체인구의 5%) 둘을 합하면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미국과 같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문제에서 외국의 사례를 중시하는 이유는 인구물결이 몰고 오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장은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큰 특성에서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우리보다 10년 앞선 미국과, 25년 앞선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10년 후의 우리의 문제이며 일본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25년 후의 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를 이야기할 때 대표되는 연령이 아마도 1958년생이 아닐까 생각된다. 1958년이면 무술년으로 개띠이다. 개띠는 팔자가 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라는 어감 때문에 고생한다는 의미가 더 큰 거 같다. 그래서 그런지 1958생의 인생 역정은 만만치가 않았다. 인생에서 가장으로써 가장 의무감이 클 때가 자녀들이 학생인 나이 대이다. 그런데 58년 개띠 생이 그 나이 때인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유례없이 경제위기가 세 차례나 연거푸 들이닥친 것이다. 그럴 때마다 기업이 도산하고 정리 해고로 직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마음 졸여야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고된 인생 역정을 겪은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 712만 명 중에서 가장 많았던 1955년생이 2011년이면 기업의 평균 정년 나이인 56세가 되어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2011년에 해당이 되는 1955년생만 해도 66만 명이나 된다. 이들의 은퇴는 우리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80여만 명이다. 그런데 2011년에 직장에서 은퇴할 연령의 사람이 66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규모라는 점이다. 66만 명 중 나이에 따라 은퇴할 필요가 없는 자영업자(취업자의 30% 내외)와 나이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이 클 것임에 분명하다. 평균 수명이 81세인데 55세 즈음에 현역에서 밀려난 이들이 남은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탱해야 할지도 국가적 난제중의 하나다.

이 베이비부머의 재산 상태를 보면 부동산이 3/4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 상태는 은퇴 시점이 빠를수록 위태로워진다. 노후를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도 빨라야 60세는 되어야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금융자산이 적기 때문이다. 더구나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아직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아직도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해진다.

##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재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제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특히 베이비부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기 시작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5년 간격을 두고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던 해는 1990년으로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의하면 동경 주택지 가격지수가 476.6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그런데 15년 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난 2005년에는 197.2로 1990년의 41.4%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인구 측면에서 보면 1990년의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즉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15세~64세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이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2년 총무성 주택토지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동경에만 빈집이 81만채가 있다고 한다. 일본 전국으로 보면 820만채가 빈집으로 전체 가구의 13.5%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심해져서 2023년에는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빠지기 전후의 베이비부머 자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실물자산 대 금융자산이 63.3% : 36.7% 이었는데 2001년에는 28.9% : 71.1%로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가 정점을 이룰 해는 2016년으로 3천 7백만명(전체 인구의 72.9%)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지금 일본의 모습에서 앞으로 25년 후인 2040년의 우리 모습을 어렵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구변동과 주택가격 변동 추세를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구가 많아지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간단한 공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 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농지를 담보로 경작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도 시작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역모기지론**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경 경제용어사전)

### **4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사오정은 중국의 4대 기서중 하나인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물고기 형상을 하고 삼장법사를 도와 인도에 가서 경전을 구해 오는데 동행한다. 천상에서 술을 마시고 말썽을 부려 지상으로 쫓겨 온 경력과 귀가 어두워 썰렁하게 동문서답하는 캐릭터로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해 졌다. 그러다 IMF 경제난 이후에는 ‘45세 정년’을 상징하는 자조적인 어감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직장을 퇴직하게 된다. 생산 능률도 올리면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시행된다. 조직의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은 법률에 정년을 명시해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몇 살쯤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유하고는 있지만 통상 55세 정년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 평균수명이 81세이면 55세에 은퇴하고 나서도 26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 뿐 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맘 편히 쉴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베이비부머들은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놀 수는 없고 뭔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재취업은 어렵다. 자기 사업이나 해볼까? 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냐고 물으면 ‘식당이나 할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말은 예전에 ‘농사나 짓지’ 하는 말과 어감이 같다. 농사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식당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1년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30.3%로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6.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영업이 많을까? 자영업은 경기의 변동에 가장 민감하다. 경기가 좋으면 가정 먼저 살아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곳이 자영업이다. 1990년 507만이던 자영업자는 IMF 경제 위기가 닥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 1998년에는 562만 명까지 늘어났고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2년에는 619만 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 후 정부의 자영업에 대한 조정 정책이 나오면서 2010년 558만 명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 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2013년 705만명이던 자영업자는 2014년 710만명으로 5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403만명에서 409만명으로 6만명이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증가가 이들 연령대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 자영업자[Self-ownership]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통계청 홈페이지)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비율이 높는데 음식점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그 나라 총인구를 그 나라의 음식점 수로 나눈 음식업 사업체당 인구(2008년)를 보면 우리나라는 78명인데 미국은 509명, 일본은 263명이고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뿐이다. 이것은 음식점 한 곳에 올 수 있는 잠재고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자영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통계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숙박음식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숙박음식업 생존율을 보면 1년 동안 생존한 비율이 56.1%로 한해 안에 창업한 숙박음식점의 절반이 문을 닫았고 5년 동안 장사를 계속한 숙박음식업도 17.9%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통계에는 주인은 바꿨으나 동일한 간판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추세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창업 5년 생존 숙박음식점이 17.7%라고 밝혔다.

문을 닫지는 않은 자영업자도 사업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25.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국일보사에서 전국 867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발표한 자영업자 월평균 이익 현황을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44만원 미만을 버는 자영업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44.3%를 기록하였고 적자를 보는 자영업자도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식당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창출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식당 문만 열면 어떻게든 꾸려 나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시골 장터 국밥집에서도 통하지 않는 말이 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두 번째 주제인 '농사나 짓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이제 귀농 귀촌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후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여유있는 삶을 즐기는 것이 중년 남성의 로망이라고 한다. 이것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귀농귀촌가구는 2010년 4천 가구, 2014년 4만 5천 가구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누적 가구 수로는 10만 가구를 넘어서 귀농귀촌가구가 전체 농가의 1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귀농귀촌 통계를 쪼개서 보면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2013년 대비 2014년 귀농 가구는 2.0% 증가에 그친 반면 귀촌가구는 무려 55.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절대 숫자로 보더라도 확인한 차이가 난다. 2014년 귀농가구는 1만 1천 가구인데 비해 귀촌가구는 3만 3천 가구로 3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귀농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귀촌은 농촌에서 살면서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귀농과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다는 공통점 외에는 같은 점이 별로 없다. 사는 목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귀촌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이들은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귀촌에 적합한 인력군이 지 귀농하기에 적합한 인력군은 아니다. 귀촌이 적합한 이들에게 귀농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일은 결국개인의 실패는 물

론이고 그 짐이 쌓여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귀촌인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귀농인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前)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現)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를 말한다(귀농귀촌 보도자료)

### 귀촌인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를 말한다.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귀농귀촌 보도자료)

## 3-2

# 고령화와 삶의 질

### 학습목표

-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죽음 그리고 삶의 질을 국가통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1 노인성 만성 질환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1957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52.7세였는데 2013년에는 81.9세로 늘어났으니 반세기 여 만에 29.2세가 늘어난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에는 대부분 짧게 살지만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들면 조금 앓다가 죽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실현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거나 만성 질환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는 노년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 평균 수명(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특히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라고 말한다.(통계청 홈페이지)

모든 생명체들은 건기와 겨울에 대비하여 식량이 있는 우기와 여름에 몸속에 지방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다.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법을 터득한 이후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 만큼 영양상태가 좋아졌다. 또한 우리 몸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일승일패를 주고 받으며 의료기술이 갈수록 발달하여 수명은 놀라울 만큼 증가하였다. 수명이 연장된 만큼 질병으로 고생하는 시간도 늘어나서 이제 평균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실제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생존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진국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중요한 지표로 인용된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 각국이 건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지표가 되도록 각 나라의 건강 수

명을 산정하였다. 미국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 건강수명은 71세로 질병 등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의존 수명이 거의 10년이다 되는 9.5년이라고 하였다. 이 건강수명은 종래 발표해 오던 평균수명에서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반영시킨 것으로, 질병의 경중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던 햇수(의존 수명)를 산출하여 이를 평균수명에서 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수명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건강수명은 남자는 68.8세, 여자는 72.8세로 이를 기준으로 의존 수명을 산출해 보면 남자는 8.8세, 여자는 11.7세이다. 통계청에서도 2012년 생명표에서 건강 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을 남자는 65.2세, 여자는 66.7세라고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른 의존수명은 남자 12.7세, 여자는 17.9세로 기존 발표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2012년 사회조사에서 설문조사(지난 2주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이제는 노후를 ‘건강수명’ 기간과 ‘의존수명’ 기간으로 나누어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기간을 같은 노후로 묶어 보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삶의 질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생명표[Life table]**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특정한 출생 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를 말한다.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 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낸다. 세별로 작성한 생명표는 완전생명표(Complete Life-Table), 5세계급 별로 작성한 생명표는 간이생명표(Abridged Life-Table)라고 한다.(통계청 홈페이지)

이처럼 건강수명이 중요해진 고령화 사회에서는 만성질환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신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리한 활동으로 생긴 상처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2014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1년, 65세 이상)를 분석하여 발표한 ‘고령자의 효과적

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60.1%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20.7%는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14.1%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7%에 불과하다. 어떤 만성질환이 많은가를 보면(복수 응답)고혈압이 48.8%로 가장 많고 만성 위염 38.5%, 만성 요통 36.0%, 관절증 25.2% 순이다.

### 건강 수명

세계보건기구(WHO)가 종래 발표하던 '평균수명'에 '수명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수명에서 병이나 부상 등의 '평균장애기간(의존수명)'을 차감한 기간이다. 즉, 질병의 경중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았던 햇수를 산출, 이를 전체 평균수명에서 뺀 것으로 사망 시까지 순수하게 건강한 삶을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만성질환의 만연은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점점 더 심해 질 것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인 의료비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2010년에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 지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평생 동안 남자는 9천6백만원, 남자보다 6.6년 더 오래 사는 여자는 1억1천4백만원의 의료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의료비를 절반을 썼을 때의 나이는 남자는 64세, 여자는 66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남자를 예로 들면 태어나서 64세까지 쓰는 의료비와 65세부터 평균수명인 79세에 죽을 때까지 14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같다는 의미로 65세 이후에 5배 가까이 많은 의료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에서 전체 인구의 11.5%인 고령자가 전체 진료비의 35.5%를 사용(3.1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 평균 진료비는 102만원인데 고령자 진료비는 322만원으로 3.2배(220만원)이 많다고 하였다. 의료보험료 부담 대비 보험 급여 비율은 국민 평균이 1.7배(9.2만원 내고 15.9만원 혜택)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환자의 증가는 사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09년 21만7천명이었던 치매환자는 2013년에는 40만5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여자가 남자의 2.5배를 차지하였다. 이 숫자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5년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년 치매환자 한사람 당 진료비가 연간 1천만원 넘어 들었고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심각성과 비례하여 노인의료비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것으로 시간이 맞추어진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짐으로 돌아올 것이다.

## 2 Well-dying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으레 전쟁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2000년 UN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3만 명인데 반면 자살로 죽은 사람은 3.5배나 많은 8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에 살인으로 죽은 사람 50만 명을 합쳐도 자살이 8만 명 많은 것이다. 자살은 생존의 본능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에 역행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였다. 즉 자살이 개별적인 행위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발생되거나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위험사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 사회학자 ‘올리히 벡’은 자살을 위험천만한 풍요의 시대에 ‘아노미적’ 혼란의 결과로 보았다.

임야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전북 임실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조사한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임실군이 ‘자살할 생각을 해보았다’는 응답이 0.4%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임실군 자살자가 24명으로 전국 비교를 위해 환산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는 76.1명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높게 나왔다. 이 극단적인 두 통계를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임실군 주민들은 옥정호에 있는 운암대교에서 일어나는 외지인의 빈번한 자살이 임실군 자살을 높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통계는 자살한 장소와 관계 없이 자살자의 주소지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임실군의 심각한 고령화가 답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임실군은 총



인구 2만3천490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8,859명으로 고령화율이 37.7%나 되는 전형적인 농촌 산간 지역이다. 당해연도 시군구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여자 100명 당 남자가 62.2명일만큼 성비 불균형이 심하고 여자는 무려 43.8%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고령자의 자살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인구통계에서는 비교 대상을 만 명 당 인구, 또는 10만 명 당 인구 등으로 바꾸어 비교하는 기법이 있다.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절대 숫자 속에 묻혀 있던 상대 숫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고령자의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위해서 2013년 연령별 자살자를 인구 10만 명 당으로 바꾸어보면 80대 이상의 노인 자살은 95명으로 40대 자살자 33명의 세배에 가깝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 숫자로도 같은 기간에 전체 자살자가 1만4천명인데 이중 60대 이상 자살이 4천8백명으로 3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령자들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한 세대이다.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을 겪고서도 참고 살아온 세대인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 8천 불이라는 세상에서 스스로 삶을 마치는 일이 이렇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골병이라는 말이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진리이다. 압축된 경제성장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축된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를 감내해 온 결과가 만성질환과 통증이 되어 지금의 노인들을 자살로 내모는 것은 아닐까?

노인의 죽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고독사에 관한 것이다. 노인이 혼자 살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 사망 후 한참 후에 발견되는 노인의 고독사는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내각부의 2010년 고령사회 백서에 이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나타내는 통계도 있다. 이 통계를 보면 대화 또는 전화 등을 통해 '2~3일에 한번' 가족이나 이웃과 소통한다는 사람이 35.2%(남자는 41.2%)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회통계 결과(2010년, 2012년, 2014년)를 보면 따로 사는 부모와 일주일에 한 두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두 번로 연락한다는 비율이 40%대로 가장 많았다. 그중 유의해서 봐야할 항목은 일년 내내 전화도 거의 안한다는 사람이 3%대를 이루고 있으며, 일년 내내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2%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독사 현황을 보면 2012년에 719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008건으로 천건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객사 후 시신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그 숫

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고독사의 가능성이 있는 독거노인의 수는 2015년 138만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27.3%를 차지해 네 가구중 한 가구가 독거노인 가구이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서 10년 후인 2025년에는 225만 가구로 34.3%가 되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20년 후인 2030년에는 343만 가구로 1인 가구의 45.0%가 되어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독거노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빈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전국 독거 노인 74만명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6%인 11만8천명이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대다수 독거 노인은 질병 때문에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5%는 질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4.7%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에서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10만명을 '생명 지킴이(게이트 키퍼 gate-keeper)'로 임명하여 집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고립된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도 고령자의 자살을 낮추는 한 가지 방안일 것이다.

노인의 죽음, 세 번째 주제는 존엄사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생노병사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없이 죽는다. 그래서 탄생이 축복이라면 죽음도 축복이어야 한다. 탄생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생의 한 순환일 뿐이다. 그런데 자연스러워야 할 죽음이 기계에 의해, 법과 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방해받는 일이 일상화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well-dying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존엄사란 노환으로 인한 죽음을 자연스런 생의 순환으로 여겨서 인위적인 인공호흡이나 혈액 투석 등을 통해 생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일을 거부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존엄사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지금은 존엄사를 결정하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가족이나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면 중한 벌을 받게 된다. 지금도 한해에 1,500명 정도가 이런 제도적 맹점 속에서 생환이 불가능한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갈수록 심각하게 진행될 것임

이 분명하다. 수명 100세 시대가 되고 고령화율 40%에 이르는 세상이 되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자료(2011년)에서도 72.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엄사와 관련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자료(2013년)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82%였으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65세 이상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족이나 병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난 이상 반드시 예외 없이 죽어야 하는 이상 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인간답게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㉓ 소득과 행복의 관계

중국 속담에 ‘유전사귀신(有錢使鬼神)’이란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뜻으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오늘날의 중국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보다 더 적절한 단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서구 선진국이 300년에 걸쳐 달성했던 근대화를 1960년 이래 30년 만에 압축해서 달성한 우리의 지난 모습이기도 해서 가슴에 바로 와 닿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과 7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1960년, 8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2만 8천 180달러가 됐다. 이 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벌어서 쓴 돈이니까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77달러 정도 된다. 어렵잡아서 작년엔 우리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77달러를 벌어서 살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50여 년 전인 1960년에는 한사람이 80달러로 1년을 살았다는 것이니 화폐의 구매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 본다면 대략 작년엔 우리가 하루를 살았던 돈으로 1960년에는 1년을 살았다는 것이니 그때 그 궁핍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표시 1인당 GNI(원화표시 명목GNI를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를 원/달러 연평균 시장환율로 나누어 구한다. 명목 GNI 증가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과 환율변동을 및 인구증가율이 1인당 GNI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요인으로, 환율상승과 인구증가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인터넷 시사경제용어사전)

이렇게 우리는 빠른 기간에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비해 국민들은 그다지 행복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자 수는 1만 3천 836명으로 하루에 38명이, 두 시간에 한 명 꼴로 불행을 못 이기고 생을 마감하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국가와 비교해 봐도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OECD 국가 평균이 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8.7명으로 2.4배나 많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잘 살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세상 힘들어 못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일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총생산(GNI)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을 꼽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을 국가의 중요한 경제지표로 삼는 저변에는 ‘돈, 즉 소득이 많아지면 우리는 행복해 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을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어긋나는 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신경재재단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느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를 조사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나라들을 보면 방글라데시가 1997년, 1998년 연속 1위를 했고 2006년에는 바누아투, 2009년에는 코스타리카가 차지했다. 다른 연구 자료로는 영국 과학지인 뉴사이언티스트에서는 나이지리아가 1위를, 미국 미시간대에서는 행복지수 1위 국가로 프에르토리코를 꼽았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것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몹시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화와 서구화를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알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연구 결과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 추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 짐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신화가 깨진 셈이다. 그럼 무엇이 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가족 간 유대, 종교적 위안, 지역 사회의 보살핌 등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다. 기존의 돈과 행복간의 상관관계가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은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워낙 케이스가 다양한데다가 객관화하기 어려운 가치관까지 끼어 있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원칙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서 몇 가지 가설이 정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스털린 파라독스(Easterlin's Paradox)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역설로 그는 1946년부터 빈곤 국가와 부유한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 규모를 연구하여 모든 나라에서 경제적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1974년 '소득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정확하게는 '한나라 안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하지만, 부자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보다 행복하지는 않다'이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 대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이 2008~2009년 미국인 45만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커지는 정(+)의 관계는 연간 소득 7만5000달러(약 8700만원)까지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증가된 소득이 행복감을 키우는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45년부터 2000년까지 55년 동안 GDP가 3배 증가하였으나 행복의 정도는 거의 같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미국, 미시건 대학의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생활 만족도, 즉 행복도는 점차 줄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도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 일정 수준이란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15,000불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15,000불 수준 이전에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정책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선 것은 2000년이었고 5년 후인 2005년에는 15,000불을 넘었고 지금은 30,000불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벌써 그 변화 시점이 10년 내지 15년 지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서베이에서 소득별로 주관적인 행복감을 조사(2013년, 2만 가구, 47,384명 면접 조사)하였는데 소득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의 주관적 행복감은 8.7점이라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300~400만원과 400~500만원의 주관적 행복감은 불과 0.4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100만원이던 사람이 100만원 더 많은 200만원을 벌게 되면 행복감은 크게 증가하지만, 소득 400만원이던 사람이 100만원 많은 500만원을 벌게 되도 행복감은 전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이다. 100만원을 더 벌기 위해서는 많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그 희생의 결과가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더 열심히 노오력하게 될까? 아니면 그만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까?

이처럼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신앙처럼 믿고 살았던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공식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갈수록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초가지붕 아래 웃음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도 삶의 최고 목표가 행복이며 돈은 행복에 이르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수단에 불과한 경제성장만을 지상 과제로 삼고 집중해 온 걸까? 이것은 어쩌면 행복이라는 통계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통계로 만들어 내기 어려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택으로 돈을 최고 지표를 선택한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국가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행복도를 측정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국민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제성취와 사회발전 측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아마르티아 센, 장폴 피투시 등 세계적인 석학들로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GDP 개념을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의 기준으로 재구성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0년에 12개 주요 권고안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독립적인 국가 기구인 국가 통계청의 질 매디슨 청장에게 국민들의 심리적 주관적 행복감을 포함한 총체적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일반웰빙지수 (GWB)개발을 주문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5월, OECD에서는 주택,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거버넌스, 건강, 생활만족도, 안전, 일과 여가의 조화 등 11개 기준의 '당신의 더 나은 삶의 지수' (Your Better Life Index)를 선정하고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26위, 2012년 32위, 2013년에는 27위를 지난해는 34개 국가 중 33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서 잘살게 되었다니까 우리의 행복도도 그에 상응하게 높아져야 할텐데 생활 만족도는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살율은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이 높은 우리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통계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통계청에서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OECD 세계 포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고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삶과 행복 및 발전의 지표로 통용되는 GDP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대체지표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 **국민 삶의 질 지표**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통계청 홈페이지)

지금 통계청 홈페이지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Korean Quality of Life)’를 볼 수 있다. 전체 12개 영역에 81종의 지표 중 공표 가능한 70종의 통계를 실어 놓았다. 이 중 소득, 고용, 임금, 복지, 주거 등 물질적 지표는 22종이며, 건강, 교육,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 비물질적 지표는 59종이다. 그리고 81종 중 객관적 지표는 57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관적 지표는 24종으로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 지표는 모든 지표를 종합한 지표가 없이 각각의 지표가 별도로 있는 상태이다.

이제 우리도 성장 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벌써 지나 있다는 점을 많은 연구결과와 통계가 알려주고 있다. 통계가 알려 주고 있는 이 신호를 놓치면 지난 장에서 이야기했던 저출산 문제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모두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는 황금만능, 물신만능에 빠진 우리의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계기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홈페이지 서두에 실린 인용구를 소개하면서 강의를 끝맺고자 한다.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OECD 각료회의 / 1970)





- 국가통계의 의미, 기능, 역할을 설명하시오.
- 국가통계의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보시오.
- 통계작성 과정에 대해 기술해 보시오.

- 김기환 외 3인(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용역, 통계개발원.
- 김민경 · 이공희 · 이기재(2013), 국가통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개정판.
- 김설희 외(2005), 국가통계 바로알기, 통계청.
- 변효섭(2015), 국가통계의 이해, 통계교육원.
- 상성현 · 박진우(200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응용통계연구, 제17권 3호.
- 신지성 · 이희길(2010), 정책수요 통계구비를 위한 추진과제 현황 : 주택, 가족,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통계청.
- 이재형(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이석훈 외 5인(2008), 통계와 정책 표준교재, 통계교육원.
- 고령사회 2018(프랑크 쉬르마허)
- 신의 손(구사카베 요)
-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김진영)
- 인구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홍춘욱)
- DEATH(셀리 케이건)
- 통계청 홈페이지

# 2부

---

## 통계제도

## 2부. 통계제도

### 목차

학습과목의 개요 .....	65
<b>제1장. 통계법과 국가통계제도</b>	
1-1. 통계법 .....	67
1 통계법 개요 .....	67
2 통계법상 주요용어 및 개념 .....	71
1-2. 국가통계 제도 .....	75
1 통계제도의 의의 및 유형 .....	75
2 통계의 종합조정 .....	82
3 국가통계 기본원칙 .....	86
<b>제2장. 통계조정제도</b>	
2-1. 통계기준 .....	91
1 통계기준의 개념 .....	91
2 통계용어의 정의 .....	92
3 통계기법의 표준화 .....	93
4 통계분류 .....	94
2-2. 국가통계의 승인제도 .....	100
1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및 취소 .....	100
2 통계작성승인(협의) .....	101
3 통계작성변경승인(협의) .....	104
4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	104
5 통계의 공표 .....	105
6 통계간행물 발간내역 통보 .....	106
7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106
8 통계법 위반에 대한 관리 .....	107
2-3. 그 밖의 통계조정 제도 .....	109
1 통계품질진단 .....	109
2 통계기반정책관리 .....	112
3 국가통계위원회 .....	115
4 통계책임관 제도 .....	116
5 국가통계 기본계획 수립 .....	117
6 통계조사대행 .....	118
7 통계정보서비스 .....	119
연구과제 또는 연습문제 .....	122
참고 자료 .....	123

## 통계제도 과목의 개요

---

<b>학습 목표</b>	국가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와 통계법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고,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의 국가통계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계조정 필요성과 주요 활동을 파악한다.
<b>선수학습</b>	통계법, 국가통계 개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정책 및 정보시스템 둘러보기
<b>주요 용어</b>	통계제도, 분산형통계제도, 통계법상 통계(국가통계), 통계자료, 행정자료, 공공기관, 통계작성기관, 지정통계, 통계조정, 국가통계 기본원칙, 통계분류, 직성승인, 변경승인, 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관리,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책임관, 통계정보시스템
<b>학습과목의 내용요약</b>	각 나라에서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적합한 통계제도를 형성·운영하고 있다. 통계제도는 크게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중형을 가미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계법의 목적과 취지,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이해하고, 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른 통계조정제도 및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1. 통계법

### 학습목표

-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의 통계법의 취지를 이해한다.
- 통계조정제도와 관련된 통계법 상의 주요용어와 개념을 이해한다.

## 1 통계법 개요

### 1. 통계법의 목적 및 정의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작성 체계를 정비하고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법을 정의하면, 협의의 통계법은 통계의 기본이념과 통계 및 통계작성기관의 정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통계작성·변경·중지 승인 등 일련의 통계작성활동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통계법과 통계법시행령, 통계법 시행규칙, 국가통계위원회규정 등을 말하고, 광의의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 통계결과의 공표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통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규정(통계법, 건축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증진법, 압관리법, 한국은행법 등)을 의미한다.

## 2. 통계법의 연혁

통계법은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생산과 통계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표준화 등을 확보하고자 1962년 1월 15일에 인구조사법, 자원조사법, 농업통계보고령 등을 폐지하고 통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제정·공포하였으며, 제정 통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제기획원장을 통계사무의 종합적 감독기관으로 함
-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지정통계로 하고, 그 이외의 통계를 일반통계로 함
- ③ 통계작성시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일반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경제기획원장은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⑤ 경제기획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조사의 개선을 실시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지조사제도를 두어 통계조사공무원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미리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함
- ⑥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을 보호되도록 하고,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계상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⑦ 지정통계조사의 결과는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에 공표토록 함
- ⑧ 보고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이 민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조사표 또는 보고양식은 미리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⑨ 지정통계조사의 실시기관이 아닌 자가 공표된 통계결과를 복제하여 간행물로 발간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 ⑩ 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제기획원장은 통계법상의 권한의 일부를 통계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⑪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통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통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1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전문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2차 개정(1975.12.31)에서는 전문개정으로서 각 행정기관이 보고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통계 상호간의 기준의 통일과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규제하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제3차 개정(1995.12.29)은 통계작성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통계제도의 체계적인 발전 및 그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추진하였다.

현행 통계법의 근간을 마련한 제5차 개정(2007.4.27)은 정부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환류의 기반이 되는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구축과 통계제도 형성을 위해 통계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제5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통계품질진단 의무화 (⇒ 국가통계 품질 제고)
  - 통계청장에게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진단 권한 부여
  - 각 통계작성기관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 ② 행정자료 활용 강화 (⇒ 응답부담 경감 및 통계 정확도 제고)
  -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제공 의무화
  - 제공된 행정자료의 타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
- ③ 통계DB의 구축 및 통계자료의 제공 (⇒ 통계의 보급 · 이용 확대)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DB 구축, 연계 및 통합 추진
- 학술연구기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를 제공
- ④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요구 (⇒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계청장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관계자에 대해 주의·징계 요구
- ⑤ 통계작성시 성별분리 근거 마련 (⇒ 여성정책 뒷받침)
  - 통계작성 승인사항에 조사사항의 성별구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이후에도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고(7차 개정),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하도록 하였다(8차 개정). 현재 시행 중인 11차 개정(2014.5.14) 통계법은 종전 통계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혼인·출생·사망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할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여 국가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형사사법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3. 통계법의 구성

현행 통계법은 모두 7장, 4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1~5조) 총칙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6~14조)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기반 구축에서는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15~17조)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에서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지정통계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4장(18~31조)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에서는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절 통계의 작성에서는 통계작성의 승인 및 취소, 표준분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서는 통계의 공표, 통계간행물의 발간,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5장(32~34조)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에서는 통계응답자의 성실 응답의무, 비밀의 보호,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6장(35~38조) 보칙에서는 자료제출요구, 위법행위의 시정요구,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7장 (39~42조) 벌칙에서는 벌칙과 양벌 규정, 과태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2 통계법상 주요용어 및 개념

### 1. 통계(국가통계)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통계법 제3조 1호).

여기서 대통령령(통계법시행령)으로 정하여 제외하는 수량적 정보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승인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 공표하여도 통계법 위반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수량적 정보가 해당된다.

- ①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②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③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④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⑤ 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성이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⑥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 2. 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통계법 제3조 3호).

통계작성기관이 되면 통계작성 및 공표 등 통계활동 시 통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통계작성기관이 되며, 공공기관, 협회·조합 등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계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①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②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③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또한,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 등이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위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5년 12. 1일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395개이며, 중앙행정기관 43개, 지방

자치단체 260개, 통계작성지정기관 92개이다.

### 3. 지정통계

“지정통계”란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로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통계법 제3조 2호).

지정통계가 아닌 국가통계는 모두 일반통계(법적 용어는 아님)로 분류하며, 통계법상 지정통계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다.

- ①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 ②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③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④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⑤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지정통계로 지정이 되면 통계가 원활히 작성될 수 있도록 통계법에 따라 자료제출명령권, 실지조사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응답자에 대해서는 법적 응답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정통계의 지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표 1-1>  
지정통계의 권한

	자료제출명령권	실지조사권
내용	통계응답자에게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벌칙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통계법 제3조 4호),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제3조 7호).

이때,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집계, 작성된 통계수치나 지표와는 다르므로 용어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통계법 제3조 5호).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③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6. 기타 용어

- (1)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통계법 제3조 5호).
- (2) 한편, 통계책임관,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통계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관리 등 통계조정제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제2장) 통계조정제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2. 국가통계 제도

### 학습목표

- 통계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등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와 통계조정의 필요성, 통계청의 역할 등을 이해한다.

### 1 통계제도의 의의 및 유형

통계정보의 최대 활용기관은 정부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는 필요로 하는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적합한 통계제도를 형성·운영하고 있다.

통계제도는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계조직과 통계작성 능력에 따라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느 쪽에 가까우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1. 집중형통계제도

집중형 통계제도는 한 나라의 모든 통계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 공급토록 되어 있는 제도이며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1) 장점

하나의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므로 통계작성의 중복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숙련된 인적자원과 기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통계전문 인력의 집중적 활용이 가능하다. 통계이용자가 여러 분야의 통계자료를 단일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있다. 각종 조사의 응답자는 단일 기관만 상대하므로 편리하다. 집중된 단일 통계기관은 전산화된 자료축적체계를 개발 및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 자료공급을 위한 추가부담 없이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목적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며 오로지 통계만 관여하는 기관은 특정 부처의 영향과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국민으로부터 객관성을 인정받는데 용이하다.

중앙통계기관은 개인, 기업 및 정부부처에서 수집한 정보의 비밀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식시키는데 용이하다. 중앙통계기관은 전반적인 통계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여러 통계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 (2) 단점

통계를 필요로 하는 각 기관의 통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각 부문별 전문지식 활용이 어렵다. 특히 중앙통계기관이 거대해지면 이용자의 변화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위험이 따른다. 중앙통계기관은 통계법의 비밀보호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여 다른 부서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집중형 제도의 존재만으로 통계의 실질적인 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합한 조직적 배경과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의 발휘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하다.

## 2. 분산형통계제도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아래 작성하는 통계제도로서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영국,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집중형 통계제도의 단점과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산형 통계 제도하에서는 각급 기관의 통계활동 중복제거와 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앙에 통계종합조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표 1-2>  
집중형과  
분산형통계제도의  
비교

	집 중 형	분 산 형
특징	- 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 기관에서 작성 - 부처간 통계연락기구의 설치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작성 -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장점	- 통계의 균형적 개발과 유기적 체계 확보 -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 가능	-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개발에 활용 가능 -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
단점	- 관련 행정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미흡 -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통계작성상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응답 부담 등 초래 - 체계적인 통계개발의 제약 - 통계전문요원의 집중적인 활용 곤란 -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 초래
국가	-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등	-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핀란드, 대만 등

### 3. 주요국가의 통계제도<sup>1)</sup>

#### (1) 집중형 통계제도 채택국가

<표 1-3>  
주요 집중형통계제도  
채택국가

구분	특징
캐나다	캐나다통계청은 산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통계수요에 대한 총족을 책임
호주	호주통계청(ABS)은 재무부 소속으로, 통계생산 및 기타 통계관련서비스 수행
노르웨이	노르웨이통계청은 집행위원회와 청장에 의해 운영되며,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덴마크	덴마크 공식통계의 대부분은 독립 기구인 덴마크 통계청에서 생산, 그 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정부부처 등에서 일부 공식통계 제공

1) 자료 출처 :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2009년, 통계개발원)

캐나다 통계시스템은 전형적인 중앙집중형(Centralized system)으로 강력한 통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인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통계수요 충족을 그 주요 책임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부 산하로 되어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오타와(Ottawa)에 본부가 위치해있고, 전국에 걸쳐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를 두어 자료수집, 통계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자료 제공, 통계이용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통계청은 지방 소재 통계사무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통계제도 분류상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계생산 및 기타통계관련 서비스는 중앙통계청인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호주통계청은 호주연방정부의 재무부(Dept. of Treasury) 소속으로, 호주 통계청(ABS)과 그 전신(前身)인 연방 센서스 및 통계연방국(Common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 CBCS)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통계 서비스를 담당해왔다. 통계청장은 독립적으로 일하며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만 의회의 구성원인 재무장관(Australian Treasurer)에게 보고한다.

노르웨이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앙통계기관인 노르웨이 통계청은 집행위원회와 청장에 의해 운영된다. 청장은 노르웨이 통계청의 관리와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국가통계 전략기획 및 통계예산안과 청장이 제안한 연간업무계획을 심의·결정한다.

덴마크 통계제도는 전형적인 집중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덴마크 공식통계의 대부분은 독립 기구인 덴마크 통계청(Statistics Denmark, SD)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정부부처 등에서도 일부 공식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 (2) 분산형 통계제도 채택국가

<표 1-4>

주요 분산형통계제도  
채택국가

구분	특징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 등 주요 10개 통계기관 존재, 그 외 70여 개의 연방기관에서 통계정보 관리
영국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정부통계기구(GSS)를 구성하고 대부분의 통계제도를 운영
일본	일본 총무성의 통계국이 중앙통계기관으로서 부처간 통계업무를 조정하며 지자체(도도부현)의 통계조직에서 현장조사 기능을 수행
프랑스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에 많은 국가통계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집중형적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
벨기에	벨기에통계청은 경제부에 소속된 부서로 경제부 장관이 예산을 수립, 그 책임을 짐
스웨덴	스웨덴통계청은 소비자에게 의사결정, 논쟁, 연구를 위한 통계를 제공 - 정부기관과 다양한 기관에 작업을 할당
핀란드	분산형이지만 다소 중앙집권적 성향이 있음 - 핀란드통계청은 가장 오래된 정부기관 중 하나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미국 연방통계시스템은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계적 활동을 위한 법률권한과 예산집행은 상무부 센서스국(Census Bureau)을 비롯한 노동부 노동통계국, 농무부 농업통계국, 보건인적서비스부 국립보건통계센터, 교육부 교육통계센터 등 주요 10여개 통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외 70여개의 연방기관에서 정부의 통계 프로그램을 조절하고 각 기관 내부 조직의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통계제도는 혼합형으로서 영국통계기구(Statistics Authority, SA)가 통계위원회로서 최상위의 감독기관이며 의회에 대한 보고기능을 갖고 있다. 그 아래 각부처와 기관의 통계책임관이 참여하는 분산화된 정부통계기구(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GSS)에서 대부분의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은 영국의 통계기관을 대표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 정부통계기구(GSS) 업무의 기획·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ONS의 수장인 National Statistician은 GSS의 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영국 통계기구의 행정 최고책임자이고 주요 통계의 조연자 역할을 한다.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업성 등 각 부처별로 소관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수산

성 등 일부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는 지자체(도도부현)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지방통계조직을 운영한다.

프랑스는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에 많은 국가통계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집중형적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통계생산조직은 INSEE를 비롯하여,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을 비롯하여 수 많은 정부 및 준정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계생산기능이나 통계인력 측면에서 INSEE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벨기에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벨기에 통계청은 경제부에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부 장관이 예산을 수립하고 그 책임을 진다. Statistics Belgium은 벨기에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생산기구이고, 유럽연합에게 자료를 전송하는 것과 다른 국가통계 생산자들에게 표준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스웨덴 통계청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논쟁, 연구를 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통계작성을 정부기관과 다양한 기관에 할당하기도 하고 민간 부분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하기도 한다. 통계데이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 외에도 공식통계를 위해 정부부처의 통계시스템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또한 국제적인 통계협력에도 참여한다.

핀란드 통계청은 타 공공기관과의 협력 하에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핀란드의 통계시스템은 다소 중앙집권적이다. 핀란드 통계청은 핀란드의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이고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지속적으로 통계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통계제도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극단적인 분산형 또는 집중형 통계제도의 성향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고, 각 나라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분산형 또는 집중형 중 어느 한편에 더 가까운 통계제도 형태를 채택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우리나라의 통계제도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분산형 통계제도로 출발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집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62년에 제정된 통계법은 정부를 위시한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독자적인 통계작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응답부담 가중, 관련통계 상호간의 비교성 결여, 통계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통계의 질적 수준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은 일반목적용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의 기능과 통계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 통계청의 주요 기능 >

###### ○ 통계정책 부서

- 통계법 등 국가통계제도 및 정책 수립
- 분류 및 기준 제정, 통계조정업무(통계작성승인, 통계품질진단 등)
- 지역통계 지원 및 개발, 품질 향상
- 국제협력 업무

###### ○ 통계작성기관 : 국가기본통계 58종 작성

- 전수조사(12종) : 인구, 주택, 농어업, 경제,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등
- 표본조사(29종) : 고용, 광공업, 물가, 사회통계조사 등
- 가공통계(15종) : 지역소득, 경기종합지수, 인구추계 등
- 보고통계(2종) : 국내 및 국제인구이동통계

###### ○ 통계정보 관리 및 제공

- KOSIS, 국가주요지표체계, e-나라지표, MDSS, SGIS, 보고서, CD 등
- 국제통계 DB : UN, OECD, IMF

## 2 통계의 종합조정

### 1. 통계조정의 의의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통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의 조정이란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연유되는 통계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새로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개발하여 통계의 수급을 균형화 시키는 소극적 의미의 통계관리 뿐만 아니라 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상호 관련 통계가 개선·개발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활동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90여개 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통계작성기관의 환경 및 인프라는 조직 및 인력, 전문성 등에서 매우 열악한 편이다. 통계작성기관 중 통계청을 제외하고 통계전담조직(정부기관 기준 과 단위 이상)이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중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과 단위의 통계전담부서가 거의 없으며,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는 한국은행 정도가 통계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통계조직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도 통계전문인력은 매우 미흡하여 산하기관(공공기관 등) 등에 위탁을 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통계작성기관의 열악한 여건은 통계작성기관 간의 균형적인 통계발전 및 작성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통계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통계조정은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 자료수집의 시기와 방법, 표본의 설계, 작성 항목, 자료처리 계획의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계조정은 1962년에 제정된 통계법을 근간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때는 주로 통계승인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통계법의 개정에 따라 통계제도가 바뀌면서 현재의 통계조정 의미는 크게 확대되었다. 통계품질진단, 통계기반정책관리,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국가통계 발전계획 수립, 통계책임관 제도, 통계대행업무, 국가통계정보시스템 관리 등도 통계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조정의 목적을 통계법의 목적과 이와 관련된 각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통계의 중복제거 및 유용성 확보

통계작성의 중복은 국민의 응답부담을 가중시켜서 궁극적으로 응답 기피 및 자료의 부실이나 통계간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통계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중복되는 통계 생산으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법 제18조와 제20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작성계획을 미리 통계청에 제출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중복과 신뢰도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계작성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통계의 유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2) 통계의 체계정비

통계체계의 정비란 중복되는 통계활동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필요로 하는 통계가 균형 있게 작성·발전되게 할 뿐 아니라 개발되는 통계 상호간의 연관성과 비교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성의 증대는 측정단위, 각종 통계용어의 정의, 경제활동이나 상품의 분류 등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의 적용으로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통계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첫째,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 중지, 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 모든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작성하여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통계법 제22조 참조).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과 같은 표준분류를 제정, 고시하고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3) 통계의 진실성 확보

통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의 진실성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계의 진실성 여부는 통계작성의 각 과정이 잘 계획되었느냐의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서는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작성하고 있는 통계를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계작성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부실한 통계가 생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통계의 진실성 확보는 통계작성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질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통계법 제8조는 통계작성사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계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정확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에서는 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26조(실지조사)에서는 다시 지정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 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 통계청의 통계조정 역할

통계청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통계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발전계획 수립 및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유사한 통계의 중복작성 방지 및 국가통계의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 통계에 기반한 정책 유도 등 통계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KOSIS, 국가주요지표체계, e-나라지표, 홈페이지, 보고서, CD 등 통계정보를 관리, 제공하고 있다.

통계승인업무의 예를 들면, 통계작성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계법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조사사항,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관한 승인 또는 협의신청서를 미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후에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 통계를 사정에 의하여 작성



중지·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중지사유 또는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승인 받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계조정활동의 주요 업무내용과 담당부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5>**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통계조정업무**

통계조정 주요업무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통계 발전 기본·시행계획의 수립</li> <li>•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li> <li>•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운영, 통계수요조사</li> <li>• 통계법 개정 및 유권해석 등</li> </ul>	통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li> <li>• 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li> <li>•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li> <li>•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li> </ul>	통계기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li> <li>•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li> <li>• 통계작성·변경·중지의 승인(협의)</li> <li>• 각 부처 통계예산 검토 및 의견 제출</li> <li>•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li> <li>•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li> </ul>	통계조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통계 정기·수시 품질진단제도 운영</li> <li>• 자체 통계품질진단 지원 및 관리</li> <li>•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li> </ul>	품질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li> </ul>	통계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i> <li>•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관리 등</li> </ul>	통계서비스기획과

### 3 국가통계 기본원칙

#### 1. 제정 목적

통계청에서는 ① 국가통계의 가치와 효용성을 새롭게 인식, ② 국가통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관 정립, ③ 국가통계작성기관 종사자의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 및 자긍심 고취, ④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1년 9월 1일 제17회 통계의 날을 맞아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종사자(위탁기관 종사자 포함)들이 통계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국가통계 기본원칙을 제정·선포하였다. 이는 국가통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가통계조정 기본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1-6>  
국가통계 기본원칙  
항목

구분	기본원칙
- 국가통계의 가치지향성	1 중립성 보장 2 신뢰성 제고
- 통계작성 과정	3 효율성 제고 4 비교 가능성 5 비밀 보호 6 인프라 확충 7 이용자 참여
- 통계 서비스 과정	8 서비스 향상

#### 2. 국가통계 기본원칙 및 실행방안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중립성 보장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실천방안)

- 통계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은 정책기관, 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공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 신뢰성 제고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실천방안)

- 통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과학적인 작성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사기획, 자료수집에서 공표에 이르는 적절한 통계작성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미리 예정된 결과를 상정하고 통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 (3) 효율성 제고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실천방안)

- 유기적인 계획수립, 통계작성기법의 적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작성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공유하여 통계의 중복작성을 방지하고 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응답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 (4) 비교 가능성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는 국·내외 기준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체계 또는 자료수집·분류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신규통계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통계와의 비교를 위하여 개념, 정의, 모집단 구성, 표본추출방법, 분류기준, 통계작성방법 등을 기술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통계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국가간,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및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비밀 보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정보를 통계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료 제공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인프라 확충**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실천방안)**

- 통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표본설계, 자료수집,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통계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이용자 확대**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실천방안)**

-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전문가 회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소관통계에 대한 개발·개선 요구, 기타 수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서비스 향상**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천방안)**

-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등한 권한으로 공표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기준시점과 발표시점의 시차를 최소화하여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언론 보도, 보고서 발간,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결과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1. 통계기준

### 학습목표

- 통계기준의 유형별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표준분류가 통계법상 갖는 중요한 의의와 실제 활용사례 등을 이해한다.

### 1 통계기준의 개념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여 통계의 이용성 및 설명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통계기준의 설정과 그의 통일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통계기준이란 통계자료의 수집, 분류, 처리,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설정된 체계로서 일반적으로 통계용어의 정의,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분류 등으로 대별된다.

① 통계용어의 정의는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② 통계기법의 표준화는 통계자료를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통계분류는 통계의 비교성 제고와 통계간 연관분석이 가능하도록 어떤 현상의 집합 전체를 그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상호 배타성, 포괄성 및 목적 적합성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에서 국가통계 작성시 분류를 사용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산업, 직업, 질병사인, 무역, 목적별지출분류 등 표준분류와, 표준분류 중 특정분야에서 해당하는 분류를 선정하여 만든 특수목적분류, 그리고

기타(일반)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 📌 통계용어의 정의

해마다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생산, 공표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그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통계들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표준 정의를 통해 통계정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표준용어(Standard definition)의 사용은 유사, 중복통계에 의한 통계생산의 비효율성과 통계이용상의 오해를 줄이게 된다. 현재까지 추진된 통계용어 관련 업무는 하나의 통계용어가 여러 조사에 각기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들을 비교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통계용어의 정의집이나 사용사례집의 형태로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통계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1. 통계용어 정의집(1994)

통계조사에 직접 사용된 용어들과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각종 통계 표에 나타난 용어들의 정의 및 해설을 수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90여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350여 종의 통계에 사용된 약 3,500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였다.

### 2. 통계용어사용사례집(2006)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정부승인 통계 약 500여종의 6,300여개의 통계용어에 대한 사용사례를 수록하여 통계이용자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 3.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통계학적 개념, 통계용어 및 통계청 공표 주요 통계 지표의 개념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의 이해 >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부분에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서는 분야별로 주요지표 73개의 설명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4. 통계용어검색서비스(1994)

국가통계포털 > 통계설명자료 > 용어조회(<http://kosis.kr/metadata>)에서는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통계용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433개 통계조사 10,600여개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회할 수 있다.

### ㉓ 통계기법의 표준화

통계기법의 표준화는 통계작성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지침 및 통계작성 과정상의 구체적, 기술적인 방법론의 표준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여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획, 조사표 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등 통계작성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을 알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국가통계 작성의 중추기관으로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는 작업은 국가통계의 진정성과 통계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일이다.

현재 통계법상에는 통계작성의 원칙 및 기준이 여러 조항에 혼재되어 있으며, 통계작성상의 전반적인 공식적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공식통계를 위한 기본원칙,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기술 및 통계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9년 처음 발행한 국가통계실무지침은 그러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계작성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의 표준화는 각 통계조사간 공통된 영역에 대한 작업이다. 이것은 통계작성 기관 및 작성부서가 참여하여 표준화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1. 국가통계실무지침(2009)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여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등 통계작성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을 알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국가통계실무지침은 총 7장, 25절, 112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조사통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한 책으로 국내 승인통계 작성기관 및 대학교, 도서관으로 배포하여 통계작성 실무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통계조사공통항목 표준화

2009년도에는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등 주로 사업체(기업체) 대상의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사업체관련번호, 종사자수(종사상 지위), 사업체조직형태와 같은 공통항목의 기입형태와 정의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여러 조사표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은 그 기입형태나 정의를 표준화하여 통계작성과 통계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통계분류

### 1. 통계분류 개요

일관성, 비교성 및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어떤 현상의 집합 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질병 등을 분류한다. 통계분류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로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 공표,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며,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분류는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이 제각기 지니는 구조상 또는 자연의 공통인자에 의해 그룹화하는 시스템으로 정의(자연)되며, 동식물 분류와 경제사회분류(산업분류, 직업분류, 상품분류 등)로 구분된다. 분류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포괄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관찰들의 집합이다.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있다. 또한 분류는 정보를 생각이나 사건, 대상 또는 사람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표준형태로 의미 있게 체계적으로 묶어서 조직하게 하며, 분류의 구조는 계층적이거나 수평적일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분류 6종, 특수목적분류 21종, 일반분류 7종 등 총 34종의 통계분류를 작성·운영하고 있다.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하며, 그 중에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분류를 표준통계분류라 한다. 통계분류는 통계조사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통계분류, 통계단위, 조사항목) 중 하나이며, 통계단위가 통계자료의 수집집계를 위한 기초적 요소라고 한다면 통계분류는 이를 의미 있는 숫자로 표시하기 위하여 유형화 시킨

것이며, 통계조사나 행정목록에서 등록된 특정한 변수에 할당될 수도 있고 통계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표준통계분류는 통계법에 의거 사용에 구속력이 부여된다.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특수목적분류는 표준분류(산업, 직업) 중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분류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이며, 해당 분야의 통계작성 및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분류이다. 일반분류는 관련분야 통계작성 및 분류 개발 초기에, 분류의 검증, 분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분류이다.

<표 2-1>  
통계분류 현황

구 분	종수	분류 내역
• 표준분류	6종	산업, 직업, 무역, 질병사인, 목적별지출, 교육 분류
• 특수목적분류	산업 18종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ICT산업, 환경, 자동차관련전용부품제조, 로봇, 저작권, 공간정보, 디자인, 사회서비스, 소방, 방재, 지식재산서비스, 이러닝, 수산업
	직업 3종	전문기술인적자원, ICT직업, 고용직업 분류
• 일반(기타)분류	7종	한국상품용도, 가계수지항목, 생활시간활용조사활동, 종사상지위, 한국행정구역, 한국재화 및 서비스, 한국건강 분류

## 2. 표준통계분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6종의 표준분류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국제분류를 근거로 작성되고 있다.

<표 2-2>  
표준분류 개요

분류명	분류대상	근거	분류개요	최근작성 (개정) 연도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산업활동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rev.4 ; UN)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별 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2007년 (9차개정)
한국표준 직업분류 (KSCO)	개인직무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08 ; ILO)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2007년 (6차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KCD)	질병사인	국제질병사인분류 (ICD-10 ; WHO)	의무기록자료 등의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2015년 (7차개정)
한국표준 무역분류 (SKTC)	수출입 품목	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rev.4 ; UN)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을 일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목적으로 작성	2009년 (11 차개정)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	제도 부문별 지출 목적	목적별지출분류 (UN)  목적별지출분류 (UN)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COICOP-K),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 (COPNI-K)	2008년 (제정)
			정부기능별 지출분류 (COFOG-K), (목적별생산자지출분류는 미개발상태)	2009년 (제정)
한국교육 분류 (KSCED)	교육수준 및 영역	국제표준교육분류 (KSCED-97)	교육과정을 교육수준과 교육영역에 따라 분류	2014년 (제정)

6종 표준분류 중에서도 통계법에 명시된 산업, 직업, 질병사인분류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분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한국표준산업분류

UN 국제표준산업분류(ISIC-1958)를 근거로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국내의 산업구조 및 특성 반영을 위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목적은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분석,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과 비교성 제고, 산업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분류기준은 ①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 ②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③ 수평적 결합 및 수직적 결합 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④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분류체계는 대분류(21항목), 중분류(76), 소분류(228), 세분류(487), 세계분류(1,145)의 5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A.농업,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 (2) 한국표준직업분류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1958)를 근거로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국내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지금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분류목적은 직업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표·분석, 직업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성 제고, 급여, 보상금등의 결정기준 및 직종별 특정질병이환율, 사망률 작성, 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 등에 있다.

분류기준은 직무유형을 기본으로 직능수준(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분류되었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사용되었다. 상위분류[대분류]는 직능수준으로, 하위분류[중분류 이하]는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분류되었다.

분류체계는 대분류(10항목), 중분류(52), 소분류(149), 세분류(426), 세세분류(1,206)의 5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되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 A.군인

###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LO 공보처가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분류(ICD-6, 1948)를 도입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1952년)하였으며, 국제질병사인분류의 개정내용 및 국내 질병 사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분류목적은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일관성,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하는데 있다.

분류기준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CD) 체계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질병 사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었으며, 기본적으로는 유행성 질환, 체질 또는 전신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 손상 등의 병태에 따라 분류되었다.

분류체계는 대분류 22개, 중분류 263개, 소분류 2,045개, 세분류 12,606개, 세세분류 6,339개의 5단계 계층적 분류체계로 구성되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I.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II.신생물, III.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IV.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V.정신 및 행동 장애, VI.신경계통의 질환, VII.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VIII.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IX.순환기계통의 질환, X.호흡기계통의 질환, XI.소화기계통의 질환, XII.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XIII.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XIV.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XV.임신, 출산 및 산후기, XVI.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XVII.변형 및 염색체 이상, XVIII.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XIX.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XX.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XXI.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XXII.특수목적 코드

## 2. 표준통계분류의 활용

한편, 표준통계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지업종 제한, 의료용 진단서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산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80여개의 법령, 직업분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등 4개의 법령, 질병사인분류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각각 준용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 등은 이보다 더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직업 및 질병사인분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새로운 표준분류 연구개발보다는 민원처리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분류가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개정작업 외에 교육,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 시에는 색인표, 색인어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통계청 홈페이지에 표준분류 내용 게재와 함께 디렉토리 및 검색시스템과 표준분류 안내자료, 해설자료, 지침서 등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대한 교육과 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 개발, 표준분류 내용상담 및 통계작성 업무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 2-2.

# 국가통계의 승인제도

### 학습목표

-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협의의 조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승인제도의 의의를 이해한다.
- 승인제도의 유형별 통계법상 규정과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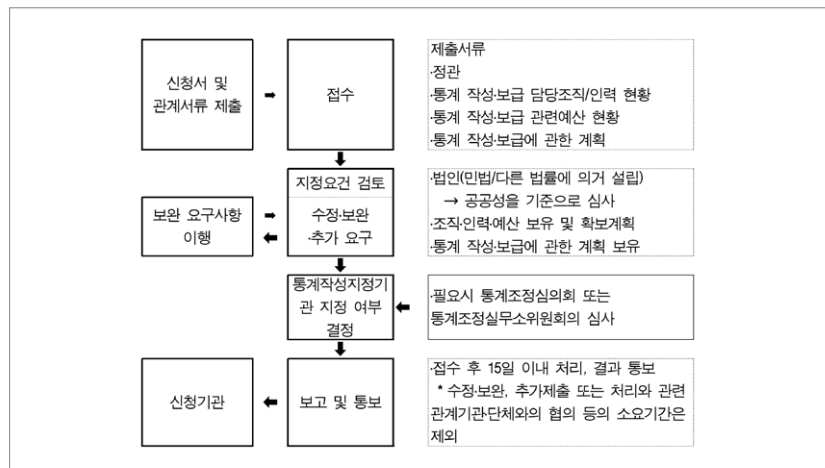
## 1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및 취소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으로서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절차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④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⑤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지정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 ② 통계작성 승인취소로 인하여 소관 승인통계가 없게 된 경우

## 2 통계작성승인(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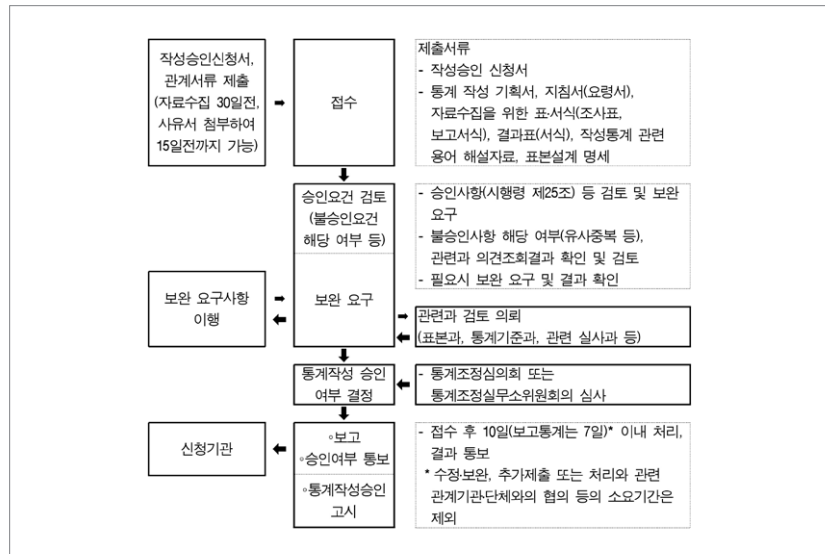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작성 승인제도의 목적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계의 중복작성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 및 자료 이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다. 통계의 신뢰성 여부는 통계작성의 각 과정이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잘 계획되었는가에 따라 좌우되므로 조사 실시 이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통계작성의 중복은 국민의 응답부담을 가중시켜서 결국 응답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통계생산자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낭비요인이 되므로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미리 조사 사항,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통계작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통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실 통계나 유사·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통계가 원천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승인이나 협의를 해주고 있다.

**[그림 2-2]**  
국가통계승인(협의)  
절차

\*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  
기준의 사용등의 포함 시  
7일 가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통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통계작성승인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통계의 명칭 및 종류
- ② 통계의 작성 목적
- ③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 ④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⑤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⑥ 통계작성의 방법 ⑦ 자료수집체계 ⑧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⑨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통계청장은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계법 제18조제2항 불승인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③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 ④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에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

### 3 통계작성변경승인(협의)

통계작성의 변경이란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에 있어서 그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를 거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작성의 변경도 통계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이유는 통계작성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통계응답자의 응답부담이나 통계이용자의 편익과 연관되고, 조사사항의 축소 또는 확대·변경 역시 응답부담이나 통계활용 및 통계시계열 유지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변경내용이 통계작성기관의 편의성 쪽으로 치우칠 경우 신뢰도와 비교성이 낮은 통계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의 통계활동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20일전까지 통계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통계작성 변경승인신청서(협의요청)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통계작성 승인사항과 동일하다.

### 4 통계작성 중지승인(협의)

통계작성의 중지란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작성의 중지도 통계 작성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통계작성기관이 특정 통계의 작성을 중지할 경우 통계작성 중지로 인한 효과와 통계 이용상의 차질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생산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조정자적 관점에서 국가통계수급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20일전까지 통계

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인 통계작성 중지승인신청서(협의요청)를 각각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5 통계의 공표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계의 작성에는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다면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통계작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계작성 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의 공표)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그 밖의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통계간행물 발간내역 통보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나라 통계간행물의 발간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들에게 통계 소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계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통계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인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

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사무 개선요구 제도의 기본취지는 정부승인통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작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를 조정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또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통계법 위반에 대한 관리

현재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계법에서는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등의 규정을 두어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신뢰도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 제공하는데 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통계법 위반 최소화를 위해 매년 통계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통계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들도 본 제도의 근본취지를 숙지하여 통계법 위반에 대한 대처능력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법 위반 건수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표 2-3>  
연도별 통계법위반  
적발 현황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26	42	19	5	5	5	5	1	4	2	2

한편, 통계법 위반의 주된 내용은 국가통계를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작성 및 임의 변경하여 작성(2008년 이후 통계법 위반 총29건 중 22건으로 76%)하여 적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매년 국가통계 연간 공표 및 조정일정, 미승인통계 현황, 신규 작성예정 통계 등을 파악, 관리하여 적시에 작성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3.

# 그 밖의 통계조정 제도

### 학습목표

- 통계품질진단과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한다.
- 통계책임관,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등 통계조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통계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정보시스템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다.

## 1 통계품질진단

통계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재의 통계작성실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통계작성 담당자가 통계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를 반영하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되는 통계작성환경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자료가 정확한지, 시의성은 있는지, 유용한 통계인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용자들이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통계작성 각 과정을 진단하는 업무이다.

오늘날 통계의 품질은 단순히 통계의 정확성, 신속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통계품질의 개념에는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성, 비교성, 효율성 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 통계의 현실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통계가 작성되는 모든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 외의 요소들도 최근 고객 지향적 정부행정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모두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계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통계 이용자들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주면서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통계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OECD 통계국은 통계품질관리를 추진함으로써 통계의 품질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통계작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OECD가 검토한 8대 품질평가의 차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OECD의  
통계품질평가 8대  
차원

평가 요소	평가요소의 의미	평가 기준
관련성 Relevance	- 이용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정도	- 이용자 그룹 및 요구 사항 파악 - 이용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여부
정확성 Accuracy	-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표현하는 지의 정도	- 통계의 표본오차와 포괄범위, 응답/무응답 자료처리 및 제공 등의 통계작성 과정별 오차
신뢰성 Credibility	- 이용자의 통계작성 기관에 대한 이미지(브랜드 이미지)	- 통계작성절차 전체로 본 품질 정도
시의성 Timeliness	- 현상의 발생시기로부터 자료제공까지 소요시간의 적절성	- 통계정보의 가치가 아직 유효한 지를 판단
정시성 Punctuality	- 공표일정 예고 및 일정 준수여부	- 공표 일정 예고 - 일정 준수
접근용이성 Accessibility	- 통계자료의 소재 파악 및 접근이 용이한 정도	- 자료제공 형식의 적합성 - 제공매체, 메타자료 및 이용자 지원서비스 등
해석용이성 Interpretability	- 통계이용자의 자료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및 분석이 용이한 정도	- 개념, 모집단, 변수, 용어의 정의, 메타자료 제공 여부
일관성 Coherence	- 자료의 논리적 연관성 및 상호 일관성 정도	- 통계 자료내, 통계 자료간, 시계열 및 국가간 일관성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진단의 종류에는 통계작성 제반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5년 주기의 정기통계품질진단, 통계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를 대상으로 진단하는 수시통계품질진단 및 통계작성기관이 소관통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이 있다.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통계품질진단 실시 방법으로는 정기 및 수시통계품질진단의 경우 진단 대상통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청 내부 진단팀 및 외부 진단팀 진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기관 스스로 진단을 실시한다.

품질진단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작성기관 자체계획에 의해 개선토록 하고 통계청에서는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 등 진단 사후관리를 통해 진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 인프라가 취약하여 통계품질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통계청 주관으로 품질개선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조기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주요 국가통계에 대하여 품질진단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정보 보고서'를 기반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품질진단 실시하고 있다.(연간 100종 내외, '15년 80종)

수시통계품질진단은 국가통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품질취약 통계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소관통계의 품질상태를 진단·개선하는 품질진단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표 2-5>  
연도별 품질진단  
통계수

진단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180	170	58	70	21	24	26	25
수시통계품질진단	-	-	-	3	2	2	-	-
자체통계품질진단 <sup>1)</sup>	-	707	732	419	473	487	528	525

1)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244종), 시·도 주민등록인구통계(17종), 시·도 및 시·군·구 지역내총생산(16종) 진단 제외

진단결과 통계의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계작성 중지, 변경 또는 사무개선 요구가 가능하며, 사무개선을 요구 받은 기관의 장애에는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통계품질 수준을 개선하였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품질진단 과제 누적 이행률이 93.9%(‘15.3월말 기준)로 대부분 개선되어 국가통계의 품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며, 부문별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응답 관리

-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의 무응답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무응답 발생 시 보다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

②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표본규모 확대

- 박사인력활동조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다양한 분석을 위해 현행 2,000규모의 표본을 전국단위 통계의 최소 수준인 3,000표본 이상으로 확대

③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대중교통현황조사(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수준의 자료 제공 및 자료제공 시스템 구축

④ 조사대상자 확대를 위한 표본설계 개선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대상자를 74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표본을 재설계

## 2 통계기반정책관리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란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은 각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도입되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계청이 해당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조정하도록 하였다.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

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절차는 일차적으로 법령 제·개정 부처가 관련 정책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필요시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검토한 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제출하고,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 조정하되 부처와 통계청간 이견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시에 통계청 의견을 함께 제출토록 하였다. 동 제도의 일차적인 과제는 법령 제·개정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집행·평가에 통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통계의 미비 또는 미흡한 통계에 대해 개발·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개정 법령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통계가 불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검토를 하는 것은 낭비이다. 이에 따라 제·개정 법령이 통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사전평가 및 예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평가와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통계가 필요한 법령으로 판단되면, 통계 필요성, 구비여부, 개발계획 등에 대한 실질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평가제도는 2011년부터 관계부처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① 첫째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② 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번도 평가되지 않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③ ‘평가대상 제외법령’이 통계를 기반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개정법령의 내용이 통계를 기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예비평가는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결과 유형은 ① 평가대상 제외법령, ② 실질평가면제 ③ 시행령 입안 시 평가 ④ 실질평가대상 ⑤ 통계지표 활용권고로 구분된다.

실질평가는 제·개정 법령이 통계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법령 또는 각 부처가 예비평가 요청 없이 바로 실질평가를 요청한 법령이 대상이 된다. 평가결과 유형에는 ① 평가대상 제외법령 ② 원안동의 ③ 사용권고 ④ 통계개발·개선 미합의가 있다.

심사평가가 최초 시행된 2008년 이후 '15년 8월말 현재, 총 7,741건의 법령을 평가하였다. 이중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실질평가한 법령은 2,561건으로, 통계개발·개선이 305건, 기존 통계 활용 권고가 2,256건이다.

<표 2-6>  
통계기반정책평가  
현황

연도	평가완료	예비평가	실질평가	통계	
				개발개선	통계지표 활용권고
계	7,741	5,180	2,561	305	2,256
2008년	1,116	729	387	67	320
2009년	813	400	413	44	369
2010년	679	314	365	30	335
2011년	937	583	354	43	311
2012년	825	571	254	36	218
2013년	681	474	207	30	177
2014년	1,603	1,275	328	25	303
2015. 8월	1,087	834	253	30	223

한편, 평가결과에 대하여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평가결과 「통계개발·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이를 완료하는 비율('09년 8.3%에서 '15년 79.8%)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평가결과 「통계지표 활용권고」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활용권고한 통계지표를 정책집행 등에 활용하고 있다. 통계개발·개선 완료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도에 2014년 “통계지표 활용권고”로 평가한 법령 중 입법 완료 법령 220건의 활용권고 통계지표 1,140건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한 바, 활용이 921건(80.8%), 활용예정 등이 219건(19.2%)이었다.

다만, 정책과 통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나,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및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통계청은 매년 평가 대상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절차 등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평가결과(통계개발·개선 요구, 통계지표 활용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상황(매년 3월 점검) 및 활용실태 점검('14년부터 추진)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③ 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둔다.

위와 같이 통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표 2-7>  
국가통계위원회  
구성내역

당연직(18명)		위촉직 민간위원(12명)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4명)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3개 부처 장관	- 한국은행총재 - 중소기업중앙회장 - 한국개발연구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통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
- 통계청장(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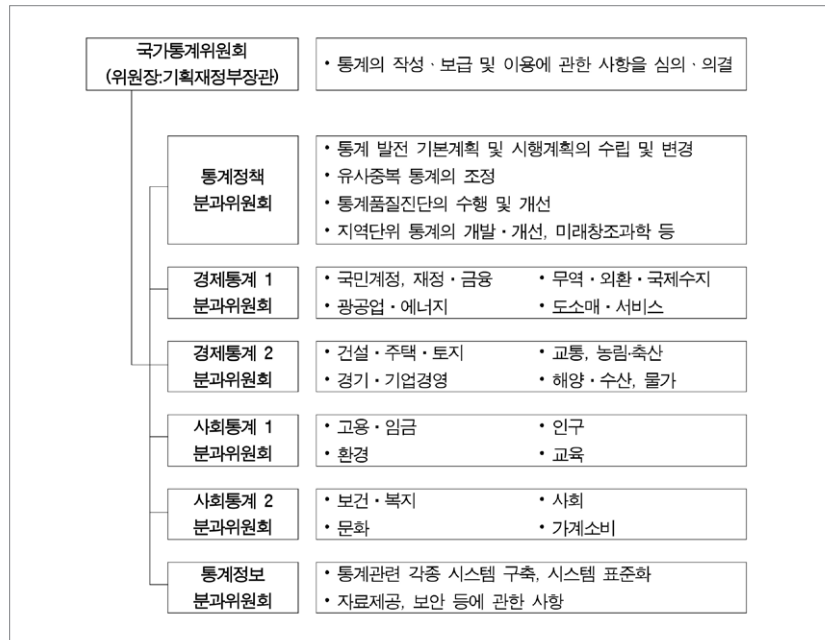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본회의 및 6개 분과위원회(통계정책, 경제통계1·2, 사회통계1·2, 통계정보)로 되어있고,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②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⑤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 ⑥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⑦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⑧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림 2-3]  
국가통계위원회  
체계도



#### 4 통계책임관 제도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 제도는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 통계조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관련 주무부서에 통계행정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통계책임관은 정부기관의 국장급 이상,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하고, 통계작성기관 내부의 통계작성, 보급 업무 등을 총괄한다.

주요 소관업무는 통계법에 따라 ①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



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②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③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④ 그밖에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등이다.

## 5 국가통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5개년(현재 '13~'17) 계획으로 통계제도 개선, 통계 개발·개선계획, 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포괄하며, '13년부터 시행되었다.

대상기관은 통계책임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중 통계작성기관 포함)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으로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①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②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은 물론 국가통계 승인제도, 통계기준, 품질진단,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등 통계제도 개선사항과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예정인 통계관련 제도 개선사항,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공유 등 부처간 협조사

항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이를 토대로 매년 9월 30일까지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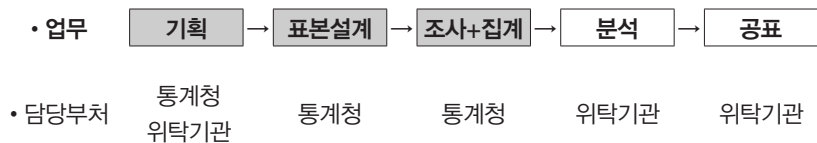
## 6 통계조사대행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 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제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책 입안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통계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의 유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90여개의 통계작성기관에서 930여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를 제외하면 중앙부처의 통계담당인력은 기관당 2명 내외에 불과하고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어 통계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와 같이 통계역량이 부족한 기관들의 통계개발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숙련된 기획능력과 일선의 조사조직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개발하고 통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가통계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표 2-8>  
통계작성 업무분담 체계



통계조사대행 대상은 ① 통계작성기관 ② 전국단위 ③ 면접조사를 하는 통계로 통계청과 소관 기관 간 합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 통계대행 선정 방향은 ①통계대행을 통해 개발한 통계 중 조사정착을 위해 1~2회 연속 대행이 요구되는 통계, ②통계품질진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는 기존 통계, ③위탁기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청한 신규통계 등이다. 이 제도를 통해 '08~'14년간 총 29건의 통계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개발, 개선하거나 생산함으로써 국가통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7 통계정보서비스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계정보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집단이나 대상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인 통계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주요 기능은 국가기본통계 생산·분석, 국가통계정책 종합 조정, 통계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통계정보의 종합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있다. 즉, 국가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역시 통계청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통계청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공표한 국가통계를 종합한 다양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1.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통계를 통합·구축하여 필요한 통계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수요자에게 One-Stop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수치정보만 서비스하는데 그치지 않고 레이더 차트, 버블 차트, 지도 이미지와 같이 시각화 기술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다각적인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325기관 856종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IMF, OECD, Worldbank 등의 최신통계도 제공하고 있다(2015. 9월말 기준).

## 2. 국가주요지표

국가 발전의 주요 분야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지표를 엄선하여 국가발전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표체계는 경제, 사회, 환경 3개 부문 15개 영역에 139개 주요지표(보조지표 186개, 국제비교지표 125개) 선정하였다.

2012년 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 4월부터 국정모니터링(e-나라지표)시스템을 통해 국가주요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 3. e-나라지표

정책의 수립,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도록 국정 전반에 관한 통계에 대하여 분야별, 부처별 및 성격별로 규모, 구조, 추이, 의미분석 등의 지표를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나라지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제공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 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유사·중복된 나라지표가 없을 것 등이다.

총량, 경제, 사회, 문화, 정부 등 5개 분야별 분류 및 정부부처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741개 지표가 제공되고 있다.

## 4.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MDSS)

종전까지는 통계청이 직접 생산한 58종의 통계에 대하여 마이크로데이터

를 영구보존 관리하며 이중 40종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오고 있었으나, 통합서비스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보존·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개년(2014년~2016년)에 걸쳐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하여 108개 기관 224종으로 확대 서비스할 계획이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포털 구축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포털 고도화	→ 통합DB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DB구축(31종)	DB구축(72종)	DB구축(121종)	서비스 확대 (224종)
시범 서비스(5종)	서비스(31종)	서비스(103종)	

### 5.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통계정보와 공간정보를 결합,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과 범위를 정하여 소 지역단위(읍·면·동, 마을 등) 통계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시스템이다. 즉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통계를 융합하여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통계청에서 조사한 센서스 결과를 집계구 및 행정구역 단위로 통계정보를 서비스한다.

한편, SGIS 오픈플랫폼은 국가통계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소득데이터, 국토부 부동산데이터 등의 공공정보 및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데이터, 교통, 국민건강데이터 등 행정·민간정보를 지도위에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단원 01.**

- 통계법의 제정 배경과 변천, 우리나라 통계제도와 관련된 현행 통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시오.
- 국가통계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계종합조정 필요성과 이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시오.
- 통계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 국가통계 중에 지정통계의 의미와 필요성, 지정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작성기관과 응답자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 통계법 상 국가통계로서 관리해야 할 통계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국가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

**■ 단원 02.**

- 통계조정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왜 필요한가를 정리해보기.
- 통계기준의 필요성과 통계분류 중 표준분류의 법적 지위 및 다른 법률에서의 준용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기.
-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통계청장에게 승인 및 지정을 받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기.
- 통계작성 승인절차를 정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나열해보기.
- 통계법시행규칙에 따라 통계작성승인 신청서를 작성해보기.
- 통계품질진단의 필요성과 유형별 진단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기.
-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등 통계정책과 관련된 통계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기.
- 통계정보서비스의 주요내용 및 통계종합조정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기.

- 김민경 · 이궁희 · 이기재 공저(2013), 국가통계의 이해,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통계개발원(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 통계청.
- 통계청(2013), 통계행정편람.
- 통계청(2013), 통계법령대조표.
- 통계청 정책관리시스템.





# 3부

---

## 인구통계

## 3부. 인구통계

### 목차

학습과목의 개요 .....	129
<b>제1장. 인구통계의 의미와 현재인구의 파악</b>	
1-1. 인구통계의 의미 .....	131
❶ 인구란 무엇인가 .....	131
❷ 인구통계란 무엇인가 .....	132
1-2. 인구통계의 작성방법 .....	133
❶ 인구통계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33
1-3. 인구정태 통계 .....	137
❶ 인구정태통계란 무엇인가 .....	137
❷ 인구주택총조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	138
❸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	142
<b>제2장. 인구변동의 통계</b>	
2-1. 인구변동의 통계 .....	147
❶ 인구변동의 통계 .....	147
❷ 인구동태통계란 무엇인가 .....	147
❸ 인구가동동태는 무엇인가 .....	148
2-2. 인구동태통계란 무엇인가 .....	149
❶ 인구동태통계란 무엇인가 .....	149
❷ 인구동향조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	150
❸ 인구동향조사 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	152
❹ 인구동향조사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	
2-3. 인구가동 통계의 내용과 방법 .....	160
❶ 인구가동통계의 종류 .....	160
❷ 국내인구가동통계 .....	160
❸ 국제인구가동통계의 작성방법 .....	163
❹ 인구가동통계의 활용 .....	167

---

### 제3장. 미래인구의 추정

3-1. 미래인구의 추정 .....	171
❶ 미래인구 추정을 왜 하는가.....	171
❷ 미래인구 추정은 어떻게 하는가.....	172
3-2. 생명표의 의미와 목적 .....	173
❶ 생명표란 무엇인가 .....	173
❷ 생명표는 어떻게 생산하는가 .....	173
❸ 생명표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	177
❹ 생명표자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177
3-3. 장래인구 추계 .....	182
❶ 장래인구추계란 무엇인가 .....	182
❷ 장래인구추계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82
❸ 장래인구추계 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186
❹ 장래인구추계 통계는 어떠한가 .....	187
참고 자료 .....	191



## 인구통계 과목의 개요

---

<b>학습 목표</b>	인구통계가 무엇이며 인구통계의 내용과 결과활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b>선수학습</b>	인구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각종 통계지표의 내용과 산출경위를 숙지한다.
<b>주요 용어</b>	인구정태통계, 인구동태통계, 인구총조사, 출생신고, 사망신고, 인구추계, 인구피라미트
<b>학습과목의 내용요약</b>	인구의 의미를 설명한다. 인구통계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한다. 인구통계의 방법을 검토한다. 인구정태통계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한다. 인구동태통계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한다. 인구추계란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제 1 장      인구통계의 의미와                   현재인구의 파악

## 1-1. 인구통계의 의미

### 학습목표

- 인구통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인구통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1 인구란 무엇인가

인구(人口)는 일반적으로 특정 나라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사망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계속 변한다. 인구의 규모는 이처럼 일차적으로 출생과 사망에 의하여 변모하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가 변하기도 한다. 이처럼 숫자가 변하면서 인구의 집단은 생활하는 동안 각가지 사회적 행동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의 규모와 활동은 그 지역 또는 국가의 관리나 행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구의 동향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의 규모는 어떠한가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은 중요한 관심사다. 현재 뿐 아니라 고대국가에서도 인구의 동향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규모파악에 주력을 하였다. 특히 인구규모의 파악은 세금을 걷었다는 측면에서 그 나라의 국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력을 차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어 왔었다. 이 같은 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인구규모 파악의 목적이 되고 있다.

## 2 인구통계란 무엇인가

인구의 생멸, 이동에 관한 예측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구의 규모가 커서 직접 일일이 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구수를 세는 것이다. 특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이다. 생활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곳에서 옮겨 오거나 또 옮겨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에 따른 수량적 변화를 인구통계라고 한다.

인구는 출생과 사망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람의 숫자는 계속 변한다. 이처럼 변하는 인구의 수를 정확하게 측정함은 현재 존재하는 인구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변동현상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구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시의성에 맞는 인구의 숫자를 제시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의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과학적 방법이란 현재의 인구 증감현상을 바탕으로 산출된 확률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집단적인 현상의 분석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의 정확성은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인구의 동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통계(人口統計)는 특정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인구는 사회의 구조와 변동의 동향을 나타내므로 인구 통계는 사회를 알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사회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이 인구통계이다.

특히 인구통계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가 작성하기 매우 어려운 통계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통계를 생산하는 업무를 맡아 하고 있으므로 국가통계로서 생산되고 있다.



## 1-2. 인구통계의 작성방법

### 학습목표

- 인구통계의 작성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인구통계 작성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1 인구통계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인구정태통계, 인구동태통계, 인구이동, 인구추계 등과 같이 4가지 방법이 있다.

### 1. 인구정태통계(人口靜態統計)

인구정태통계란 특정시점에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횡단적인, 지금의 상태에서의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인구정태통계라 하고 이는 주로 인구주택총조사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년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인구에 대한 정보는 인구총조사가 실시될 당시에 대한민국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는 자료원이 된다. 이 조사에는 예산이 실로 막대하게 들 뿐만 아니라 일부 질문내용이 사생활과도 관계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항도 있어 종종 응답거부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편 단독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가구방문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계청에서는 조사의 어려움이나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대중적인 호응도가 높아 잘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것이다.

### 2. 인구동태통계(人口動態統計)

특정시점에서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의 4가지 사상을 인구동태신고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대상에 의한 내용을 신고받아 작성하는 통계이다. 신고는 과거 「호적법」을 대체

한 「가족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계청은 통계자료분석의 목적에서 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가하여 일부 추가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구동향조사라고 칭하고 있으며 일종의 설문조사형식을 띄고 있다.

인구동태사상은 인구총조사가 특정 시점에서 인구의 규모를 제공해 주는데 비하여 인구동태통계는 그 인구동태사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인구의 변동상황을 제공해 주는 통계라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인구가 출생과 사망이라는 과정을 통하면서 인구가 경시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인구총조사자료와 연계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의 총인구 = 인구주택총조사인구 + 인구동태통계수치 + 전입인구수 - 전출인구수

라는 방정식을 통해 이론적으로 특정시점의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통계자료처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정확한 인구의 규모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추정 방법을 개발하여 산출하기도 한다.

또한 인구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으나 개인의 법적인 지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혼인과 이혼을 인구동태통계에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혼인과 이혼은 개인적인 정보의 측면이 강하며 출생과 사망과는 달리 신고기간의 경직성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의성있는 통계를 생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인구동태신고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신고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 3. 인구이동(人口移動)

인구가 주거를 이전함에 따른 인구이동문제가 현재의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이동은 인구동태통계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시간적으로 변하는 인구의 규모를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지닌다. 인구이동은 거주지 중심으로 타지역으로의 주거지 이동을 뜻하는데 이를 대별하면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이 있다. 국내이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인구의 변동을 가져 오지 않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이동은 국가간 이동이기 때문에 관찰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이동통계는 인구동태통계와는 달리 주민등록법 (법률 제12844호, 2014. 11.19)에 의하여 수집된다.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모든 주민들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입수하여 국내이동통계를 작성한다. 한편 국제이동통계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3440호, 2015. 7. 24)에 따라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계청이 입수하여 국제이동통계를 작성한다.

#### 4. 인구추계(人口推計)

특정시점으로부터 미래에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다. 인구추계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장래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생존기간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생명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생명표에서는 기대수명이나 기대여명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생존확률과 함께 이들은 장래인구추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래의 인구를 파악하는 문제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각종 국가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인구의 동향은 정책방향의 기초를 바꿔게 할 수도 있다. 인구추계에서는 인구의 생존확률에 바탕을 둔 생존기간과 연령별 사망률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인구학적 추계방식에 따라 추정하게 된다.

미래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통계청에서는 생명표나 장래인구추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명표의 경우는 거의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의 경우는 1996년에 최초로 발표한 이후 매5년 마다 작성 발표해 오고 있다.

## 2 인구통계의 활용

인구통계는 인구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인구의 현재의 구조와 향후 변동의 동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그 결과를 활용하면 사회나 경제등과 관련된 각종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구통계의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구정태통계(人口靜態統計)

인구총조사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령, 취학여부, 직업종사여부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다. 여러 가지 특성별로 분류되는 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 정보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하여 각종 조직에서 소비층이나 활동인구의 규모, 욕구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2. 인구동태통계(人口動態統計) 및 인구이동통계(人口移動統計)

인구동향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과 같이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법적인 지위와 관련되는 정보이다. 인구동태통계는 인구정태통계를 기본으로 하되 출생과 사망에 따른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인구이동을 통하여서는 전입, 전출에 따른 인구이동의 숫자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인구의 변동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인구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시 크게 도움이 된다.

### 3. 장래인구추계(將來人口推計)

장래인구추계는 미래의 인구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함으로써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각종 사회적인 경제적인 중장기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생의 통계를 이용하여 향후 보육정책이나 육아정책, 그리고 취학아동의 규모를 파악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동을 바탕으로 인구의 고용정책은 물론 사회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1인당 지표의 산출 및 각종 인구지표의 작성에 이용되기도 한다.

# 1-3. 인구정태 통계

## 학습목표

- 인구정태통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인구정태통계로서 인구총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1 인구정태통계란 무엇인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현재인구의 규모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 인구정태통계이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이 인구총조사인데 이는 주어진 인구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체계를 뜻한다. 이는 주로 공식적인 집계방식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때는 인구조사는 물론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조사도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라고도 한다.

인구총조사는 특정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인구를 직접조사하기 때문에 단일조사로서는 가장 큰 설문조사가 된다. 이는 인구의 크기, 분포, 구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알려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인구주택총조사가 되면 주택공급에 관련한 기본 통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인구총조사는 B.C. 36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등지에서도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때는 세금과 병력확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ensus라는 명칭도 이 때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삼한시대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근대적 의미의 인구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 이후 매5년마다 18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어 왔으며 1960년부터는 주택에 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그림 1-1] 참조).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5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것이다.

1966년에는 10%의 표본조사가 병행되었고 1985년에는 성씨, 본관 및 종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1990년에는 OMR 조사방법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에는 인터넷조사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전수조사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최초전환하게 되었다.

인구총조사는 2005년에서 2014년사이에서 만으로도 214개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93%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UN 등이 자금지원을 하여 도와주기도 한

다. 인구총조사에서는 특정시점에 특정지역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처리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개인단위로 집계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이루어지고,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1-1]  
1960년도  
인구주택총조사표  
견본

The image shows a complex, multi-column census form from 1960. The title at the top left is '인구주택총조사표'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Form).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main sections, including '가정' (Household), '인구' (Population), and '주택' (Housing). Each section contains numerous sub-headers and data entry fields. The form is filled with handwritten or printed information, representing a typical household and its members. The layout is dense and organized into a grid-like structure.

## 2 인구주택총조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 1. 인구주택총조사란 어떠한 것인가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인의 특성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가구원, 노동력, 이주, 농촌과 도시의 인구, 인종과 종교집단, 노동자의 계층, 다양한 교육적 배경등의 정보도 함께 조사한다. 나아가서는 소규모 지방에서부터 전국에 이르기까지 행정단위나 지역단위의 정보도 조사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하여서는 UN등이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이미 1958년도에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National Population Censuses’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조사경험이 없는 나라는 물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국제간 비교를 위하여 일관성있는 조사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권장하고 있는 절차는 대별하면 준비단계, 집계단계, 자료처리 단계, 평가단계, 분석단계, 자료의 확산단계, 중점분석사항 (36가지를 제외), 기본제표 등을 소개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규칙’이 1896





조사항목은 국가정책의 기초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1) 저출산, 2) 고령화, 3) 변화하는 가구, 4) 다양화통합, 그리고 5) 주거복지등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는 모든 구성원을 원칙적으로 다 조사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추출하여 비교적 긴 질문을 한다. 10% 표본조사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비교적 긴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하게 되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간단한 형식의 조사표로 조사를 한다. 이것이 2015년부터는 20%로 증강되었다. 이를 각각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고 하고 그 설문문항중 인구부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2015년 조사 기준).

### (1) 전수조사항목

#### (UN권장항목)

- |             |       |         |
|-------------|-------|---------|
| 1) 성명       | 2) 나이 | 3) 성별   |
| 4) 가구주와의 관계 | 5) 국적 | 6) 입국연월 |

#### (고유항목)

- 7) 본관

### (2) 표본조사항목

#### (UN권장항목)

- |             |             |             |
|-------------|-------------|-------------|
| 1) 성명       | 2) 본관       | 3) 성별       |
| 4) 나이       | 5) 가구주와의 관계 | 6) 국적 전수부문  |
| 7) 입국연월     | 8) 종교       | 9) 교육정도     |
| 10) 전공계열    | 11) 출생지     | 12) 1년전 거주지 |
| 13) 5년전 거주지 | 14) 활동제약    | 15) 통근통학여부  |
| 16) 통근통학장소  | 17) 경제활동상태  | 18) 종사상 지위  |
| 19) 산업      | 20) 직업      | 21) 근로장소    |
| 22) 혼인상태    | 23) 혼인연월    | 24) 출산자녀수   |



25) 자녀출산시기

(고유항목)

- |              |              |                       |
|--------------|--------------|-----------------------|
| 26) 아동보육     | 27) 이용교통수단   | 28) 일상생활 및 사회<br>활동제약 |
| 29) 통근통학소요시간 | 30) 현 직업근무연수 | 31) 추가계획자녀수           |
| 32) 결혼전 취업여부 | 33) 경력단절     | 34) 사회활동              |
| 35) 고령자생활비원천 |              |                       |

이 조사항목은 우선적으로 UN이 조사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항목과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맞춤형 조사표 응답방식으로 조사 하는데 1) 인터넷조사방식의 경우 응답대상 가구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의 인터넷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조사표를 인터넷으로 응답하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가구원이 방문하지 않고 2) 방문 면접조사방식의 경우 조사원이 응답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에 따라 질문한 후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우 응답대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표를 배부하고 가구에서 조사표를 작성한 후 재방문하여 회수하기도 하였다. 2015년도 인터넷조사의 경우 50% 이상의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2015년도 인구총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등록센서스방식이 선보였다. 이 방식은 인구, 가구, 주택의 총 규모, 구조 등 일반적인 특성을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수조사하는 방법이다. 등록센서스방법에 의할 경우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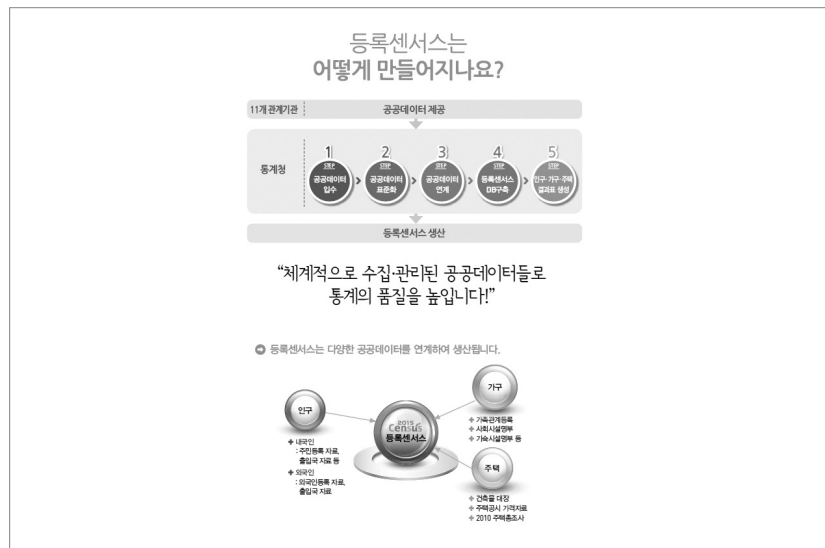
등록센서스는 완전등록센서스(Fully Register-based Census)와 부분등록센서스(Partly Register-based Census)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전등록센서스는 100% 행정자료만을 연계·활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이고 부분등록센서스는 행정자료와 함께 표본조사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독일, 스페인, 터키 등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는 후자에 속한다.

등록센서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조사환경의 많은 변화 때문이다. 즉, 2010년 현재 23.9%에 이를 정도의 단독가구 문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응답자가 부재중이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2005년도에는 0.04% 였으나 2013년에는 6.9%로 증가하고, 대규모 현장조사에 따른 현장조사비용도 1995년도에는 539억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1,808억원으로 2015년도에는 2,7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의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그림 1-3]  
등록센서스의 방법

출처: 통계청 홍보책자



### 3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발전계획이나 인구문제 연구에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인구총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인구성장이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련한 각종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실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공중보건, 교육, 주택, 소득, 그리고 인력활용등 실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시장정책, 독거노인지원대책, 여성정책수립, 주택종합계획, 평생교육진흥사업, 관광개발계획, 전력수

급계획, 각종세금정책, 지역경제활성화, 시도종합계획,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로 활용

국가에서 수행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표본조사에서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역할을 하며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수설정을 비롯한 표본틀로 사용된다.

## 3. 총조사자료를 활용한 2차 가공통계작성에 활용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첫째,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를 하는데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이 추계자료는 노동력 수급계획수립, 보험료율 및 국민연금 제정 추계등에 사용된다. 둘째, 다양한 사회 및 주거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저출산노령화지수산출이나 주택보급률 및 최저가구기준미달가구지수 등의 산출에도 활용된다.

## 4.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 및 민간기업체의 경영자료로 활용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그림 1-4]에서 처럼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연구 및 경영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새로운 부가가치 및 상품 기획등에도 활용된다.





[그림 1-4]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활용

출처: 통계청 홍보책자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이렇게 활용돼요!**

인구주택총조사는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대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본 통계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조사로 평가됩니다. '2010 라운드'에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곳은 235개 국가 중 94%인 221개국으로, 인구센서스 계획이 없는 나라는 14개국에 불과합니다. (출처: UN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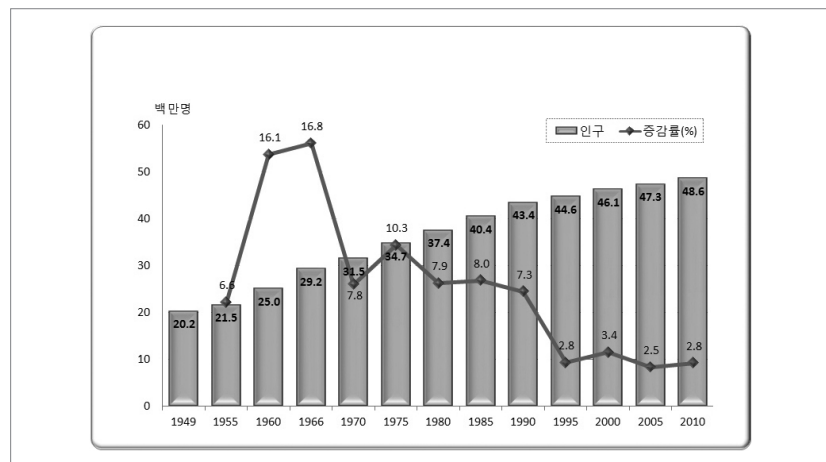
\*\* 인구센서스 2010 라운드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지는 인구센서스를 아우르는 말.

 <p><b>국가정책의 기초자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li> <li>•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수립 (시도)</li> </ul>	 <p><b>민간기관, 일반국민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 즉석밥, 순한소주 등</li> <li>•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분석</li> <li>• 자료이용건수 : 120만 건 ('14년)</li> </ul>
 <p><b>2차 가공통계 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추계, 가구추계 (통계청)</li> <li>• 출산율, 노령화지수 (보건복지부)</li> <li>•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 등</li> </ul>	 <p><b>조사모집단 정보 제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단위 통계조사 모집단으로 활용 - 국가승인통계 120여종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li> </ul>

2010년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보면 2010. 11. 1.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858만명으로 2005년(4,728만명)에 비해 130만명(2.8%) 증가하여 연평균 0.5%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 2,417만명, 여자 2,441만명으로 2005년에 비해 남자는 2.3%, 여자는 3.2% 증가하였으며 인구밀도는  $\text{km}^2$ 당 486명으로 2005년의 474명보다 12명 많아졌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1,033\text{명}/\text{km}^2$ ), 대만( $640\text{명}/\text{km}^2$ )에 이어 3번째 인구 조밀 국가(도시 및 소규모 섬 국가 제외)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추이를 역대로 이루어진 인구총조사를 통해 알려진 우리나라 인구의 변동추세를 보면 아래 그림 [그림 1-5]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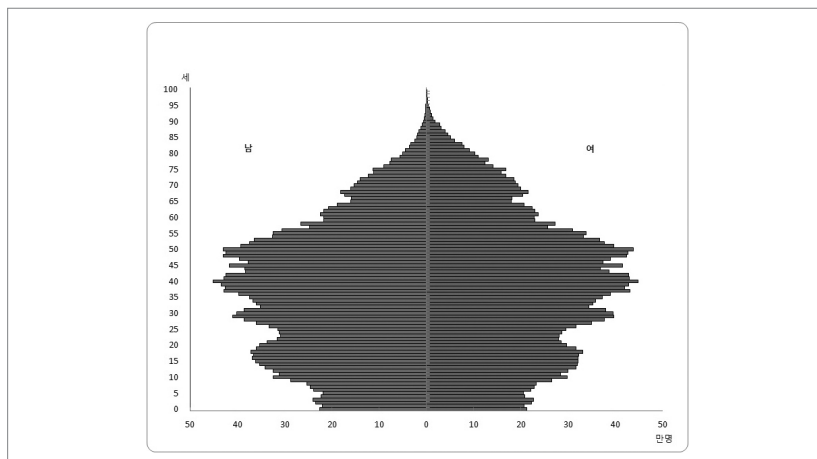
**[그림 1-5]**  
우리나라  
인구총조사를 통해  
알려진 인구 및 증감률



그림에서 보면 인구 수의 변화와 함께 인구증감률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천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볼 때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증감률은 계속하여 감소해 온 것이다. 인구증감률은 정(+)의 부호를 띄게 되면 증가한다는 뜻이고 부(-)의 부호를 갖게 되면 감소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구증감률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구증감률이 감소해온다는 것은 증가의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구수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의 성장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증감율은 1966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해오다가 그 후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동란 이후 베이비붐세대를 맞아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사실과 연계된다. 그러나 1962년도에 정부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이 도입되면서 그 증가세는 급격

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구증감률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그 이후 1995년도 이후에는 가족계획정책도 포기를 하게 되었으나 출산률은 급격하게 감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계표나 그를 이용하여 도표를 그려 보면 인구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그림 1-6]  
2010년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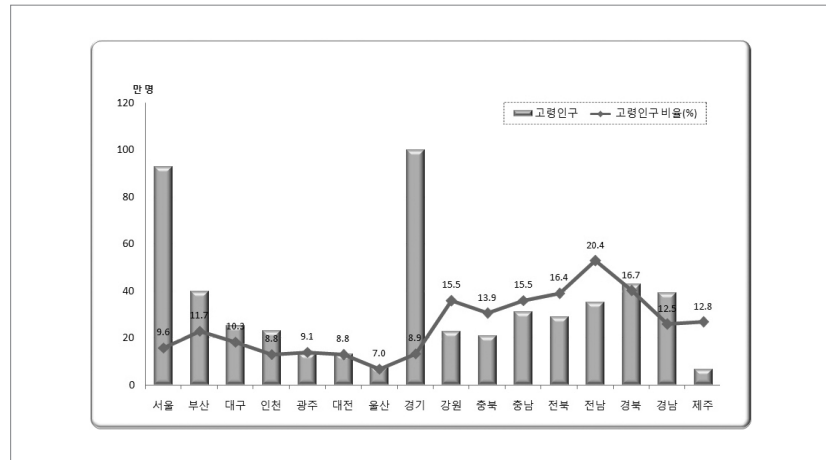


인구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소위 [그림 1-6]과 같이 인구피라미드로 그려 볼 수 있다. 인구피라미드란 남녀별 인구의 도수부포도를 그린 다음 그것을 서로 붙여 놓은 것인데 위로는 연령에 따라 변하는 도수부포를 볼 수 있다. 밑에 부분의 잘룩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린 연령층이 적다는 것이고 위의 뾰족한 것은 고연령층의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이 연도가 달라지면 점점 위로 솟구치게 되는데 중간에 가장 넓은 부분이 소위 베이비붐 세대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률은 감소하므로 그리 줄지 않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고연령층이 두터워지는 소위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심화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연령별 인구구조는 30대, 40대 인구가 가장 많으며,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항아리형」인구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위연령은 38.1세로 2005년(35.0세)보다 3.1세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명당 고령자 7명 수준인 69.7로 2005년(48.6)보다 21.1이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11.3%)으로 2005년 437만명(9.3%)보다 106만명(24.3%) 증가하였고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0.4%로 가

장 많고, 경북 16.7%, 전북 16.4% 순이며, 울산이 7.0%로 가장 낮다. [그림 1-7].

[그림 1-7]  
2010년 고령비율 및  
비율



2010년도에 실시되었던 인구총조사의 공표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지표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밀도 : 인구분포의 조밀한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

- 인구밀도 = 인구(명)/국토면적(km<sup>2</sup>)

(2) 도시화율 : 도시(동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 도시화율 = (동지역 인구/총인구) × 100

(3)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 성비 = (남자인구/여자인구) × 100

(4) 유소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인구의 비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5) 노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6)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

-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유소년인구) × 100

이러한 지표는 인구총조사의 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정책의 추세에 맞는 지표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1.

## 인구변동의 통계

#### 학습목표

- 인구변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 1 인구변동의 통계

특정지역의 인구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인간의 생멸현상에 따라 계속 태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사망하면서 인구의 수가 변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지역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한다. 첫째의 경우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인구동태통계라고 하고 둘째의 경우는 인구이동통계라고 한다. 이처럼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인구의 규모를 나타내 주는 통계로서 작성되고 있다. 인구동태통계나 인구이동통계 역시 중요한 국가통계로서 정부가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 2 인구동태통계란 무엇인가

1년동안에 발생하는 출생·사망·결혼·이혼·사산(死産) 등 인구의 자연적 변동 상황의 통계를 인구동태라 하는데, 특정 시점에서 파악한 인구(분포·구조)를 나타내는 정태통계(靜態統計)와 함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인구변동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구통계의 주축을 이룬다. 인구동태는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구 또는 특정 지방

행정단위에서도 발생하면서 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각 개인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나 이러한 상황을 집계하여 통계로 생산하는 것이 인구동태통계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지역사회집단에서의 인구규모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발생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각종 사회적 정책,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 제도, 즉, 건강보험이라든가 출생아의 보육 또는 교육등에 관한 지원등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신고필요의식이 고양되어 적극 신고하게 됨에 따라 인구동태신고는 거의 완벽한 상태이다. 다만 출생후 단기일내에 사망하여 미처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망하는 경우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영아 사망율과 같은 중요한 지표산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 ③ 인구이동동태는 무엇인가

인구이동통계는 국내이동과 국제이동통계로 구분한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의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집계한 것이며 국제인구이동통계는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동하는 경우를 집계한 통계를 말한다.

출생과 사망이 인구증감현상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인데 반하여, 한 지역에 있어서 인구의 전입, 전출현상을 의미하는 인구이동은 인구현상의 사회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그 계기는 이동을 하는 각 주체의 사회적 조건과 동기, 이동자의 사회와 문화적 수준, 생활태도, 가치관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상당히 복잡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이동현상은 단순히 그 문제가 이동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특성을 지닌 인구의 이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조건이 좋은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를 나타낼 수 있을뿐더러 심각한 도시문제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 중요한 인구문제가 될 수도 있다.



## 2-2.

# 인구동태 통계란 무엇인가

### 학습목표

- 인구동태통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통계를 어떻게 생산하며 그 활용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1 인구동태통계란 무엇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사망하게 되는데 그 변화하는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인간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자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의 발생에 따라 신고를 받는다. 이처럼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관한 4가지 인구사상에 관하여 신고를 받아 생산하는 통계를 인구동태통계라고 한다.

인구동태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인구의 규모를 바탕으로 출생으로 인하여 증가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감소된다. 또한 혼인과 이혼은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 온다. 특히 혼인으로 인하여서는 미래의 출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규모의 파악은 앞으로의 출산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인구동태통계는 인구의 크기와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통계이다.

인구동태통계자료의 수집은 근대에 이르러 각종 법령에 의하여 등록제도가 확립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회의 세례, 결혼, 매장기록에 의하여 자료가 입수되어 통계를 생산하였다. 근대적 인구등록은 1748년에 스웨덴에서 입법화된 것이 최초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후 각국이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 1837년이래로 신고를 받아 왔는데 출생등록철은 붉은색, 결혼은 녹색, 사망은 검은색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에도 포함되므로 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출생사망의 신고를 접수하게 된 것도 1933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우리나라의 호적에 인구동태사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호적은 호구를 알아 보려고 만든 호구장부이나 그 시행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라시대의 민정문서(民政文書)는 그 좋은 예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족을 단위로 호주 및 가적에 속하는 가족과 신분관계등을 기록한 공문서로 활용되었고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났다.

인구동태사상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위를 위하여 과거에는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받다가 동법이 개정되어 발효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74호, 2008년도 시행)에 의거하여 신고를 받고 있고 통계청에서는 인구동태사상에 관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그리고 이혼에 관한 신고를 구청이나 동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출생과 사망은 발생후 한 달(발생한 달의 월력에 따른 기간) 이내, 혼인, 이혼의 경우에는 성립즉시 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통계청에서는 통계목적에 따른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인구동향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다.

## 2 인구동향조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은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재외 국민은 해외공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획득한 출생 및 사망 신고서, 혼인 및 이혼신고서의 신고내용이 기초자료가 된다.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시·군·구 등 신고기관에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인구동태사상에 대한 자료를 집계한다. 이 때 출생 및 사망자 현황과 혼인 및 이혼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를 인구동향조사라 한다. 따라서 인구동향조사는 신고되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사상을 파악하여 인구규모와 구조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잠정발표와 확정발표단계를 거쳐서 공표한다. 이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 무연고자(행려자)에 대한 직권신고 자료와 영·유아 화장신고 자료,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생아 사망신고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신고서는 다음 [그림 2-1]과 같다.

작성은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산되는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 호, 인구동향조사)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집계결과는 연간 잠정 공표를 출생·사망의 경우 이듬해 2월, 연간 확정 공표는 출생은 이듬해 8월, 사망은 이듬해 9월, 혼인·이혼등은 이듬해 4월에 한다. 확정결과는 이듬해 2014.4.30.(16개월)까지 신고된 자료를 집계한다. 집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생부분

- (1) 성별 출생아 수, 조(粗)출생률 및 출생성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등
- (2) 모의 연령별, 출산순위별,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등

• 사망부분

- (1) 성별, 연령별, 사망장소별, 시도별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등
- (2) 사망장소별, 월 사망자 수 구성비 등

[그림 2-1]  
인구동태신고서

The image displays four standardized forms used for reporting vital events in South Korea. Each form is titled with a specific event and includes a header with the reporting agency's name and address. The forms are organized into sections for personal details, family information, and reporting agency details. The '출생신고서' (Birth Report) includes fields for mother's name, father's name, child's name, sex, date of birth, and birthplace. The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Divorce/Child Custody Designation Report) includes fields for the names of the divorcing couple, the date of divorce, and the designated custodian. The '혼인신고서' (Marriage Report) includes fields for the names of the bride and groom, their birth dates and places, and the date and place of marriage. The '사망신고서' (Death Report) includes fields for the deceased's name, date and place of death, and the cause of death. Each form also has a section for the reporting agency's name and address, and a section for the reporter's name and address.

### ③ 인구동향조사 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인구동향조사 결과는 완성즉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된다. 원 자료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의 각종 지표를 산출해 내고 관련통계분석내용도 함께 공표한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출생통계

인구동태신고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출생아수는 43만 5천 4백 명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는데 1970년도에 처음 통계작성한 이래 2005년(43만 5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8.6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05명으로 전년(1.187)보다 0.02명 증가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출산아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천명, 가입여자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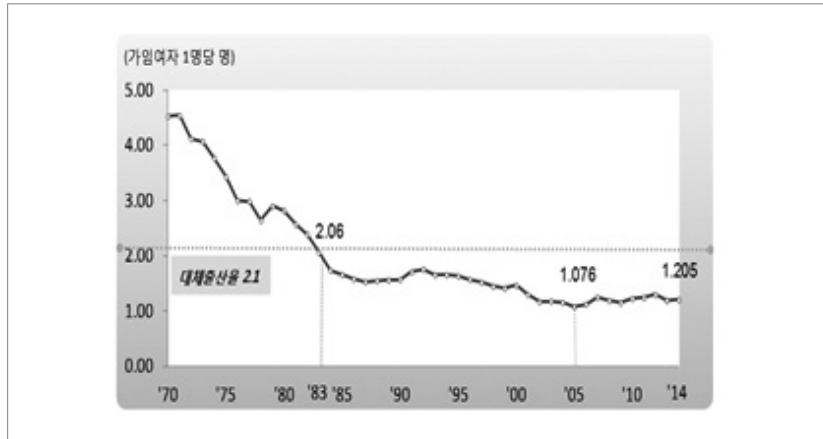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출산율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출생아수	472.8	435.0	448.2	493.2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3	2.1	2.2	2.2	1.7	1.7	1.8	1.8	1.7	1.6
	20-24세	20.6	17.8	17.6	19.5	18.2	16.5	16.5	16.4	16.0	13.1
	25-29세	104.5	91.7	89.4	95.5	85.6	80.4	79.7	78.4	77.4	63.4
	30-34세	83.2	81.5	89.4	101.3	101.5	100.8	112.4	114.4	121.9	111.4
	35-39세	18.2	18.7	21.2	25.6	26.5	27.3	32.6	35.4	39.0	39.5
	40-44세	2.4	2.4	2.6	3.1	3.2	3.4	4.1	4.6	4.9	4.8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0.1

출생아수는 2004년도에는 이미 저출산시대로 접어들어 출생아수는 47만2천8백명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4년도에는 43만5천4백만명까지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05년도에 1.076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소위 쌍춘년해로 알려진 2012년도에 1.297을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1.205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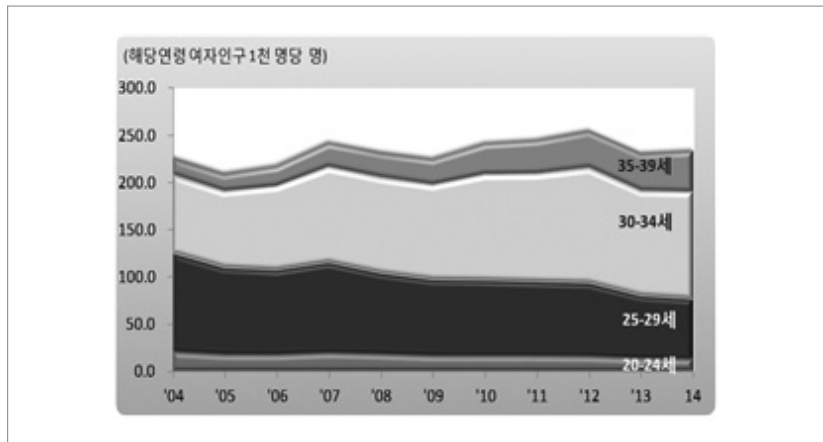
[그림 2-2]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3년도에 2.1의 인구대체수준을 기록하였고 그 후 점차 감소추세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3]에서 처럼, 출생아수는 모(母)의 30세 미만집단에서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30세 이상이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평균 출산연령은 32.04세로 전년(31.84세)보다 0.20세 상승하였고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는 21.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합계출산율 추이



[그림 2-3]  
연령별 출산율 추이



## 2. 사망통계

<표 2-2>에서 2014년도의 사망자수는 26만8천1백명으로 2013년도보다는 약 1,900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사망률은 5.3명이나 전년도에 비하여 큰 변화는 없다. 조사망률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 섰다.

<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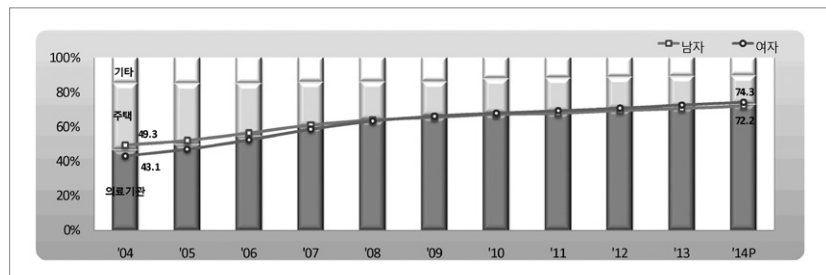
**사망자수와 조사망률**  
(단위: 천 명, %, 인구 1천 명당 명,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p
사망자수	244.2	243.9	242.3	244.9	246.1	246.9	255.4	257.4	267.2	266.3	268.1
전년 대비 증감률	-0.3	-0.3	-1.6	2.6	1.2	0.8	8.5	2.0	9.8	-1.0	1.9
전년 대비 증감률	-0.1	-0.1	-0.7	1.1	0.5	0.3	3.4	0.8	3.8	-0.4	0.7
조사망률	5.0	5.0	5.0	5.0	5.0	5.0	5.1	5.1	5.3	5.3	5.3
1일 평균 사망자수	667	668	664	671	672	677	700	705	730	729	735

사망자수를 보면 10대, 50대, 80대 이상에서 증가하여 전년보다 약 1천 9백 명(0.7%) 증가하였고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을 보면 대부분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50대(50-59세)의 사망률 성비는 2.8배를 나타내어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 연령층에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2-4]의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사망장소에 대한 통계도 수집하고 있는데 2014년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자 비율은 전체 73.1%(남자 72.2%, 여자 7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16.6%, 기타는 10.3%이다.

**[그림 2-4]**  
사망장소별 구성비 및  
성별 의료기관에서의  
사망비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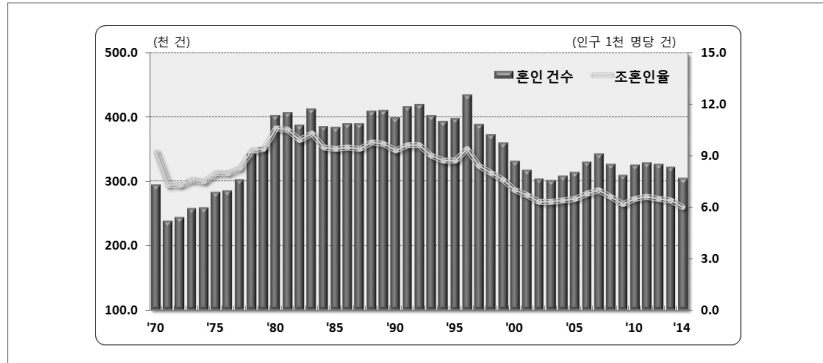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004년도만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있어 남자의 비율이 49.3%, 여자가 43.1%로 남자가 높았는데 2010년 경 부터는 역전되는데 2014년도에 이르러서는 남자가 72.2%, 여자가 74.3%로 오히려 여자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 3. 혼인 및 이혼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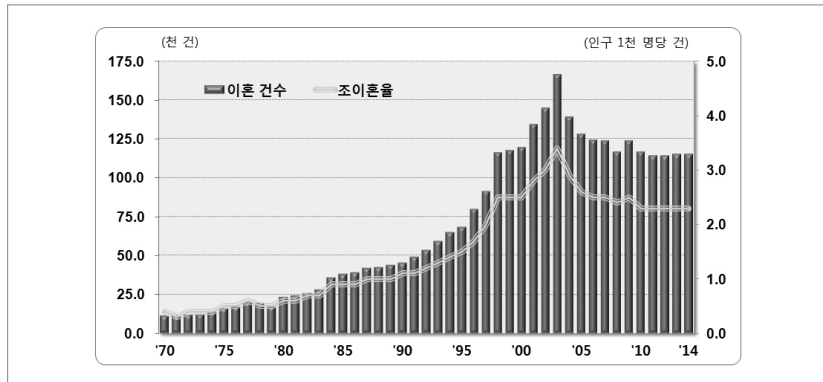
2014년도에는 30만 5천 5백 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대비 1만 7천 3백 건, 5.4% 감소하였다. 이리하여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6.0건이 되어 전년대비 0.4건 감소한 셈이다. 이 해의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대비 각각 0.2세 상승하여 만혼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그림 2-5]**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추이



지난 1970년 이후의 혼인건수를 [그림 2-5]에서 살펴보면 198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답보상태를 유지하였고 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가 저출산대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2-6]**  
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추이



한편 위 [그림 2-6]의 이혼을 보면 1970년도만 해도 매우 이혼율이 낮았으나 그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최고점에 다다랐다. 그 후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혼율은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4년도에만 11만 5천 5백 건이 신고되어 전년대비 2백

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표 2-3>의 조(粗)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3건으로 전년과 유사하다.

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4.3년으로 전년대비 0.2년 증가하여 혼인기간이 긴 부부가 더 이혼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50.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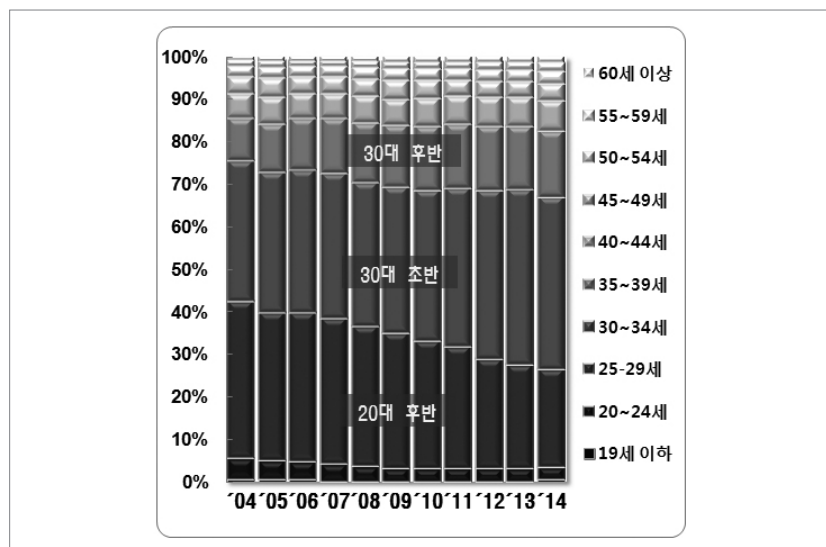
<표 2-3>  
혼인 및 이혼 건수 및  
조혼인/이혼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혼인건수(천 건)	308.6	314.3	330.6	343.6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이혼건수(천 건)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혼인대비이혼율 (이혼수/혼인수)	0.45	0.41	0.38	0.36	0.36	0.40	0.36	0.35	0.35	0.36	0.38
조혼인율*	6.4	6.5	6.8	7.0	6.6	6.2	6.5	6.6	6.5	6.4	6.0
조이혼율*	2.9	2.6	2.5	2.5	2.4	2.5	2.3	2.3	2.3	2.3	2.3

\*인구 1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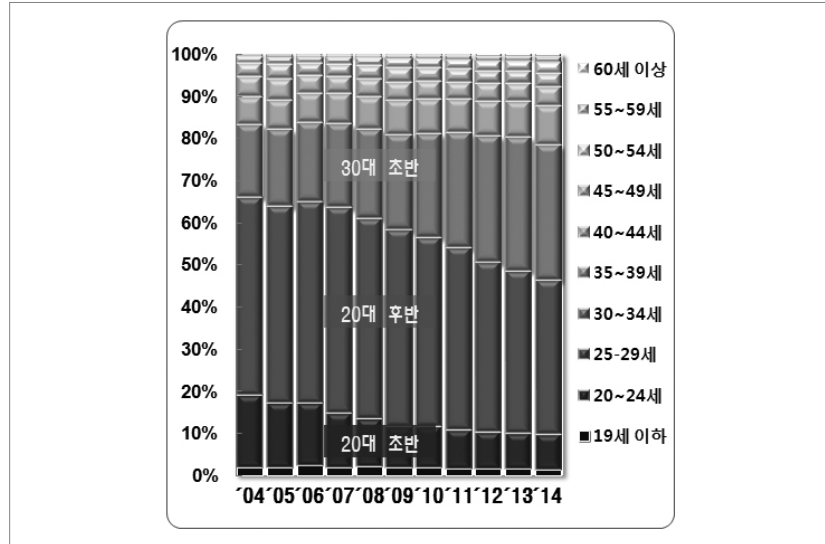
그러나 이혼의 경우는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 <표 2-3>의 혼인대비이혼율을 살펴 보면 혼인 1건당 이혼수는 2004년도에 0.45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도에는 0.35에 이를 정도로 감소하다가 다시 약간 상승하여 2014년도에는 0.38에 이르고 있다.

[그림 2-7]  
연령별 혼인구성비  
(남자)





[그림 2-8]  
연령별 혼인구성비  
(여자)



혼인연령의 경우에는 남녀 공히 20대에 결혼하는 경향이 점차 줄고 대신 30대에 들어서 혼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 상승하였는데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상승한 셈이다([그림 2-7, 8] 참조).

#### 4 인구동향조사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인구동향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통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통계의 가장 기본인 인구의 변동현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숫자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를 밝혀 주는 것으로 각종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 정보는 인구총조사자료와 연계하여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통계정보를 요약하여 국민들이나 정책개발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각종 인구지표이다. 그 인구지표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생산하게 된다.

##### 출생 및 사망부문

-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

: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

분율로 표시

-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  
: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별 여자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 조사망률(Crude death rate: CDR)  
: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
  - 연령별 사망률(Age-specific Death Rate: ASDR)  
: 1년간 발생한 특정 연령의 사망자수를 해당 연령의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
  -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  
: 시도간의 사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 시도의 연령별 사망률에 표준인구(2005년 전국인구)의 연령별 가중치를 곱해 표준화한 사망률
- \* 조출생률 등 각종 율(率)을 계산하기 위한 인구는 1992년 이전은 추계인구, 1993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를 사용

#### 혼인 및 이혼 부문

- 조(粗)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年央)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일반혼인율(General Marriage Rate: GMR)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연령별 혼인율(Age-specific Marriage Rate, ASMR)

: 특정 1년간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조(粗)이혼율(Crude Divorce Rate : CDR)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年央)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일반이혼율(General Divorce Rate : GDR)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2-3. 인구이동 통계의 내용과 방법

### 학습목표

- 인구이동통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인구이동통계의 작성방법과 그 활용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1 인구이동통계의 종류

인구이동은 거주지역을 이동하는 것인데 거주지역의 이동이 국내에 한정된 것이면 국내인구이동통계의 대상이 되며 그것이 국외로의 이동이 되면 국제이동통계의 대상이 된다.

국내 및 국제이동통계는 인구의 국내외 이동량 및 이동방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구정책 및 지역적 균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청의 인구동향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고통계이다. 1976년 4월에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작성을 승인받아 공표하고 있는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0115호)이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인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흐름, 이동자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인구 및 장래인구 추계 작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통계청의 인구동향과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통계이다. 통계법 제18조 1항 및 25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64호)이다.

현재 국내인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에 못지 않게 외국인이 국내로 이동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현재에도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규모는 약 150만명에 이르러 총인구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이러한 국제적 인구이동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국제인구이동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로 하고 있다.

### 2 국내인구이동통계

#### 1.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연혁

국내이동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인구이동 규모와 이동의 방향, 이동자 특성 등을 파악하여 경제와 산업, 주택, 교통, 교육 등 지역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제공 및 지역별 인구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통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의 이동상황은 주민등록부에 기록을 하도록 하였다. 1970년에는 서울, 부산, 9개 도와 5개 주요 도시(인천, 대구, 대전, 전주, 광주)의 인구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통계법 13조에 의거하여 읍면동의 전출입상황을 매월 2종의 보고서식에 의해 경제기획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이 공식적인 인구이동파악의 시작이었다. 1971년에는 인구이동연보가 창간되었고 1976년에는 인구이동조사라는 명칭으로 일반통계로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주민등록관리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전출신고제도가 폐지되었고 1999년에는 인구이동통계를 분기별로 작성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월별로 인구이동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국내인구이동통계」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고 2009년에는 통계청에 의하여 월별 보도자료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 2.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작성

거주지를 이동하는 주민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지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전입신고서를 바탕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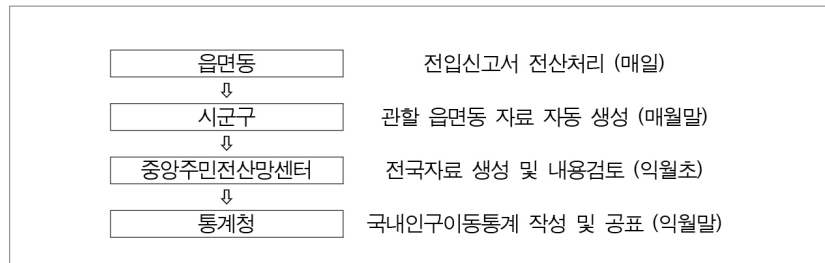
주민등록부의 정보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통계가 작성이 되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집계한 인구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1992년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남녀별 및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해오고 있다. 이것은 기본정보화일이 되며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 정보가 보완되므로 지역간 인구이동의 현황이 나타나면 결국 인구이동통계작성의 바탕이 되어 여기에서 생성된 주민등록통계를 이용하여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거주지 이동자 중 읍면동경계를 벗어난 경우가 주민등록부에 의한 국내이동통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인 중앙주민전산망센터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1999년부터는 분기별로, 2009년부터는 월별로 인구이동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주민등록의 변경을 위한 보고사항으로서는 전입 연월일, 전입지, 전입구분, 전입사유, 전출지, 전출구분, 전입자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여부 등이다. 한편 보고체계는 [그림 2-9]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그림 2-9]**  
주민등록부 자료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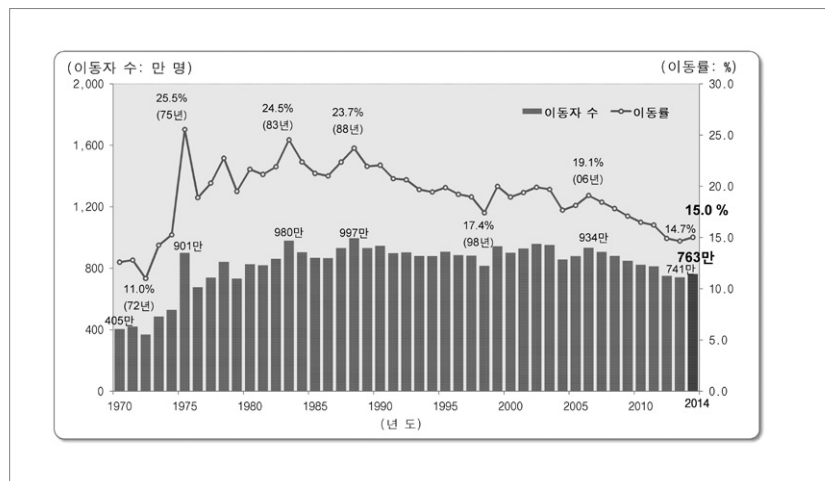


국내이동통계의 경우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하면 전입과 전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모두 국내인구이동통계에 포함한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는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의 종단적 흐름의 분석도 가능하다. 1970년 이후 인구이동통계를 통하여 집계된 인구이동의 현황은 [그림 2-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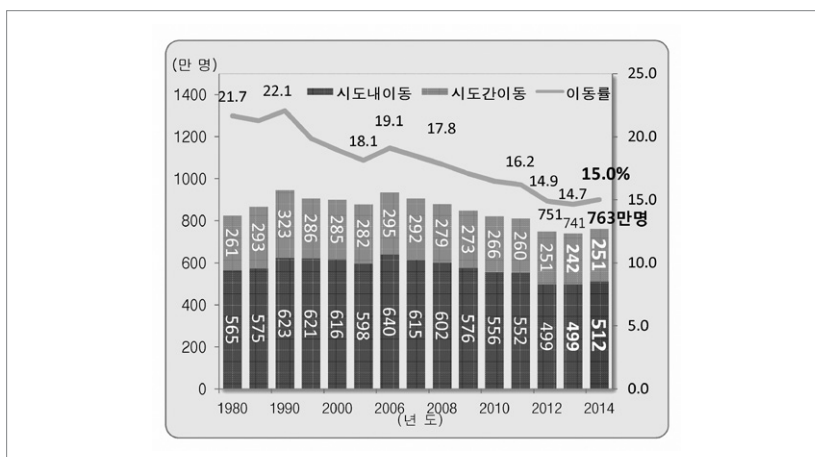
**[그림 2-10]**  
이동자수 및 이동률  
추이, 1970-2014

출처:  
2014 국내인구이동통계



국내인구이동의 숫자는 2014년도의 경우 763만명에 달하여 인구이동률로 환산하면 100명당 14.0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시도내 이동률은 10.1%이고 시도간 이동률은 4.9%로 나타났고 그 내용은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연도별 국내인구이동  
현황



전체적으로 이동률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1990년까지는 약간 상승하였다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2006년에 다시 상승했다가 그 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 3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작성방법

#### 1.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연혁

1998년에 작성된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대한 UN권고안에 따라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한 내국인 및 외국인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기로 하여 2000년 출입국심사 및 출입국신고서 자료를 기초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에 대해 국제인구이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내국인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가 폐지됨에 따라 목적지별 내국인 입국항목 작성이 중지되었고 2006년에는 내외국인 출국신고서 폐지에 따라 출국목적, 목적지 및 직업 등 내외국인 출국자 특성항목의 작성이 중지되었다. 특히 여권자동판독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출입국자료만으로 통계를 작성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개인별 자료 연계변수 (matching key), 국제이동자 집계방법 개선에 따라 2000년 이후 시계열 일괄 정비를 하기도 하였다.

## 2.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작성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인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흐름, 이동자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제이동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1998년에는『국제이동통계에 대한 UN권고안(1998)』에 따라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한 내국인 및 외국인 인구이동통계 작성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출입국심사 및 출입국신고서 자료를 기초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에 대해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최초로 작성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체류기간 90일 기준은 출입국관리법(법무부)의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등록 및 통계 작성 조항 및 통계의 시의성(UN기준에 따른 1년 초과 장기 이동자 집계시 기준시점 2년 이후에 공표가능), 일본, 독일 및 동유럽 국가들의 통계작성 관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2005년에는 내국인 입국신고서 및 외국인 출국신고서 폐지(11월)에 따라 목적지별 내국인 입국 항목 작성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내외국인 출국신고서 폐지됨(8월)에 따라 출국목적, 목적지 및 직업 등 내외국인 출국자 특성항목의 작성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권자동관독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출입국심사자료만으로 통계를 작성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개인별 자료 연계변수(matching key) 등 국제이동자 집계방법 개선에 따라 2000년 이후 시계열자료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공표주기를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하였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입국신고자료가 국제인구이동의 기초자료가 되며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공항 및 항구에서 신고되는 내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소속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정보화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중에서 체류기간 90일 초과 이동자의 정보를 월간 또는 연 단위로 작성하여 발표되는 보고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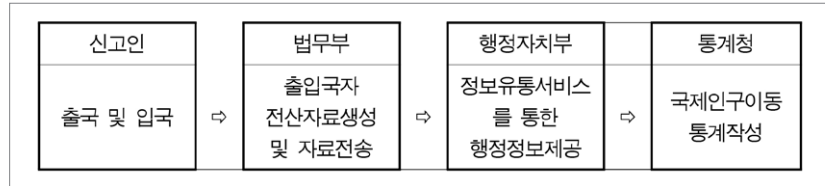
국제인구이동통계작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내/외국인별 국제이동 및



순이동자, 내/외국인별 남녀 및 연령별 국제이동, 외국인 국적별 국제이동, 외국인 체류자격별 국제이동, 월별 국제이동통계, 내/외국인 별 장기 국제인구이동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매월 출입국심사자료를 출입국정보화센터로부터 전송받아 월간 및 연간단위로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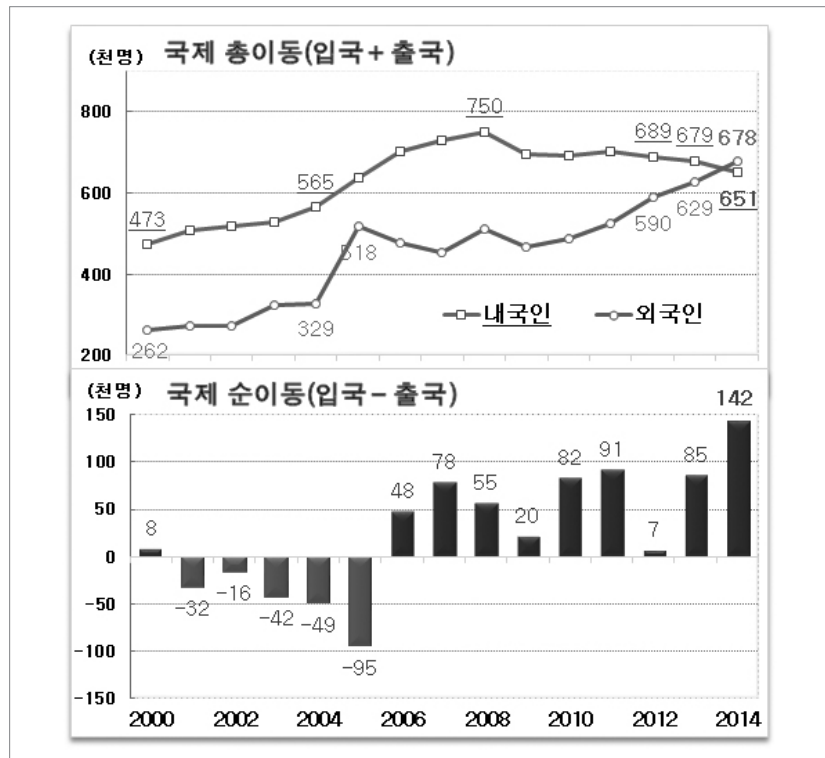
[그림 2-12]  
국제인구이동통계  
보고체계



집계된 통계는 매월 및 매년을 주기로 하여 통계청에서 집계하여 공표한다. 이 때 월별 집계자료는 작성대상월에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터넷에 게재하고, 연간집계자료는 작성연도 익년 7월 경에 보도자료와 인터넷 게재 및 국제인구이동통계연보를 통해 게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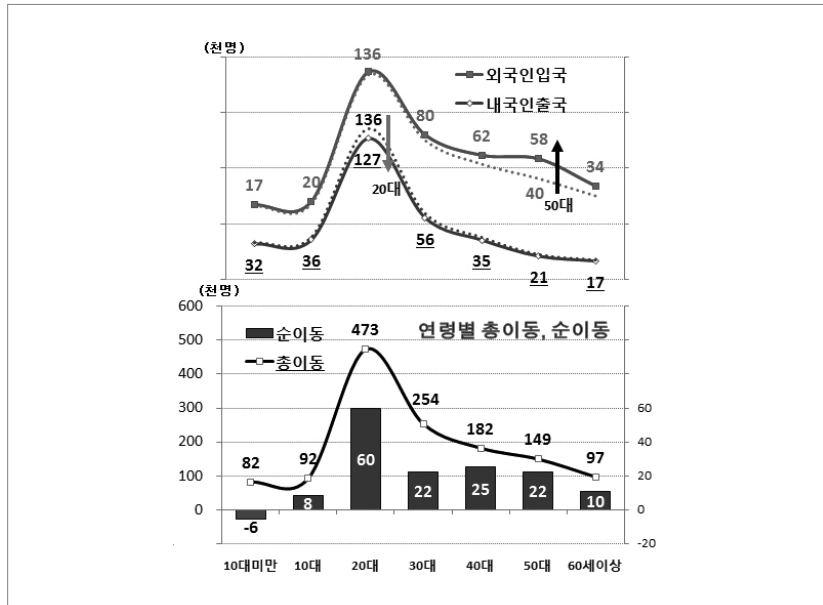
국제인구이동현황은 2014년도의 경우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2014년도  
국제인구이동현황



2014년도 국제 순이동 (입국자-출국자) 은 14만2천명으로 2006년 순유입 전환이후 가장 많다. 총132만 9천명 정도가 이동을 하였고 전년대비 2만2천명 (1.7%) 증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4]에서 연령별로 보면 20대 전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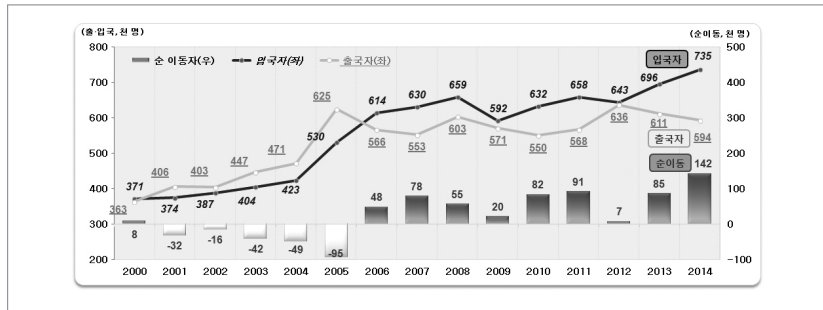
[그림 2-14]  
국제인구이동의  
연령별 분포



[그림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입국자는 1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인구이동현황을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림 2-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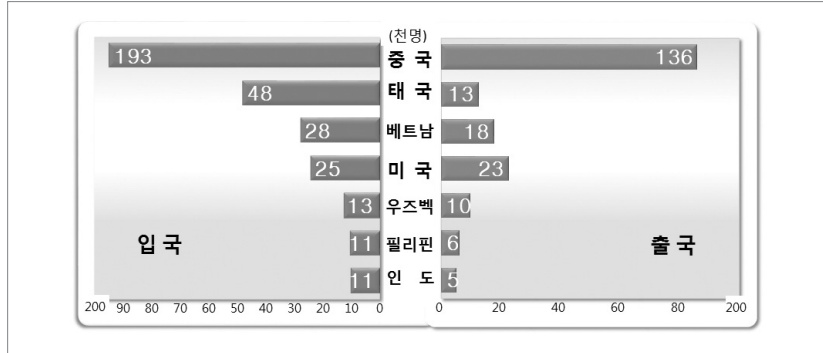
[그림 2-15]  
국제이동 연도별 추이,  
2000~2014



대체로 지난 15년동안을 보면 두배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도에 급격한 인구이동현상을 볼 수 있으며 2012년도 이후에는 출국자는 줄고 입국자는 늘어 체류인 숫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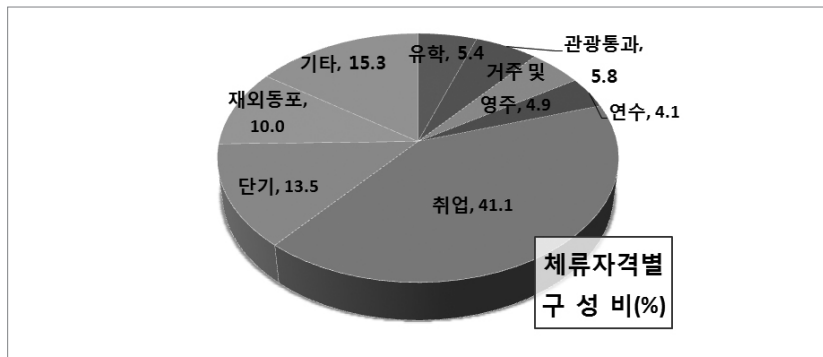
2014년동의 자료를 출입국 국가순으로 보면 [그림 2-16]과 같이 출입국자는 중국이 가장 많다. 그러나 입국자는 태국이 두 번째로 가장 많으나 출국자는 미국이 두 번째이고 베트남은 출입국 모두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6]  
국가별 출입국 현황



국내체류 자격별로는 [그림 2-17]에서 처럼 취업이 가장 많아 41.1%에 이르고 그 다음으로는 단기, 재외동포, 관광과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2-17]  
체류자격별 구성비  
(단위:%)



#### 4 인구이동통계의 활용

국내인구이동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순유입과 순유출에 관한 통계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률을 산출하는데 산출공식은

$$\text{이동률 (\%)} = [\text{당해연도 이동자수} / \text{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

과 같다. 그밖에 시·도간 이동, 시·도내 이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시·도내 이동의 경우에도 동일시·도내 시·군·구간 이동과 동일시·군·구에서 읍·면·동을 넘어 이동한 경우인 시·군·구내 이동 등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이동통계도 작성하는데 권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중부권 :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한편 전입지 읍·면·동 접수된 전입신고 총 건수통계와 평균이동규모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또한 평균이동규모로서 전입신고 한건당 이동자수도 발표한다. 즉, 총이동자수를 총전입건수로 나누어서 전입건당 이동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는

- (1) 이동자수 및 이동률,
- (2) 성 및 연령별 인구이동,
- (3) 시·도별 전입,
- (4) 전출 및 순이동,
- (5)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
- (6) 시·도간 전입지 및 전출지,
- (7) 전입사유별 인구이동,
- (8) 권역별 인구이동,
- (9) 수도권 인구이동, 그리고
- (10) 시·군·구 인구이동

과 같은 통계를 생산하여 공표하고 있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남녀 및 연령별, 국적별로 인구의 이동량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동자를 체류자격별로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표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화시대에 즈음하여 국외로 이동하는 국내인은 물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사회 및 문화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이다.

주로 보고를 할 때 집중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국제이동자수 및 순이동
- (2) 성-연령별 국제이동수 및 순이동
- (3) 내(외)국인 성-연령별 국제이동수 및 순이동
- (4) 외국인 국적별 국제이동
- (5) 외국인 체류자격별 국제이동
- (6) 월별 국제이동

국제순이동율의 경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국제순이동률} = \frac{\text{국제순이동자수}}{\text{추계인구}} \times 1,000$$

이 통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된다.

- 현재 인구작성과 장래인구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고령화 및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국가 간 인구현황과 변동요인 등에 대한 비교자료로 활용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국제이동통계의 내용을 보면 성별 연령별 국제이동, 내/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국제이동, 외국인 입국자의 연령별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의 성, 국적 및 체류자격, 그리고 성, 연령, 월별 국제순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이동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인구이동량 및 이동방향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의 균형적 국토개발, 노동시장, 도시교통, 교육 및 주택, 보건위생 등의 각종 정책수립 자료와 지역별 인구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3-1.

## 미래인구의 추정

#### 학습목표

- 미래인구의 추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생명표 방법과 인구추계법을 이해할 수 있다.

### 1 미래인구 추정을 왜 하는가

현재의 인구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 인구총조사를 통한 인구정태통계의 작성이고 이 집단이 향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통계가 인구동향조사를 통하여 생산하게 되는 인구동태통계이다. 이 두 가지 통계는 우리가 직접 겪어 가는 현재인구의 변동현상이다.

각 가지 인구정책은 모든 인구의 규모와 변화에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출생통계등은 오늘날의 출산현황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미래인구의 정책을 수립하려면 이렇게 출생한 인구가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이며 또 앞으로의 출생행태 역시 어떻게 변해갈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는 비단 출생뿐만이 아니라 사망, 그리고 인구가동까지 미래의 통계를 예견할 수 있다면 미래의 인구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인구를 추정해 보는 것은 현재의 인구가 얼마 동안 생존해갈 것이며 또 미래에는 출생과 사망이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탕으로 가능하다. 미래인구의 규모는 우리나라 향후 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도 하며 또 이들이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사

회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가 출산정책에 매진하는 것도 미래의 인구구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 고령화정책의 수립배경도 향후의 노령화된 인구집단의 규모에 대한 정보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는 것이다.

비단 출생만이 아니라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생존기간의 예측이 가능해야 생존인구의 규모파악이 가능하여 각종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직접 관찰할 수는 없고 또한 이는 비가역적인 것이므로 미래의 인구규모는 관찰보다는 추정이 더 중요하다.

## 2 미래인구 추정은 어떻게 하는가

미래인구는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가. 미래인구를 추정할 때는 각종 미래의 통계지표가 필요하나 모든 것이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각종 통계지표를 이용한다. 즉,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향후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로서 보다는 추정치로 발표된다. 미래인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생명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한다. 생명표를 통하여 인구집단의 생존기간, 즉 평균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생명표란 특정시점에서 동시에 태어난 인구가 모두 점차 사망해가면서 결국 최종 사망으로 소멸될 때까지의 생존현상을 계속 관찰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 놓은 표를 생명표라 한다. 이를 통하여 기대수명, 즉 평균수명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생명표의 사망률은 미래의 사망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망률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하게 된다.

미래의 인구규모를 추정하는 그 다음 단계는 인구추계방식에 따르는 것이다. 인구추계는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향후 인구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학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작성 공표하고 있다. 인구추계는 특정기간의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별 실적치를 감안하여 추계인구자료를 작성하며 미래의 인구추정은 현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므로 현실이 바뀌면 이에 따른 보정을 하게 된다.

이 두 방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래인구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 3-2. 생명표의 의미와 목적

### 학습목표

- 생명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생명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1 생명표란 무엇인가

생명표개념은 영국의 그론티(John Graunt, 1620-1674)라는 사람이 1662년에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made upon the bills of mortality라는 저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 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오다가 1766년 스웨덴의 와젠틴(Pehr Wargentin, 1717-1783)이 1766년 스웨덴의 자료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간생명표를 작성하였다. 그 후 근래에 이르러 생명표 작성은 국가마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었다.

우리나라 생명표 작성의 역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간 사망률에 대한 자료가 부정확했던 탓에 공식적인 생명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국내학자들이 생명표연구결과를 인용제시해 왔다. 정부가 최초로 작성한 공식적인 생명표는 1980년 실시한 인구동태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1978-1979년도의 생명표이며 그 후 거의 매년 정확한 생명표를 작성하여 발표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2014년 생명표가 발표되었다. 생명표는 통계법 제18조 1항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35호)로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생산되고 있다.

생명표에서는 출생아의 기대수명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생명표를 제시하여 특정연령까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생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 2 생명표는 어떻게 생산하는가

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00,000만명으로 구성된 인구집단을 기본인구로 하여 코호트(동시출생집단)로 하고 이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사망해 가는 사망률을 바탕으로 생존율을 산출 구성한다. 이를 코호트 생명표(Cohort life tables) 방법이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기는 하나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을 추적하면서 연령별사망률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실제로 그러한 사망률의 자료를 구한다 해도 실제로는 100년 전에 진행되었던 자료가 되는 셈이어서 현시점에서 볼 때 시의성이 없어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인구학자들은 두 번째 개념인 기간생명표(period life table)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특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관찰된 연령별사망률을 마치 어떤 코호트가 점차 경험할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률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사망률을 미래의 사망률처럼 ‘합성’하여 코호트를 구축하기 때문에 합성코호트(synthetic cohort)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 코호트는 연령별 인구에서 동시에 관찰하는 사망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코호트가 겪게 될 위험성과는 다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관찰기간은 주로 1년 동안이고, 이 기간에 관찰한 사망률을 바탕으로 생명표를 작성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코호트개념의 사망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나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현재의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자료는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접수된 사망신고자료를 기초로 하며, 주민등록 및 사망신고서상 사망자의 연령 오류와 지연 사망신고 건수 등을 보정하여 얻는다. 생명표를 작성할 때는 일단의 기준인구가 필요하다. 이는 대체로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얻어진 성·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한다.

생명표를 작성하는 것은 기술적인 방법을 택하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용어정의를 필요로 한다.

- 사망확률(Probability of dying) :  ${}_nq_x$  : 연령  $x$ 세의 사람이  $x+n$ 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
- 생존확률(Probability of surviving) :  ${}_np_x$  : 연령  $x$ 세의 사람이  $x+n$ 세까지 살아남을 확률
- 기대여명(Average remaining lifetime) :  $[e_x^o]$

: 연령  $x$ 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출생 시 기대여명은 “기대수명” 이라고 함)

- 특정사인별 사망확률 :  $[R_x(i)]$  : 연령  $x$ 세의 사람이 장차 특정 사망원인으로 사망하게 될 확률

- 특정사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여명 :  $[e_x^o(-i) - e_x^o]$

: 특정사인을 예방하거나 퇴치함으로써 그 사인으로 사망하지 않고, 이후 다른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연장되는 기대여명

코호트에서는 관찰사망자수를 바탕으로 각종 사망률을 산출해 나가면 되지만, 생명표에서는 실제 관찰할 수 없는 각 연령구간의 생존자들을 포함하여 생명표함수(life table function)를 추정하여야 한다. 생명표함수의 예로  $nM_x$ 를 들 수 있다. 연령  $x$ 와  $x+n$  사이에 관찰한 사망자수를  $nD_x$ 라 하고 동일 구간의 인구수를  $nPx$ 라 하면,  $nM_x = nD_x/nPx$ 다. 이렇게 구한  $nM_x$ 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합성코호트를 작성하여  $nqx$  같은 생명표함수를 산출하게 된다.

사망률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연령별 사망률  $nM_x$ 는  ${}_n m_x$ 가 아니다.  ${}_n m_x$ 는 산출 공식

$${}_n m_x = \frac{n^d_x}{nL_x}$$

을 통하여 산출하며 이 때의 분자와 분모는 모두 코호트의 사망력 차원에서 산출하여야 하는데,  $nM_x$ 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데 문제가 될 정도로 크지는 않아 대체로 같다고 가정한다.

기간생명표의 그 다음 과정은  ${}_n m_x$ 를 연령별 사망확률  ${}_n q_x$ 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nL_x$ 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즉,

$${}_n q_x = \frac{{}_n m_x}{1 + (n - {}_n a_x) {}_n m_x}$$

를 이용하는데, 이 공식을 통해 합성생명표에서 각 연령구간의 생존자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환의 과정에서  ${}_n a_x$ 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값은 쉽게 구할 수 없다. 완전생명표에서는 기간을 1년으로 보아  ${}_1 q_x$ 로 하고, 평균적으로 반년을 생존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간이생명표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그 기간이 5년인데, 이때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등급화방법(graduation technique)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인구집단의 숫자를 이용하기도 하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_n a_x = n/2$ 이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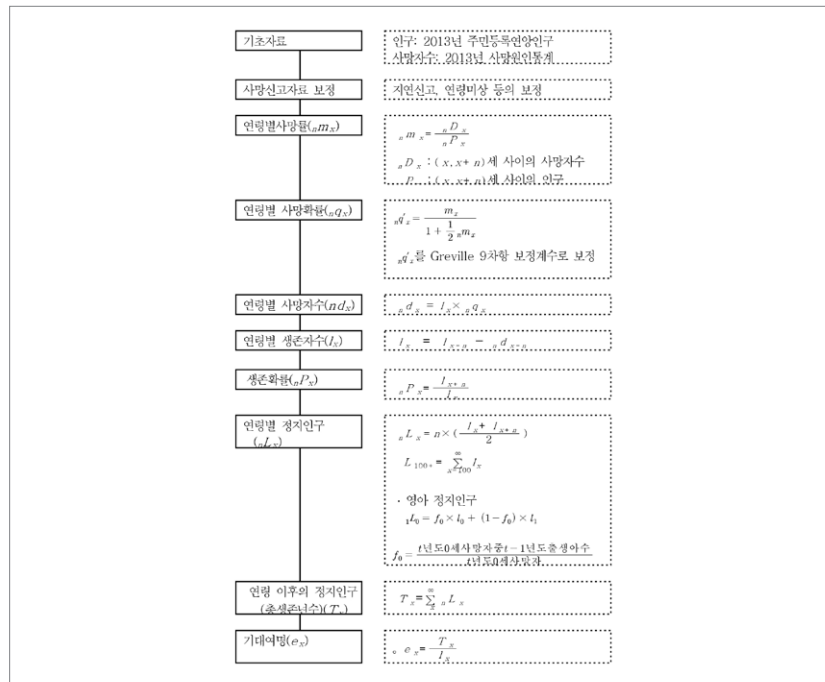
이는 0세나 1-4세, 그리고 100+ 같이 사망률이 높은 연령 계급구간에는 적당하지 않다.

개인이 일년동안 생존하는 것을 1인년이라 한다. 5년을 생존하면 5인년이 되고 5명이 1년간 고나찰되어도 5인년이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그의 인년은 사망할 때까지이다. 이것을 집단에 적용하여 인년을 계산하자면 좀 복잡해 지는데 이를 단순하게 도식화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렉시스다이어그램인데 이는 독일의 통계학자이자 보험계리사인 빌헬름 렉시스(Wilhelm Lexis, 1837-1914)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인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인구사상은 그 주체의 연령축과 시간축의 두 개 좌표로 구성한다. 둘째, 이차원 평면은 그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을 나타낸다. 셋째, 각 개체의 출생과 사망을 잇는 직선, 즉 '생명선'으로 각각 표시한다. 넷째, 이차원 평면에서 각 선은 생명선이 이 선을 가로지르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생명표는 완전생명표 (Complete Life table) 와 간이생명표 (Abridged Life Table) 두 가지로 표현한다. 완전생명표란 1세간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간이생명표란 5세 간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위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2013년 생명표의 방법을 도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통계청의 2014년  
생명표 작성 과정



### ③ 생명표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작성목적은 일차적으로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 간 경제·사회·보건수준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 (2) 연령별 기대여명
- (3) 특정 연령까지의 생존확률
- (4)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 (5) 특정 사망원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여명

생명표는 대상집단의 종류·구성·관찰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상집단의 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생명표와 특정한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부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생명표가 있다. 직업별, 혼인상태별 또는 사망원인별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생명표를 차이생명표라 하고, 생명보험 가입자만이나 노동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생명표는 각각 보험(경험)생명표, 노동생명표라고도 한다.

또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동시생명표(Current or Period Life Table)가 있고, 코호트 관찰에 의거한 세대생명표(Cohort or Generation Life Table)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사들이 임상치료에 있어서의 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구한다. 그 때 필요한 생존율(Survival rates)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표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임상생명표(Clinical life tables)라고 한다. 이 경우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호트방법에 의한 생명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생명표자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생명표에서는 출생아의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2014년도에 작성된 생명표를 보면 <표 3-1>과 같으며 특정연령에서의 기대여명을 요약한 것이 [그림 3-2]이다. 이 표는 100세까지의 완전생명표인데 편의상 중간부분은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컬럼의  $e_x^o$ 이 기대여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4년 출생아(0세)의 기대수명은 전체 82.4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보다 0.5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아래 1세에서의 81.64세는 1세에서의 기대여명이 된다. 80세에서 9.74는 기대여명을 뜻한다. 결국 89.74세를 산다는 의미인데 이는 80세까지 생존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대여명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0세시 기대여명보다 길다. 이처럼 기대여명은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명표는 남녀별로 작성하는데 이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는 79.0세였고 여자의 경우에는 85.5세가 된다.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더 길어서 6.5영 오래 살며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2013년과 동일하다. 남녀간 차이는 1985년도에 8.4년까지 차이가 났으나 최근에는 안정화 추세에 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2013년 대비 남자의 경우는 0.5년, 여자의 경우는 0.4년 기대수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10년전인 2004년에 대비하면 남자 4.5년, 여자 4.1년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70년 대비 남자 20.3년, 여자 19.9년 증가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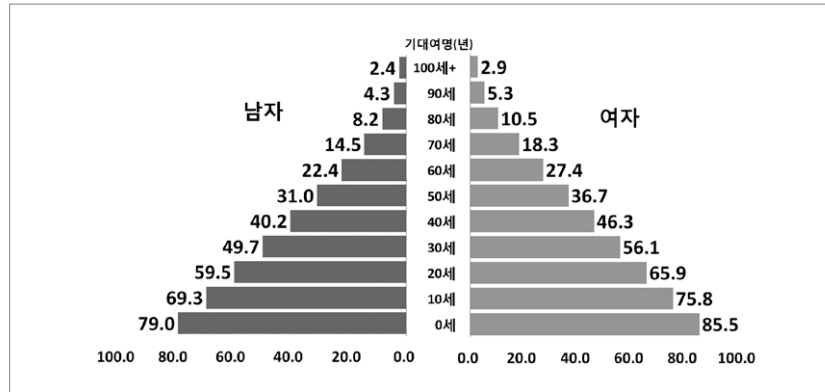
2014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기대여명이 20.85세로서 남성은 18.3년, 여자의 경우는 22.8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1>**  
**2014년 완전 생명표**  
**(남녀전체)**  
 (단위: 년)

연 령	사망확률	생존자수	사망자수	정지인구	총생존년수	기대여명	연 령
Age	$nq_x$	$l_x$	$nd_x$	$nL_x$	$T_x$	$e_x^o$	Age
0	0.00300	100000	300	99753	8239770	82.40	0
1	0.00024	99700	24	99688	8140018	81.64	1
2	0.00017	99676	17	99668	8040329	80.66	2
3	0.00012	99659	12	99653	7940661	79.68	3
4	0.00010	99647	10	99643	7841008	78.69	4
5	0.00009	99638	9	99633	7741366	77.70	5
6	0.00009	99628	9	99624	7641733	76.70	6
7	0.00009	99619	9	99615	7542109	75.71	7
8	0.00008	99610	8	99606	7442494	74.72	8
9	0.00008	99602	8	99598	7342888	73.72	9
10	0.00007	99594	7	99591	7243290	72.73	10
11	0.00007	99587	7	99584	7143699	71.73	11
12	0.00007	99580	7	99577	7044115	70.74	12
13	0.00010	99573	9	99568	6944539	69.74	13
14	0.00014	99563	14	99557	6844971	68.75	14
15	0.00019	99550	19	99541	6745414	67.76	15
16	0.00023	99531	23	99520	6645874	66.77	16
17	0.00027	99508	27	99495	6546354	65.79	17
18	0.00028	99481	28	99467	6446859	64.80	18
19	0.00030	99453	29	99438	6347392	63.82	19
20	0.00031	99424	30	99408	6247954	62.84	20
.	.	.	.	.	.	.	.
65	0.00796	90288	719	89928	1882673	20.85	65

80	0.04354	67616	2944	66144	658443	9.74	80
81	0.04895	64672	3166	63089	592299	9.16	81
82	0.05506	61507	3387	59813	529209	8.60	82
83	0.06187	58120	3596	56322	469396	8.08	83
84	0.06913	54524	3769	52640	413074	7.58	84
85	0.07719	50755	3918	48796	360434	7.10	85
86	0.08592	46837	4024	44825	311638	6.65	86
87	0.09533	42813	4081	40773	266813	6.23	87
88	0.10542	38732	4083	36690	226040	5.84	88
89	0.11621	34649	4027	32635	189350	5.46	89
90	0.12770	30622	3910	28667	156714	5.12	90
91	0.13986	26712	3736	24844	128047	4.79	91
92	0.15269	22976	3508	21222	103204	4.49	92
93	0.16617	19468	3235	17850	81982	4.21	93
94	0.18025	16233	2926	14770	64132	3.95	94
95	0.19489	13307	2593	12010	49362	3.71	95
96	0.21005	10713	2250	9588	37352	3.49	96
97	0.22565	8463	1910	7508	27763	3.28	97
98	0.24164	6553	1584	5762	20255	3.09	98
99	0.25792	4970	1282	4329	14493	2.92	99
100+	1.00000	3688	3688	10164	10164	2.76	100+

[그림 3-2]  
성·연령별 기대여명,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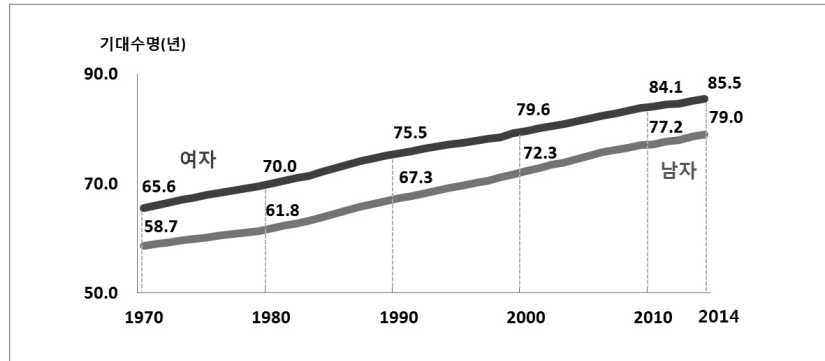
<표 3-2>와 [그림 3-3]은 1970년 이후 발표된 생명표의 추계 예측내용에 대한 표와 그림이다. 이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기대수명은 20년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한편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긴 패턴은 변함이 없는데 그 차이는 1980년에 8.3년으로 가장 컸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6.5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그 감소폭이 안정화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생명표를 작성할 때 사망원인에 따라 사망원인생명표를 함께 작성한다. 이는 사망원인별 사망률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것으로 사망원인제거생명표라고도 하는 것으로 특정 사망원인이 제거된다면 기대여명이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결과를 요약한 것이 [그림 3-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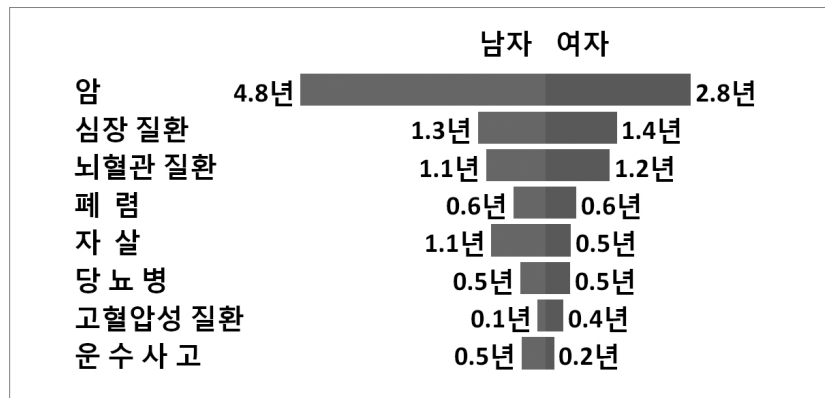
<표 3-2>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1970-2014년  
 (단위: 년)

	1970	1980	1990	2000	2010	2004	2013	2014	증 감	
									'14-' '04	'14-' '13
남녀 전체	61.9	65.7	71.3	76.0	80.8	78.0	81.9	82.4	4.4	0.5
남자 (A)	58.7	61.8	67.3	72.3	77.2	74.5	78.5	79.0	4.5	0.5
여자 (B)	65.6	70.0	75.5	79.6	84.1	81.4	85.1	85.5	4.1	0.4
차이 (B-A)	6.9	8.3	8.2	7.3	6.9	6.8	6.5	6.5	-0.3	0.0

[그림 3-3]  
 남녀 기대수명 추이,  
 1970-2014년



[그림 3-4]  
 주요 사망원인 제거시  
 증가 기대수명,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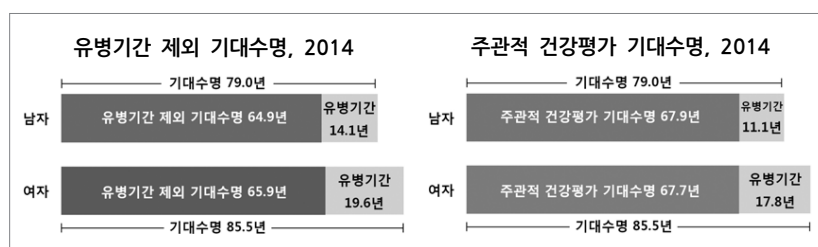
상기의 8가지 사망원인이 모두 제거된다면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그 합과 같다.

한편 건강수명이라는 것을 산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대여명중에서 건강하게 생존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정의가 매우 어



럽기 때문에 건강수준별 기대수명이라 하고 건강을 1)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기간인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간과 2) 본인생각에 따른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출생아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남자 64.9년, 여자 65.9년으로 나타나 여자가 1년 더 길었다. 그리고 [그림 3-5]에서 처럼 2014년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대여명(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남자 67.9년, 여자 67.7년으로 남자가 0.2년 더 길었다.

[그림 3-5]  
건강평가에 따른  
기대수명



이러한 생명표를 지역별로 산출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로서 남자/여자 각각 80.6세/86.3세이고 가장 짧은 곳은 남자는 전남으로 77.5세, 여자는 울산으로 83.6세이다. 남녀 차이가 가장 긴 곳은 전남으로 여자가 8.3년을 더 살며 가장 짧은 곳은 울산으로 여자가 5.1년을 더 생존한다.

우리나라 남자 기대수명 79.0년은 OECD 평균(77.8년)보다 1.2년, 여자 기대수명 85.5년은 OECD 평균(83.1년)보다 2.4년 높다. 기대수명을 최상위국과 비교시 남자는 스위스(80.7년)보다 1.7년, 여자는 일본(86.6년)보다 1.1년 낮은데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남자는 17위, 여자는 4위에 해당한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6.5년)는 OECD 평균(5.2년)보다 높으며, 이 차이는 프랑스(6.6년), 포르투갈(6.4년), 일본(6.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 3-3.

## 장래인구 추계

#### 학습목표

- 장래인구추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장래인구추계의 방법과 그 활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

### 1 장래인구추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인구가 장차 어떻게 변화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의 출산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게 된다. 노인인구는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고령사회 국가정책은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고령인구의 규모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추계하면 고령화대책의 기초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장래인구추계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자료는 201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0-2060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가 있다.

인구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인구추계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인구학적 지표를 바탕으로 추계를 한다.

- (1) 기준인구. 이는 가장 최근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 (2) 출산력. 현재의 출산력자료를 바탕으로 출산력의 추이를 예측하여 사용하게 된다.
- (3) 사망력. 사망신고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사망률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에 입각하여 사망력의 추이를 분석한다.

- (4) 국제인구이동. 국제인구이동은 국내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제인구이동자료를 이용하여 활용한다.
- (5) 인구성장시나리오. 미래인구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변동요인을 예측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인구추계방법은 코호트요인법에 따른다. 현재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 추세에 대한 가정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장래의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성장 및 변동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인구동태(출생·사망)와 국제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인구의 변동상황을 예측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으로서 이 결과를 보면 향후 50년간의 우리나라 인구 규모 및 성·연령별 구조를 추계할 수 있다.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은 출생·사망·국제이동의 장래 변동 수준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하는데 추계의 시발점이 되는 성·연령별 기준인구에 출산과 국제순이동은 더하고, 사망은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에 의해 다음해 인구를 산출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

$$P_t = P_{t-1} + B_{t-1,t} - D_{t-1,t} + M_{t-1,t}$$

$P_t$ : t년 인구,  $B_{(t-1, t)}$ : (t-1, t) 출생아수,  $D_{(t-1, t)}$ : (t-1, t) 사망자수,

$M_{(t-1, t)}$ : (t-1, t) 국제순이동자수

한편 기준인구로서는 2010-20160년 추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축한다.

- ▷ 총조사의 무응답이나 연령응답 오류 등으로 추계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조가 불규칙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총조사 시점(2010년 11월 1일자)의 인구를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 (1) 10세 이상 전 연령은 2010년 총조사 사후조사의 성·연령별 순누락을 적용하여 보정
- (2) 행정자료의 완전성이 높은 9세(2001년생) 이하 인구는 인구동태(출생·사망신고)와 국제인구이동(출입국신고)자료로 인구균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산출
- (3) 2005년 기준인구에서 5년간의 인구동태와 국제이동을 반영해서 작성한 인구(인구분석방법) 및 각 연차별 총조사 코호트의 생산율(국제이동 반영)을 감안한 인구와 위의 1)~2)를 비교, 공통적으로 차이가 나는 코호트는 조정
- (4) 외국인 인구는 2005년 외국인 기준인구에서 5년간의 국제인구이동을 적용해서 산출
- (5) 결과적으로, 총조사 인구에서 4세 이하 영유아, 이동이 많은 20대 후반과 40~50대, 남자가 주로 보정된다.

월별 인구동태 및 국제이동자료 자료를 반영하여 총조사 시점인구를 연앙기준(7월 1일자)인구로 환산, 인구추계의 시발점이 되는 기준인구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이용된 기준인구는 다음 <표 3-3> 과 같다.

<표 3-3>  
성별 총조사인구 및  
기준인구, 2010

2010년	인구(천명)		
	계	남자	여자
총조사인구(11월1일)	48,580	24,167	24,413
총조사보정인구(11월1일)	49,508	24,804	24,704
기준인구(7월1일)	49,410	24,758	24,653

출산율은 미래 인구규모 및 연령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중위가정, 고위가정, 저위가정 등 3대 가정을 한다. 중위가정으로서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상승, 이후 206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출산력산출의 기술적 방법으로서 다소 복잡한 방법인 시계열회귀 분석과 보정형 로그감마모형(adjusted Generalized Log Gamma)에 의해 코호트 출산율 및 평균출산연령을 예측, 중위가정으로 설정하는데 코호트출산율은 일시적인 기간효과 의한 등락이 적어 기간출산율보다 안정적이므로, 출산력 가정은 출생코호트를 기초로 산출한다.

사망력자료로서는 장래인구의 연령구조, 특히 고령인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대수명을 역시 중위가정, 고위가정, 저위가정 등 3개의 가정을 수립하였다. 중위가정으로서는 장래인구를 예측한 결과 2010년 남자의 기대수명은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60년 각각 86.6세와 90.3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확률론적 모형인 Li and Lee 모형을 이용, 장래 성·연령별 사망확률 추정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계에 활용하고 있다.

- (1) 0세의 사망률은 너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2055년까지 영아 사망 세계 최저국가인 일본의 감소속도를 적용하여 장래사망확률을 추정
- (2) 기초자료가 부족한 75세 이상은 로지스틱 모형에 의해 과거(1970년~2010년) 사망확률을 추정
- (3) 1~100세까지 Li and Lee 모형을 이용, 장래의 연령별 사망확률 및 기대수명 산출
- (4) 기대수명 산출시 상한연령을 기존 95세 이상에서 100세 이상으로 확장  
고위와 저위가정의 경계는 Li and Lee 모형의 95% 신뢰구간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국제이동률의 경우에는 국내외 환경, 정책적 요인에 따른 단기적 변동이 많아 인구변동요인 중 장기전망이 가장 어려운 요인이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의 자연증가는 감소, 반면 글로벌화로 국제이동이 증가하면서 인구규모 및 연령구조에 주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까지의 인구학적 추세를 이용, 미래 국제이동 수준에 대해 역시 3개의 가정 설정하였는데 중위가정의 경우 국제순이동률은 2010년 인구 천명당 1.67명에서 2060년 0.53명으로 감소할 것을 예측하였다.

국제이동 가정은 연령별 이동스케줄 모델(Model Migration Schedule)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입국과 출국요인에 연령별 차이가 있어, 모형을 분리해서 장래 수준을 추정한 후 입국과 출국을 합해 국제순이동을 산출, 중위가정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성장 시나리오로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장래 수준을 중위·고위·저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활용한다.

- 인구변동요인별 가정을 모두 조합할 경우 총 27개(3×3×3)의 시나리오가 산출되나, 이중 장래 인구성장(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큰 3개의 시나리오를 선정
-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중위가정을 조합, 추계의 기본 시나리오인 인구성장 중위가정을 설정
-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고위(저위)가정을 조합, 인구성장 고위(저위)가정을 설정
- 장래 인구성장에서 정책적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 쉬운 국제이동의 효과를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국제이동이 없는 무이동 상태(출생·사망: 중위)를 별도의 시나리오로 제시(장래인구추계 연보에 수록)
- 또한, 향후 출산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출산률이 만약 최근 5년간(2005~2010년)의 평균(1.19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예상되는 장래인구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장래인구추계 연보에 수록)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된 인구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 후 감소, 2060년에는 4,396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3 장래인구추계 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장래인구추계통계는 교육, 주택, 취업, 산업 등 사회 전문야에 걸쳐 미래 인구의 예측은 국가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연금 및 재정 정책 등 국가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래가구추계 중 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 제공하는 등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기초자료 및 학술자료 제공하기 위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한다.

한편 인구추계를 통하여 제시되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 (2) 자연증가와 국제이동
- (3) 연령구조: 중위연령과 인구피라미드

- (4) 연령계층별 인구
- (5) 생산가능인구
- (6) 고령인구
- (7)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 (8)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4 장래인구추계 통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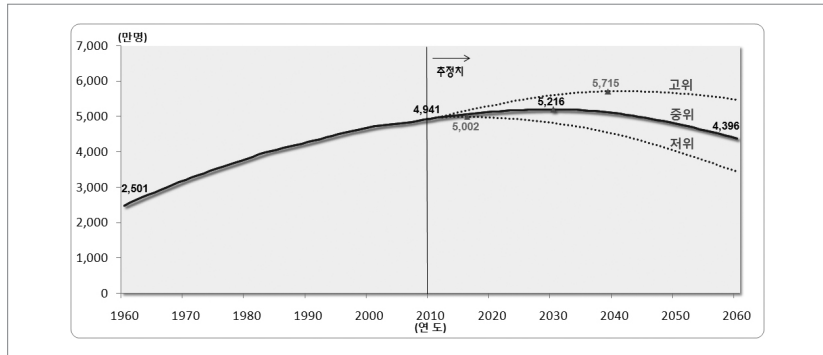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발표하는데 현재는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2060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다. 추계를 위해서는 일련의 가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활용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추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래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 수준을 중위 · 고위 · 저위로 설정
- (2)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중위가정을 조합, 추계의 기본 시나리오인 인구성장 중위가정을 설정
  - 합계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 후 지속
  - 기대수명은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60년 각각 86.6세, 90.3세 도달
  - 국제이동에 의한 유입인구는 2010년 인구 천명당 1.67명에서 감소, 2060년 0.53명 수준
- (3)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고위(저위)가정을 조합, 인구성장 고위(저위)가정을 설정

인구성장 시나리오	2010년	2060년			
		고위	중위	저위	
합계출산율(명)	1.23	1.79	1.42	1.01	
기대수명(세)	남자	77.20	89.09	86.59	83.64
	여자	84.07	92.53	90.30	87.81
국제순이동률(인구천명당)	1.67	1.50	0.53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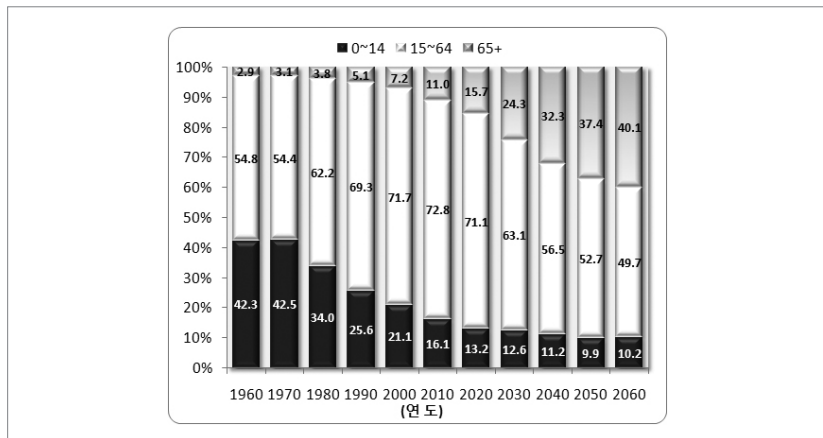
이에 따른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총인구 2010년의 4,941만명에서 2030년에는 5,216만명까지 성장하고 그 이후 감소하여 2060년에 4,39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저성장 가정 시, 인구정점은 2016년(5,002만명)으로 이동, 2060년 인구는 3,447만명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림 3-6]에서 처럼 결국 인구성장 률은 2010년 0.46%, 2020년 0.28%,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0년 -1.0% 수준에 이른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 3-6]**  
인구성장 가정별  
총인구, 1960-2060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인구는 2010년에 3,704만명(인구의 72.8%)을 정점으로 찍은 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 2,187만명(4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3-7]). 반면에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에 545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2030년에는 2.3배(1,269만명), 2060년 3배(1,762만 명으로 40.1%)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화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인구는 2010년 798만명(16.1%)에서 2016년까지 1백만명 이상 급감하여 2060년 447만 명 (10.2%) 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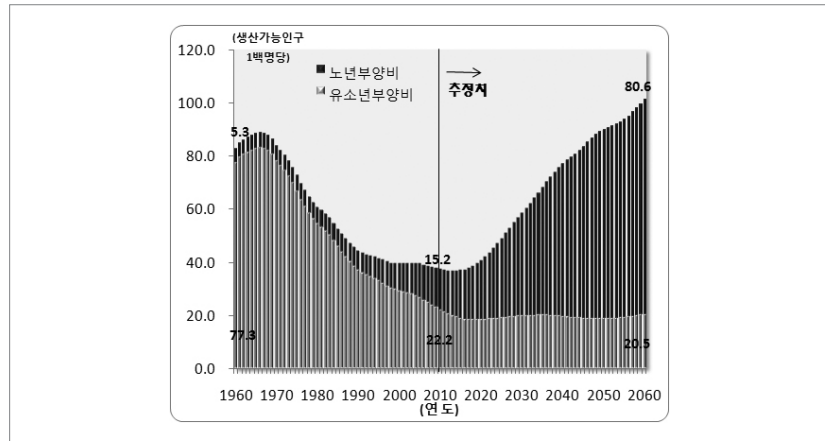
**[그림 3-7]**  
인구구성비 추이  
201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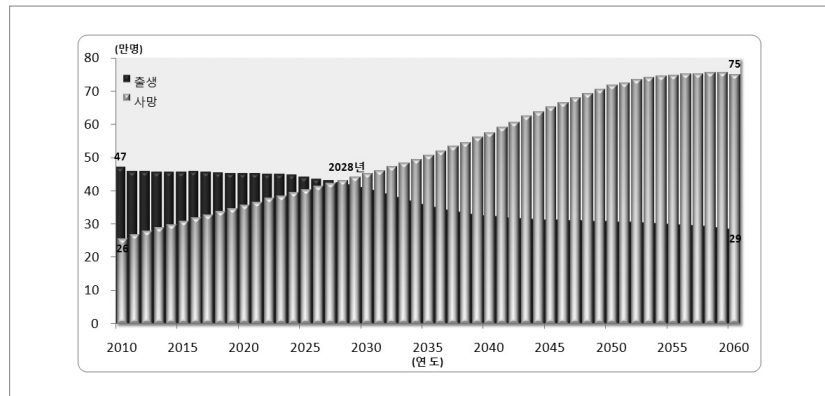
고령인구 규모는 2017년에는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노인 16.1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하여 2060년에는 101.0명(노인 80.6명)으로 부양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3-8]).

[그림 3-8]  
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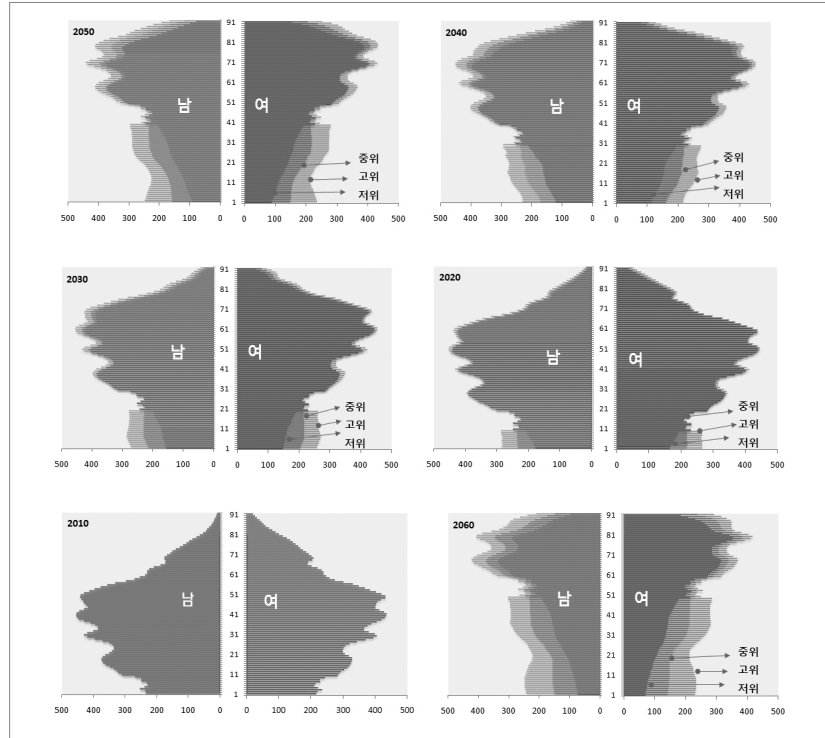
출생아수와 사망아수를 비교하면 현재까지는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더 많아서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성장형태를 보이나 2028년을 기점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인구성장의 감소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그림 3-9]).

[그림 3-9]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2010-2060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매우 불안정한 인구구조형태를 띄우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그 내용은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  
성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2010-2060



이 그림을 보면 점점 피라미드 모양의 가장 많은 인구층이 노령화현상에 따라 점차 위로 올라가고 아래의 젊은 인구층은 저하된 출산력의 영향으로 여전히 아래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 2060년이 되면 극심한 가분수 형태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심각한 인구불균형현상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 김경환, 김종석 옮김(2009), 맨유의 경제학, 교보문고.
- 김민경, 이공희, 이기재(2005), 국가통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공희, 이한식(2012), 경제통계분석의 원리와 응용.
- 통계교육원 (2010), 통계와 정책, 통계청.
- 경제통계기획과(2013), 국민계정체계의 이해와 개념, 통계청.
- 서비스업동향과(2006), 계절조정이론과 X-12-ARIMA 사용 방법, 통계청.
- 한국은행(2010a), 2008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국은행(2010b),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승수(1994), 경제정책론, 동아출판사.
- IMF(2001), Quarterly National Accounts Manual - Concepts, Data Sources, and Compilation, IMF.
- Triplett(1992), Economic Theory and BEA'S Alternative Quantity and Price Index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92. 4.



# 4부

---

## 경제통계

## 4부. 경제통계

### 목차

학습과목의 개요	195
<b>제1장. 경제통계의 개관</b>	
1-1. 경제통계란	197
1-2. 경제주체와 분류	199
1 경제주체	199
2 사업체 및 기업체의 통계적 분류	201
1-3. 지수	203
1 지수란 무엇인가	203
2 총합지수(aggregated index)	208
1-4. 경상금액과 불변금액	211
1-5. 증감률	213
<b>제2장. 주요 경제통계</b>	
2-1. 주요 연간 경제통계	217
1 전국사업체조사	217
2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	220
3 광업·제조업조사	223
4 기타 연간조사	226
2-2. 주요 월별 경제동향통계	228
1 생산	228
2 소비	230
3 투자	230
4 고용	231
5 물가	233
6 대외거래	234
2-3. 국민계정통계	235
1 국민소득통계	235
2 지역소득통계	237
연구과제 또는 연습문제	241
부록	243
참고 자료	244

## 경제통계 과목의 개요

---

<b>학습 목표</b>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경제통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경제통계와 경기해석 방법을 알아본다.
<b>선수학습</b>	통계학, 경제학
<b>주요 용어</b>	경제주체, 사업체, 기업체, 지수, 총합지수, 경상금액, 불변금액,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광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국민소득통계, 지역소득통계, 경기순환
<b>학습과목의 내용요약</b>	<p>제1장에서는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경제통계란 무엇인지, 경제주체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생산주체인 사업체 및 기업체의 정의와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다. 또한 경제통계의 기본이 되는 지수, 경상금액과 불변금액, 증감률 등에 대해 설명한다.</p> <p>제2장에서는 주요 연간 및 월간 경제통계와 국민계정통계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 연간 경제통계는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제동향을 나타내는 월간 주요경제통계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부문별로 주요 월간 경제통계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계정통계는 국민소득통계와 지역소득통계에 대해 설명한다.</p> <p>제3장에서는 현재의 경기분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기순환에 대해 설명한다. 경기분석방법으로 개별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 경제 각 부문을 종합한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경제주체의 경기판단 및 심리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p>





---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경제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둘째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면 더 지혜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셋째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맨규의 경제학, 2013). 통계는 이러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 1-1.

#### 경제통계란

##### 학습목표

- 경제통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 금융경제통계와 실물경제통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TV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경제 또는 경기 관련 기사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 일제히 부진”, “지표경기는 풀리는데 ‘저소비 늪’…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22개월째 경상 흑자…짹짹한 이유는” 이때 우리의 관심은 경기지표, 경상 흑자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 또 경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이다.

**[그림 1-1]**  
**언론매체의 경제 또는**  
**경기관련 기사 예시**

경제정책 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은 생산, 소비, 투자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가계(개인), 정부 등의 경제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이나 경제이론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가계(개인), 정부 등을 경제주체라고 한다. 경제정책 혹은 경제이론을 구체화하고 적절한지를 보기 위하여, 경제현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량적 정보로 관측한 경제통계를 이용하게 된다. 경제통계를 통하여 경제주체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경제상황이 과거에 비해 어떠한지 또는 미래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대경제는 돈(화폐)을 매개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경제의 실물적 측면인 재화와 서비스이지만 이러한 실물거래에 돈의 거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돈의 역할을 인체에 있어서 혈액의 역할에 비유하며,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실물의 역할은 살과 뼈로 비유한다. 인간에게 있어 몸 안의 혈액이 적정량으로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뼈와 살이 튼튼하게 성장하듯이 돈 역시 경제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서 돈(화폐)의 흐름과 양 등을 측정한 통계를 금융경제통계라고 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등을 측정한 통계를 실물경제통계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경제통계는 그 국가의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며, 실물경제통계는 국가중앙통계기관(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실물경제통계 위주로 설명을 한다.

## 1-2. 경제주체와 분류

### 학습목표

- 경제주체란 무엇이며, 경제주체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 사업체 및 기업체의 정의와 통계적 분류를 알아본다.

### 1 경제주체

경제주체 중에 기업은 주로 생산과 투자를 하며, 가계는 소비활동을 주로 하나 농림어업 및 자영업 등과 같은 생산활동도 일부 담당한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서비스와 경기조절을 위한 투자 활동 등을 실시한다.

먼저, 경제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 간에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계는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기업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즉, 가계의 구성원인 개인은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SNA<sup>1)</sup>에서는 ‘피용자보수’을 받는다. 또한 개인이 기업에 토지 및 자본(은행 저축 및 주식 투자 등)을 제공한 대가로 임료와 배당을 받게 된다. 개인이 받은 임금, 임료 및 배당은 가계의 소득을 구성하게 되며, 이들 소득으로 기업이 생산한 빵, 휴대폰, 자동차 등과 같은 재화와 음식점, 인터넷 망 이용 등과 같은 서비스를 구입한다. 가계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동안 소득에 의해 축적한 부(wealth)에 대한 재산세 등을 국가에 납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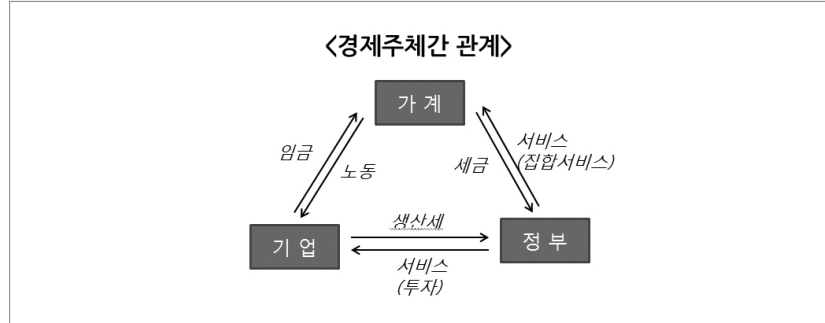
한편, 기업은 가계에서 제공된 노동력 등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계와 기업 등에 판매(해외 판매의 경우, 수출)하고 판매대금을 기업의 수입(income)으로 잡는다. 이때 기업은 가계에서 제공한 노동력에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생산세(부가가치세 등) 및 수입세 등 세금(조세)을 정부에 납부한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서 걷어 들인 생산세 및 수입세, 소득세 및 재산세 등 세금으로 도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과 가계 생활의 편익을 도모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1) SNA :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로 나타내며, 그 의미는 국민경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 및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한 회계기준 및 체계이며, 1968년 유엔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민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견여 들인 세금으로 국방, 교육, 치안 등 집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등 개인에 대한 공공부조에 활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아간다.

[그림 1-2]  
경제주체간 관계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생산**(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 **분배**(가계 및 기업의 소득), **지출**(가계 및 기업 등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활동으로 나타나며,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내용과 결과 등을 측정된 것을 경제통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사업체(기업체) 또는 가계를 조사해서 얻을 수 있다. 사업체(기업체)의 경제활동은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파악하는데, 해당 사업체(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간재 및 비용 등을 조사하게 된다. 가계의 활동은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파악하는데, 가구에서 어떠한 재화 및 서비스를 얼마나 소비하고,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를 조사한다. 그러나 가계 대상 조사의 경우, 사회통계로 분류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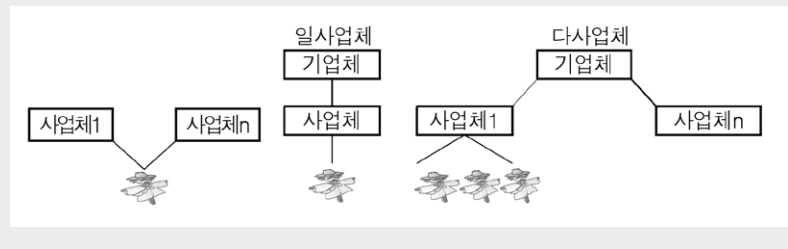
**통계청에서는 사업체(establishment) 및 기업체(enterprise) 정의를 국민 계정체계(SNA)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15).**

-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 개인기업체: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체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기업체도 포함

### 사업자, 사업체 및 기업체 관계(경제통계기획과, 2013)

※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 국세청에 과세 목적 상 사업자 등록을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별된다.

- 사업자: 1명의 사업자는 1개의 사업체(기업체)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기업체)를 가질 수 있음
- 기업체: 1개 기업체는 1개 사업체 또는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질 수 있음
- 사업체(기업체)는 1명의 사업자 또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음



## 2 사업체 및 기업체의 통계적 분류

기업체 또는 사업체는 노동, 자본, 기술 등의 투입물을 사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이다.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인 기업 또는 사업체들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종류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집단을 산업(industry)이라 한다. 산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21개 대분류, 76개 중분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http://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각 기업체 또는 사업체는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한다. 대기업처럼 한 기업이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 주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한다. 이때, 주산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을 말하며, 나머지 활동은 부차적인 활동(secondary activity)으로 부산업으로 분류한다.

2008 국민계정체계(SNA)는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를 다음의 5개 제도 부문으로 나눈다.

- ① 비금융법인기업 : 시장에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법적 단위
- ② 금융법인기업 : 금융중개 또는 보조적 금융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법적 단위
- ③ 일반정부 : 가계와 사회전체에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세금징수 또는 강제적 이전 등을 통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 하는 단위
- ④ 가계봉사비영리단체 : 가계를 위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예: 노동조합, 교회, 사회복지 단체 등)
- ⑤ 가계 : 1인 또는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며, 가계 소유의 비법인기업(개인기업)도 포함

통계청에서 사업체 및 기업체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통계청,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지침서). 여기서, 개인사업체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국내지사, 지점 등)가 포함된다. 회사이외의 법인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특별법인(한국여성개발원, 한국언론재단,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원 등) 등이 있다. 비법인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및 암자 등이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속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으로서 그 구성원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인 기관·시설 등이다. 또한 국·공립 학교와 병원 등 공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특별한 공적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 1-3. 지수

## 학습목표

- 지수 작성방법과 의미를 알아본다.
- 총합지수에 대해 알아본다.

### 1 지수란 무엇인가

지수(index)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물량(또는 수량)이나 가격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는 대상 간의 상대적 변화가 어떠한지 비교하는데 이용된다. 즉, 지수는 주어진 시점(또는 기준 시점)의 측정치를 100으로 하고, 비교 시점의 측정치를 기준 시점의 측정치와 비교하여 퍼센트(%)로 표시한다.

$$\text{지수} = \frac{\text{비교시점의 측정치}(Y_t)}{\text{기준시점의 측정치}(Y_0)} \times 100$$

지수는 물가, 생산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대해서 특정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비율 형태로 비교하는 지표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우유나 계란, 통신비 등과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점 또는 장소가 다르지만, 발생 하는 가격이나 물량 측정치의 변동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 달러, 원, 톤, 킬로그램과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자료의 측정 단위가 다르지만, 발생하는 변동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제규모, 고용규모 등과 같은 경제·사회 현상을 다른 측정단위로 측정된 결과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 금액, 생산량 등과 같이 실측된 통계자료 값을 보호하면서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경우 등

**(예 1) 다음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2000년 이후 각 국 화폐단위로 나타낸 경상금액의 국민총소득(GNI)이다. 2000년 이후 4개국 국민총소득의 증가 속도를 비교한다고 가정하자.**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0억원)	630.9	912.4	1266.3	1340.3	1391.4	1439.6	1496.5
중국 (10억위안)	9858.2	18448.0	40712.1	47946.8	53267.8	58573.3	63216.2
일본 (10억엔)	5163.6	5156.6	4953.6	4860.0	4901.7	4978.0	5075.4
미국 (10억\$)	10,421.3	13,221.8	15,121.1	15,802.9	16,599.7	17,204.3	17,812.7

매년의 증감률을 구해 볼 수도 있지만, 아래 표와 같이 2000년을 기준년으로 지수화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지수자료가 금액자료보다 간결하고, 4개국을 비교하기에 훨씬 수월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규모를 알 수 없는 단점은 있다.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00.0	144.6	200.7	212.4	220.5	228.2	237.2
중국	100.0	187.1	413.0	486.4	540.3	594.2	641.3
일본	100.0	99.9	95.9	94.1	94.9	96.4	98.3
미국	100.0	126.9	145.1	151.6	159.3	165.1	170.9

지수는 구입비용 등과 같은 금액 변동을 나타내는 금액지수(value index), 물가지수와 같이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가격지수(price index)와 산업생산 지수와 같이 물량변동을 나타내는 물량지수(volume index)가 있다. 다음과 같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이나 물량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0시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t시점에서 0시점에 구매한 상품의 동일한 양을 구매하여 시장 바스켓에 넣어 가격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를 가격지수라고 한다. 반대로, 소비자가 t시점에서 0시점의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장바구니에 넣어 물량변화를 볼 수 있다. 이를 물량지수라고 한다. 예로 설명을 하자. 기준년(0)의 가격을  $p_0$ , 물량  $q_0$ , 비교년(t)의 가격을  $p_t$ , 물량을  $q_t$ 라 하자.



(예 2) 2010년과 2015년의 두 상품(피자, 콜라)에 대한 가격과 물량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2010년		2015년		가격 비율
	가격(원)	물량(개)	가격(원)	물량(개)	
피자	20,000	4	25,000	4	1.25
콜라	5,000	5	5,500	5	1.10
비용	105,000		127,500		1.21

2015년의 피자와 콜라 가격은 2010년에 비해 각각 25%, 10%가 상승했다. 한편 2015년 두 상품의 구입비용을 보면 2010년의 구입비용보다 1.21배가 증가했다. 이를 2010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비용지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2010년의 비용지수} = \frac{(20,000 \times 4) + (5,000 \times 5)}{(20,000 \times 4) + (5,000 \times 5)} \times 100 = 100.0$$

$$\text{2015년의 비용지수} = \frac{(25,000 \times 4) + (5,500 \times 5)}{(20,000 \times 4) + (5,000 \times 5)} \times 100 = 121.4$$

2015년 두 상품의 구입비용 상승률은 두 상품의 평균 증가율인 17.5%(= (25+10)/2)가 아닌, 구입비용을 계산하면 21.4%가 상승한 것이다. 이때 비용 상승은 동일한 물량(피자 4개, 콜라 5개) 하에서 가격이 변동되어 발생한 것이다. 즉, 비교시점에도 기준시점의 물량( $q_0$ )을 구입한다면,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가격지수( $I_p$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_p = \frac{P_t q_0}{P_0 q_0}$$

(예 3) 다음과 같이 2010년 가격으로 2015년에 피자와 콜라를 구입한다고 가정하자.

	2010년		2015년		물량 비율
	가격(원)	물량(개)	가격(원)	물량(개)	
피자	20,000	5	20,000	6	1.20
콜라	5,000	10	5,000	14	1.40
비용	150,000		190,000		1.27

이때 피자와 콜라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2010년에는 150,000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190,000원으로 2010년보다 1.27배가 증가하였다. 2015년에 피자와 콜라 구입에 들어간 비용 지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text{2015년의 비용지수} = \frac{(20,000 \times 6) + (5,000 \times 4)}{(20,000 \times 5) + (5,000 \times 10)} \times 100 = 126.7$$

2015년의 비용지수 변동은 2010년의 가격 하에서 물량이 변해서 발생한 것이다. 즉, 비교시점에도 기준시점의 가격( $p_0$ )으로 구입한다면, 물량변동을 나타내는 물량지수( $I_q$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_q = \frac{P_0 q_t}{P_0 q_0}$$

(예 4) 다음은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변동된 경우를 가정하자. 가격지수와 물량지수를 구해보자.

	2010년		2015년		비율	
	가격(원)	물량(개)	가격(원)	물량(개)	(가격)	(물량)
피자	20,000	6	25,000	7	1.25	1.17
콜라	5,000	4	5,500	8	1.10	2.00
비용	140,000		219,000		1.56	

2015년에 피자와 콜라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지수는 다음과 같다.

$$\text{2015년의 비용지수} = \frac{(25,000 \times 7) + (5,500 \times 8)}{(20,000 \times 6) + (5,000 \times 4)} \times 100 = 156.4$$

2015년의 구입비용은 2010년에 비해 56.4%가 증가했다. 그렇다면 물량 또는 가격은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지 어떻게 측정하여야 할 것인가?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다.

- 가격변동을 보기 위하여 물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 가격지수
- 물량변동을 보기 위하여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 물량지수

앞의 예에서 기준시점을 2010년으로 하였으나, 기준시점을 최근 시점인 2015년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기준시점의 물량이나 가격을 과거의 한 시점으로 고정하는 경우를 라스파이레스(Laspeyres)식이라 하며, 최근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경우를 파슈(Paasche)식이라 한다. 즉, 파슈식 가격지수는 최근 시점인 2015년의 물량이 2010년에도 동일물량(q2015)으로 적용되며, 물량지수는 2015년의 가격이 동일(p2015)하게 적용된다. 이들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준시점 2010년 Laspeyres 식	기준시점 2015년 Paasche 식
가격지수 :	$\frac{25,000 \times 6 + 5,500 \times 4}{20,000 \times 6 + 5,000 \times 4}$	$\frac{25,000 \times 7 + 5,500 \times 8}{20,000 \times 7 + 5,000 \times 8}$
가격변동 (물량일정)	= 122.9	= 121.7
물량지수 :	$\frac{20,000 \times 7 + 5,000 \times 8}{20,000 \times 6 + 5,000 \times 4}$	$\frac{25,000 \times 7 + 5,500 \times 8}{25,000 \times 6 + 5,500 \times 4}$
물량변동 (가격일정)	= 128.6	= 127.3

### 지표(indicator)와 지수(index)

지표는 인구 · 사회 · 경제현상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량화한 자료로 인구수, 생산량, 판매량 또는 지수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지표는 금액 또는 다른 단위의 양을 나타내고 있어 지표간의 상대적 비교 또는 다른 지표 간 질적인 크기의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와 질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사용하게 된다.

## ㉑ 총합지수(aggregated index)

지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가격과 물량 정보를 통합해서 보다 적은 수의 가격과 물량 정보로 변환하는 것이다. 즉, 경제 분석자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쌀, 고기, 생필품, 자동차 등과 같은 각종 소비재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라고 하면 여러 개의 개별지수를 종합한 총합지수를 의미한다. 총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서비스업활동지수와 같이 개별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생성된 지수이다. 이때 총합지수를 만들기 위한 개별지수를 하위지수(sub-index) 또는 구성지수(component index)라고 한다. 총합지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총합지수} = \sum \text{하위지수} \times \text{하위지수의 가중치}$$

총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benchmark), 가중치(weight) 그리고 산식(equation)이 필요하며, 이를 지수의 3요소라고 한다. 총합지수 작성을 앞의 (예 4)를 이용하여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i = \text{피자, 콜라, } \dots, n$ 이며,  $w_{0i}$ 는 0시점의 가중치,  $w_{ti}$ 는  $t$ 시점의 가중치이다.

	Laspeyres 식	Paasche 식
가격지수	$LI_p = \frac{\sum p_{ti}q_{0i}}{\sum p_{0i}q_{0i}} = \sum w_{0i} \frac{p_{ti}}{p_{0i}}$	$PI_p = \frac{\sum p_{ti}q_{ti}}{\sum p_{0i}q_{ti}} = \frac{1}{\sum w_{ti}(p_{0i}/p_{ti})}$
물량지수	$LI_q = \frac{\sum p_{0i}q_{ti}}{\sum p_{0i}q_{0i}} = \sum w_{0i} \frac{q_{ti}}{q_{0i}}$	$PI_q = \frac{\sum p_{ti}q_{ti}}{\sum p_{ti}q_{0i}} = \frac{1}{\sum w_{ti}(q_{0i}/q_{ti})}$

$$\text{여기서 } w_{0i} = p_{0i}q_{0i} / \sum p_{0i}q_{0i} = V_{0i} / \sum V_{0i}, \quad w_{ti} = p_{ti}q_{ti} / \sum p_{ti}q_{ti}$$

지수의 기준시점은 주가지수처럼 단일시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통계는 1개월 또

는 1년간의 기간을 선택하여 기간 중의 평균값을 100으로 하여 기준시점의 값으로 한다.

총합지수는 개별 구성지표를 단순히 산술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산술평균한 총합지수는 개별 구성지표(또는 구성계열)의 중요도를 무시하게 되므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구성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총합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가중평균 총합지수라고 한다. 대부분 경제지수의 가중치는 부가가치 또는 매출액 등을 이용하긴 하나, 총합하는 지수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제지수의 예를 들면,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2010년 기준의 업종별 부가가치를,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2010년 기준 가계동향조사의 481개 품목의 소비지출액 비중을 가중치로 하고 있다.

총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은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파슈식(Paasche) 및 피셔식(Fisher)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준시점의 가중치 구조를 이용하는 라스파이레스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때 가중치 부여방법은 기준시점의 가중치를 고정하고 매 시점에 반영하는 고정가중치와 매 시점에서 직전 시점의 가중치 구조를 반영하는 연쇄가중치(연쇄지수) 부여 방법이 있다(김민경 외 2인, 2013).

연쇄지수는 고정가중치 방식과는 달리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매 시점의 지수를 작성한 후, 최초의 기준 시점과 연승(連乘)하여 작성한다. 즉, 전기 시점을 기준으로 각 시점의 연환지수(linked index)를 작성하고, 이어서 연환지수를 최초의 시점부터 누적 연승하여 작성한다. 기준년 고정가중치 부여방식은 기준시점(0시점)과 비교시점(t시점)을 바로 비교함으로써, 중간시점의 가중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현실 반영도가 떨어져 매 5년(또는 2~3년)마다 가중치를 변경하는 기준년 개편을 한다. 그러나 연쇄법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사이의 중간시점에서 변화된 가중치가 새로 기준시점이 되는 준거시점(reference period, base period)에서 변화된 구조를 계속 반영됨으로서 현실 반영도가 기준년 고정가중치보다 높은 장점이 있다. 다음은 고정가중치와 연쇄가중치 부여방법의 장단점이다.

<표 1-1>  
고정가중치와  
연쇄가중치의  
장·단점

	고정가중치	연쇄가중치
장점	- 총량과 구성지표간 가법성 성립 - 통계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움 - 실무적으로 자료수집과 계산이 쉬움	- 현실 반영도가 높음 - 기준년 개편 필요성이 낮음 - 기준년 변경시 증가율 불변
단점	- 현실 반영도가 낮음 - 매 5년마다 기준년 개편 필요 - 기준년 변경시 과거 증가율이 바뀜	-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음 - 통계 이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움 - 많은 기초자료와 계산과정이 복잡

다음은 연쇄가중치 부여방법에 의해 작성되는 연쇄 물량지수 산식이다.

**연쇄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LQ_t^c$ :**

- 연환지수  $LQ_{t,t-1} = \frac{\sum p^{t-1}q^t}{\sum p^{t-1}q^{t-1}} = \frac{\sum V^{t-1} \times (q^t/q^{t-1})}{\sum V^{t-1}}$ , 여기서  $V^{t-1} = p^{t-1}q^{t-1}$
- 연쇄지수  $LQ_t^c = \frac{\sum p^0q^1}{\sum p^0q^0} \times \frac{\sum p^1q^2}{\sum p^1q^1} \times \dots \times \frac{\sum p^{t-1}q^t}{\sum p^{t-1}q^{t-1}} = LQ_{10} \times LQ_{21} \times \dots \times LQ_{t,t-1}$

**연쇄 파쉐 물량지수  $PQ_t^c$ :**

- 연환지수  $PQ_{t,t-1} = \frac{\sum p^tq^t}{\sum p^tq^{t-1}} = \left[ \frac{\sum V^t \div (q^t/q^{t-1})}{\sum V^t} \right]^{-1}$ , 여기서  $V^t = p^tq^t$
- 연쇄지수  $PQ_t^c = \frac{\sum p^1q^1}{\sum p^1q^0} \times \frac{\sum p^2q^2}{\sum p^2q^1} \times \dots \times \frac{\sum p^tq^t}{\sum p^tq^{t-1}} = PQ_{10} \times PQ_{21} \times \dots \times PQ_{t,t-1}$

# 1-4. 경상금액과 불변금액

## 학습목표

- 경상금액과 불변금액에 대해 알아본다.

경제주체인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한 제품을 화폐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삼성이나 현대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금액단위인 생산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액은 생산한 제품의 물량(대수)에 생산한 당해년의 제품단가인 가격을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액은 물량이나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결정이 된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금액(Value)} = \text{물량(Quantity)} \times \text{가격(Price)}$$

**(예) 어떠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2010년과 2015년이 다음과 같았다고 하자.**

	2010년(A)	2015년(B)	비율(B/A)
생산 대수	100	80	0.8
1대당 가격(만원)	1,000	1,500	1.5
생산액(만원)	100,000	120,000	1.2

자동차 생산공장의 2015년 생산액은 12억원으로 2010년의 10억원보다 1.2 배 증가하여 생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산량인 자동차 생산 대수를 보면 2010년의 100대보다 감소한 80대로 생산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액이 증가한 것은 1대당 가격이 \*1.5배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액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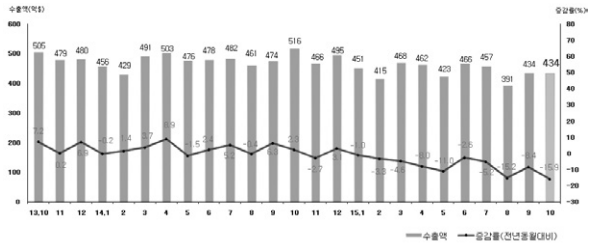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하에서 정확한 경제 분석을 위해서는 금액자료 뿐만 아니라 시장에 공급되고 소비되는 생산량, 소비량 등 물량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즉, 경제 지표 또는指數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하므로 가격요인을 통제하고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격요인이 포함된 지표를 경상 또는 명목(nominal), 당해년 가격(at current prices)이라 한다. 한편, 가격요인이 제외된 지표를 불변 또는 실질(real), 기준년 가격(at constant year prices) 혹은 연쇄가격(at chained xxxx

year prices)이라 하며, 실질금액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ext{실질금액} = \frac{\text{경상금액}}{\text{가격(또는 deflator)}} = \frac{p_t q_t}{p_t / p_0} = p_0 q_t$$

즉, 실질금액은 매 시점마다 변하는 물량에 일정한 값을 갖는 기준시점의 가격을 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금액 및 불변지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증감률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하며, 명목금액 및 경상지표는 전체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 당해년의 산업구조, 지출구조 분석 등에 이용된다.

**(예) 다음은 2015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수출입동향)의 일부이다. 최근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수출액의 감소는 중국, 미국 등으로의 수출 부진에 원인이 있으나, 수출액은 (물량×단가)에 의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수출액 감소 요인을 보면, 다음 표에 의해 수출단가 하락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출물량증감률과 수출단가증감률을 합하며, 대략 그림표의 수출 증감률이 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물량 증감률(%)	5.2	-1.0	6.1	-0.8	-3.1	10.8	7.7	3.1	5.3	-9.4
수출단가 증감률(%)	-5.9	-2.4	-10.1	-7.3	-8.2	-12.1	-12.0	-17.7	-13.0	-7.1
합	-0.7	-3.4	-4.0	-8.1	-11.3	-1.3	-4.3	-14.6	-7.7	-16.3

☞ 경제분석 시 사용하는 자료가 명목(경상)자료인지 실질(불변)자료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도별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명목(경상)자료, 성장정도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실질(불변)자료를 사용한다.



## 1-5. 증감률

### 학습목표

- 전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비 증감률을 알아본다.
- 기여율과 기여도에 대해 알아본다.

증감률은 어떠한 통계의 기준시점에 대한 비교시점에서의 변동률을 의미한다. 기준 시점에 따라 전월(기)비, 전년동월(기)비, 전년비 증감률 등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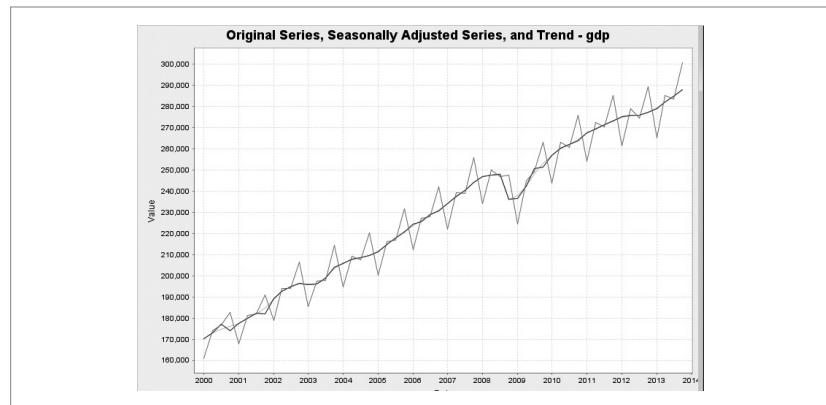
$$\bullet \text{ 전월비}(\%) = \frac{\text{금월} - \text{전월}}{\text{전월}} \times 100$$

$$\bullet \text{ 전년동월비}(\%) = \frac{\text{금월} - \text{전년동월}}{\text{전년동월}} \times 100$$

$$\bullet \text{ 전월차}(\%p) = \text{금월 증감률} - \text{전월 증감률}$$

전월비(전기비)는 원계열에 계절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계절성이 있는 경우 계절조정을 한 계절조정계열(Seasonally Adjusted Series: SA)의 증감률을 구해야 한다. 계절성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원계열의 그래프를 그려 매년 동일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상승이나 하락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1-3]  
원계열,  
계절조정계열의  
그래프



계절성은 12개월 혹은 4분기 주기로 상승과 하락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절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X-12-ARIMA, X-13AS, TRAMO-SEATS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미국 Census Bureau, 2015).

개별 구성지표에 의해 작성되는 총합지표의 경우, 각 개별 구성지표가 총합지표의 증감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지표가 기여율과 기여도이다. 기여율이란 총합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지표가 전체 증감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출방법은 각 개별 구성지표 증감분의 총합 지표의 증감분에 대한 백분비이다. 한편, 기여도는 개별 구성지표가 총합지표의 증감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타냄으로써, 어느 개별 구성지표가 총합지표의 증감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보는데 유용하다. 이때 일반적으로 개별지표의 증감 기여도 합은 총합지표의 증감과 일치한다. 총합지표의 기여율과 기여도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Y$ 를 총합지표  $X_i$ 를 개별 구성지표라고 하자.

$$X_i \text{의 증감률 기여율}(\%) = \frac{X_i \text{의 증감액}}{Y \text{의 증감액}} \times 100, \text{ 여기서 } Y = \sum X_i$$

$$X_i \text{의 증감률 기여도}(\%p) = Y \text{의 증감률} \times X_i \text{의 증감률 기여율} \\ = \frac{X_i \text{의 증감액}}{\text{전기의 } Y} \times 100$$

**(예) 다음은 통계청에서 발표(\*15.10.30일)된 산업활동동향의 전산업생산 지수이다. 9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공공행정은 12.1%, 건설업은 4.9%, 제조업이 1.9% 증가하여 공공행정이 전산업생산지수 증가를 주도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일까?**

	'14.3/4	9월	'15.2/4	3/4 <sup>a</sup>	7월 <sup>b</sup>	8월 <sup>c</sup>	9월 <sup>d</sup>	기여도 <sup>e</sup>
전산업생산지수 (계절조정계열)	106.1	107.4	106.1	110.1	109.0	109.3	111.9	-
· 전 월(기) 비	0.5	-0.7	-0.3	1.9	0.6	0.3	2.4	-
광 공 업	0.1	0.1	-0.9	1.5	-0.3	0.2	1.9	0.61
제 조 업	0.1	-0.2	-1.0	1.5	-0.4	0.3	1.9	0.58
건 설 업	-2.7	-4.1	-2.7	7.4	0.4	2.6	4.9	0.30
서 비 스 업	0.9	-0.2	-0.1	1.4	1.8	0.4	1.2	0.64
공 공 행 정	2.8	-6.5	4.1	1.8	-4.9	-2.3	12.1	0.77

기여도를 구해보면, 공공행정은 전월에 비해 12.1%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 지수 2.4% 증가 하는데 0.77%p, 서비스업은 0.64%p, 광공업 0.61%p 기여하여 공공행정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계산은 다음의 EXCEL 표를 참고할 수 있다.

	A	B	C	D	E	F	G	H	I	J
1	산업별 지수	가중치	6월	7월	8월	9월	증감률	증감	기여율	기여도
2	전산업생산지수	100	108.4	109.0	109.3	111.9	2.38	2.60	23.6%	0.61
3	광공업	33.2	107.6	107.3	107.5	109.5	1.86	2.00	25.6%	0.61
4	건설업	6.5	98.5	98.9	101.5	106.5	4.93	5.00	12.4%	0.30
5	서비스업	53.7	109.3	111.3	111.8	113.1	1.16	1.30	26.9%	0.64
6	공공행정	6.6	114.1	108.5	106.0	118.8	12.08	12.80	32.5%	0.77
7		100.00					H3/H2*B3	G32*H3/H2*83 or G32*TB		
8										
9									97.32	2.32
10										

- 경제성장률은 연간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파악하는데, 전기대비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므로 미국 등에서는 전기비를 4제곱한 연율(연간 성장률)을 이용하고 있다.

$$\text{전기비 연율}(\%) = \left[ \left( \frac{\text{계절조정 } GDP_t}{\text{계절조정 } GDP_{t-1}} \right)^4 - 1 \right] \times 100$$

- 전기비 연율은 해당 분기(월)의 증감률이 향후 1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변동 폭이 큰 나라에서는 연간성장률의 변동 폭을 키우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연율을 사용하지 않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로 연간 성장률을 파악하고 있다.



### 2-1. 주요 연간 경제통계

#### 학습목표

- 주요 연간 경제통계 조사에 대해서 알아본다.

경제통계는 주로 생산주체인 사업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과 이들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 기계·장비 등을 설치하는 건설·설비 등에 대한 투자활동을 나타낸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제활동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제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직접 조사 대상처를 방문하거나 전화·FAX·인터넷 등과 같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초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보고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통계는 작성주기로 볼 때 크게 연간통계와 월간통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간통계의 경우 월간통계보다 작성주기가 길어 속보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월간통계보다 많은 수의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IME, 2001). 일반적으로 연간통계는 산업의 구조 및 지역적인 분포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며, 월간통계는 생산, 소비, 물가 등의 변동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기 위해 이용된다.

#### 1 전국사업체조사

전국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establishment)

단위의 조사이다. 조사목적은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다른 경제통계 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중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간이 판매상 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유·무형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단위를 말한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항목은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체에 대한 기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2015년).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여기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을 말하며, 사업체에서 무엇을 가지고(원재료, 영업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주요 영업, 생산 활동), 생산·제공(최종 재화, 용역)하는지 질문을 하여 사업체가 종사하는 산업을 분류한다. 작성되는 통계표는 위의 조사항목에 의하여 전국과 17개 시도(세종시 2012년 기준부터 포함)에 대해서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공표된다.

<표 2-1>  
전국사업체조사의  
공표내용

구분	내용
종사자 규모별(1~4인, 5~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 구분별(단독사업체, 본사·본점 등, 공장·지사(점)·영업소), 조직형태별(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종사자지위별(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종사자수
대표자 성별(남녀)	사업체수
대표자 연령대별(20세 미만, 20~29세, 30~39세, ..., 60세 이상)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의 고용주와 상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종사자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종사자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의 종사자가 조사되지 않기 때문이다(통계청,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2015. 9.30)). ① 농림어업부문의 가구단위에 소속된 종사자, ②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가 고용한 종사자(대리운전, 차량이동 판매, 포장마차, 노점상, 행상, 사채업 등), ③ 제조업 내 가내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 ④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보모, 파출부, 가사운전자, 정원사, 가정교사 등) ⑤ 국방 및 국가기밀보호 관련 시설에 소속된 종사자 등

## 2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에서 그 동안 실시하였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하여 2011년에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처음 실시하였다. 경제총조사는 0 혹은 5자로 끝나는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주기로 직접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목적은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하여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업의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 및 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 국민소득 및 산업연관표 등의 국민계정통계, 지역소득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각종 월간 및 연간통계의 기준점(Benchmark), 소지역단위 통계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 중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산업이다. 조사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공통항목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산업에 따라 적용되는 특성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항목은 사업체의 명, 소재지, 창설연월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과 조직형태(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체 구분,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항목과 동일하다) 및 종사자수, 전자상거래 여부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사업체의 유·



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매출액 및 영업비용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별 특성항목은 산업에 따라 다음과 같다.

특성항목			
산업대분류	조사항목		
농림어업 등 <sup>1)</sup> (A, E, K, L, S)	• 영업기간		
광업 · 제조업(B, C)	•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 조업기간	•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재고액	• 주요 사용 원재료명
	• 주요 생산공정	• 원재료로 쌀 소비여부	
건설업(F)	• 영업기간	•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 신재생에너지 공사실적
도 · 소매업(G)	• 영업기간	• 사업체 건물(매장) 연면적	• 상품매입처별 구성비
	• 상품판매처별 구성비	• 체인점 가입여부	
운수업(H)	•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 육상운송 차량 보유 현황	• 창고보유 및 보관실적
	• 연료비		
숙박 · 음식점업(I)	• 영업기간	• 사업체 건물 연면적	• 객실 및 객실 현황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J)	• 영업기간	• 연구 · 기술직종사자 현황	• 직능별 종사자수
전문 · 과학 · 기술 (M), 사업시설 · 사업지원(N)	• 영업기간	• 연구 · 기술직종사자 현황	
교육서비스업(P)	• 영업기간	•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 외국어 전용 강좌
보건 · 사회복지(Q)	• 영업기간	• 직능별 종사자수	
예술 · 스포츠 · 여가(R)	• 영업기간	• 이용인원(고객) 수	
본사조사표 (기업체단위)	• 결산 마감월	• 기업 내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사업실적
	• 국내 사업체 명부		

1) 농림어업 등: 농림어업(A),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 환경복원(E), 금융보험(K), 부동산 · 임대(L),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개인(S)

출처: 통계청,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보고서(2012)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잠정치는 2011년 12월 말에 공표되었으며, 확정치는 2012년 4월 말에 공표되었다.『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보고서』는 전국편, 지역편, 특성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청 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국편은 산업 세세분류(5자리), 지역편은 16개 시·도 단위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편의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경제총조사의 전국편  
수록 내용

분 류	내 용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
산업별×조직형태별 산업별×종사자규모별 산업별×매출액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영업비용
산업별×조직형태별×본·지점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산업별×종사자규모별×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인건비
산업별×종사자규모별×정기휴무일수별	사업체수

지역편(시·도)의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경제총조사의 지역  
(시·도)편 수록 내용

분 류	내 용
산업세분류, 산업중분류×조직형태별, 산업중분류×종사상규모별, 산업중분류 ×매출액규모별, 산업소분류× 건물연면적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영업이익
시군구×산업중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시도×산업중분류×조직형태별× 본지점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시도×산업중분류×종사상 지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인건비

특성편은 산업 세세분류로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해당산업의 특성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어 있다.

**(예) 다음은 서울시 소매업의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김범식, 2013) 예이다.**

서울시 전체 사업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업종은 소매업이다. 특히 골목슈퍼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매업은 서민 경제활동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의 상권 진출 확대, 소비패턴 변화, 신입태의 등장으로 영세소매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매업 자생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소매업 특징을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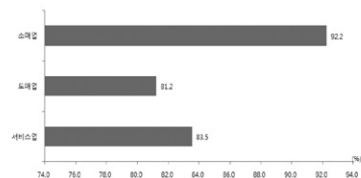


그림 2. 2010년 서울시 소매업과 도매업, 서비스업의 명세성 비교  
출처: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소매업 분야에서 영세사업체(종사자 5인 미만) 비중은 92.2%로 매우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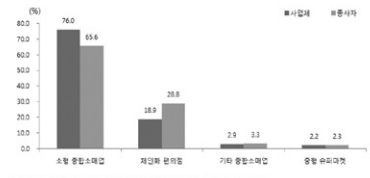


그림 3. 2010년 서울시 영세 종합소매업의 사업체 종사자 업종별 분포  
출처: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

영세 종합소매업 중 76%가 소형종합소매업, 영세 종합소매업 종사자 65.6%가 소형종합소매업 종사

### 3 광업·제조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는 1955년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나, 그 후 한국산업은행으로 이관되어 2~3년 간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1970년 산업통계 정부일원화 조치로 통계청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었다(김민경 외 2인, 2013).

현재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광업(B)과 제조업(C)에 대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포괄범위를 보면, 2008년 기준 조사부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으나, 2006년 기준까지는 종사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를 전수조사하였다. 그리고 2007년 기준 조사에서는 종사자 수가 5~9인 사업체는 표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는 전수로 조사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의 조사목적은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의 각종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는 제조업 및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을 포함하는 광공업 월간 동태조사 등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수 개편, 연간 국민소득통계(GDP) 및 지역소득통계(GRDP)의 추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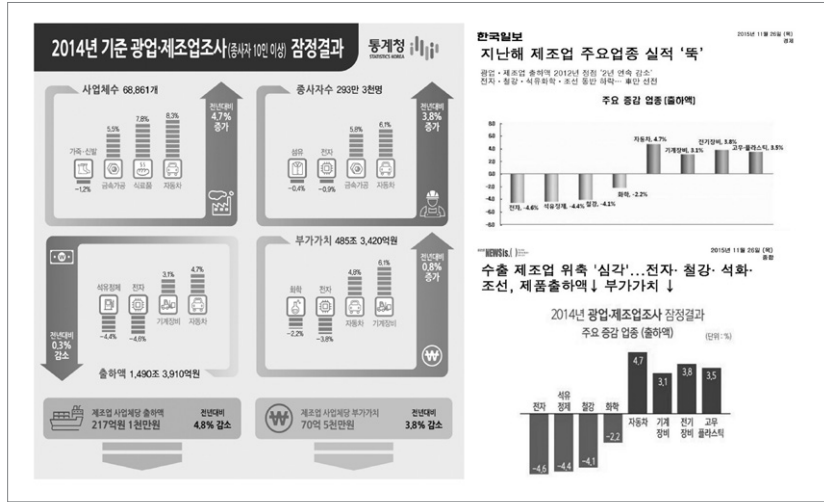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재고액 등이다.

최근 3년('13~'15년)의 잠정결과 공표는 11월 말경이며, 확정 자료는 12월 말에 국가통계포털 및『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에 수록된다. 전국단위의 산업분류는 광업 및 제조업의 세세분류(산업코드 5자리), 시·군·구단위는 산업 중분류(산업코드 2자리)까지 하였다. 다만, 어떠한 지역에 소수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가 식별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가 된다.『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는 전국편과 지역편이 있다. 전국편에는 산업편, 품목편, 기업체편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지역편은 17개 시·도(세종시는 2012년부터)에 대해서 산업별로 작성되어 있다.

산업편은 개별 사업체의 품목별 출하액을 산업중분류로 합산하여 그 중 출하액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사업체의 산업중분류로 결정한다. 한편 산업소(세·세세)분류는 기 결정된 산업 중(소·세)분류 내에서 출하액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여 사업체수 및 출하액을 집계한다. 품목편은 생산되는 제품의 품목별로 모든 생산업체의 사업체수와 해당품목의 출하액을 집계한다. 예를들어, 한 사업체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출하를 하는 경우 산업편에서는 1개 사업체로 집계한다. 이때 산업분류는 산업 중(소·세)분류상 출하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의 산업분류에 나머지 품목의 출하액을 모두 합산하여 집계한다. 품목편에서는 제품별로 각각 사업체수와 출하액을 집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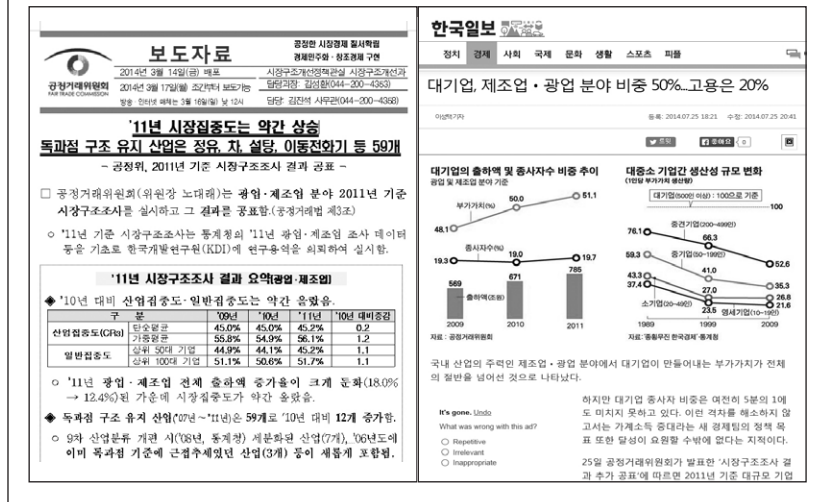
다음은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2015.11.26일, 통계청)와 언론기사이다.

[그림 2-2]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제조업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2015.11.26  
일, 통계청)와 언론기사



'14년 기준 광업·제조업(중·소기업 10만 이상) 사업체수는 68,861개, 종사자수는 293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4.7%(3,119개), 3.8%(10만 8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예) 다음은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이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4.3.14일)와 한국일보 기사(2014.7.25일)이다.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민소득통계의 부가가치에는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해 쓰인 광고선전지, 접대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광업·제조업 조사의 센서스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주요 생산비만 제외하고 있어, 국민소득통계의 부가가치와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국민소득통계의 부가가치 = 총산출액 - 중간 투입액
- 광업 · 제조업조사의 부가가치 = 생산액 - 주요 중간투입비 (원재료비 + 전력비 + 용수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연료비)
- 여기서 생산액 = 출하액 + 재고액(완제품 재고증감액 +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증감액)

광업 · 제조업조사는 광업 또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활동을 하는 겸업 사업체의 경우, 광업 또는 제조업 부분의 매출액, 종사자수 등을 분리하여 조사하므로 다른 조사와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4 기타 연간조사

이외의 연간 경제통계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등이 있다. 또한 국세청 등 행정통계를 이용하는 기업생멸통계와 기업경영분석 등이 있다.

서비스업조사는 1988년부터 통계청에서 조사대상 산업의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 ·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대상 산업의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8만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전국의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에 종사하는 사업체이다.

서비스업조사의 조사항목은 산업별 공통항목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영업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이며, 특성항목으로는 직능별 종사자수(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 연구원, 시스템엔지니어, 컴퓨터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전산장비 보유대수, 무형자산 보유건수, 이용인원(고객)수,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등이다.

한편 도소매업조사는 1988년부터 통계청에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산업구조 및 분포와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수립, 연구 및 경영계획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도매 및 소매업(G)’과 ‘숙박 및 음식점업(I)’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10만개 사업체이다.

도소매업조사의 조사항목은 산업별 공통항목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영업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사업체 건물 연면적,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이며, 특성항목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매장 연면적, 상품 매입처별 구성비,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상품 판매유형별 구성비, 판매관리기기 보유여부,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편의시설개수(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객실(석)수, 객실 이용건수, 매출형태별 수입액(호텔업) 등이다. 여기서 매출형태별은 호텔업에서 객실료 수입액, 음식료 수입액, 기타영업 수입액을 말한다.

최근 3년(‘13~’15년)의 서비스업조사와 도소매업조사의 공표는 12월 말일 경이며, 양 조사의 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서비스업조사보고서』, 『도소매업조사보고서』” 등에 수록되어 있다. 조사결과는 전국 및 17개 시·도(세종시는 ‘12년 \*기준 자료부터) 단위로 산업별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산업의 특성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기업체 단위의 조사인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와 행정통계를 이용하는 기업생멸통계와 기업경영분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국가승인통계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 2-2. 주요 월별 경제동향 통계

### 학습목표

-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부문에 대한 월별 경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살펴본다.

표본 규모가 큰 연간 통계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일매일 변화하는 실물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표본 규모가 작으나 시의성 확보가 용이한 월단위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절에서는 경제부문을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물가, 대외거래로 나누어 월별 경제동향통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 1 생산

생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는 산업분류에 따라 광업·제조업동향조사와 서비스업동향조사가 있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 광공업 생산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 등을 작성하여 국내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한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약 8,000여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생산실적·출하·재고, 생산능력 등과 사업체의 가동률, 월말 종사자 수, 조업일수 등이다. 선박 및 전동차의 경우에는 당월 수주량, 당월 진척량, 수주잔량, 당월완성인도(톤수, 척) 등을 조사한다. 대표품목은 2010년 기준의 광공업부문 총생산액의 1/5,000이상 되는 품목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포함하는 613개 품목으로 대표되는 2010년 생산지수 기준 84.5%이다. 업종별 지수에서 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가중치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등의 결과를 기초로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부가가치 전체를 10,000으로 한 업종별,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사용한다. 지수작성은 현재 2010년 월별 생산량을 평균하여 기준물량을 설정하였으며,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총·대·중·소분류 지수의 계절조정지수는 세분류업종을 직접 계절조정한 지수를 쌓아 올라가는 간접법을 사용한다.



• 원지수: 
$$\frac{\Sigma(\text{품목지수} \times \text{품목가중치})}{\Sigma \text{품목 가중치}}$$

• 계절조정지수

세분류업종 지수(직접법) = 원지수 ÷ 계절인자 ÷ 사전인자 ÷ 조업일수인자

총·대·중·소분류 지수: 
$$\frac{\Sigma(\text{업종별 계절조정지수} \times \text{업종가중치})}{\Sigma \text{업종 가중치}}$$

여기서 계절인자, 사전인자, 조업일수인자는 매년 초에 X-13ARIMA-SEATS 방법에 의해 산출한다. 공표는 익월말에 “XX월중 산업활동동향”에 원지수 및 계절조정지수를 공표하며, 익익월초에 『광공업생산동향』월보가 발간된다.

서비스업동향조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대분류에 속하는 전국의 약 16,500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환경복원업은 제외)’, ‘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이다. 서비스업부문의 조사항목은 월간 매출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특성항목 등이며, 도매업부문은 월간 영업일수, 월말 종사자수, 월간 상품판매액(전월, 금월), 수출액, 국내 판매액, 월말 상품재고액(전월, 금월) 등이다. 한편 소매업부문의 조사항목은 월간 영업일수, 월말 종사자수, 매장면적, 월간 상품판매액(전월, 금월), 상품군별 금월 판매액, 월말 상품재고액(전월, 금월) 등이다. 총합지수인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는 2010년 경제총조사의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한다. 공표되는 지표는 경상지수와 불변지수, 계절조정지수이다. 이때 경상지수는 월별 매출액을 2010년 월별 평균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불변지수는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다. 계절조정지수는 광업·제조업조사와 동일하다. 조사결과는 익월말에 “XX월중 산업활동동향”에 업종별 생산지수의원지수 및 계절조정지수 등이 공표되며, 익익월초에 『서비스업생산지수』월보가 발간된다.

## 2 소비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비중(GDP의 50%)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는 가계측면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사업체측면에서는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소매업조사와 온라인쇼핑동향조사가 있다. 이들 조사들은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에 대한 모집단 자료 등 각종 경제·사회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약 9,000개 가구를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로 공표한다.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소매업 조사대상은 자동차 판매업 중 승용차 및 소매업의 약 2,700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월간 영업일수, 월말 종사자 수, 월간 상품판매액 등이다. 동 조사에 의해 상품군별, 소매업태별, 16개 시·도별(대형소매점에 한정) ‘소매판매액통계’가 작성된다. 소매업태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소매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무점포소매점(인터넷, 홈쇼핑 등)으로 분류된다. 인터넷쇼핑몰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지칭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온라인쇼핑동향조사는 온라인 쇼핑 운영업체 중 990개(연간거래액 대표도 98%, ‘2015년 10월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동향’보도자료, 통계청)를 매월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등이다. 두 조사는 매월 익익월 초에 “XX월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동향”에 소매판매액, 온라인거래액,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공표된다.

## 3 투자

일반적으로 실물투자는 크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대별되며, 경기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되는 속성이 있어 경기에 선행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경기동향조사'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이용자에게 국내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조사대상은 국내 건설공사에 참여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체에서 건설수주 부문과 기성액 부문으로 나눈다. 건설수주 조사대상은 전전년「건설업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기성액 순위 상위 54%가 되는 기업체이다. 조사내용은 발주자(공공, 민간) 및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이다. 건설기성의 조사대상은 전전년「건설업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기성액 순위 상위 50%가 되는 기업체이다. 조사내용은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 건설기성액이다. 조사통계 이외의 행정·보고통계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가 있다. 이들 통계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매월 작성된다.

한편 설비투자는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기계수주동향조사에 의하여 국내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조사대상은「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중 설비용기계류 생산업체로, 전전년「광업□제조업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생산액 순위 상위 65%(15년 현재 168개 업체)가 되는 기업체이다. 조사내용은 수요자 및 기계종류별 수주액, 판매액, 수주잔고 및 내역 등이다. 조사결과는 익월 말 “산업활동동향”에 포함되어 발표된다. 이외에 기계류 및 운송장비 등 68개 부문의 재화 생산과 소비 등 재화흐름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비투자지수가 있다.

#### **4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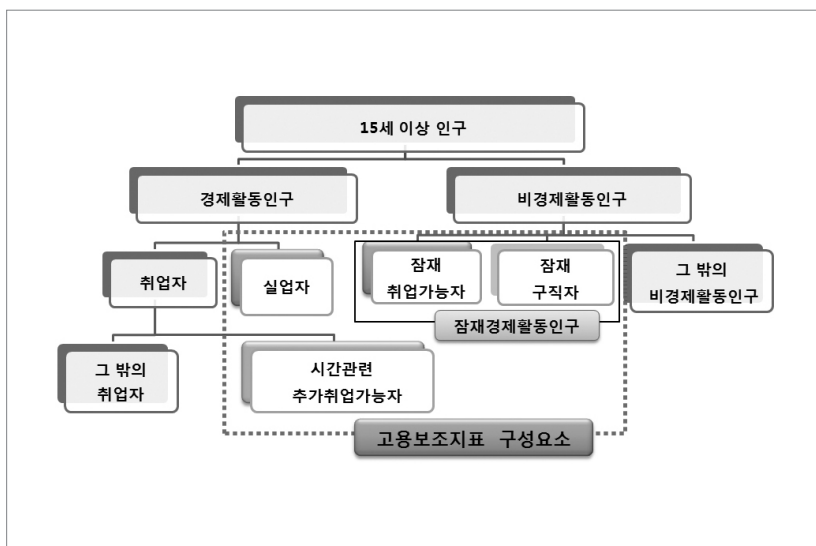
경제주체인 가계는 또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된다. 가계는 받은 임금으로 가계의 생계와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뿐만 아니라 저축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원천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업이 가계에 안정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은 국가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완전고용 달성은 경제성장(GDP),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과 함께 국가경제의 주요정책 목표이다(한승수, 1994).

고용통계는 가계측면과 사업체측면에서 작성될 수 있다. 2008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19장에서 “가계조사를 통한 고용

추정치는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나 근로시간을 조사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사업체조사는 자영업자와 기타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고 설명한다(경제통계국, 2013).

사업체측면의 조사는 비농업의 전 산업(정부기관 포함)의 종사자 1인 이상 약 25,000개 표본사업체를 매월 조사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가 있다. 조사항목은 매월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수, 입·이직 등의 노동이동,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항목이다. 조사결과는 매월 익월말에 'xx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로 공표된다. 한편 가계측면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가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 32,000 표본가구의 조사대상가구 내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으로, 현역군인, 사회복지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항목은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자의 인적 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매월 익월 중순에 'xx월 고용동향'으로 공표되며, 경제활동인구 수 및 참가율,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취업자 수 및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등이 공표된다. 여기서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15일이 포함된 1주일)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 다음 표는 고용동향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고용보조지표의 구성도이다.

[그림 2-3]  
고용보조지표의  
구성도



출처:  
통계청, 매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월보』,『경제활동인구연보』 및 매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5 물가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제품의 가격 및 서비스 요금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제각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모든 가격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일지라도 규격과 질에 따라 어떠한 것의 가격은 오르고 어떠한 것은 내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는 제각각이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그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가경제에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종합지표인 물가지수로 작성하여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수요와 공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가지수는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가계수지, 국민소득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경상지표를 불변지표로 변환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 사용된다.

물가지수는 크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있다. 이들 외에 한국은행에서 매월 수출입 품목을 대상으로 약 900여 개 사업체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출입물가지수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되는 '소비자물가조사'에 의해 작성된다. 소비자물가조사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37개 도시를 조사한다. 이때 조사대상처는 약 26,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 약 10,500개 임대가구이다. 481개의 품목은 '2010년 기준 가계동향조사' 결과, 1인 이상 농어를 제외한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소비지출 총액의 10,000분의 1이상이고, 동종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조사결과는 매월 익월 초 'xx월 소비자물가동향'에 총지수 및 지출목적별 분류, 특수분류(품목성질별, 신선식품지수, 생활물가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자가주거비용포함지수) 등이 공표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실시하는 '생산자물가조사'에 의해 작성된다. 생산자물가지수 조사의 대상품목은 국내 출하액이 모집단 금

액의 일정수준(상품 1/10,000, 서비스 1/2,000) 이상의 거래비중을 갖고 동종 제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가격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품목 총 886개(상품 784개, 서비스 102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매월 익월 17~20일경에 'xx월 생산자물가지수'에 공표된다.

## 6 대외거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수입하여 소비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역시 자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처럼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돈은 외국 돈과 서로 교환한다. 이처럼 재화, 서비스, 돈에 대한 국가 간 거래를 기록한 통계를 국제수지통계라고 한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통계는 서비스 및 금융거래까지 포함되나, 관세청의 무역통계는 재화의 수출입 거래만 포함한다.

국제수지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일정기간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시장가격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이고 IMF의 국제수지매뉴얼(BPM6: Balance of Payment Manual)에 따라 작성한다. 따라서 관세청의 무역(수출입)통계는 국제수지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상시점, 분류, 포괄범위 등이 조정된다. 경제적 거래는 상품, 서비스, 소득, 자본 및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대외원조 등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도 포함한다. 국제수지통계는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은행, 2014). 국제수지통계의 월별 잠정통계는 매월 익월초경 'xx월 국제수지(잠정)', 확정치는 익년도 12월 초경 전년도 확정치를 공표한다.

무역통계는 전국의 세관을 통해 보고된 재화의 수출입을 매월 작성한다. 보고항목은 재원별 및 형태별, 상품종류별, 상품별 및 국별 수출입, 농축수산물 수입동향(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지수 포함) 등이다. 보고결과는 매월 익월 중순에 총 수출입액, 품목별·지역별 수출입, 무역수지(=수출-수입) 등이 'xx월 수출입동향'으로 공표된다.

## 2-3. 국민계정 통계

### 학습목표

- 국민소득통계와 지역소득통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 국민소득통계와 지역소득통계의 차이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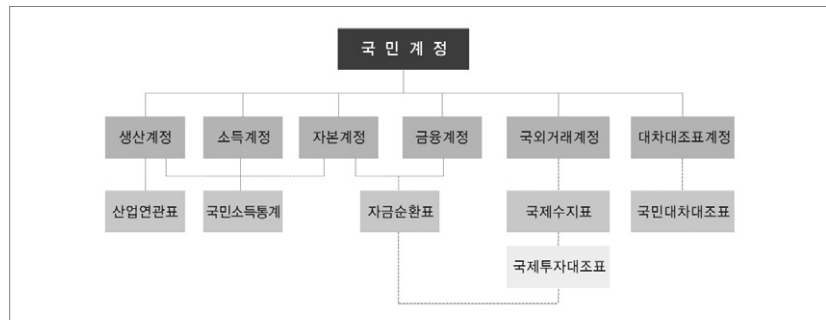
###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는 1957년부터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통계청 등 타 기관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를 이용하여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가공통계이다. 국민소득통계는 5개의 통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계정의 일부로 우리에게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로 잘 알려져 있다.

5개의 국민계정통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통계는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와 특정 상품이 어떤 상품의 생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는 소득의 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는 자금이나 부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은 금융거래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자금운용표이다. 국제수지표는 국외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흐름 내역을 기록한 통계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4개의 통계는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의 흐름(flow)을 기록한 것이다. 다음의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스톡(stock) 통계이다.

[그림 2-4]  
국민계정과 5대 국민계정통계와의 관계

출처:  
한국은행(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15, 한국은행)』





이들 5대 국민계정통계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와 사용을 나타내는 소득계정,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기록하는 자본계정,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금융계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를 기록하는 국외계정, 일정시점에서 경제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계정을 기본 체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지수 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과 같은 5개 경제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통계와 통계청의 지역소득통계는 2008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1년 및 분기) 한 국가의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및 해외 경제주체 간 경제활동을 소득 중심으로 파악하는 통계이다. 통계작성 목적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생산활동 및 경제성장의 추이를 추계하여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 경제적 측면의 국민 복지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작성범위는 전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지출 등 모든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추계한다.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산국민소득은 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하며,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분배국민소득은 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한다(<표 2-4> 생산·지출·분배 국민소득 형태 참조). 이들 국민소득의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는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15, 한국은행)』 제Ⅲ장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국민소득통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항목에 대하여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0년(지수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작성된다. 작성주기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생산국민소득) 및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국민소득통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으나,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통계, 자금순환통계 및 국제수지통계 등 국민계정은 연간으로 작성되고 있다.



<표 2-4>  
생산·지출·분배  
국민소득 형태

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어업</li> <li>• 광업</li> <li>• 제조업</li> <li>•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li> <li>• 건설업</li> <li>•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li> <li>• 운수 및 보관업</li> <li>• 금융 및 보험업</li> <li>• 부동산 및 임대업</li> <li>• 정보통신업</li> <li>• 사업서비스업</li> <li>• 공공행정 및 국방</li> <li>• 교육서비스업</li> <li>•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li> <li>•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최종소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li> <li>• 정부</li> </ul> </li> <li>② 총자본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li> <li>•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li> </ul> </li> <li>③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li> <li>④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li> <li>⑤ 통계상 불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용자보수</li> <li>② 영업잉여</li> <li>③ 고정자본소모</li> <li>④ 생산 및 수입세</li> <li>⑤ (공제)보조금</li> <li>⑥ 국외순수취요소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li> <li>•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li> </ul> </li> </ul>

국민소득통계는 분기의 경우, 속보치와 잠정치가 공표되며, 연간은 잠정치와 확정치가 공표된다. 분기 실질 국민소득통계의 속보치는 해당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분기 실질 및 명목 국민소득통계의 잠정치는 해당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국민소득(잠정)”으로 공표된다. 연간 국민계정통계는 잠정치는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확정치는 익년 3월에 공표된다.

## 2 지역소득통계

지역소득통계는 1985년부터 통계청에서 기존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를 이용하여 매년 작성하는 가공통계이다. 통계작성 목적은 지역경제의 순환과 구조를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실태를 나타내는 종합지표로 활용하고 국민경제에서의 각 지역경제의 위치를 파악과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각종 지역관련 정책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지역 내 산업구조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분배측면에서는 지역민의 소득분배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요소를 재분배할

수 있다. 또한 지출측면은 지역의 총수요 구성 요인을 파악하고 경제성장에 있어 각각의 기여율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수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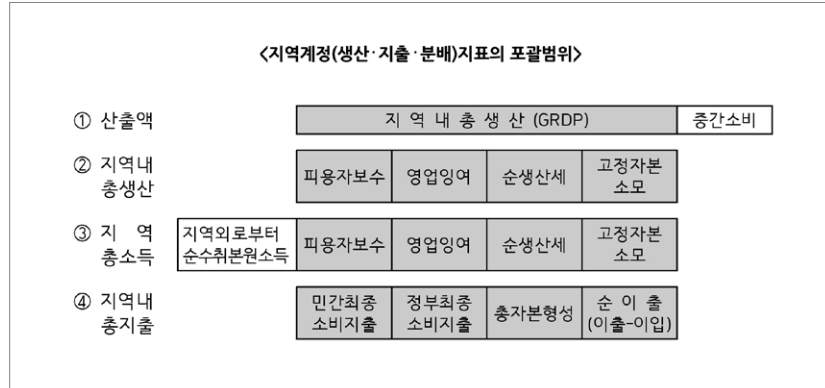
지역소득통계는 당초 생산측면인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만 작성하였으나, 지역내총생산으로 소비·투자와 물류, 소득분배 등의 분석이 불가능하여 지역의 경제구조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계정, 2009년에 분배계정을 개발·공표하였다. 지역단위는 2015년 현재 서울시,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9개 도를 포괄하는 16개 시·도로 작성되고 있다. 2012년 7월에 승격된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작성되고 있다. 최근 3년('13~'15년) 잠정결과 공표는 12월 23~24일이며, 확정자료는 다음연도 6~8월 경에 국가통계포털 및 지역소득통계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지역소득통계는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당해년 가격계열과 특정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년 가격계열이 작성된다. 지역소득을 당해년 가격이외에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지역소득 계열이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두 시점사이의 금액 수준비교만으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구조변동이나 지역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년 가격인 경상계열을 이용하나, 장기간에 걸친 물량수준 및 구조변동은 기준년가격 계열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소득통계는 UN이 권고하는 2008 국민계정체계(SNA)의 개념 및 작성방법에 따라 생산·지출·소득분배 측면에서 각각 추계된다. 생산계정인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년 동안 해당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의 합, 즉 부가가치이다. 최종생산물에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과 같은 유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용역)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은 생산측면에서 해당 시·도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나 생산하였는가를 추계한 것이다. 지출계정은 지출측면에서 해당 시·도에서 소비 및 투자에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추계하며, 분배계정은 생산 활동에 참여한 가계(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속한 지역에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추계한 것이다. 지역소득통계는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지역내총지출 등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2-5]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출처:  
통계청(2014), 『2013년 지역  
소득통계』보고서



지역내총생산(GRDP)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생산된 산출액에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원료비, 광고선전비 등 중간소비를 차감한 부가가치이다. 한편 지역총소득(Gross Regional Income: GRI)은 지역민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타 지역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받은 수취소득과 타 지역민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지불하는 지불소득의 차이인 지역의 순수취본원소득에 지역내총생산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국민계정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과 동일한 개념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GRI = GRDP + \text{지역의 순수취본원소득}$$

$$GNI = GDP + \text{국외 순수취본원소득}$$

지역내총지출은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생산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을 포함하는 총자본형성, 그리고 지역간 순이출입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총고정자본형성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비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2008 국민계정체계(SNA)에서 권고한 연구개발, 오락문화 및 예술품원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물탐사 및 평가 등과 같은 지식재산생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①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용자를 위하

여 납부한 사회보장기금·연금기금 및 보험 분담금을 포함된다. ②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자본에 대한 대가이며,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이다. ③ 순생산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④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고정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노후화, 경상적 진부화 또는 일상적인 사고,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소이다.

개념적으로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장하면 국내총생산(GDP)과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국내총생산과 지역내총생산은 차이가 있다. 이는 양 통계의 추계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국내총생산은 전국단위의 자료를 사용하나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명목금액을 실질화 또는 불변화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물가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 다음은 2013년 기준 지역총생산 잠정결과에 대한 기사내용이다.

**서울신문** 2014년 12월 24일 (수) 25면 3회

### 울산 1인당 소득 1916만원... 5년째 1위

인구 적지만 제조업 발달한 덕  
전남당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전국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5년째 부동의 1위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3년 지역소득'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시가 1916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였다. 인구는 적지만 현대차·현대중공업 등 제조업 등이 발달해 전체 소득이 많아서다. 서울(1860만원)과 부산(1618만원)도 전국 평균(1585만원)을 웃돌았다.  
1인당 개인소득이 적은 곳은 전남(1353만원), 강원(1370만원), 경북(1439만원) 등이었다.

인하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수·순천시와 김해·거제시가 두자리대

**Chosun** 2014년 12월 23일 (월) 2면

### 석유화학·조선 불황에 작년 전남·울산 생산·소득 줄어...충북은 증가 '반도체 호황'

석유화학업과 조선업의 부진으로 이들 업종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 전남과 울산의 지난해 생산과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양력상징물과 심정상징물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충북의 생산과 소득은 증가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3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GDP)은 1427조원으로 전년 보다 3.6%(50조원) 증가했다. 이 중 경기(8.7%)와 충북(7.1%), 강원(5.6%)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전남(-5.5%)과 울산(-4.4%)은 총생산이 줄었다.

지역내총소득(GRNI)은 1440조원으로 전년보다 3.5%(49조원) 늘었다. 충북(9.1%)과 제주(8.7%), 경기(8.7%)의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울산(-4.8%)과 전남(-4.1%), 경북(-1.6%)은 감소했다.

이윤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전남과 울산은 석유화학이나 조선이 주력 산업인데 관련 업종의 인원이 부진해 총생산과 총소득이 모두 감소했다"며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이 주력 산업인 충북의 경우 반도체 호황으로 생산과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경우 실질성장률도 -1.6%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개인의 총치분기능소득인 개인소득은 79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9%(30조원) 증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6.0%)과 충남(5.9%), 광주(5.3%)가 늘었고 울산(2.1%)과 경북(2.5%), 전남(2.7%)은 증가율이 저조했다.

16개 시도의 최종소비지출은 943조원으로 전년 보다 3.2%(29조원) 증가했다. 충남(5.3%)과 충북(4.6%), 전남(4.5%)의 증가율이 높았고 서울(1.3%), 부산(2.6%), 경북(2.8%)의 증가율은 낮았다.

시도별로 1인당 생산과 소득, 지출을 살펴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이 60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4524만원), 전남(3467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615만원으로

지역	1인당 개인소득
전국	1585만
울산	1916만
서울	1860만
부산	1618만
대전	1578만
제주	1564만
대구	1558만
경기	1539만
광주	1519만
충남	1502만
인천	1490만
강원	1474만
충북	1457만
전북	1439만
경북	1439만
경남	1370만
전남	1353만

(자료: 통계청)



■ 단원 01.

- 상품 A와 B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형 및 연쇄형 물량지수를 작성해보고, 지수간 차이를 비교해 보자.

		Q1	Q2	Q3	Q4
A	수량	100	105	108	112
	가격	15	16	18	20
	금액	1,500	1,680	1,944	2,240
B	수량	25	30	38	50
	가격	22	20	16	12
	금액	550	600	608	600
총 액		2,050	2,280	2,552	2,840



■ 단원 02.

- 2014년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별 차이를 보면, 취업자 수 차이는 563만명이다. 이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306만명, 상용근로자와 임시, 일용근로자가 포함된 임금근로자에서 345만명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를 차이 원인을 생각해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천명)			전국사업체조사(천명)		
종사상지위별	2010	2014	2010	2014	종사자지위별
• 계	23,829	25,599	17,647	19,970	• 계
비임금근로자 <sup>주1)</sup>	6,858	6,857	3,550	3,800	자영업주, 무급가족
임금근로자	16,971	18,743	13,229	15,292	<임금종사자>
*상용근로자	10,086	12,156	10,699	12,865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	6,885	6,587	2,529	2,427	임시 및 일용근로자
			868	878	기타 종사자 <sup>주2)</sup>

주1)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주2)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제공하고 일의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및 이외의 기타 종사자

■ 단원 01.

• 종합계열에 대한 연환지수와 연쇄지수

	Q1	Q2	Q3	Q4
연환(Las)	1.00	1.0902	1.0912	1.1034
Chain(Las)	100	109.02	118.97	131.28
연환(Paa)	1	1.0857	1.0768	1.0856
Chain(Paa)	100	108.57	116.91	126.92

	Q1	Q2	Q3	Q4
고정 라스파이레스	100.0	109.0	119.8	135.6
연쇄형 라스파이레스	100.0	109.0	119.0	131.3
연쇄형 파쇄	100.0	108.6	116.9	126.9

- 김경환 · 김종석 · 옴김(2009), 맨규의 경제학, 교보문고.
- 김민경 · 이궁희 · 이기재(2013), 국가통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범식(2013), 서울시 소매업의 특성분석과 자생력 강화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45호.
- 이궁희 · 이한식(2012), 경제통계분석의 원리와 응용.
- 한승수(1994), 경제정책론, 동아출판사.
- 경제통계국(2013), 2008 국민계정체계, 통계청.
- 경제통계기획과(2013), 국민계정체계의 이해와 개념, 통계청.
- 고용노동부(2015), “매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 서비스업동향과(2006), 계절조정이론과 X-12-ARIMA 사용 방법, 통계청.
- 통계교육원(2010), 통계와 정책, 통계청.
- 통계청(2012),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보고서(전국편, 지역편, 종합편), 통계청.
- 통계청(2015),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
- 한국은행(2010a), 2008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국은행(2010b),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국은행(201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한국은행.
- 한국은행(2015), 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국은행(2015), “매월 생산자물가지수” 보도자료.
- IMF(2001), Quarterly National Accounts Manual - Concepts, Data Sources, and Compilation, IMF.
- Triplett(1992), Economic Theory and BEA'S Alternative Quantity and Price Indexes, Survey of Current Business, 1992. 4.



# 5부

---

## 사회통계

## 5부. 사회통계

### 목차

학습과목의 개요 .....	247
<b>제1장. 사회통계의 의미</b>	
1-1. 사회통계의 의미 .....	249
❶ 사회통계의 배경 .....	249
❷ 사회통계는 어떠한 것인가 .....	250
1-2. 사회통계의 내용과 활용 .....	251
❶ 사회통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51
❷ 사회통계는 어떻게 얻는가 .....	253
1-3. 사회통계 방법 .....	254
❶ 사회통계의 작성 .....	254
❷ 사회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는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가 .....	254
❸ 사회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	255
<b>제2장. 사회통계와 사회조사</b>	
2-1. 사회조사의 필요성 .....	257
❶ 사회조사의 배경과 근거 .....	257
❷ 사회조사의 추진 .....	257
❸ 사회조사의 방법 .....	259
2-2. 사회조사의 내용 .....	260
❶ 사회조사의 내용 .....	260
2-3. 사회조사의 활용 .....	263
❶ 사회조사와 사회지표개발 .....	263
❷ 사회조사의 내용 .....	264
❸ 사회조사의 활용 .....	297
<b>제3장. 사회통계와 사회지표</b>	
3-1. 사회지표의 개념 .....	301
❶ 사회지표란 무엇인가 .....	301
❷ 사회지표의 내용 .....	302
❸ 사회지표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	303
3-2. 사회지표의 내용 .....	304
❶ 사회지표의 내용 .....	304
❷ OECD가 제시하는 사회지표의 내용 .....	304
3-3.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	309
❶ 사회지표체계개발의 역사 .....	309
❷ 사회지표의 내용 .....	310
❸ 사회지표의 활용 .....	312
<b>참고 자료</b> .....	314

## 사회통계 과목의 개요

---

**학습 목표** 사회통계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선수학습** 사회통계조사와 사회지표의 의미를 이해한다.

**주요 용어** 사회통계, 사회통계조사조사, 사회지표

**학습과목의  
내용요약** 사회통계의 의미를 설명한다.  
사회통계조사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한다.  
사회지표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지표란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제 1 장                    사회통계의 의미

## 1-1.                    사회통계의 의미

### 학습목표

- 사회통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사회통계가 국가정책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 1 사회통계의 배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현상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통계수치로 제시한 것을 사회통계라고 한다. 이 자료는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거나 인간의 생활을 윤곽하게 하는 각종 사회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학적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분야인 사회통계학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한다.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려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관계나 현상은 궁극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일종의 도덕적 규범으로 요약되기도 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합리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으으로 양으로 규정화하기도 한다. 이것을 인간의 합법칙성(合法則性)에 의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 양적으로 포착하여 통계화하는 일은 일찍이 독일 사회통계학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계에서는 합성·명료성·측정가능성·비교가능성의 네 가지 조건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회통계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인간의 생활에 관련한 통계는 모두 사회통계의 범주로 볼 수 있다.

## 2 사회통계는 어떠한 것인가

사회관계나 사회현상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인간의 사회관계 또는 사회현상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하여 일정한 추론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학적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사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살면서 인간행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 현상은 자꾸 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시간적으로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의 내용이 사회통계이기 때문이다.

사회통계분야에서 가장 사회통계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인구통계이다. 그리고 그 인구가 만들어 내는 각종 활동,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회활동이다. 고용과 노동, 생산 등 경제활동, 물가나 재정, 이동에 따른 교통 및 통신, 심지어 가계경제등도 사회통계의 바탕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사회 및 문화활동도 대상이 된다. 정치, 사법, 교육, 신앙, 위생, 그리고 여가 및 보건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내용도 사회통계의 범주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또는 민간 차원 등에서 수많은 사회통계를 조사,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대표적인 조사인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 1-2. 사회통계의 내용과 활용

### 학습목표

- 사회통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통계를 얻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1 사회통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회통계를 조사하는 수단은 인간들을 대상으로 주로 관찰이나 면담을 통하는 방법을 통한다.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 질 때는 응답자들의 응답을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이때는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한다. 이러한 방법처럼 설문지를 이용하는 조사를 사회조사라 한다.

사회조사는 사회 현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분석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사회조사방법론이라 한다.

사회조사방법론은 사회현상을 조사하여 과학적 진실을 규명함은 물론 과학적 이론을 사회적으로 적용을 해 보는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사회현상의 규명을 위한 이론의 구축에 사회조사방법론이 기여한 내용은 매우 크다. 사회조사방법론에는 사회조사방법의 실제적인 방법들인 설문지조사, 면담, 실험등 각종 조사방법들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사회통계를 생산해 낸다.

사회통계의 내용에 관하여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유럽2020전략 (The Europe 2020 Strategy) 을 보면 유럽의 사회통계의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인구(출산력, 사망력, 혼인, 이혼, 이주 등)
- (2) 건강과 안전 (건강수명,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소, 사망원인, 건강관리, 사업장안전 등)
- (3) 교육과 훈련 (교육성취도, 교육비, 외국어학습 등)
- (4) 노동시장 (고용과 실업, 노동경비, 구직시장 등)

(5) 소득과 주거환경 (빈곤, 사회적 소외, 주거)

(6) 사회보호

(7) 범죄와 사법정의

이 내용을 보면 실로 광범한 내용을 사회통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수량적으로 계측되어 사회지표로 작성된다.

사회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려면 이를 수량화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과정들을 이용하여 인간의 규범적 태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인간들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측정, 또는 집단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소시오메트리 등에 이러한 측정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거시적으로 볼 때의 사회통계라는 것을 예시하면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 인구통계: 인구정태통계, 인구동태통계, 인구이동통계

(2) 경제통계: 생산·상업·무역·운수통신·재정금융·물가·고용 및 노동·가계 등의 통계

(3) 사회문화통계: 정치·사법·교육·종교·보건·오락 등이 있다.

그러나 인구통계와 경제통계는 이미 다른 과목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사회문화통계의 부문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한편 그 밖의 통계로서는 농업통계를 생각할 수 있으나 농업통계의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물에 따른 경제관련 통계와 농업생산자의 측면에서의 사회활동에 관련된 통계이다. 농업생산물에 의한 통계는 일단 경제통계분야에 속하게 되고 사회인의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본 고에서 논의하는 사회통계의 범주는 벗어난다.

이에 반하여 농업생산자의 측면에서의 통계는 사회통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자의 경우의 사회활동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다른 사회인들과 같은 범주의 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고 직업군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관찰한다면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 사회활동부문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별도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다.



## ❷ 사회통계는 어떻게 얻는가

사회통계조사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조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하지만 면접의 대상의 선정은 대체로 표본설계를 통하여 얻게 된다. 이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통계를 얻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위 사회조사라는 명칭으로 1970년대부터 표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속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사회통계를 만들고 이를 사회지표화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의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하여 가족과 가구원, 노동력, 인구이동, 지역적 특성, 문화와 종교, 노동자의 계층, 교육적 경험 등의 정보도 함께 조사한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사회조사방법론의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통계는 이러한 인간행동의 모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론을 이용하여 표본보자를 통하여 얻게 되며 이는 결국 사회지표로 활용된다.

# 1-3. 사회통계 방법

## 학습목표

- 사회통계의 작성방법 이해할 수 있다.
- 사회통계조사를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갖는지 이해한다.

## 1 사회통계의 작성

사회통계는 인간행동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같은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다. 조사는 공적차원에서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통계와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차원에서의 대규모의 조사는 국민의 생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부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그 대표적인 조사는 사회조사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회행동에 관한 측정을 해왔다.

사회조사의 목적은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 2 사회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는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가

사회조사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구성을 목표로 국민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1977년도에 최초로 조사되었다. 그 뒤 1979년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사회지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자료가 바탕이 되었다. 그 조사를 매년 수행해 오다가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도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부문을 대상으로 시작된 바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여 각종 분석이나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사회지표체계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전술한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의 공동사업으로 한

국민의 사회지표체계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그것이 점차 개정 발전하여 한국인의 사회지표로서 틀을 잡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차로 사회지표체계개편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체계개편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사회조사와 사회지표는 우리나라 사회통계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지주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사회조사와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사회통계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다.

### **3 사회통계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사회 조사를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여 사회통계를 구축함으로써 당면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회지표로 활용한다. 사회지표는 학문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일정한 이론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이론을 구축하기도 하며 이것이 현실과 부합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지표는 사회통계를 통하여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통계의 자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지표를 만들고 이는 사회정책개발의 이정표가 된다. 사회통계의 대상이 다양하듯이 사회지표의 범위 역시 매우 다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지표를 생산하게 된다.



### 2-1.

## 사회조사의 필요성

#### 학습목표

- 사회조사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조사가 어떠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통계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한다.

### 1 사회조사의 배경과 근거

국민들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조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사회조사의 실시목적은 첫째,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둘째, 이를 사회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7년에 사회지표체계구성을 목적으로 최초로 조사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조사이다.

사회조사는 승인통계로서 「통계법」(제4조 1항 및 제 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18호) 과 「통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다른 사회조사도 많이 있으나 본 조사는 정부의 사회지표체계개편작업과 맞물려 국가차원에서 진행해 온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지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2 사회조사의 추진

1977년 3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목적으로 「사회통계조사」라는 이름으로 소득·소비,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에 관

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1978년에는 사회지표체계를 조사통계국과 한국 개발원 공동연구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구성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는 「사회통계조사」에서 총 8개부문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 당 평균 5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1987년에 1차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이 있었다. 1985부터 1996년까지는 심층조사를 위해 조사부문을 2~3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대신 부문 당 항목수를 확대하여 조사 실시하였고 1995년 2차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이 있었다.

1997년부터 연 2회(4, 9월) 조사로 변경(각 2개 부문 조사) 하였으나 1998년에는 연 1회 조사로 환원하고 3개 부문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조사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 9. 15 ~ 9. 24: 문화와 여가, 교육

1997. 4. 20 ~ 4. 29: 정보와 통신, 안전

1997. 9. 21 ~ 9. 30: 주거와 교통, 환경

1998. 10. 18 ~ 10. 27: 가족, 복지, 노동

1999. 10. 17 ~ 10. 26: 보건,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2000. 7. 16 ~ 7. 25: 문화와 여가, 교육, 정보와 통신

2001. 9. 16 ~ 9. 25: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2002. 9. 23 ~ 10. 2: 가족, 복지, 노동

2003. 9. 21 ~ 9. 30: 보건,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2004. 6. 20 ~ 6. 29: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2005. 6. 19 ~ 6. 28: 복지, 안전, 환경

2006. 7. 16 ~ 7. 25: 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그 후 2007년도 이후에는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부문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다시 2008년도 부터는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결국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였고 이 때부터 조사명칭을 「사회통계조사」에서 「사회조사」로 변경하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사회조사」의 전 부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부문

2015 :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2016년도에는 2014년도에 조사되었던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부문이 순환순서에 따라 다시 조사될 예정이다.

### ㉓ 사회조사의 방법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5년 사회조사는 전국 18,57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을 대상으로 2015. 5.14.~5.29.(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지방사무소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면접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만날 수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만 조사요원이 조사표를 사전에 배부하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는 자계식 방법이 병행되어 활용되었다.

조사에서 언급된 연령은 모두 만 연령이며 연령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만 13세 이상'을 뜻한다. 한편 소득과 소비부문, 생활여건의 변화, 노후 준비방법 등은 '만 19세 이상'이고,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만 13~29세 이하'이며 생활비 마련방법,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만 60세 이상'를 의미한다.

조사대상 기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5. 5. 14. 현재로 하였고 '지난'이라는 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다.

- 「지난 1년」: 2014. 5.14.~2015. 5. 13.
- 「지난 1개월」: 2015. 4.14.~5.13.
- 「지난 1주일」: 2015. 5. 7.~5.13.

## 2-2. 사회조사의 내용

### 학습목표

- 사회조사의 실시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조사를 통한 결과의 내용과 그 활용성을 이해한다.

### 1 사회조사의 내용

현재 2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는 10개 부문에서 2014년과 2015년 2개년간에 조사한 전체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복지

- |                           |                            |
|---------------------------|----------------------------|
| 1. 생활여건의 변화(19세 이상)       | 2.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19세 이상) |
| 3.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
| 5. 장애인에 대한 인식             | 6.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
| 7. 장애인 복지 사업의 충분정도        | 8. 노후 준비방법(19세 이상)         |
| 9.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19세 이상) | 10.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19세 이상)  |
| 11. 생활비 마련방법(60세 이상)      | 12.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60세 이상)   |
| 13.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60세 이상)  | 14. 장례 선호방법(19세 이상)        |

#### 2) 사회참여

- |                  |                 |
|------------------|-----------------|
| 15. 사회적 관계망      | 16. 단체 참여       |
| 17. 기부 경험        | 18. 기부 경로 및 횟수  |
| 19. 향후 기부의향      | 20. 기부 문화 확산    |
| 21.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 22.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
| 23.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 24. 계층의식        |
| 25. 계층이동         |                 |

#### 3) 문화와 여가

- |                |             |
|----------------|-------------|
| 26. 신문 및 독서 인구 | 27. 레저시설 이용 |
| 28. 문화 및 예술 관람 | 29. 여가활용    |
| 30. 여가활용 만족 여부 | 31. 여행      |



#### 4) 소득과 소비

- 32. 소득 만족도(19세 이상)
- 33. 소득과 부채의 변화(19세 이상)
- 34.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19세 이상)
- 35. 소비생활 만족도(19세 이상)
- 36.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19세 이상)

#### 5) 노동

- 37. 직업 선택 요인
- 38.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 39. 고용의 안정성(19세 이상)
- 40.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41.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19세 이상)
- 42.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 6) 가족

- 43. 가족 관계 만족도
- 44. 부모동거자및부모와의교류(가구주)
- 45.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 46.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47. 분거가족(가구주)
- 48.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 49. 청소년 고민(13~24세) (문제와 상담대상)
- 50.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 51.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 52.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 53. 입양에 대한 견해 및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7) 교육

- 54.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55. 기대 교육 수준 및 기대 교육 목적
- 56.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 57. 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교육비 부담 요인
- 58. 교육 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 59.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60. 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도(30세 이상)
- 61. 자녀 유학(30세 이상) (견해와 이유)

#### 8) 보건

- 62. 건강관리
- 63. 흡연(20세 이상) (흡연량 및 금연 시도)
- 64. 음주(20세 이상) (횟수 및 절주)
- 65. 건강평가
- 66.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0세 이상)
- 67. 의료 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68. 스트레스 정도
- 69. 자살에 대한 총동 여부 및 이유

## 9) 안전

- |                   |                     |
|-------------------|---------------------|
| 7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71.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
| 72. 준법 수준         | 73.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
| 74.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                     |

## 10) 환경

- |                         |                   |
|-------------------------|-------------------|
| 75. 현재 및 1년 전과 비교한 체감환경 | 76. 환경보호 비용 부담 의향 |
| 77. 환경오염 방지 노력          | 78.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

이상 10개 부문 78개 항목에서 조사된 내용은 사회지표화하여 공표된다. 특히 각 지표를 전회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의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활동의 변화추이를 알아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연령집단, 성별 집단, 그 외 특정한 관심집단별로 의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도 하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표의 변동은 사회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회조사표의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관련 정부부처 정책입안자들의 자문을 얻어 가장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문을 청취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사회현상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요즈음, 그로 인한 인간행동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즉각 수용하여 올바른 사회지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2-3.

### 사회조사의 활용

#### 학습목표

- 우리나라 사회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조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1 사회조사와 사회지표개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생활시간조사, 같은 전국차원에서의 조사가 있으며 또 지역단위에서 실시되는 서울시에서 조사된 서울서베이,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조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것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도 역시 사회지표와 하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통계의 개발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지표와는 달리 사회보장부문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인데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출해낸 각종 사회지표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회보장통계를 보면 11개 영역에 있어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1) 가족, 2) 보육 및 교육, 3) 근로, 4) 소득보장과 빈곤, 5) 건강, 6) 주거, 7) 문화, 8) 에너지, 9) 환경, 10) 노인/장애인, 11) 사회재정 등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부장사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사회조사와는 별도로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이름으로 사회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설문조사로부터 얻어진 사회지표를 망라하여 발표하고 있다. 동시에 시군구 단위에서의 사회지표도 발표되는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단위의 사회지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의 사회지표 역시 기준에 발표된 사회통계중에서 지역적으로 분류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지표를 체계에 따라 구축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 2 사회조사의 내용

2015년도에 실시한 사회조사를 통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분석결과를 일부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복지부문

#### (1) 생활여건의 변화 (19세 이상)

우리 사회의 생활여건을 3년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8.8%로서 이는 2013년 결과보다 7.8%p 증가하였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2013년 조사 결과보다 15.9%p 증가한 48.5%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도 반 이상(52.7%)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모든 부문에서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인 생활여건」부문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2-1>).

<표 2-1>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  
(단위 %)

	계	전반적인 생활여건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제도			문화·여가 생활향유여건		
		좋아 짐	변화 없음	나빠 짐	좋아 짐	변화 없음	나빠 짐	좋아 짐	변화 없음	나빠 짐	좋아 짐	변화 없음	나빠 짐
2013년	100.0	31.0	45.0	24.1	39.3	53.4	7.3	32.6	54.5	13.0	35.6	50.5	13.9
2015년	100.0	38.8	46.0	15.3	52.7	42.4	4.9	48.5	42.5	9.0	43.9	45.9	10.2
도시(동부)	100.0	37.3	46.3	16.4	51.6	43.3	5.1	47.0	43.3	9.7	43.1	45.9	10.9
농어촌(읍면부)	100.0	45.5	44.4	10.0	58.1	38.0	3.9	55.7	38.5	5.8	47.4	45.6	7.0
남자	100.0	37.3	46.1	16.6	51.0	43.8	5.2	46.8	43.6	9.5	42.5	46.1	11.4
여자	100.0	40.1	45.9	14.0	54.4	41.1	4.5	50.1	41.4	8.5	45.2	45.7	9.1
19~29세	100.0	32.6	50.3	17.2	40.8	53.4	5.8	34.7	54.0	11.4	42.6	47.1	10.4
30~39세	100.0	32.8	47.9	19.3	45.0	49.0	5.9	37.2	49.3	13.4	39.9	46.9	13.2
40~49세	100.0	36.3	46.2	17.5	52.5	42.4	5.1	47.7	42.3	9.9	42.0	45.0	13.0
50~59세	100.0	40.6	44.4	15.0	57.6	38.0	4.4	54.7	38.2	7.1	44.3	45.8	9.8
60세이상	100.0	48.9	42.3	8.8	64.2	32.3	3.5	63.7	32.0	4.3	49.5	45.0	5.6

주: 1) 3년 전과 비교한 우리 사회의 생활여건 변화임

2)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 생활 향유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여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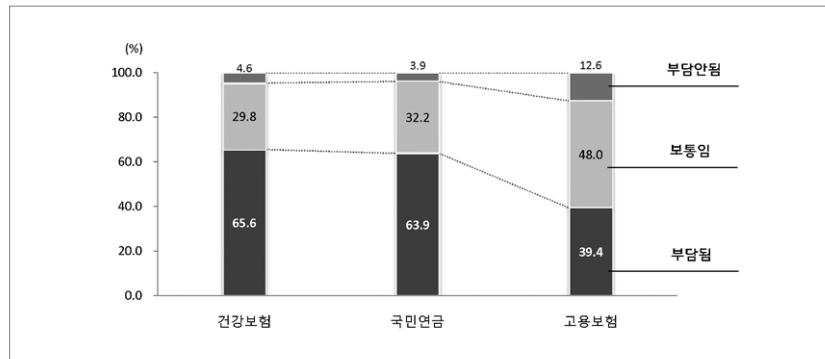
## (2)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9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등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65.6%)」, 「국민연금(63.9%)」, 「고용보험(39.4%)」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회 조사시기인 2013년 보다 모두 높아지고 있었다([그림 2-1]).

이를 직업별로 보면 모든 분야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고용보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어촌지역보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정도가 약간 높았다(<표2-2>). 또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서비스판매직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능노무직이 가장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에 대한 제도는 선진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의 반수 이상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사회보험료에 대한  
인식



**<표2-2>**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9세 이상 가구주)**  
 (단위: %)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 됨	보통 임	부담 안됨	부담 됨	보통 임	부담 안됨	부담 됨	보통 임	부담 안됨
2013년	100.0	64.9	28.4	6.7	62.3	31.6	6.1	38.7	45.2	16.2
2015년	100.0	65.6	29.8	4.6	63.9	32.2	3.9	39.4	48.0	12.6
도시(동부)	100.0	66.1	29.6	4.2	63.8	32.5	3.7	39.7	47.7	12.6
농어촌 (읍면부)	100.0	62.5	31.0	6.5	64.3	30.3	5.4	37.7	50.3	12.0
전문관리	100.0	62.5	32.7	4.8	63.5	31.8	4.7	39.3	47.9	12.8
사무	100.0	63.0	33.2	3.8	63.1	32.9	4.1	38.1	49.7	12.2
서비스판매	100.0	69.2	27.0	3.8	63.3	33.7	3.0	41.7	46.0	12.2
기능노무	100.0	65.9	29.9	4.2	65.3	31.2	3.5	39.6	47.8	12.7

### (3)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시설」이 2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18.8%)」, 「공원, 녹지, 산책로(18.7%)」순으로 나타나 건강문제에 관심이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은 남자보다 여자가 요구하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29세는 「공원, 녹지, 산책로」를 택했고, 30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40대 이상은 「보건의료시설」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1순위로 생각하고 있어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표 2-3>).

**<표 2-3>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단위 %)**

	계	국 공립 어린이집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공영 주차 시설	문화 예술 회관	도 서관	체육 시설 및 경기장	기타
2015년	100.0	15.0	18.7	23.2	18.8	10.9	4.0	3.9	5.0	0.4
도시(동부)	100.0	15.7	19.5	22.0	18.0	11.4	3.9	4.1	5.0	0.4
농어촌 (읍면부)	100.0	11.8	14.6	29.0	22.5	8.7	4.7	3.0	5.3	0.4
남자	100.0	13.8	17.8	22.2	17.7	13.7	3.5	3.7	7.4	0.3
여자	100.0	16.2	19.6	24.2	19.8	8.2	4.6	4.2	2.8	0.5
13~19세	100.0	6.3	24.6	12.6	11.3	4.6	10.1	13.3	16.6	0.7
20~29세	100.0	16.7	21.2	17.4	12.3	11.8	6.7	6.5	7.1	0.4
30~39세	100.0	32.9	17.8	18.4	9.7	11.0	3.8	2.7	3.4	0.3
40~49세	100.0	11.6	19.4	24.9	19.0	13.0	3.6	4.0	4.4	0.1
50~59세	100.0	11.2	19.4	25.9	21.3	14.7	2.6	1.7	2.9	0.3
60세이상	100.0	9.4	13.7	32.0	31.8	8.1	1.3	0.8	2.0	0.9

보건의료시설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의 요구도가 더 높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서 더 높다. 연령대별로 볼 때도 연령이 상승할수록 그 경향이 강했다. 10대는 체육시설같은 것을 더 원하고 있었다.

#### (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고용지원서비스가 33.5%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건강관리서비스,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2-4>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높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표 2-4>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단위: %)

	계	고용 지원 서비스	소득 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안전 관련 서비스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여가 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	기타
2015년	100.0	33.5	15.5	9.4	9.6	19.4	7.4	5.1	0.1
도시(동부)	100.0	34.3	15.0	9.9	9.8	18.4	7.4	5.0	0.1
농어촌 (읍면부)	100.0	29.7	18.0	6.6	8.8	24.2	7.3	5.3	0.0
남자	100.0	35.5	15.8	9.6	9.3	17.9	6.5	5.3	0.1
여자	100.0	31.7	15.3	9.1	9.9	20.9	8.2	4.9	0.1
13~19세	100.0	39.1	9.0	5.2	14.1	9.0	8.4	15.2	0.1
20~29세	100.0	45.6	11.3	10.5	8.4	10.6	6.7	6.8	0.1
30~39세	100.0	26.0	14.7	13.7	10.7	14.3	16.6	3.9	0.1
40~49세	100.0	33.6	15.2	10.7	10.2	18.8	7.6	3.9	0.0
50~59세	100.0	38.5	17.4	8.2	8.6	20.3	3.6	3.4	0.1
60세이상	100.0	24.5	20.9	6.6	7.7	34.3	2.9	2.7	0.3

그런데 10대에서도 39.1%로 높게 나와 흥미롭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보건의료건강서비스와 소득지원서비스가 높게 나왔는데 소득지원서비스는 앞에서의 고용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관련 희망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60세 이상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34.3%로 가장 높게 나오기는 하였지만 고용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서비스를 합하면 45.4%나 되어 역시 소득에 관련한 희망사항이 단연코 가장 큰 희망사항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 (5)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심함이 13.9%, 조금 심함이 51.9%로 나타나 65.8%가 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표 2-5>**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단위: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매우심함
2013년	100.0	2.9	30.6	51.3	15.2
2015년	100.0	2.7	31.5	51.9	13.9
장애인 <sup>1)</sup>	100.0	4.7	32.8	48.6	13.8
비장애인	100.0	2.6	31.4	52.0	13.9

주: 1)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이는 2013년 자료보다는 매우 심함이 약간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6) 노후준비방법 (19세 이상)

노후준비방법과 관련해서는 72.6%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2-6>).

**<표 2-6>**  
**노후준비방법**  
 (단위: %)

	계	준비 하고 있음										준비 하고 있지 않음	앞으 로 준비 하겠음			
		소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연금	예금 적금	부동 산 운용	기타	소계	아직 생각 안함		앞으 로 준비 하겠음	자녀 에게 의탁		
2013년	100.0	72.9	100.0	52.5	7.8	11.3	4.6	17.4	5.3	1.0	27.1	100.0	8.8	24.0	49.7	17.4
2015년	100.0	72.6	100.0	55.1	8.5	9.0	3.9	17.7	5.2	0.6	27.4	100.0	10.1	25.7	49.9	14.4
도시(동부)	100.0	74.3	100.0	56.1	8.6	8.9	3.8	17.1	4.9	0.6	25.7	100.0	10.9	26.2	49.5	13.4
농어촌 (읍면부)	100.0	64.9	100.0	49.6	8.3	9.3	4.4	21.0	6.6	0.7	35.1	100.0	7.1	23.8	51.3	17.9
남 자	100.0	78.7	100.0	56.1	9.1	8.5	4.4	16.3	5.1	0.6	21.3	100.0	11.0	31.6	48.6	8.8
여 자	100.0	55.1	100.0	50.8	6.4	11.0	2.2	23.5	5.6	0.5	44.9	100.0	8.8	17.6	51.6	22.0
19~29세	100.0	56.8	100.0	65.3	4.9	5.8	2.7	20.8	0.4	0.2	43.2	100.0	44.4	39.9	15.4	0.2
30~39세	100.0	86.0	100.0	58.9	6.9	11.4	3.8	16.7	1.7	0.6	14.0	100.0	22.0	57.8	19.7	0.5
40~49세	100.0	83.8	100.0	59.9	8.0	10.2	4.3	14.2	2.8	0.5	16.2	100.0	9.9	48.1	41.5	0.5
50~59세	100.0	79.4	100.0	61.9	7.9	8.0	3.2	14.8	3.8	0.4	20.6	100.0	7.5	35.0	55.9	1.6
60세이상	100.0	56.1	100.0	38.3	11.6	7.4	4.7	24.5	12.4	1.1	43.9	100.0	3.3	9.2	60.5	27.0

성별로 보면 남자는 78.7%가 노후를 준비하는 반면, 여자는 반 정도인 55.1%만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 여성들의 노후준비문제가 취약한 편이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노후 준비율이 각각 86.0%, 83.8%로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49.9%)」,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25.7%)」, 「자녀에게 의탁(14.4%)」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자녀에게 의탁」하려는 비율(27.0%)이 2년 전 조사 결과(31.7%)보다 감소하여 노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해짐을 보여주고 있었다.

### (7) 생활비 마련방법 (60세 이상)

고령자의 현재 생활비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6.6%로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23.0%)」, 「정부 및 사회단체(10.4%)」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부 및 사회단체에 의존하는 방법은 2년 전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2-7>).

<표2-7>  
생활비 마련방법  
(단위: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소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소계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소계				
2013년	100.0	63.6	100.0	53.1	12.2	24.9	9.9	28.8	100.0	45.8	54.2	7.6	0.1	
2015년	100.0	66.6	100.0	54.4	11.7	27.6	6.3	23.0	100.0	50.2	49.8	10.4	0.1	
도시(동부)	100.0	66.7	100.0	48.9	13.4	31.1	6.6	24.1	100.0	53.7	46.3	9.1	0.1	
농어촌 (읍면부)	100.0	66.1	100.0	69.7	7.0	17.7	5.6	19.9	100.0	38.5	61.5	13.9	0.0	
남자	100.0	78.8	100.0	58.2	10.5	26.7	4.6	13.0	100.0	45.2	54.8	8.2	0.0	
여자	100.0	57.0	100.0	50.3	13.0	28.5	8.2	30.8	100.0	51.9	48.1	12.1	0.1	
60~64세	100.0	86.3	100.0	70.5	7.9	16.8	4.7	9.2	100.0	66.8	33.2	4.4	0.0	
65~69세	100.0	76.3	100.0	54.9	10.7	28.8	5.5	15.9	100.0	56.5	43.5	7.6	0.1	
70~79세	100.0	56.7	100.0	40.1	15.6	36.8	7.4	30.1	100.0	44.8	55.2	13.1	0.0	
80세이상	100.0	30.9	100.0	20.8	20.6	44.1	14.6	47.5	100.0	48.2	51.8	21.6	-	

본인 및 배우자 부담한다는 응답은 2013년도에 비해 63.6%에서 66.6%에  
서 늘었고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도 7.6%에서 10.4%로 늘었다. 그러나, 고  
령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또는 친척’이나 ‘정부 및 사회단체’에 의  
지하고 있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다.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4.4%)」이 가장 많고 이어서 「연금, 퇴직급여(27.6%)」, 「재산소득(11.7%)」  
순으로 나타나 결국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연금, 퇴직급여」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  
이 커지고 있었다.

### (8)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60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68.4%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2013년  
조사 결과보다 0.6%p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표 2-8>). 그들은 「따로 사  
는 것이 편해서(32.5%)」와 「독립생활이 가능(26.6%)」을 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여자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34.8%)」, 남자는 「독립생활이 가능(31.7%)」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2-8>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  
(60세 이상)  
(단위: %)

	계	같이 살고 있지 않음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유						
			소계	독립 생활 가능	자녀 에게 부담 이 될까 봐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 학업	자녀 와의 불화	기타
2013년	100.0	67.8	100.0	28.6	20.6	30.8	16.0	1.3	2.7
2015년	100.0	68.4	100.0	26.6	19.9	32.5	15.5	2.4	3.0
남 자	100.0	68.9	100.0	31.7	18.6	29.7	15.6	2.1	2.3
여 자	100.0	67.9	100.0	22.5	21.0	34.8	15.5	2.6	3.6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

	계	같이 살고 있음	소계	본인의 독립 생활 불가능	자녀의 독립 생활 불가능	손·자녀 양육 및 자녀 가사 도움	같이 살고 싶어서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	기타
2013년	100.0	32.2	100.0	36.0	29.3	10.2	18.0	4.2	2.2
2015년	100.0	31.6	100.0	29.3	34.2	12.1	22.3	0.3	1.8
남 자	100.0	31.1	100.0	15.4	41.9	10.2	29.2	0.6	2.8
여 자	100.0	32.1	100.0	39.9	28.4	13.6	17.1	0.1	1.0

현재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들은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34.2%)」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이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29.3%)」등으로 아직 독립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의 이유로 같이 사는 비율은 2년 전 보다 각각 4.9%p, 1.9%p 증가하였다.

## 2. 사회참여부문

### (1) 사회적 관계망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경우는 76.8%로 나타났으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상대가 필요할 때」는 82.4%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여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편이다. 또한,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경우는 50.1%로 나타나서 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여 외형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표 2-9>).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고연령으로 갈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좁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는 여자보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9>  
**사회적 관계망**  
 (단위: %)

	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2013년	100.0	74.7	2.2	47.0	2.5	81.1	3.1
2015년	100.0	76.8	2.2	50.1	2.4	82.4	2.9
도시(동부)	100.0	77.1	2.2	50.8	2.4	83.0	3.0
농어촌(읍면부)	100.0	75.5	2.1	46.6	2.3	79.2	2.7
남자	100.0	76.9	2.2	50.4	2.4	80.5	3.0
여자	100.0	76.7	2.1	49.8	2.3	84.2	2.9
13~18세	100.0	-	-	63.8	3.6	89.0	4.3
19~29세	100.0	82.6	2.6	61.5	2.6	88.8	3.6
30~39세	100.0	78.5	2.2	59.1	2.1	86.5	2.9
40~49세	100.0	76.2	2.1	50.4	2.1	83.2	2.7
50~59세	100.0	74.0	2.1	41.5	2.1	79.5	2.5
60세이상	100.0	74.0	2.0	35.7	2.0	73.3	2.4

## (2) 단체 참여

지난 1년 동안 동창회, 취미활동 등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람은 48.9%로 2013년(50.1%)보다 1.2%p 감소하였다.

<표 2-10>  
**단체참여 현황**  
 (단위: %)

	계	참여자	친목,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미참여자
2013년	100.0	50.1	75.3	26.4	32.8	11.3	4.6	2.1	0.7	8.9	0.3	49.9
2015년	100.0	48.9	75.6	27.2	35.2	9.4	5.3	2.5	0.6	9.2	0.1	51.1
남자	100.0	50.5	77.7	21.7	41.1	8.6	5.9	3.7	0.9	8.6	0.0	49.5
여자	100.0	47.3	73.4	33.0	29.0	10.2	4.7	1.4	0.3	9.9	0.1	52.7
13~19세	100.0	31.9	41.0	31.3	47.4	30.9	9.0	0.3	0.3	0.5	0.2	68.1
20~29세	100.0	44.9	73.3	21.1	46.0	8.1	13.6	2.2	0.8	1.7	0.0	55.1
30~39세	100.0	48.1	78.3	23.4	39.4	5.6	5.5	3.2	0.6	7.1	0.0	51.9
40~49세	100.0	56.7	80.2	25.1	38.5	9.5	4.0	4.1	0.7	9.3	0.0	43.3
50~59세	100.0	59.1	81.4	29.7	31.1	9.8	3.2	2.8	0.6	11.6	-	40.9
60세이상	100.0	44.2	74.3	33.4	20.4	6.0	1.8	0.8	0.4	16.4	0.2	55.8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체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여 50대의 참여율(59.1%)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체활동에 참여자 중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에 참여한 사람이 7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35.2%)」, 「종교단체(27.2%)」순으로 나타났다.

「친목 및 사교단체」 다음으로 남자는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여자는 「종교단체」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3~19세의 경우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활동이 왕성한 20~40대는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에 참여율이 높았다. 종교단체에 참여비율은 2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 (3) 기부 경험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9.9%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에는 36.4%였던 것이 2013년에는 34.6% 였음에 비교하면 근래에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기부경험이 많고, 물품보다는 현금기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표 2-11>  
기부경험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단위:%)**

	기부 경험												
	계	기부 형태				기부하지 않는 이유							기타
		있음 있음	현금 기부	물품 기부	없음 없음	소계	경제 적 여유 가 없어 서	기부 에 대한 관심 이 없어 서	기부 방법 을 몰라 서	기부 단체 신뢰 할수 없어 서	직업 요청 을 받은 적이 없어 서		
2013년	100.0	34.6	32.5	5.9	65.4	100.0	60.9	18.3	4.2	8.2	7.8	0.6	
2015년	100.0	29.9	27.4	6.2	70.1	100.0	63.5	15.2	3.5	10.6	7.1	0.2	
도시 (동부)	100.0	31.0	28.4	6.5	69.0	100.0	63.3	14.9	3.4	11.0	7.1	0.2	
농어촌 (읍면부)	100.0	24.5	22.5	4.8	75.5	100.0	64.2	16.1	3.9	8.7	6.8	0.3	
남자	100.0	30.8	29.1	4.9	69.2	100.0	62.2	16.4	3.3	11.2	6.8	0.1	
여자	100.0	29.0	25.8	7.5	71.0	100.0	64.7	14.0	3.6	10.0	7.4	0.3	
13~19세	100.0	31.0	28.4	5.7	69.0	100.0	45.6	22.0	11.8	7.2	13.3	0.1	
20~29세	100.0	20.8	18.8	3.9	79.2	100.0	60.6	16.7	3.2	11.3	8.2	0.1	
30~39세	100.0	32.2	28.7	7.6	67.8	100.0	58.5	15.8	3.0	15.5	6.9	0.3	
40~49세	100.0	38.3	35.3	8.8	61.7	100.0	61.5	13.5	2.5	15.4	6.8	0.3	
50~59세	100.0	34.6	32.3	7.0	65.4	100.0	68.6	12.5	1.9	10.0	6.7	0.3	
60세이상	100.0	22.0	20.6	4.0	78.0	100.0	73.9	14.0	2.4	5.1	4.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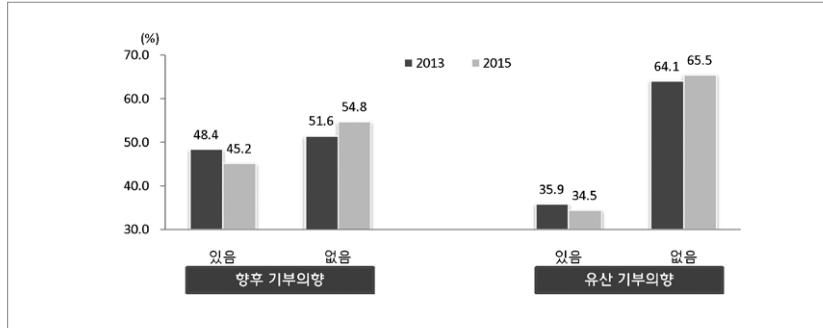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3.5%)」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5.2%)」,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10.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4) 향후 기부의향

향후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5.2%였으나 2013년보다

3.2%p 감소하였다. 향후 기부의회향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그리고 40대에서 높게 나타나며 성별로는 여자가 향후 기부의회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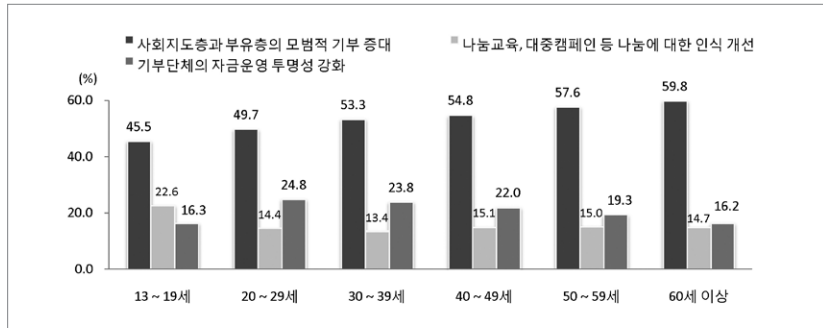
[그림 2-2]  
향후 기부의회향



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4.5%로 나타났고 향후 유산 기부의회향에 대해 60대 이상은 80.3%가 부정적인 반면, 10대는 49.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세대간 인식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기부 문화 확산

[그림 2-3]  
기부 문화 확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54.5%가 응답하여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 의지하는 경향이어서 기부문화의 대중화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었다. 이어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20.5%)」를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이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은 18.2%만이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있으며, 7.8회에 24.4시간을 자원봉사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조한 참여활동은 참여제도가 활성화여부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표 2-12>).

**<표 2-12>**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단위: %, 회, 시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연간 참여횟수 및 시간		향후 1년 이내 참여의향 <sup>1)</sup>	
	있음	없음	평균 횟수	평균 시간	있음	없음
2013년	19.9	80.1	7.6	25.1	43.2	56.8
2015년	18.2	81.8	7.8	24.4	37.3	62.7
도시(동부)	18.3	81.7	7.9	24.7	38.3	61.7
농어촌(읍면부)	17.7	82.3	7.3	22.8	32.3	67.7
남자	17.7	82.3	7.0	23.0	35.9	64.1
여자	18.7	81.3	8.5	25.7	38.6	61.4
13~19세	76.6	23.4	5.4	16.0	71.4	28.6
20~29세	11.6	88.4	8.3	30.6	41.1	58.9
30~39세	10.6	89.4	6.9	20.8	36.6	63.4
40~49세	15.6	84.4	8.3	26.2	40.8	59.2
50~59세	14.6	85.4	10.0	34.0	34.9	65.1
60세이상	7.8	92.2	14.2	41.1	18.3	81.7
기부 참여자	31.9	68.1	8.5	27.3	57.0	43.0
기부 미참여자	12.4	87.6	7.0	21.2	28.8	71.2

주: 1) 2013년은 '향후 2년 이내' 참여의향임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횟수, 봉사시간이 모두 많으며, 향후 참여의향도 더 높게 나타나나 전체적인 참여도는 2013년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13~19세의 자원봉사 경험(76.6%)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참여횟수와 봉사시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계성이 없어 보였다.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향후 참여 의향도 2013년과 비교하면 각각 1.7%p, 5.9%p 감소하였다.

기부 참여자들은 미 참여자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많았고 향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7)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자원봉사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들은 58.2%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의 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19.4%가 마을청소, 방범활동 등 「환경보전·범죄예방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가 광범해진 것을 볼 수 있다(<표 2-13>).

**<표 2-13>**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복수응답)**  
 (단위: %)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무료상담)
2013년	62.4	19.4	6.6	7.7	3.9	15.3
2015년	58.2	19.4	7.8	8.0	4.1	17.6
도시(동부)	59.0	17.0	8.6	8.1	4.1	18.4
농어촌 (읍면부)	54.5	31.7	4.1	7.4	4.1	13.2
남자	56.2	23.8	2.3	8.7	5.7	18.8
여자	60.1	15.4	12.9	7.4	2.7	16.4
13~19세	59.6	18.7	-	7.2	1.2	30.3
20~29세	73.4	8.7	0.4	11.4	5.9	9.8
30~39세	53.0	15.0	27.4	4.2	5.7	6.7
40~49세	51.1	16.4	27.2	7.5	5.7	7.7
50~59세	61.1	25.2	3.3	10.5	7.2	10.5
60세이상	50.4	35.1	0.8	9.1	5.7	9.6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이어서 30~40대는 일  
 일교사, 교통지도 등 「자녀교육 관련분야」에 많이 참여하였고, 10대  
 (13~19세)는 중·고등학교의 교내 봉사활동 등의 기타부분이 상대적으  
 로 많았다.

## (8) 계층의식

<표 2-14>  
계층의식(가구주)  
(단위: %)

	계	상		중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2013년	100.0	1.9	0.4	1.5	51.4	17.7	33.7	46.7	26.3	20.4
2015년	100.0	2.4	0.5	1.9	53.0	17.9	35.1	44.6	25.1	19.5
도시(동부)	100.0	2.5	0.5	2.1	53.5	18.3	35.2	44.0	24.4	19.6
농어촌 (읍면부)	100.0	1.8	0.7	1.1	51.0	16.2	34.8	47.2	28.3	18.9
남자	100.0	2.8	0.6	2.2	57.6	20.0	37.5	39.6	23.6	16.0
여자	100.0	1.2	0.2	1.0	40.0	11.8	28.2	58.8	29.4	29.4
100만원 미만	100.0	0.8	0.1	0.7	25.1	6.2	18.9	74.1	29.5	44.6
100~200만원 미만	100.0	1.0	0.4	0.7	39.4	9.5	29.9	59.5	34.0	25.6
200~300만원 미만	100.0	1.1	0.2	0.9	56.2	13.9	42.4	42.7	29.4	13.2
300~400만원 미만	100.0	1.8	0.5	1.3	68.9	19.6	49.3	29.3	22.1	7.2
400~500만원 미만	100.0	2.2	0.2	1.9	76.9	29.7	47.2	21.0	15.8	5.2
500~600만원 미만	100.0	4.3	0.5	3.8	83.5	37.1	46.4	12.2	8.2	4.0
600만원 이상	100.0	13.1	2.9	10.3	77.9	51.1	26.9	8.9	6.5	2.4

2015년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3.0%로 나타나 2013년 보다 1.6%p 증가하였다(<표 2-14>).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상층」,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은 여자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상(17.9%)’보다 ‘중하(35.1%)’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500~600만원 미만일 때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9) 계층이동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로 2013년 보다 6.4%p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다소 비관적이었다(<표 2-15>).

한편,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세대보다 높은 31.0%로 나타나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나 2013년 보다는 8.9%p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본인세대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일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2-15>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구주)  
(단위:%)**

	계	높다	낮다		모르겠다			
			매우	비교적				
2013년	100.0	28.2	2.2	26.0	57.9	40.4	17.5	13.9
2015년	100.0	21.8	1.9	19.9	62.2	41.2	21.0	15.9
상 층	100.0	55.4	10.8	44.5	39.1	27.4	11.7	5.6
중 층	100.0	27.7	2.2	25.5	62.4	48.3	14.1	9.9
하 층	100.0	13.1	1.1	12.0	63.2	33.4	29.8	23.7

**【 자식세대 계층이동  
(19세 이상 가구주) 】  
(단위:%)**

	계	높다	낮다		모르겠다			
			매우	비교적				
2013년	100.0	39.9	3.6	36.3	43.7	34.0	9.8	16.4
2015년	100.0	31.0	3.3	27.6	50.5	35.3	15.2	18.5
상 층	100.0	49.4	10.7	38.8	42.0	34.0	8.0	8.6
중 층	100.0	36.9	3.9	33.0	50.4	38.9	11.5	12.6
하 층	100.0	23.0	2.3	20.6	51.1	31.1	19.9	26.0

## 3. 문화와 여가

### (1) 신문 및 독서 인구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72.5%에 이르나 일반신문(43.1%)보다 인터넷신문(86.0%)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표 2-16>).

지난 1년 동안 독서 인구 비율은 56.2%로 2년 전 보다 6.2%p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16.5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나나 역시 2013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 인구와 독서량은 감소하고, 모든 연령대가 교양서적을 가장 많이 보고있었다.

<표 2-16>  
신문 인구(복수응답)  
(단위: %)

	신문 보는 인구 <sup>1)</sup>	일반 신문						인터넷 신문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2013년	72.6	56.4	100.0	38.9	20.2	25.2	15.7	81.5	100.0	53.7	22.2	17.1	7.0
2015년	72.5	43.1	100.0	38.2	18.3	25.9	17.6	86.0	100.0	56.6	22.6	15.3	5.5
도시(동부)	75.3	42.9	100.0	39.4	18.5	25.5	16.6	86.7	100.0	57.0	22.5	15.1	5.3
농어촌(읍면부)	59.1	44.4	100.0	30.8	16.9	28.8	23.4	82.0	100.0	53.8	23.1	16.4	6.7
남자	78.9	48.5	100.0	43.2	17.7	24.4	14.7	84.9	100.0	60.9	21.6	13.0	4.6
여자	66.3	36.8	100.0	30.5	19.1	28.4	22.0	87.4	100.0	51.8	23.8	17.8	6.6

주: 1) 신문 구독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독서 인구(복수응답)】  
(단위: %, 권)

	독서 인구 <sup>1)</sup>	잡지류		교양 서적		직업 서적		생활 취미 정보 서적		기타		독서 권수
		독서 권수	독서 권수	독서 권수	독서 권수	독서 권수	독서 권수	독서 권수	독서 권수			
2013년	62.4	42.9	6.6	68.9	9.3	33.9	7.3	25.5	5.4	19.6	24.6	17.9
2015년	56.2	36.5	6.5	66.2	8.5	36.1	6.6	28.6	5.2	19.9	23.0	16.5
13~19세	74.2	25.1	6.2	74.6	10.3	19.1	5.5	18.2	5.7	43.9	20.2	20.2
20~29세	73.8	39.4	6.4	67.7	7.9	48.0	6.7	27.5	4.3	28.4	23.5	18.9
30~39세	68.5	36.9	6.1	59.4	8.4	44.9	7.1	40.8	6.6	22.7	26.5	19.1
40~49세	63.2	38.3	6.4	64.4	8.7	40.9	6.5	29.6	4.9	13.1	23.0	15.2
50~59세	47.1	40.3	7.5	66.4	7.5	31.1	6.6	26.2	4.3	6.1	22.3	12.6
60세이상	27.1	34.8	6.8	70.9	8.3	13.8	6.0	19.7	4.4	3.1	13.2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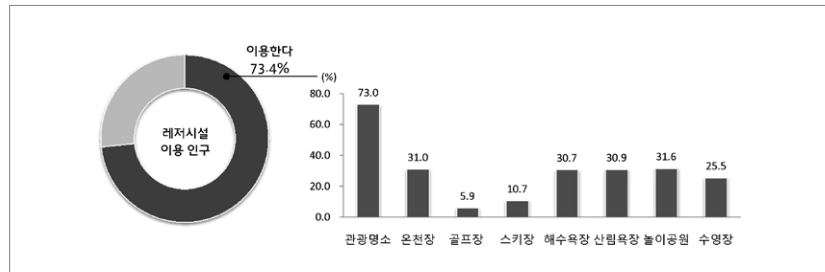
주: 1)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

## (2) 레저시설 이용

지난 1년 동안 국민 10명 중 적어도 7명(73.4%)은 유적지, 국립공원 등「관광명소」,「놀이공원」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레저 시설별 이용자 비율을 보면「관광명소(73.0%)」가 가장 높고,「놀이공원(31.6%)」,「온천장(31.0%)」순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은 40~50대가, 스키장은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레저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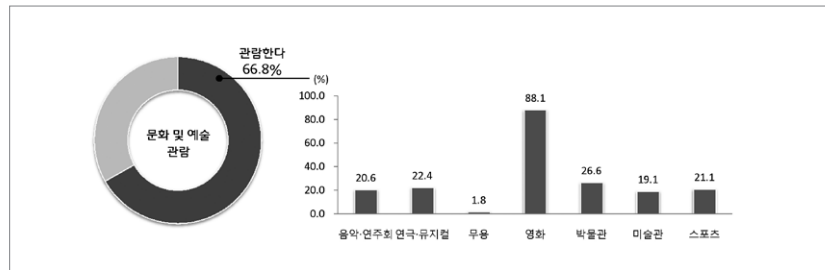


## (3) 문화 및 예술 관람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의 비율은 66.8%로 2013년보다 3.4%p 증가하였으나 관람횟수는 약간 감소하여 대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그림 2-5]).

스포츠 관람 이외의 모든 문화예술관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하며 20대 이후는 연령이 낮을수록 연극·뮤지컬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2-5]  
문화 및 예술 관람



#### (4) 여가활용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할까하고 조사한 결과 69.9%가 「TV 시청」을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50%가 「휴식」, 그 밖에 19.0%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7>).

2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TV시청」시간도 늘어나고, 「취미, 자기개발 활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국내외 여행이나 캠핑 등 「관광활동(59.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람」과 「취미, 자기개발활동」이 각각 34.2%로 많았다.

<표 2-17>  
여가활용(복수응답)  
(단위: %)

	TV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5년	69.9 (15.8)	16.5 (34.2)	2.8 (9.2)	4.3 (9.4)	13.4 (24.1)	11.1 (59.4)	19.0 (5.6)	14.7 (34.2)	50.8 (20.4)	11.3 (16.1)	2.1 (0.2)
도시 (동부)	69.6 (15.3)	17.6 (35.8)	2.9 (9.7)	4.6 (9.6)	14.0 (25.1)	11.4 (59.7)	20.0 (5.8)	15.1 (35.1)	50.5 (19.8)	11.1 (15.9)	2.0 (0.2)
농어촌 (읍면부)	70.9 (18.0)	11.2 (26.9)	2.2 (6.5)	3.0 (8.6)	10.5 (19.4)	9.3 (58.0)	14.1 (4.4)	12.4 (29.8)	51.9 (23.1)	12.3 (17.2)	2.3 (0.2)
남자	68.0 (16.2)	14.0 (28.0)	2.8 (8.6)	6.8 (15.1)	20.2 (32.9)	10.4 (56.1)	24.8 (8.7)	14.4 (31.2)	47.5 (19.7)	8.3 (12.9)	1.6 (0.2)
여자	71.7 (15.4)	18.9 (40.3)	2.8 (9.8)	1.9 (3.8)	6.8 (15.6)	11.7 (62.6)	13.4 (2.6)	15.0 (37.1)	53.9 (21.0)	14.3 (19.2)	2.5 (0.2)
13~19세	60.5 (16.9)	22.1 (45.8)	5.4 (12.4)	4.1 (12.1)	17.0 (31.0)	4.0 (44.9)	54.8 (21.5)	20.7 (38.8)	40.5 (19.4)	9.4 (7.6)	1.8 (0.3)
20~29세	60.1 (9.9)	30.4 (45.9)	4.5 (13.2)	7.4 (13.1)	12.3 (28.5)	9.5 (58.4)	35.2 (9.7)	23.2 (42.2)	47.0 (16.7)	7.8 (9.9)	1.3 (0.0)
30~39세	68.0 (10.7)	22.3 (43.3)	3.0 (10.3)	5.6 (10.9)	12.2 (30.2)	21.5 (64.8)	21.3 (5.0)	14.3 (41.5)	51.3 (18.7)	7.0 (9.5)	3.5 (0.1)
40~49세	69.0 (10.9)	17.9 (38.6)	2.3 (9.3)	4.8 (10.0)	16.4 (29.6)	14.5 (65.3)	14.6 (2.9)	14.1 (37.5)	56.8 (17.9)	11.3 (16.3)	1.8 (0.1)
50~59세	72.2 (15.4)	9.9 (27.7)	2.3 (8.7)	3.6 (8.6)	16.2 (22.3)	10.0 (62.8)	8.1 (2.1)	13.0 (31.8)	52.1 (19.4)	14.7 (22.6)	1.6 (0.4)
60세이상	81.2 (28.4)	3.8 (15.0)	1.1 (4.4)	1.5 (4.5)	8.2 (9.4)	4.6 (54.0)	2.8 (1.3)	8.2 (19.5)	51.1 (27.8)	15.5 (24.0)	2.3 (0.4)

주: () 안의 수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임

### (5) 여가활용 만족 여부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26.0%로 2년전 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불만족」은 25.1%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부담(58.2%)」과 「시간 부족(20.2%)」이었고 가구 소득별로 불만족 이유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의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 소득이 적은 경우(100만원 미만)에 체력이나 건강상 문제로 여가활용을 잘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2-18>**  
**여가활용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계	만족 만족	보통 보통	불만 족	소계	경제 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및 불 편	여가 시설 및 정 보 부족	적당 한 취 미 없 음	체력 이나 건강 이 좋 지 않 음	여가 를 함께 할 사 람 없 음	기타
2013년	100.0	27.1	47.8	25.1	100.0	57.7	21.1	1.6	3.0	4.7	9.3	2.3	0.2
2015년	100.0	26.0	48.9	25.1	100.0	58.2	20.2	1.8	3.1	4.7	9.7	1.5	0.8
도시(동부)	100.0	26.7	48.6	24.7	100.0	59.7	19.9	1.9	2.9	5.0	8.3	1.6	0.8
농어촌(읍면부)	100.0	22.5	50.4	27.0	100.0	51.6	21.2	1.2	4.3	3.3	16.2	1.5	0.7
남자	100.0	27.1	48.9	24.0	100.0	59.1	21.4	1.8	3.0	5.3	7.2	1.5	0.5
여자	100.0	24.8	49.0	26.1	100.0	57.4	19.0	1.7	3.2	4.1	12.0	1.6	1.1
100만원 미만	100.0	13.6	49.5	36.9	100.0	61.0	5.6	0.4	0.8	3.1	26.8	2.1	0.2
100~200만원 미만	100.0	18.7	50.6	30.7	100.0	68.2	12.5	1.5	2.5	4.2	8.2	1.9	0.9
200~300만원 미만	100.0	24.4	50.8	24.8	100.0	63.4	21.1	1.8	2.7	3.9	4.8	1.3	1.0
300~400만원 미만	100.0	26.7	49.7	23.6	100.0	54.1	27.5	2.8	4.9	5.3	3.6	1.0	0.8
400~500만원 미만	100.0	30.9	48.5	20.6	100.0	51.3	28.4	1.8	4.2	8.0	4.9	0.9	0.5
500~600만원 미만	100.0	36.4	46.3	17.4	100.0	38.6	41.0	2.9	4.6	3.7	6.5	1.0	1.8
600만원 이상	100.0	42.9	42.8	14.3	100.0	30.4	41.8	3.2	6.9	7.4	7.0	2.1	1.2



## (6) 여행

지난 1년 동안 66.7%가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하였으며, 1인당 5.1회의 여행을 하였는데 숙박여행인 경우 2.6회, 당일여행인 경우 4.7회의 여행을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많이 여행을 하는데 1인당 여행횟수는 오히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가장 많은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 10대에서 점차적으로 경험율이 올라가다가 30대 이후는 감소의 추세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는 관광횟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2-19>).

19.7%가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평균 1.5회의 여행을 하는데 30~40대는 주로 업무용 여행이 많았다.

해외여행은 「관광」목적 다음으로, 20대는 「업무」, 「교육」순으로 많았고, 60세 이상은 가족이나 친지방문 등 「가사」가 많았다.

**<표2-19>**  
**국내 관광여행 비율**  
**및 횟수(복수응답)**  
 (단위: %, 회)

	국내 관광 여행자	관광인구 1인당 여행 횟수	숙박 여행	관광인구 1인당 여행 횟수	당일 여행	관광인구 1인당 여행 횟수
2013년	67.1	4.6	46.8	2.5	45.4	4.3
2015년	66.7	5.1	47.9	2.6	45.0	4.7
남자	64.7	5.2	46.5	2.7	43.3	4.8
여자	68.7	5.0	49.1	2.6	46.7	4.6
13~19세	66.8	3.9	50.8	2.2	39.7	3.8
20~29세	71.2	5.0	54.5	2.8	45.8	4.5
30~39세	77.5	6.1	61.9	3.1	50.2	5.6
40~49세	72.3	5.4	55.9	2.7	48.6	5.0
50~59세	64.2	5.2	42.8	2.5	45.8	5.0
60세이상	51.8	3.9	27.5	2.2	38.7	3.6

【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복수응답) 】  
(단위: %, 회)

	해 외 여행자	관광			가사 (가족, 친지방문)		업무	교육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			
2013년	17.2	77.1	1.5	10.8	2.1	17.3	2.6	5.2	1.3
2015년	19.7	79.8	1.5	9.8	1.8	16.1	2.7	4.2	1.5
남 자	19.6	73.2	1.5	8.8	1.7	25.6	2.7	4.6	1.6
여 자	19.9	86.1	1.5	10.7	1.9	7.0	2.5	3.7	1.3
13~19세	12.0	80.3	1.3	13.8	2.6	1.1	1.0	11.4	2.0
20~29세	24.6	80.3	1.5	6.3	1.7	11.8	3.0	10.9	1.3
30~39세	24.6	78.1	1.5	7.3	1.7	25.2	2.5	2.9	1.3
40~49세	20.5	74.1	1.5	10.2	1.6	24.8	2.7	2.0	1.2
50~59세	21.7	82.6	1.5	10.1	2.3	14.4	2.8	1.8	1.4
60세이상	13.6	85.4	1.5	15.0	1.5	4.6	2.1	0.7	2.9

#### 4. 소득과 소비

##### (1) 소득 만족도(19세 이상)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78.5%로 2013년보다 2.1%p 증가 하였으나 46.3%가 소득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19~29세군이 가장 낮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젊은 층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연령층에서 소득에 만족하는 수준은 40세 이하에서 보통과 불만족이 서로 비슷하나 40세 이상으로 갈수록 소득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적어서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응답자의 생활수준상 적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표 2-20>).

<표2-20>  
**소득 만족도**  
**(19세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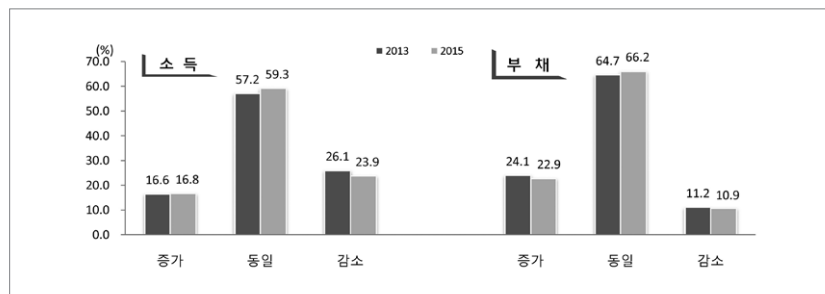
	소득 있음	소계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13년	76.4	100.0	12.1	1.5	10.5	39.0	49.0	34.8	14.1
2015년	78.5	100.0	11.4	1.6	9.8	42.3	46.3	33.7	12.6
남자	88.9	100.0	11.8	1.6	10.2	42.1	46.1	33.7	12.4
여자	68.5	100.0	10.9	1.5	9.4	42.6	46.5	33.7	12.8
19~29세	61.7	100.0	12.2	2.0	10.2	43.1	44.7	32.7	11.9
30~39세	78.6	100.0	12.4	1.7	10.7	44.6	43.0	32.1	10.9
40~49세	83.1	100.0	13.7	1.7	12.0	41.7	44.6	31.2	13.4
50~59세	81.8	100.0	11.4	1.5	9.9	41.3	47.3	33.4	13.9
60세이상	83.9	100.0	8.0	1.2	6.9	41.5	50.5	37.9	12.6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2년 전(74.7%)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9.2%p 증가하였지만, 소득에 대한 「불만족」 정도는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모두 2013년 보다 각각 0.7%p, 2.7%p 감소하고 있다. 2013년 보다 「만족」은 30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1.7%p)하고, 「불만족」은 4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소득과 부채의 변화(19세 이상)

1년 전 보다 가구소득이 「증가(16.8%)」 또는 「동일(비슷)(59.3%)」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3년 보다 각각 0.2%p, 2.1%p 증가하였고 1년 전과 비교하여 가구부채가 「동일(비슷)(66.2%)」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보다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6]).

[그림 2-6] 소득과  
 부채의 변화



소득의 증가는 30대가 가장 많고 부채도 역시 같은 층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이 연령층에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41.0%)이 가장 높고, 300~400만원 미만인 소득층에서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30.4%)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방향으로 자료가 나타나고 있었다(<표 2-21>).

**<표 2-21>**  
**소득과 부채의 변화<sup>1)</sup>**  
**(19세 이상 가구주)**  
 (단위 : %)

	소득			부채				
	증가	동일(비슷)	감소	증가	동일(비슷)	감소		
2013년	100.0	16.6	57.2	26.1	100.0	24.1	64.7	11.2
2015년	100.0	16.8	59.3	23.9	100.0	22.9	66.2	10.9
19~29세	100.0	23.9	58.4	17.8	100.0	21.0	68.7	10.3
30~39세	100.0	30.2	51.8	18.0	100.0	34.6	50.9	14.4
40~49세	100.0	24.2	50.7	25.1	100.0	32.6	53.2	14.2
50~59세	100.0	14.7	56.3	29.0	100.0	25.1	63.4	11.5
60세이상	100.0	5.3	71.3	23.3	100.0	9.2	84.2	6.6
100만원 미만	100.0	3.7	70.3	26.0	100.0	11.0	83.6	5.4
100~200만원 미만	100.0	8.4	60.2	31.3	100.0	20.9	71.0	8.0
200~300만원 미만	100.0	16.5	58.2	25.4	100.0	27.6	62.4	10.0
300~400만원 미만	100.0	22.6	56.9	20.5	100.0	30.4	55.3	14.3
400~500만원 미만	100.0	26.1	56.9	17.0	100.0	28.9	56.0	15.0
500~600만원 미만	100.0	34.0	48.6	17.4	100.0	28.2	55.4	16.4
600만원 이상	100.0	41.0	45.6	13.4	100.0	23.4	55.9	20.8

주: 1) 1년 전과 비교한 변화

### (3) 소비생활 만족도(19세 이상)

19세 이상 인구 중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1%로 약 절반 수준이나 불만족도 꽤나 높은 편이다(<표 2-22>).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소비생활에 만

족하는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하는 정도와 불만족하는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갈수록 만족수준도 높아 가고 있어 만족과 보통이 같이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었다.

**<표2-22>**  
**소비생활 만족도**  
**(19세 이상)**  
 (단위 : %)

	계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13년	100.0	13.6	2.0	11.6	46.7	39.6	29.9	9.7
2015년	100.0	13.9	2.0	11.9	48.1	38.1	28.6	9.5
도시(동부)	100.0	14.2	2.0	12.1	47.4	38.4	28.6	9.8
농어촌(읍면부)	100.0	12.4	1.6	10.9	51.1	36.4	28.6	7.8
남자	100.0	14.1	2.1	12.1	48.9	37.0	27.9	9.1
여자	100.0	13.6	1.9	11.8	47.3	39.1	29.2	9.8
19~29세	100.0	17.4	3.3	14.1	49.6	32.9	24.6	8.3
30~39세	100.0	15.3	2.0	13.3	49.7	35.0	27.3	7.7
40~49세	100.0	15.1	1.8	13.3	46.7	38.1	28.3	9.9
50~59세	100.0	12.8	1.8	11.0	46.8	40.4	29.5	10.9
60세이상	100.0	9.8	1.2	8.6	47.9	42.3	32.0	10.3
100만원 미만	100.0	5.5	1.0	4.5	37.7	56.9	37.6	19.3
100~200만원 미만	100.0	7.3	1.1	6.3	44.9	47.7	34.6	13.1
200~300만원 미만	100.0	10.4	1.6	8.8	49.4	40.2	31.6	8.6
300~400만원 미만	100.0	13.1	1.5	11.6	53.2	33.7	26.9	6.8
400~500만원 미만	100.0	16.4	1.9	14.5	54.4	29.2	23.1	6.1
500~600만원 미만	100.0	24.3	2.4	21.9	52.8	22.9	17.8	5.1
600만원 이상	100.0	35.1	6.1	29.0	46.5	18.4	15.5	2.9

#### (4)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19세 이상)

가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에 대해 물어 본 결과는 「외식비 (49.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식료품비 (32.8%)」, 「의류비 (31.8%)」, 「문화여가비 (30.3%)」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소비를 줄이는 항목으로 도시지역은 「외식비」, 「의류비」, 「식료품비」순이며, 농어촌지역은 「외식비」, 「연료비」, 「식료품비」순이었다. 연령순으로 볼 때 19~49세는 「외식비」, 「문화여가비」, 「의류비」를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고, 60세 이상은 「식료품비」와 「연료비」를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아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남자들은 53.1%가 「외식비」이고, 그 다음으로 「문화여가비」, 「식료품비」의 순이고 여자들은 「외식비」, 「식료품비」, 「의류비」의 순이었다.

2013년도와 비교하면 「외식비」, 「의류비」, 「문화여가비」에서 기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식료품비」에서는 감소하였다.

**<표2-23>**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  
**(19세 이상 가구주, 복수응답)**  
 (단위: %)

	식료품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경조사비	기타
2013년	36.9	46.7	28.5	8.6	19.0	25.6	6.0	27.3	12.1	0.5
2015년	32.8	49.2	31.8	8.2	18.9	30.3	8.6	25.2	12.3	0.7
도시(동부)	32.7	51.4	33.0	8.7	18.8	32.0	8.2	23.3	11.8	0.8
농어촌(읍면부)	32.8	39.2	26.2	5.9	19.4	22.4	10.8	34.0	14.3	0.3
남자	31.1	53.1	30.9	9.5	21.4	32.7	8.1	22.6	13.2	0.5
여자	37.5	38.2	34.4	4.4	11.7	23.5	10.3	32.6	9.6	1.3
19~29세	32.0	60.4	43.9	5.6	20.8	42.9	5.8	14.5	5.8	0.8
30~39세	30.8	66.8	39.1	10.7	21.0	43.3	4.0	15.8	8.7	0.6
40~49세	29.1	60.6	34.0	18.8	21.4	38.2	5.8	17.3	10.3	0.5
50~59세	30.9	48.2	32.0	6.6	21.8	30.5	7.7	25.6	15.3	0.5
60세이상	37.8	31.5	24.6	1.0	13.6	16.2	14.1	36.8	14.3	1.0

## 5. 노동

### (1) 직업 선택 요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38.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안정성(28.0%)」, 「적성·흥미(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모두 공통적이다.

**<표2-24>**  
**직업 선택 요인**  
 (단위: %)

	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sup>1)</sup>
2013년	100.0	2.7	28.4	37.1	16.6	5.6	5.8	3.9
2015년	100.0	2.6	28.0	38.8	16.7	5.4	5.4	3.2
남자	100.0	3.2	28.5	39.4	15.4	5.2	6.3	2.1
여자	100.0	2.1	27.6	38.1	17.9	5.6	4.4	4.3
13~19세	100.0	4.6	19.9	26.1	37.1	6.2	5.1	1.0
20~29세	100.0	3.2	26.5	32.4	24.5	6.4	5.8	1.1
30~39세	100.0	1.8	27.0	40.4	17.5	5.5	6.0	1.8
40~49세	100.0	2.1	30.3	41.3	14.6	5.2	5.1	1.4
50~59세	100.0	2.6	29.9	43.0	10.7	5.7	5.3	2.8
60세이상	100.0	2.6	30.0	41.7	8.3	4.0	4.8	8.7
전문관리	100.0	3.1	27.8	29.1	22.9	9.8	6.5	0.9
사무	100.0	1.8	35.7	36.4	14.1	5.3	5.8	1.0
서비스판매	100.0	2.1	25.7	47.2	14.1	4.4	5.1	1.4
농어업	100.0	2.2	30.3	42.7	9.5	3.7	6.7	4.9
기능노무	100.0	1.9	28.4	50.5	8.8	3.0	5.0	2.3

주: 1) 「모르겠음」 포함

그러나 13~19세는 「적성·흥미(37.1%)」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반면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은 직업 선택 시 「수입」과 「안정성」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뚜렷해 졌다.

## (2)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13~29세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23.7%)」이며, 다음은 「공기업(19.5%)」, 「대기업(18.7%)」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들의 선호도를 비교해 보면 남자에게서는 「공기업」, 「대기업」, 「자영업」, 「벤처기업」등을 더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국가기관」, 「전문직」, 「외국계기업」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은 「국가기관」을 선호하지만, 대학생이상은 「국가기관」보다 「공기업」에서 더 일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표2-25>**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단위: %)

	계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기업	자영업 (창업)	기타
2013년	100.0	28.6	17.7	21.0	2.6	5.9	7.8	2.8	2.7	8.5	2.3
2015년	100.0	23.7	19.5	18.7	3.1	6.7	8.6	3.0	3.6	11.5	1.7
남자	100.0	22.1	20.2	20.9	4.1	5.3	7.0	2.9	3.5	12.7	1.4
여자	100.0	25.5	18.6	16.4	2.1	8.2	10.3	3.1	3.7	10.2	1.9
13~18세	100.0	25.5	14.4	22.8	3.6	6.1	10.6	2.8	3.6	8.1	2.5
19~24세	100.0	21.9	21.7	17.3	3.8	7.0	8.3	3.5	3.8	11.4	1.1
25~29세	100.0	23.8	22.5	15.5	1.9	7.0	6.8	2.4	3.3	15.4	1.3
재학생	100.0	24.1	17.9	21.1	3.7	7.1	10.5	2.7	3.6	7.2	2.2
중재이하	100.0	25.1	10.7	24.4	3.4	5.8	13.4	2.1	3.7	8.4	2.9
고재	100.0	26.0	16.3	22.3	3.7	5.8	9.2	3.4	3.4	7.5	2.4
대재이상	100.0	21.8	23.3	18.3	3.8	8.9	9.8	2.6	3.7	6.4	1.6
기타	100.0	23.4	21.2	16.0	2.6	6.3	6.6	3.2	3.6	16.0	1.1

### (3) 고용의 안정성(19세 이상)

취업자 중 61.0%가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정도가 「매우」라고 응답한 사람은 16.4%나 되었으나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39%에 이르고 있었다.

남자(62.3%)가 여자(59.2%)보다 불안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는 감소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의 반 이상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하였다.

서비스판매나 기능·노무직이 다른 직종보다 직업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의 안정성과 연계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2-26>).

### (4)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여성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85.4%로 2013년 보다 0.9%p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표 2-27>).



<표2-26>  
고용의 안정성  
(19세 이상)  
(단위: %)

	계 <sup>1)</sup>	불안함을 느낀다	불안함을 느낀다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별로	전혀
			매우	약간			
2013년	100.0	59.8	19.2	40.6	40.2	31.1	9.1
2015년	100.0	61.0	16.4	44.6	39.0	31.1	7.9
남자	100.0	62.3	17.0	45.3	37.7	30.4	7.3
여자	100.0	59.2	15.6	43.6	40.8	32.0	8.8
19~29세	100.0	62.5	19.8	42.7	37.5	29.8	7.6
30~39세	100.0	65.5	16.8	48.6	34.5	28.2	6.3
40~49세	100.0	63.5	17.1	46.4	36.5	29.8	6.7
50~59세	100.0	59.4	14.7	44.7	40.6	32.6	8.0
60세이상	100.0	50.1	13.6	36.5	49.9	37.0	12.9
전문관리	100.0	58.7	16.3	42.4	41.3	32.3	9.0
사무	100.0	59.9	16.1	43.8	40.1	32.5	7.5
서비스 판매	100.0	63.7	16.1	47.6	36.3	29.5	6.8
농어업	100.0	30.3	5.5	24.9	69.7	47.5	22.2
기능노무	100.0	67.2	19.0	48.2	32.8	27.3	5.4

주: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그러나 남자의 응답률이 81.9%로 약간 낮게 나타나 88.7%의 여자들과의 차이를 보인다. 즉, 남자들은 여성들의 취업에는 원천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의견이 남자에게서 높게 나타나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성향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 직업을 갖는 경우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 대한 찬성의견은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반면 「결혼전까지」, 「첫 자녀 출산전까지」, 「자녀성장후」에 의견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서 육아문제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었고 특히 「자녀성장후」에서는 남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표 2-27>).

미혼자의 경우는 「가정일에 관계없이」가 61.8%에 이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자녀성장후」와 「출산전과 자녀성장후」로 응답율이 나뉘어짐을 볼 수 있다.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부담(47.5%)」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21.5%)」과 「불평등한 근로여건(10.8%)」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육아부담」에 대해서는 역시 여자들에게서 비율이 높게 나왔다.

흥미로운 것은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가구의 소득이 높다는 것은 연령대가 높다는 뜻도 되고 따라서 육아의 과정이 종료된 응답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한 것으로도 보인다.

<표2-27>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중요		모르겠다
		소계	결혼전까지	첫자녀출산전까지	자녀성장후	출산전과자녀성장후	가정일에관계없이	가정일에전념하는것이더중요			
2013년	100.0	84.5	100.0	4.5	6.1	13.1	24.3	52.1	6.9	8.6	
2015년	100.0	85.4	100.0	3.4	5.7	14.8	24.8	51.3	6.9	7.8	
남자	100.0	81.9	100.0	3.7	6.7	15.8	24.2	49.6	8.3	9.8	
여자	100.0	88.7	100.0	3.1	4.8	14.0	25.3	52.8	5.5	5.9	
미혼	100.0	87.3	100.0	3.9	8.6	6.3	19.5	61.8	3.6	9.1	
배우자있음	100.0	85.5	100.0	3.3	4.5	18.9	27.9	45.4	8.1	6.3	
이혼	100.0	76.9	100.0	3.2	4.0	19.9	21.5	51.4	9.7	13.4	
사별	100.0	82.2	100.0	2.6	3.3	12.5	23.2	58.3	7.6	10.1	

【여성취업 장애 요인】  
(단위: %)

	계	사회적 편견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대한 여성 능력부족	구인정보 부족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sup>1)</sup>	
2013년	100.0	20.8	4.8	10.0	1.6	1.8	46.6	6.0	8.3	
2015년	100.0	21.5	4.6	10.8	2.2	1.2	47.5	5.9	6.3	
남자	100.0	22.6	6.3	10.0	2.6	1.0	44.4	5.3	7.8	
여자	100.0	20.4	2.9	11.6	1.7	1.5	50.5	6.6	4.9	
100만원 미만	100.0	20.3	3.8	7.7	1.8	1.2	44.1	8.7	12.5	
100~200 만원 미만	100.0	20.9	4.1	11.4	2.3	1.7	45.0	6.4	8.2	
200~300 만원 미만	100.0	22.3	4.9	11.8	2.3	1.4	46.0	5.9	5.4	
300~400 만원 미만	100.0	22.4	4.3	11.3	2.0	1.0	48.5	5.4	5.1	
400~500 만원 미만	100.0	20.7	5.2	11.8	1.9	1.3	50.1	4.9	4.2	
500~600 만원 미만	100.0	22.5	4.5	9.4	2.4	0.9	51.2	5.0	4.0	
600만원 이상	100.0	21.3	5.4	10.3	2.3	0.6	52.0	4.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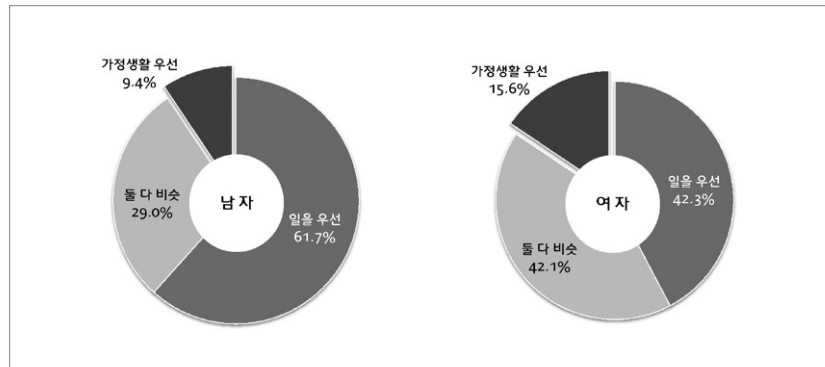
주: 1) 「모르겠음」 포함

### (5)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19세 이상)

그렇다면 취업자는 일과 가정생활 중 무엇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까?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3.7%이며, 「가정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1.9%에 불과하다. 이는 이미 취업을 한 경우 결국 직장일이 더 중요해 지는 것을 뜻한다(<표 2-28>). 이러한 성향은 남녀에게서 서로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남자는 일을 우선시하고 여자는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일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그림 2-7]).

그러나 연령이 높아갈수록 일을 우선시 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표 2-28>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19세 이상)  
(단위 : %)

	계 <sup>1)</sup>	일을 우선시 한다			둘 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		
		주로	대체로	주로		대체로	주로	
2013년	100.0	54.9	27.1	27.8	33.4	11.6	8.6	3.0
2015년	100.0	53.7	25.7	28.0	34.4	11.9	8.5	3.5
남자	100.0	61.7	29.7	32.0	29.0	9.4	6.5	2.8
여자	100.0	42.3	20.1	22.2	42.1	15.6	11.2	4.4
19~29세	100.0	60.9	29.0	31.9	28.1	11.1	7.5	3.5
30~39세	100.0	51.7	22.2	29.5	33.5	14.8	10.8	4.0
40~49세	100.0	52.9	25.7	27.3	35.4	11.7	8.6	3.1
50~59세	100.0	55.4	28.3	27.1	36.1	8.4	6.0	2.4
60세이상	100.0	47.9	23.9	23.9	37.6	14.5	9.5	5.0

주: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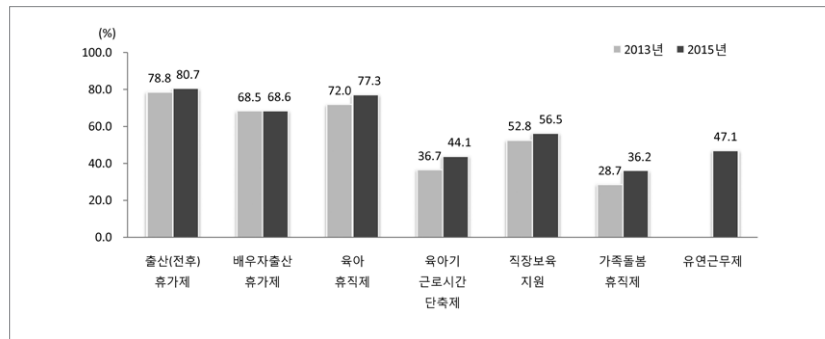
## (6)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그 결과 인지도가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중 「출산휴가제(80.7%)」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그 외에 「육아휴직제(77.3%)」, 「배우자출산휴가제(68.6%)」순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2013년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정책이 비교적 잘 홍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제도는 상대적으로 10대와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잘 모르고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불과 36.2%에 이르고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를 주로 하는 30~40대 이외에 다른 연령층에서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2-8]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표2-29>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sup>1)</sup>(복수응답)  
(단위: %)

	출산(전후) 휴가제	배우자출산 휴가제	육아 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 지원	가족돌봄 휴직제	유연 근무제
2013년	78.8	68.5	72.0	36.7	52.8	28.7	-
2015년	80.7	68.6	77.3	44.1	56.5	36.2	47.1
남자	79.5	69.1	75.5	41.9	55.9	34.9	47.2
여자	82.6	68.1	79.9	47.3	57.4	37.9	47.0
13~19세	63.1	48.5	63.4	27.7	37.8	25.2	27.5
20~29세	77.3	62.9	73.0	38.9	49.2	30.5	44.6
30~39세	87.2	77.0	84.5	51.4	61.2	38.9	52.6
40~49세	84.7	76.1	82.1	48.8	62.5	40.9	51.6
50~59세	78.9	65.2	75.1	43.1	57.4	38.7	47.3
60세이상	65.5	46.8	59.7	26.5	41.9	23.0	27.4

주: 1) 지난 1주일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 3 사회조사의 활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조사는 전체의 조사내용을 2년에 걸쳐서 조사되고 있는 바 위에서 열거한 사회조사의 결과와 다른 연도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다.

#### 1. 가족

가족 관계 만족도/부모 동거자 및 부모와의 교류(가구주)/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분거가족(가구주)/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청소년 고민(13~24세)/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입양에 대한 견해 및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2. 교육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기대 교육 수준 및 기대 교육 목적/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교육비 부담 요인(30세 이상 가구주)/교육 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도(30세 이상)/자녀 유학(30세 이상)

#### 3. 보건

건강관리/흡연(20세 이상)/음주(20세 이상)/건강평가/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0세 이상)/의료 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스트레스 정도/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 4.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준법 수준/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 5. 환경

현재 및 1년 전과 비교한 체감환경/환경보호 비용 부담 의향/환경오염 방지 노력/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이 내용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조사는 실지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들이 행하는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조사에서 제시하는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사회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해 내는 통계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회통계인 것이다.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급속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 각종 기술개발은 급속하게 국민생활 틈으로 스며들고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 IT 기술의 개발과 정부의 전산화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은 생활화되었고, 스마트폰의 광범한 보급은 국민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여가생활의 높은 관심도는 국민들의 행동반경을 넓혀 놓았고 고속철의 개통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양상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정보공유의 확산은 세계 각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올 수 있게 되어 그 파급효과는 국내산업의 각 분야에 생산기술의 향상을 가져 왔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사용의 생활화는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게임문화의 확산으로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산업구조의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사회지표체계는 끊임없이 개편되고 새로운 지표개발도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부작용도 많다. 해킹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범죄율도 높아 가고 익명성을 이용한 소위 보이스 피싱같은 범죄행위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교통수단과 고속도로등의 확대에 의한 범죄도 신속성을 띄고 있는가 하면 IT 기술에 따른 CCTV 카메라 등은 이러한 범죄를 색출하는데 효도를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의 노출이 극대화됨에 따른 정보보호의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른 인간행동의 정확한 파악은 그 중요함이 날로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계가 사회지표로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통계를 이용하여 사회지표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지표는 일정한 체계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사회통계를 이용하여 그 체계에 맞는 사회지표가 작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사회지표의 개발은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정책개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목적에 사회지표의 결과는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사회변화를 장악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사회지표의 개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여 조사하고 잇는 사회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현상의 분석은 물론 사회지표의 체계구축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 3-1. 사회지표의 개념

#### 학습목표

-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지표의 사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1 사회지표란 무엇인가

사회지표(社會指標 : Social Indicators)는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낸 지표로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역할을 하는 것(김민경 등, 2013)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사회 지표는 사회이슈 제반(보건,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포함) 측면을 반영하여 사회발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OECD에 의한 정의로서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웰빙(Well-being)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대응(정부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아울러 제시한다는 것이다.

GNP가 개인소득이나 민간설비투자 등 경제활동을 화폐량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사회지표는 GNP 계산에 직접 삽입하지 않는 항목이다. 즉 건강·교육·근로 생활의 질, 여가 활동, 생활의 질, 가족, 커뮤니티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계가 사회지표이므로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소득증가를 가져 오는 경제성장이 웰빙 수준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전적 시장가치 측정 방식으로는 웰빙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웰빙영역에 대한

정보를 사회지표가 제공해 준다. 즉, 사회지표는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측정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 사회지표의 내용

사회지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우선 OECD에 의한 사회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는 일반지표를 위시해서 자활, 형평성, 사회통합, 보건의료등에 대한 5가지 지표영역에 대해서 25개의 계량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발간하는 것이어서 그 때 그 때 약간은 그 내용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그 25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반지표

(1) 가구소득, (2) 출산율, (3) 이민, (4) 가족, (5) 노인부양비율

### 2) 자활(self-sufficiency) 지표: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경제활동 참여

(1) 고용, (2) 실업, (3) 니트족, (4) 은퇴이후 생존기간, (5) 교육비 지출

### 3) 형평성(equity) 지표: 가구소득, 노동시장에서 기회균등

(1) 소득불평등, (2) 빈곤, (3) 급여수급, (4) 사회지출, (5) 실업급여 수급자

### 4) 보건(health) 지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

(1) 기대수명, (2) 주관적 건강상태, (3) 자살, (4) 보건지출, (5) 의료보장 적용범위

### 5)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지표: 공동체 소속의식, 자발적 참여

(1) 삶의 만족도, (2) 관용, (3) 제도에 대한 신뢰, (4) 안전과 범죄, (5) 이타적 행위

국내에서는 최근에 통계청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이라는 연구를 실행한 바 있는데 이것은 네 번째의 개편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던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99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세 번째는 2004년에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개편안에서는 영역을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국제비교 등의 영역을 구축하고 세부영역지표를 제시하였다.

### ㉓ 사회지표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과 질의 복지정도를 양적, 질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현 사회상태를 종합적, 체계적, 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과 사회구조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지표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실업률, 소득, GDP 같은 경제문제의 위기가 개인은 물론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여건, 가족관계, 출산률, 건강, 직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 사회지표를 이용하여 본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회적 안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긴장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사회구조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지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지표의 추이를 보면 각가지 정부정책의 수행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정책적 대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고 향후 경제 또는 사회정책등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 3-2. 사회지표의 내용

### 학습목표

- 사회지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국제적인 차원에서 OECD 에 의한 사회지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1 사회지표의 내용

사회지표는 그 시대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편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4차에 걸친 개편논의가 있어 온 것은 개편 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만큼 사회가 변화여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OECD가 발표하고 있는 사회지표의 내용을 알아 보기로 한다.

### 2 OECD가 제시하는 사회지표의 내용

사회지표의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일단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살펴 보기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체계에 대해 살펴 보자.

OECD 에서는 1982년에 발표한 사회지표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에서 사회지표를 「여러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사실과 그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UN에서 제시한 다른 여러 정책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압력-대응-상태-대응 (Pressure-State-Response) 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지표들을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사회적 영역 (social context) : 일반적 지표를 의미한다. 정책목표가 항상 사회적 상황을 직접 이해하는데 관련있는 정보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는 생산연령 인구대비 노인이구비율 등을 일컫는다. 즉, 사회영역이 입안되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상태 (social status) :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선별된 지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모든 집단들이 보

다 좋은 복지혜택을 원한다는 식이다.

3.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s) : 사회정책적 개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이나 NGO 나 시민사회등의 활동도 그 예가 된다.

이에 따라 OECD 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체계를 갖추고 있다.

### (1) 일반지표

- 1) 가구소득 : 가구소득은 가족규모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지표는 해당 가구 구성원수로 나눈다.
- 2) 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중에 여성 한 사람이 갖는 예상자녀 수이다. 즉, 각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일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출산율은 5년의 간격을 두고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산출된다. 순 이주는 없고 사망률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면 여성 한 사람당 합계출산율이 2.1명(‘대체’)이면 인구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 자료는 UN과 Eurostat 권고안에 따라 조정하였다.
- 3) 이민 : 순이동율은 인구 천명당 일정 기간동안 한 지역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양의 값은 해당국가를 떠나는 사람보다 유입되는 사람이 낡은 것이고 음의 값은 그 반대를 뜻한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둘다 포함된다. 영구적인 국제이주는 1) 직장관련, 2) 자유이동, 3) 근로자의 동반가족, 4) 가족이민, 5) 인도적 목적, 6)기타 등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 4) 가족 : 15세 이상의 응답자에게 ‘현재 기혼상태입니까?’ 와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한다. 대략적인 결혼율은 천명당 매년 이루어 지는 결혼건수이고 이혼율은 해당연도중 평균 인구대비 해제된 결혼건수의 비로 표현된다.
- 5) 노인부양비율 : 노인부양비율은 물질적으로 타인의 부양에 의존할 수 있는 노인인구수 대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 인구수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부양비율지표는 65세 이상 인구대비 20-64세 인구비율이다. 노년부양비의 역수이기도 하다.

## (2) 자활지표

- 1) 고용 : 고용의 기초지표는 고용상태인 15-64세 인구의 비율이다. 주당 최소 한 시간씩 급여, 수익 또는 가족단위의 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경우라면 질병, 휴가, 산업분쟁 등으로 임시휴업중이라 해도 고용상태인 것으로 본다
- 2) 실업 : 실업율은 재직중이거나 적극적 구직상태인 생산연령 인구대비 실직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구직중인 이들의 비율(15-64세)이다.
- 3) 니트족 : 소위 니트 (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nor Training) 인 구란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인구를 의미한다.
- 4) 은퇴이후 생존기간 : 남녀 모두 퇴직연령시점으로부터 잔존하는 기대 수명을 산출한 것이다.
- 5) 교육비 지출 :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총 연지출액을 사용해 산출한다.

## (3) 형평성지표

- 1) 소득불평등 : 사용된 소득분포의 주요지표는 지니계수이다. 0-1 사이고 0은 완전한 불평등, 1은 완전한 평등을 뜻한다.
- 2) 빈곤 : 양호한 생활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균등화된 가구 소득이 각국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빈곤한 것으로 분류한다.
- 3) 급여수급 : 각국의 사회보호제도가 어떻게 가능한 지를 알아 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순 최저 현금소득 급여 (주거지원 포함) 수준을 중위가구 소득의 50% 또는 60% 인 빈곤기준선과 비교하는 것이다.
- 4) 사회지출 : 공공사회지출을 GDP 대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 5) 실업급여 수급자 : 일차적 실업급여는 실업 초기단계에 일반적으로 수급하는 급여들이다.

#### (4) 보건지표

- 1) 기대수명 : 출생시 기대수명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연령별 사망율을 바탕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을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 2) 주관적 건강상태 : 일반적으로 보건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응답자들에게는 ‘건강이 대체로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좋다. 좋다. 괜찮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중 하나를 고르시오’ 등의 질문을 통해 ‘좋다/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 3) 자살 : 사람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완전하게 인지하거나 예상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 4) 보건지출 : 총 보건지출은 보건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현 보건지출)에 의료보건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더하고 측정하고 있다.
- 5) 의료보장 적용범위 : 건강보험 가입률은 여기에서는 공적 프로그램 및 민간건강보험을 통해 핵심적인 의료보건 상품과 서비스를 받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 (5) 사회통합지표

- 1) 삶의 만족도 : 갤럽세계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으로 ‘11개의 계단이 있는 사다리가 있다고 하자. 맨 아래 계단 (0) 은 최악의 삶이고, 맨 윗 계단 (10) 은 최상의 삶이다. 현재 당신은 개인적으로 몇 번째 계단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평균점을 낸 것이다.
- 2) 관용 : 이민자, 소수민족, 동성애자라는 세개의 집단을 관용으로 대상으로 했다. 갤럽에서 만든 이항 선택형 문항을 바탕으로 모르겠다와 답변 거부는 뺀 숫자중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질문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다른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살기 좋은 곳인가, 좋지 않은 곳인가?, 당신이 사는 도시는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들에게 살기 좋은 곳인가, 좋지 않은 곳인가?, 당신이 사는 곳은 동성애자들에게 살기 좋은 곳인가, 좋지 않은 곳인가?’ 하는 것이다.
- 3) 제도에 대한 신뢰 : 시민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에 신뢰를 갖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부패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회에 대한 측정이다. 정부 신뢰와 금융기관 자료와 재계와 정부가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부패지수를 이용한다.

- 4) 안전과 범죄: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는 지를 나타낸다. 개인적인 안전도가 높으면 개방성과 사회적 접촉, 통합이 촉진될 수 있다.
- 5) 이타적 행위: 갤럽에서 만든 이항선택형문항을 바탕으로 하는데 ‘지난 달에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까?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 3-3.

##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 학습목표

-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1 사회지표체계개발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사회지표작성을 위하여 처음 시도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속에 처음으로 사회개발 (Social Development) 의 내용에 사회개발 장기계획의 작성에 착수한 바 있다. 이때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주축으로 국제연합의 모형을 따라 사회지표를 작성하고 사회개발계획을 만들었으나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통계청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통계개선을 통한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하여 1978년 정부는 사회지표시안을 마련되었고 1979년에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최초로 작성 공표하게 되었다. 그 시안에는 8개 부문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에서 350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다시 128개 지표로서 1979년 공표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한국개발연구원이 주도하여 부문확대를 통한 1차 사회지표 체계 개편이 있었고 1995년에는 2차 사회지표 체계개편으로 13개 부문으로 확대되고 지표도 553개가 되었다. 그 후 2004년에는 3차 개편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부문별 변동은 없이 주관적 지표의 대폭확대를 하여 640개가 되었다.

다시 2012년도에는 각 분야의 변화를 시의성있게 하기 위하여 체계개편이 시도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다문화가구, 공정사회구현 등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 및 국민의 신규 관심영역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2012년도의 개편에서는 1) 새로운 관심영역의 지표추가 및 불필요지표를 삭제하고 2) 국제비교지표의 발굴을 확대하고 3) 지표의 제합성 및 연계성을 제고하고 4) 지역사회지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 2 사회지표의 내용

1969년 Duncan 은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바 있는데 이 당시 사회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던 여러 나라의 관심사와 일치하면서 사회지표개발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었다. 1966년에는 Bauer 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하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사회지표의 기능에 대해서는 Land 사회지표가 가지는 논거로서 1) 사회정책적 논거, 2) 사회변동 논거, 3) 사회보고적 논거를 제시하였고 그 논거를 위한 세부적인 기능으로서는 사회정책적 논거는 정부의 공공정책을 평가하고, 국민경제계정과 유사한 사회계정체계를 설정하고, 사회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응정책수립하는 기능이 뒷받침으로 마련된다고 하였고, 사회변동적 논거의 바탕에는 사회적 조건측정, 삶의 질 내지는 인간생활의 정보수집으로 경제지표를 보완, 사회변동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사회보고적 논거를 위해서는 사회정보체계를 개선하고, 장래의 사회문제와 생활상태를 예견하는 능력을 들고 있다.

사회지표와 관련하여 객관적 수준만을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삶의 질’이나 ‘주요나적 건강상태’ 같은 것은 주관적인 수준의 측정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조남훈, 1995).

사회지표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대별하면 정보적 기능, 예측적 지표, 프로그램 평가지표, 문제중심적 지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표는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게 되는데 1) 가용한 자료를 통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availability), 2) 지표가 자료의 질이 좋아야 하고 (quality), 3) 포괄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completeness of coverage), 4)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validity), 5) 대상으로 하는 현상의 변화만을 반영하여야 하고 (specificity), 6) 관계된 현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sensitivity), 7) ahems 사람들에게 이해가능해야 하고 (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 8) 여러 조건에 의하여 합치거나 나뉘어 제시될 수 있어야 하고 (aggregation and disaggregation), 9)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cross-national comparability) 것이 그것이다.

통계청에서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2015년에 발행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회 각 분야의 동향을 12개 분야에 걸쳐 사회지표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취급영역은 사회통계의 영역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 영역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인구부문 : 출산력, 인구이동과 인구분포, 고령화, 사망률, 혼인 및 이혼
2. 가족과 가구 : 초혼연령과 미혼, 가구구성, 노인가구, 결혼관, 이혼율과 사회적 결과, 일-가족 양립, 아동돌봄, 1인가구, 부부관계, 결혼과 결혼 문화, 맞벌이 부부, 세대관계
3. 교육 : 교육수준, 학교교육의 성취도, 사교육비, 상급학교 진학, 노동시장과 인력배출, 교육의 경제적 성과, 학생과 학부모, 학습시간실태, 교육격차, 취학전 아동 보육, 학업중단, 등록금과 장학금, 평생학습, 취업 실태, 학교교육효과인식, 학생들의 스트레스
4. 노동 : 고용안정성과 비정규직, 중고령자 노동시장, 청년층 노동시장, 노사관계,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외국인근로자, 직업선택기준, 여성취업변화, 노동시장은퇴, 임금수준, 저소득층 소득지원, 최저임금
5. 소득과 소비 : 교육비 지출, 빈곤율, 소득원천, 중산층 맞벌이 부부, 구매력,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가계부채, 소비지출의 추이,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가구주연령과 소득소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소득분배, 인구고령화와 소득소비 불평등
6. 문화와 여가 : 문화예술향유실태, 관광산업, 여가생활, 인터넷중독, 소득수준과 여가활동, SNS의 이용, 문화산업, 청소년여가, 생활체육, 노년층 문화관람.
7. 주거와 교통 : 주거생활, 통근통학, 주거빈곤, 교통의 고속화,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수도권출근, 주거안정성, 주거빈곤가구, 도록지역불균형, 주거복지,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교통복지
8.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비, 공공의료, 자살급증, 만성질환, 건강불평등,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의료만족도, 질환변화, 건강검진, 음주수준, 직무스트레스
9. 환경 :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친환경소비, 친환경산업, 기후변화, 에너지소비, 신재생에너지, 화학물질노출

- 10. 안전 : 자연재난, 흉악범죄증가, 사회안전과 위험요인, 청소년비행, 산업재해, 아동학대, 청소년범죄, 사이버, 여성대상범죄, 응급안전시스템, 노동자건강과 유해요인노출, 외국인범죄, 성폭력범죄
- 11. 사회통합 : 세대격차, 투표참여, 가치와 이념, 공직부패, 정치사회참여, 사회적 신뢰, 북한이탈주민, 기부와 자원봉사, 노인자살, 다문화수용, 공정성, 투표
- 12. 복지 :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빈곤문제, 빈곤, 노후준비, 사회복지 인력

### ㉓ 사회지표의 활용

사회지표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지역적 분포와 관련한 비교, 또는 지역적 분포 등을 관찰하게 되고 이로써 어떤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여 사회적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책의 개발을 도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는 몇 가지의 조건을 갖는다. 첫째, 간단해야 (simple) 한다. 복잡한 지표는 이해하기 힘들어 실용성이 없다. 둘째는 실제적이어야(materialistic) 한다. 지표가 추상적이 되면 지표로서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용성이 없다. 셋째는 정확해야(accurate) 한다는 것이다. 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결정의 초점이 어긋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함은 기본이다. 넷째, 현실적(realistic) 이어야 한다. 현 사회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면 바로 그 사회의 것이 아니다. 다섯째, 시의성(timely)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표는 항상 그 시대의 것이어야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성이 없는 지표는 역사가 되고 지나간 역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여섯째는 실제적으로 측정 가능해야(technically measurable) 한다. 측정 가능하지 않은 것은 관찰 역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일곱째는 명확해야(clarity) 한다는 것이다. 명호가하지 않은 지표를 이용하여 정책개발은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비교가능해야(comparable)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는 사회정책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0세, 1-4세 인구 집단의 사회지표는 이 인구층이 보건학적으로 아주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보건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 인구정보를 교육정책에서는 향후 취학 아동의 규모등을 예견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편 또는 학교의 개설 폐지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수의 인력수급에 활용되기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사회지표는 정책개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김민경 등(2013), 국가통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조남훈 외(1995),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uer, R.A.(1966),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in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1966.
- De Neufville J.I.(1975), Chapter 4, in Social Indicators and Political Policy.
- Land, KC(1975), 'Social Indicator Models: An Overview', Model of Social Indicators, Russel, Sage, New York,(Land, KC and Spillerman, S (Eds.).
- OECD (편)(2014),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 사회지표, OECD Korea Policy Centre.
- United Nations(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New York.

# 6부

---

## 국가통계 활용

## 6부. 국가통계 활용

### 목차

학습과목의 개요	317
<b>제1장. 국가통계포털서비스(KOSIS)</b>	
1-1. 국가통계포털서비스(KOSIS)	319
1 국가통계포털(KOSIS)이란	319
2 KOSIS의 구축 배경	320
3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의 간략한 역사	321
4 국가통계통합DB 수록자료 관리	322
5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구성 및 활용법	323
6 KOSIS 시각화서비스	332
7 KOSIS 모바일 서비스	335
8 KOSIS 공유서비스(Open API)	336
<b>제2장.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b>	
2-1.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339
1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란	339
2 지도와 GIS	339
3 공간통계정보	345
4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간략한 역사	347
5 SGIS 오픈플랫폼, SGIS+Plus	348
<b>제3장.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b>	
3-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357
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란	357
2 데이터의 종류	361
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362
4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신청	363
5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367
6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의 미래	368
<b>제4장. 행정자료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b>	
4-1. 행정자료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371
1 행정자료와 행정자료 활용 필요성	371
2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372
3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조치	376
연구과제 또는 연습문제	383
참고 자료	384



## 국가통계 활용 과목의 개요

---

**학습 목표** 통계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정보서비스의 활용 방법과 각 행정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어떻게 통계작성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선수학습** 이 장은 별도의 선수학습이 필요하지 않음

**주요 용어**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통계마이크로데이터, MDSS, MDIS, 행정자료

**학습과목의 내용요약** 여기서는 국가통계 결과를 통합하여 포털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및 공표되는 통계자료 이외에 이용자가 폭넓게 집계,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에 대해 각각의 의미와 서비스 내용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널리 국가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에 관하여 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 상황을 알아본다.



# 제 1 장 국가통계포털서비스 (KOSIS)

## 1-1. 국가통계 포털서비스 (KOSIS)

### 학습목표

- 국가통계포털(KOSIS)란 무엇이고, 이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한다.

### 1 국가통계포털(KOSIS)이란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국가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One-Stop으로 서비스하는 통계포털 서비스다. KOSIS는 통계에 관한 포털 서비스라는 서비스 목적에 맞게 국가통계를 비롯한 국내통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해 IMF, OECD, UN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집된 국제통계, 통계관련 보도자료, 통계를 통해 쉽게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 북한의 주요통계를 모아 서비스하는 북한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KOSIS는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의 규정에 따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

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통계법 시행령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전문개정 200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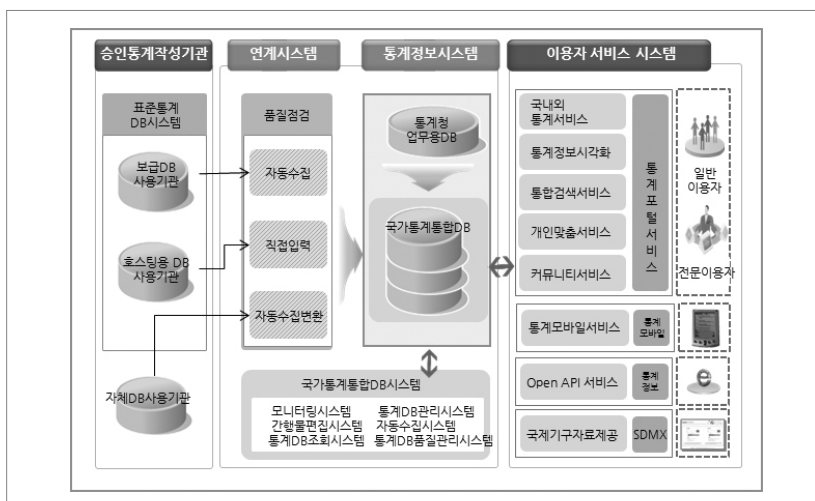
## 2 KOSIS의 구축 배경

통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국가의 주요 인프라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를 각기 작성·보급하고 있어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일반 국민이 원하는 통계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몰라 통계간행물을 일일이 살펴보거나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검색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5년 국가통계통합DB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이용자가 한 곳에서 원하는 통계를 검색할 수 있는 '집중형 통계보급 서비스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07년

7월부터 통계작성기관에 산재되어 각각 관리·서비스되고 있는 통계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1]  
국가통계통합DB  
시스템 구성도



이러한 통합을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수집 시스템, 통계DB 품질 관리시스템 등 많은 보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

### 3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의 간략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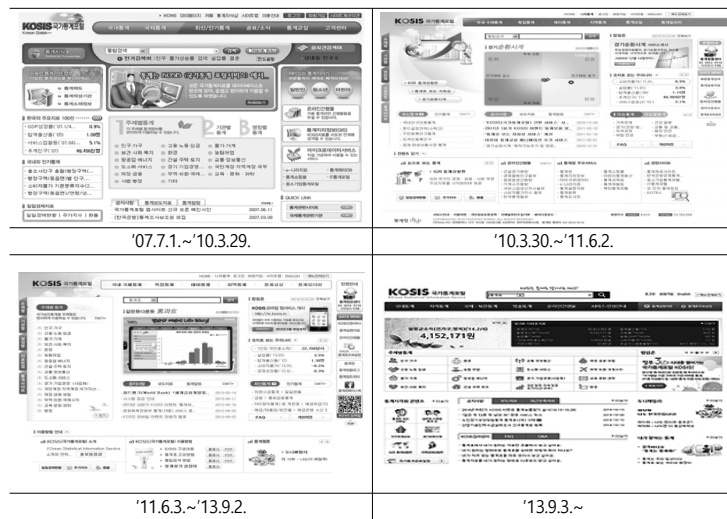
국가통계포털은 1991년 1월 국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로 명명한 것이 그 시초로 IBM 주전산기에서 제한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후 1998년 3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환 및 일반 이용자 대상의 통계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확대하였고, 1999년 11월에는 여러 기관의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서비스한다는 개념의 STAT-KOREA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단순히 각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연결만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관에 따라 데이터의 수록시점이 상이하고, 데이터의 수록방식도 제각각인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6년 국가통계 통합DB 구축 및 통합포털 서비스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7월 국가통계통합포털 서비스를 실시하고, KOSIS로 명명하였다. 명칭은 기존의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에서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로, 시스템(System)이 서비스(Service)로 바뀐 것뿐이었으나, 그 배경에는 많

은 차이가 있었다. 즉, 각 기관별로 제각각이던 수록방식을 표준화하였고, 예산, 관리인력 부족 등 기관의 환경적인 제약으로 통계자료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기관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KOSIS 수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 국가통계 전체 메타자료 서비스, 2009년 6월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 2009년 12월 경기순환시계 서비스 등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 노력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버블차트로 보는 우리 지역, 우리집 물가 체험하기, 통계웹툰, 인구추계교실 등 체험 위주의 콘텐츠를 추가하여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과 함께 KOSIS 모바일웹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좀 더 친근한 서비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걸맞도록 KOSIS 메인 화면도 [그림 1-2]와 같이 변천되어 왔다.

**[그림 1-2]**  
KOSIS 메인화면의  
변천



#### **4** 국가통계통합DB 수록자료 관리

통계청은 KOSIS 서비스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책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거나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국가통계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를 DB로 구축하였다. 이제는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자료를 유지하고 자료의 품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청으로 전송되는 통계자료의 모니터링, 최신 시계열 입력 여부 및 점검, 통계자료 입력 지원, 통계DB 자료 관리와 자료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국가통계통합DB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통계통합DB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국가통계통합DB 서비스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협의,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등의 청취뿐만 아니라 기관 간 상호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통합DB 운영 우수기관을 선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통계통합DB에는 통계DB 관리시스템, 통계DB 조회시스템, 간행물 편집시스템 등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이 있으며, 이 시스템 중에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의 입력·관리, (국가통계통합DB로의) 전송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보급한 통계DB 관리 및 조회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KOSIS 통계DB는 통계작성기관의 상황에 맞게 <표 1-1>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표 1-1>  
KOSIS 통계DB  
운영형태

<b>호스팅DB</b>	통계청의 호스팅 서버에서 동 시스템을 운영
<b>보급DB</b>	통계작성기관의 자체 서버에 보급된 시스템을 설치하여 해당기관에서 관리
<b>자체DB</b>	각 기관 자체 서버 및 자체의 입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환

또한 OECD, UN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료를 KOSIS와 연계하거나 생성·관리·제공할 수 있는 국제기구 자료제공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통계 및 메타자료의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인 SDMX(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를 적용하여 자료제공방식의 표준화와 제공통계의 품질확보가 가능해졌다.

## 5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구성 및 활용법

국가통계포털을 사용하려면 웹브라우저에서 KOSIS 주소(<http://kosis.kr>)를 입력하고, 국내통계, 지역통계, 국제·북한통계 등의 메뉴를 이용한다. KOSIS는 웹브라우저가 Microsoft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준수하고 있다. [그림 1-3]은 KOSIS 메인화면으로 전체 메뉴의 구성과 내용은 <표 1-2> 및 <표 1-3>과

같다. 단, <표 1-3>의 내용은 화면 좌측 상단의 [메뉴전체보기]를 누르면 볼 수 있다.

[그림 1-3]  
국가통계포털(KOSIS)  
메인화면



<표 1-2>  
KOSIS 메인메뉴  
(Global Navigation  
Bar)




메뉴	내용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기관별통계, 과거·중지통계(광복이전통계, 대한민국통계연감, 작성중지통계)
지역통계	지역통계(주제별, 기관별), e-지방지표(주제별, 지역별, 지도로 보기)
국제·북한통계	국제통계, 북한통계
맞춤통계	대상별접근, 이슈별접근, 인기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KOSIS 100대 지표, 통계로 보는 자화상, 같은 듯 다른 듯 남과 여, 인구추계교실, 경기순환시계, 세계속의 한국, 지역경제상황판, 우리집 물가 체험하기, 버블차트로 보는 통계, 통계교육동영상)
온라인간행물	주제별, 명칭별
서비스안내	국가통계포털 소개, 국가통계현황, 국제통계작성기관, 서비스정책, KOSIS 길라잡이, FAQ, Q&A, 홈페이지개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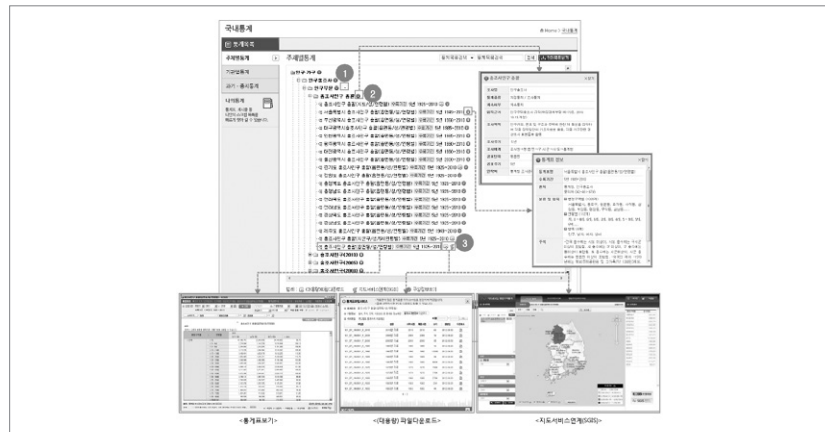
<표 1-3>  
KOSIS 부메뉴

메뉴	내 용
새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최근수룩자료
부가서비스	통계웹툰, 내가 말하는 통계, RSS, Open API(목록 API, 지표 API), 모바일웹, 뷰어다운로드
마이페이지	나의통계, 내질문/의견(Q&A, 홈페이지개선 의견), 회원정보수정, 회원탈퇴
회원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관련사이트	통계설명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SGIS), 마이크로데이터(MDSS), e-나라지표, 북한통계, 녹색성장지표, 통계제공기관 등에 대한 연계
통합검색	입력된 단어나 문장과 일치하는 자료를 통계DB, 통계설명자료, 통계용어 등 모든 자료저장소에서 검색 조회

KOSIS에서 통계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통계, 지역통계, 또는 국제·북한통계 메뉴를 클릭한 후, 좌측 화면의 주제별통계, 기관별통계, 과거·중지통계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그림 1-4]와 16개 통계목록이 나타나며, 이 중에서 찾고자 하는 통계목록을 클릭하여 하위 목록을 선택한다. 각 하위 목록의 옆에 나타난 아이콘은 다음과 같다.

아이콘	기 능
	통계표의 구성정보 등 표시([그림 1-4]의 ①)
	대용량 자료에 대해 파일 다운로드([그림 1-4]의 ②, ③)
	SGIS의 지도서비스와 연계([그림 1-4]의 ②, ③)

[그림 1-4]  
KOSIS 수록항목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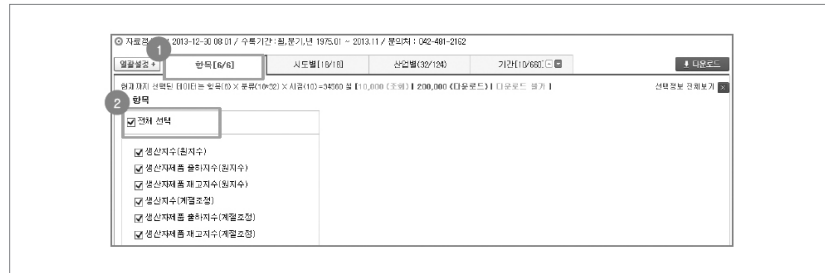


[그림 1-5]  
KOSIS 통계표

시도별	산업별	2013. 11			
		발전자용량(증가치수)	발전자용량 증감률(%)	발전자용량(계절조정)	발전자용량 증감률(계절조정)
전국	총계	110.2	106.6	129.9	106.2
	광업 및 채굴업	110.2	106.6	129.9	106.2
	제조업	100.2	115.9	201.9	94.5
	서비스업	110.2	106.6	129.9	106.2
	전기·가스·열기 및 수도사업	188.5	112.4	-	116.2
서울특별시	총계	30.1	106.1	111.5	92.3
	광업 및 채굴업	97.4	98.3	111.5	91.6
	제조업	97.4	99.3	111.5	91.6
	서비스업	188.9	105.2	-	103.2
	전기·가스·열기 및 수도사업	117.6	116.3	-	115.9
부산광역시	총계	183.0	98.3	154.8	98.1
	광업 및 채굴업	19.4	97.3	154.8	98.2
	제조업	19.4	97.3	154.8	98.2
	서비스업	117.6	116.3	-	115.9
	전기·가스·열기 및 수도사업	117.6	116.3	-	115.9
대구광역시	총계	117.9	116.1	138.4	114.1
	광업 및 채굴업	118.7	116.1	138.4	114.5
	제조업	118.7	116.1	138.4	114.5
	서비스업	93.7	91.9	-	101.6
	전기·가스·열기 및 수도사업	136.2	104.6	142.2	102.4
인천광역시	총계	197.0	108.2	142.2	103.6
	광업 및 채굴업	197.0	108.2	142.2	103.6
	제조업	197.0	108.2	142.2	103.6
	서비스업	197.0	108.2	142.2	103.6
	전기·가스·열기 및 수도사업	197.0	108.2	142.2	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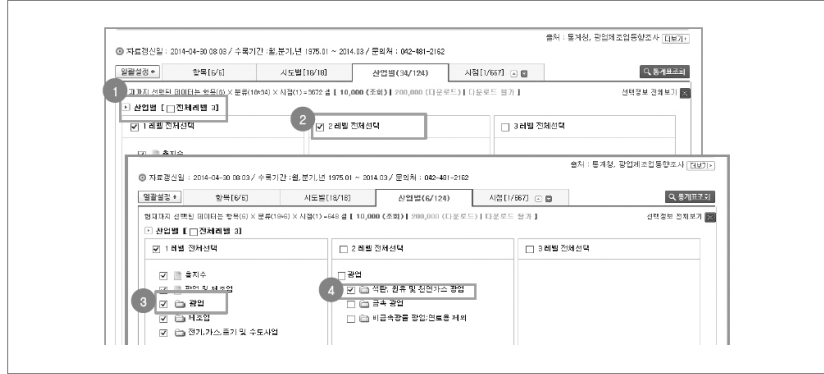
하위 목록을 클릭하면 [그림 1-5]와 같은 통계표가 나타나며, 항목, 분류(예: 시도별, 산업별), 기간을 각각의 탭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좌측 상단의 일괄설정을 눌러 한 화면에서 항목, 분류, 기간을 모두 선택할 수도 있다. 항목, 분류 및 기간 설정은 각각 [그림 1-6]부터 [그림 1-8]까지와 같다.

[그림 1-6]  
항목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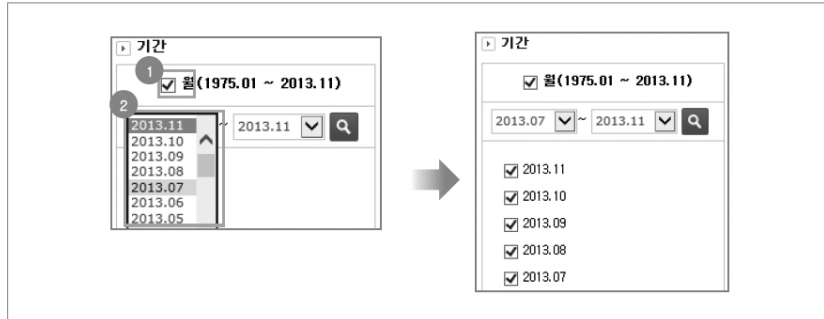
- ① 항목 탭을 클릭하면 항목 전체 리스트가 나타나고, 조회하려는 항목을 선택한다.
- ② 전체선택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전체선택이 가능하다.

**[그림 1-7]**  
분류 설정



분류 탭(예 : 산업별)을 클릭하면 분류 탭 아래에 분류명과 전체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분류값 전체선택 및 해제, ② 레벨별 전체선택 및 해제 및  
 ③ 개별선택 및 해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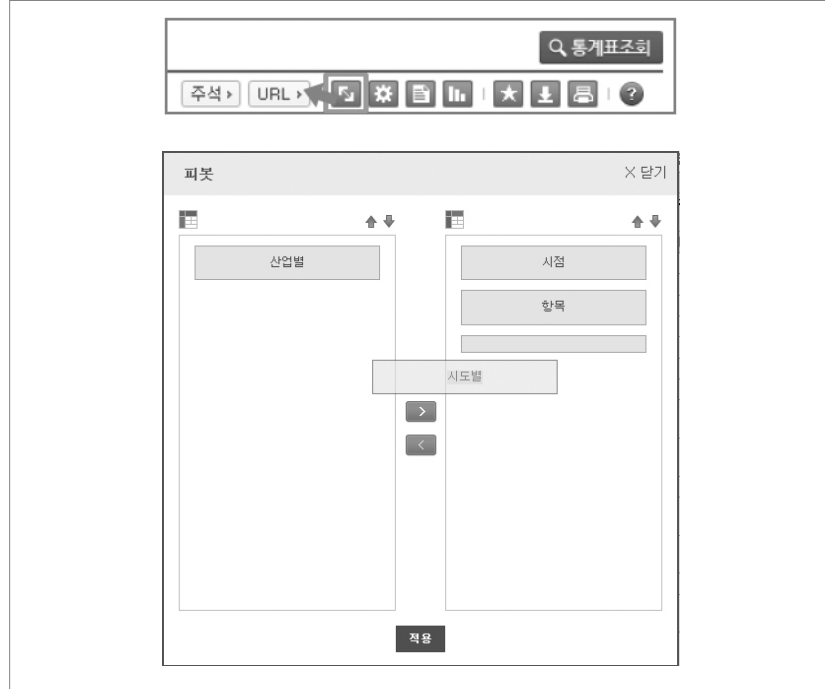
**[그림 1-8]**  
기간 설정



① 조회하려는 주기(월/분기/년)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조회하려는 기간을 콤보박스에서 선택한다. 여러 개의 주기를 다중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5]의 통계표 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포두나 표측으로 이동하여 조회할 수 있는 피벗 기능([그림 1-9])이 있다. 다음, 부가기능 설정을 통해 표 구성, 소수점 자릿수, 계층컬럼 구분, 상위레벨표시, 셀 단위, 가중치보기 및 시점정렬을 할 수 있으며, 조회된 화면에서 특정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그림 1-10]). 또 분석을 원할 때 분석함수를 사용하여 증감(률), 구성비, 누계(구성비)를 구할 수 있으며([그림 1-11]), 차트종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차트가 출력된다([그림 1-12]). 조회한 통계표를 원하는 파일 형태(엑셀, CSV, TXT, SDMX(2.0))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대용량 통계표로 통계표 파일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생성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그림 1-13 및 1-14]).

[그림 1-9]  
피벗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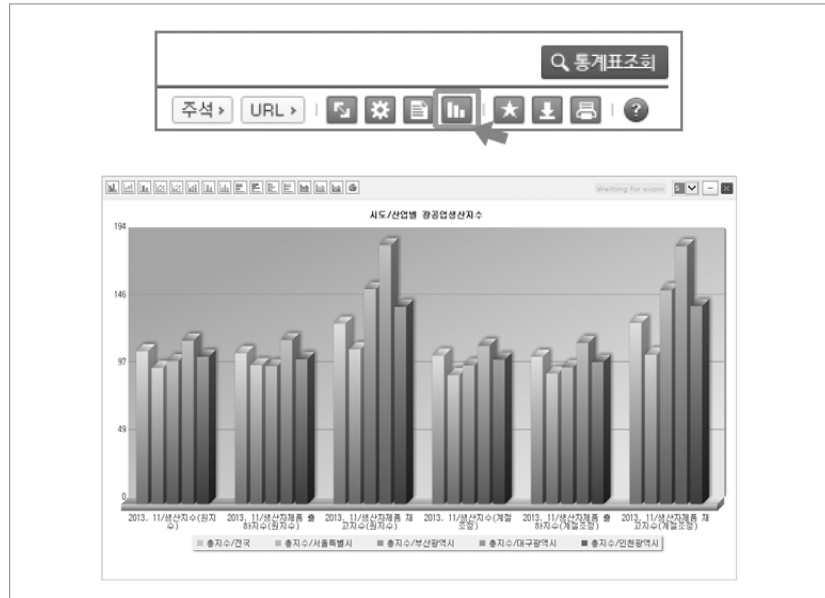
[그림 1-10]  
부가기능 설정



[그림 1-11]  
분석기능



[그림 1-12]  
차트기능



[그림 1-13]  
다운로드 기능-1



[그림 1-14]  
다운로드 기능-2

**<EXCEL(셀 병합 체크)>**

	A	B	C	D	E	F	G	H
1	시도별	산업별	2013. 11					
2	총지수	110.2	108.8	129.9	106.9	106.1	130.5	
3	제조업	110.3	108.6	129.9	106.8	105.9	130.5	
4	서비스업	100.2	119.9	203.9	94.5	109.0	212.0	
5	제조업	110.3	108.6	129.8	106.8	105.9	130.3	
6	서비스업	109.5	112.4	-	110.2	110.4	-	
7	제조업	98.1	100.1	111.5	92.9	94.0	107.6	
8	서비스업	97.4	99.3	111.5	91.6	92.6	107.6	
9	제조업	97.4	99.3	111.5	91.6	92.6	107.6	
10	서비스업	103.9	105.2	-	103.2	101.9	-	
11	제조업	103.0	99.3	154.8	99.9	98.6	154.0	
12	서비스업	101.4	97.3	154.8	98.2	96.3	154.0	
13	제조업	101.4	97.3	154.8	98.2	96.3	154.0	
14	서비스업	117.6	118.3	-	115.9	120.8	-	
15	제조업	117.6	118.3	-	115.9	120.8	-	
16	서비스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17	제조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18	서비스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19	제조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EXCEL(셀 병합 체크해제)>**

	A	B	C	D	E	F	G	H
1	시도별	산업별	2013. 11	2013. 11	2013. 11	2013. 11	2013. 11	2013. 11.
2	총지수	110.2	108.8	129.9	106.9	106.1	130.5	
3	제조업	110.3	108.6	129.9	106.8	105.9	130.5	
4	서비스업	100.2	119.9	203.9	94.5	109.0	212.0	
5	제조업	110.3	108.6	129.8	106.8	105.9	130.3	
6	서비스업	109.5	112.4	-	110.2	110.4	-	
7	제조업	98.1	100.1	111.5	92.9	94.0	107.6	
8	서비스업	97.4	99.3	111.5	91.6	92.6	107.6	
9	제조업	97.4	99.3	111.5	91.6	92.6	107.6	
10	서비스업	103.9	105.2	-	103.2	101.9	-	
11	제조업	103.0	99.3	154.8	99.9	98.6	154.0	
12	서비스업	101.4	97.3	154.8	98.2	96.3	154.0	
13	제조업	101.4	97.3	154.8	98.2	96.3	154.0	
14	서비스업	117.6	118.3	-	115.9	120.8	-	
15	제조업	117.6	118.3	-	115.9	120.8	-	
16	서비스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17	제조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18	서비스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19	제조업	118.7	119.1	186.4	114.1	116.0	185.6	

KOSI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각각의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KOSI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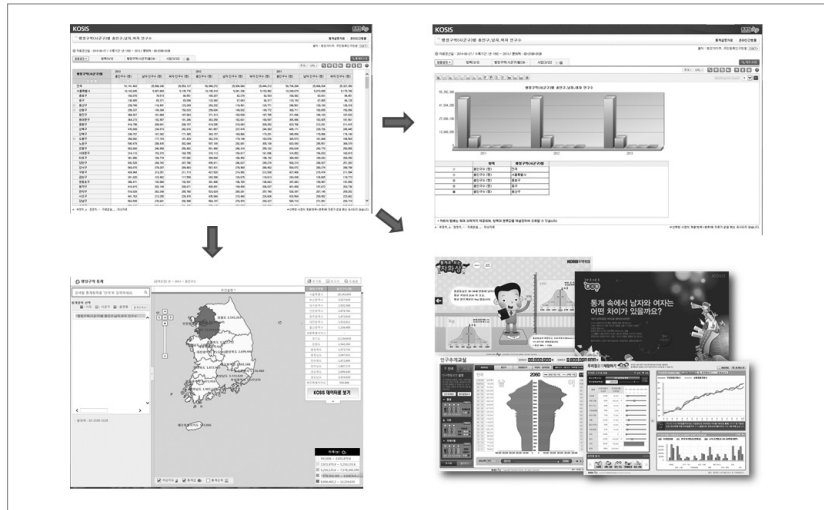
콘텐츠	서비스 시기	내용
맞춤통계 (대상별, 이슈별)	'08. 5.	일상생활과 관련한 쉽고 흥미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통계의 특성을 모아 서비스
e-지방지표	'08.1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생활환경 및 경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 통계들을 선정, 지역 간 평가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
광복이전통계	'08.12.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통계연보(1908년부터 1943년까지 36년간)자료를 번역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
지역통계	'09. 3.	통계를 행정구역별 공표범위에 따라 시도별, 시군구별 및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통계로 보는 자화상	'09. 6. '15.10.( 개편)	일상 속에서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최종 결과를 '나의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북한통계	'09. 7.	북한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에 산재된 북한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대국민 서비스
대한민국 통계연감	'09.12.	메타자료 번역(한자 → 한글)하여 1952년 ~ 1962년도 한국통계연감자료를 DB구축하여 서비스
지역경제 상황판	'11. 3	광업·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 및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의 동향을 지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
버블차트로 보는 통계	'12. 2.	이용자가 선택한 3개지표(X축, Y축, 버블크기)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지표간 경제, 사회적 연관성을 쉽게 파악
우리집 물가 체험하기	'12. 4.	우리집 지출 항목 구성비에 따른 물가지수를 산출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는 서비스
통계웹툰	'12. 6.	관심 있는 통계 및 통계콘텐츠를 만화로 구성하여 통계관련 정보를 제공
인구추계교실	'12.11.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대한 장래수준을 설정하여 미래인구를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듯 다른 듯 남과 여	'13. 1.	남녀 간 비교라는 대중적 관심사를 소재로 하여 남녀 관련 지표에 다양한 방식의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서비스
세계속의 한국	'15.10.	세계 여러 국가와 한국을 한눈에 비교 (7개 부문 49개 지표)

## 6 KOSIS 시각화서비스

시각화(Visualization)란 정보이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림, 그래프, 지도 등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감각 중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90%라 하고, 실생활에서도 도로표지판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주의, 경고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만약 도로표지판의 내용이 그림이 아닌 문자로 되어 있다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 표지판의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컴퓨터의 아이콘이나 페이스북, 밴드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단순화 시킨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시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5]  
시각화의 다양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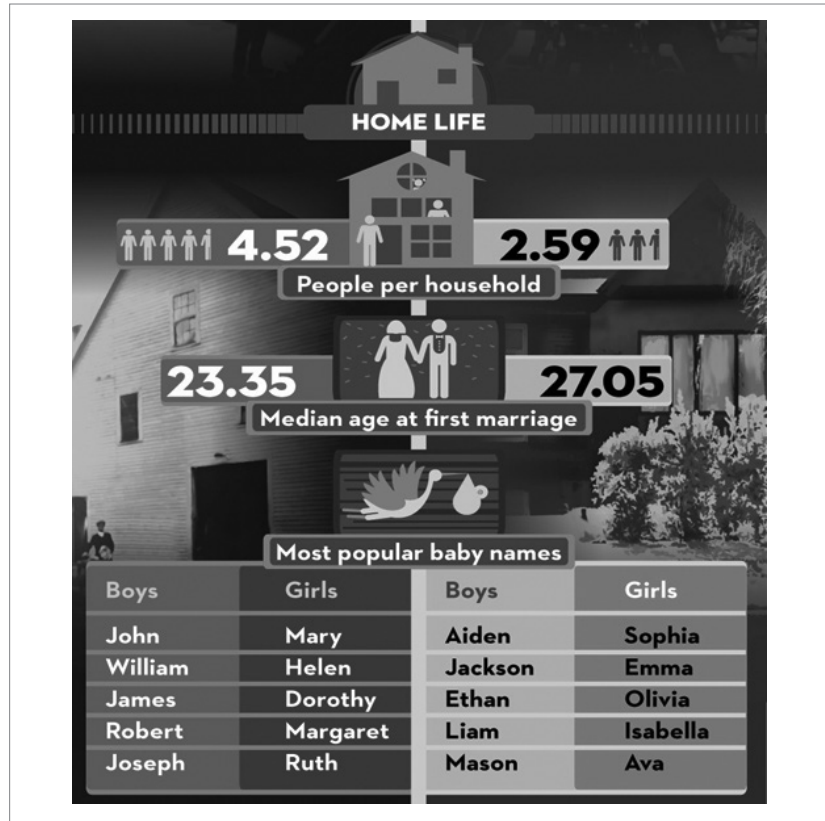
시각화의 형태로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그래프일 것이다. 특히 통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변수가 가지는 구성비를 보여주는 파이차트부터 두 개 이상의 변수를 비교하면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선 또는 막대그래프 등이 있다. 또한 지도를 활용하여 대상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그래프나 지도의 경우 변수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져서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포그래픽 역시도



시각화의 한 방법으로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정보를 전달, 보관, 확산한다는 공통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림 1-16]  
인포그래픽의 예



미국의 시대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평균 혼인연령,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 비교

통계정보서비스의 시각화·지식화가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KOSIS에서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을 비롯한 ‘경기순환시계’, ‘지역경제상황판’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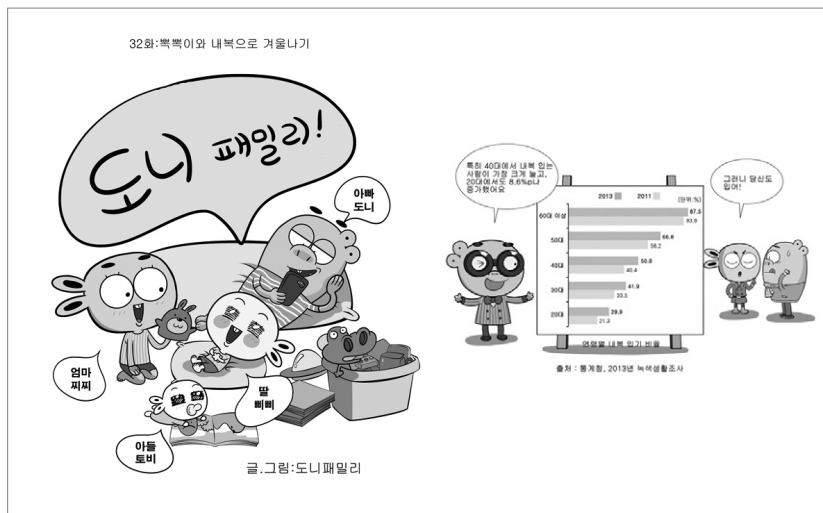
2012년에는 국민들이 흥미를 갖고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버블차트로 보는 통계’와 개인의 소비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정부공식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할 수 있는 ‘우리집 물가 체험하기’ 콘텐츠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11월에는 인구 5천만 시대에 통계청에서 인구를 어떻게 추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인구추계교실’을 서비스하여 이용자들이 한국의 미래 인구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초에는 통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보는 ‘같은 듯 다른 듯 남과 여’를 서비스 개시하였다.

[그림 1-17]  
KOSIS의 시각화  
콘텐츠



또한, 인구 및 사회 등 관심이 많은 통계를 만화로 제작하여 2012년 6월부터 KOSIS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18]  
통계웹툰 ‘도니패밀리’



이와 같이 KOSIS에서는 이용자가 보다 쉽게 통계정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충실한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7 KOSIS 모바일 서비스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및 다양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KOSIS 모바일 웹서비스(m.kosis.kr)를 2012년 6월부터 개시하였다. 현재 ‘국내/국제 통계지표’, ‘통계로 보는 자화상’, ‘같은 듯 다른 듯 남과 여’ 및 통계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19]  
KOSIS 모바일  
웹서비스



[그림 1-20]  
KOSIS 모바일  
웹서비스 화면



## 8 KOSIS 공유서비스(Open API)

KOSIS 공유서비스란 KOSIS에 수록된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으로, 좀 더 공식적인 정의로는 “KOSIS 통계정보를 웹 또는 모바일 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I)를 개방·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서비스를 위해 KOSIS 공유서비스는 XML, Javascript 등 비교적 기본적인 웹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 통계정보 서비스정책을 수립하여 상업적 활용에도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KOSIS 통계정보를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으며, 아래의 예와 같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활용범위 예외사항>

1. 간행물이나 CD 등을 통해 구입하여 DB로 구축한 국제통계 및 북한통계는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재배포는 금지된다.
2. KOSIS 통계정보를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출처 표기방법>

형식 1. KOSIS(작성기관명, 조사명, 통계표명), 참조일자

(예) 출처: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2013.8.1.

형식 2. KOSIS > 접속경로(작성기관명), 참조일자

(예) 자료: KOSIS>국내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통계청), 2013.8.1.

이 공유서비스의 활용은 KOSIS 이용자가 KOSIS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형태로 KOSIS 통계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자료요청을 하고 통계청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자에게 전송해야 했다. KOSIS 공유서비스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시대적 요청에 따라 획기적으로 간략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KOSIS 공유서비스는 KOSIS에 수록된 통계목록, 통계자료, 대용량 통계자료, 통계설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는 SDMX, JSON,

XLS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대상별로 이용방법과 자료형태가 약간 다르다.

KOSIS 공유서비스는 2014년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공공 데이터포털(www.data.go.kr)에도 연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KOSIS 공유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보겠다([그림 1-21]).

#### 〈서비스 대상별 이용방법〉

1. 통계목록 : 통계표의 목록구성 정보 제공을 위한 OpenAPI이다. 통계목록 단위로 호출하고 서비스 뷰(주제별, 기관별 등 12가지)별로 상위목록의 정보와 연결된 통계표명을 제공한다. 활용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인증키가 발급되며 URL을 생성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통계자료 : 통계표의 수치자료 및 메타정보(수록정보, 출처, 단위 등) 제공을 위한 OpenAPI이다. 수치자료는 통계표의 시계열(단일계열, 여러 시점), 또는 횡단면(다중계열, 단일시점) 단위로 호출하며, 메타정보는 수치자료와 같이 호출할 수도 있다. 활용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인증키가 발급되며 통계자료를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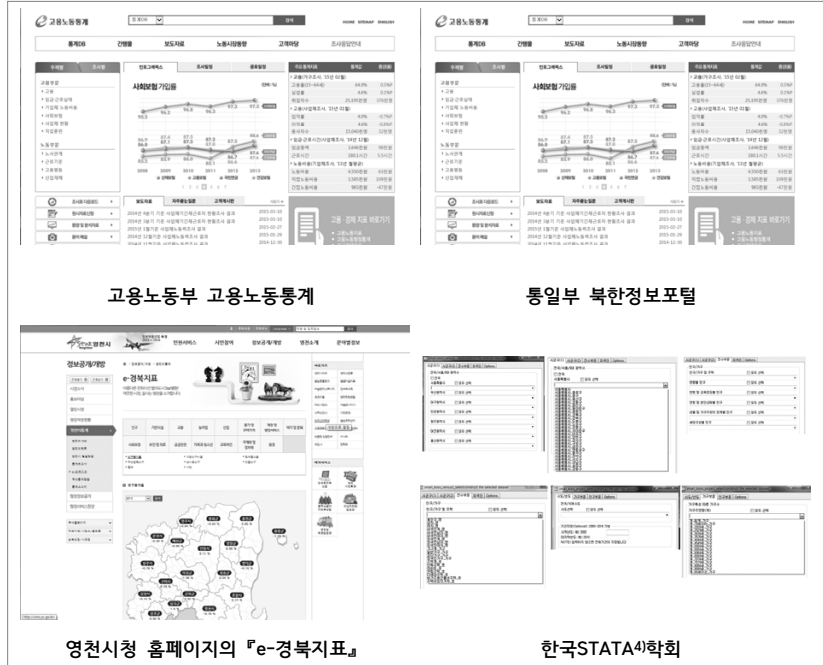
3. 대용량 통계자료 : 통계표의 수치자료 및 메타정보 제공을 위한 OpenAPI로, 통계표 전체, 분류 전체(일부), 항목 전체(일부)를 선택적으로 요청한다. 데이터 양이 많은 특성 상 자료제공 형태가 SDMX 외 XLS가 추가되며, 통계표 단위로 활용신청을 하고 심사승인 과정을 거쳐 승인되면 인증키가 발급된다.

4. 통계설명 : 통계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을 위한 OpenAPI이다. 통계표 또는 통계조사 단위로 호출하면 통계조사에 대한 상세 설명정보(조사명, 통계종류, 조사목적, 조사체계, 공표범위, 연락처)가 API로 제공된다. 활용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인증키가 발급되며 URL을 생성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을 위해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매월 제공하는 고용률(15~64세), 실업률, 취업자수 등의 통계자료를 KOSIS OpenAPI로 매월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인포그래픽 및 주요통계지표 화면으로 제공한다.

북한정보포털은 통일부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집하고 연구한 북한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국민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1-21]**  
KOSIS 공유서비스  
활용 사례



록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비교통계에서는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인당 국민총소득, 쌀 생산량, 무역총액 등 남북한 주요통계자료를 그래프와 표 형태로 제공 중이다.

『e-경북지표』는 영천의통계 서브메뉴로 KOSIS 『e-지방지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중 경상북도 자료만 별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KOSIS OpenAPI를 활용하여 구성된 것으로, 인구, 기반시설, 고용, 농업업, 산업 등 15개 분야의 주요지표를 경상북도 시·군 지도위에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STATA학회에서는 KOSIS OpenAPI를 이용하여 KOSIS 내의 데이터를 STATA통계프로그램에서 바로 불러들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STATA에서 통계자료를 조회할 조건(시점, 지역, 항목 등) 선택하면 해당 통계자료가 KOSIS Open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호출되어 조회된다.

이와 같이 KOSIS 공유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 2 장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 2-1.

### 통계지리 정보서비스 (SGIS)

#### 학습목표

- 통계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통계자료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배경과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1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란 통계조사 결과 얻어진 통계 자료와 지리정보를 융합하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민간과 공공의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지도 위에서 연계·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통계플랫폼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서비스이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와 같은 센서스 자료를 개인 및 사업체의 비밀이 보호되는 최소한의 영역 단위로 정밀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러한 영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다음 소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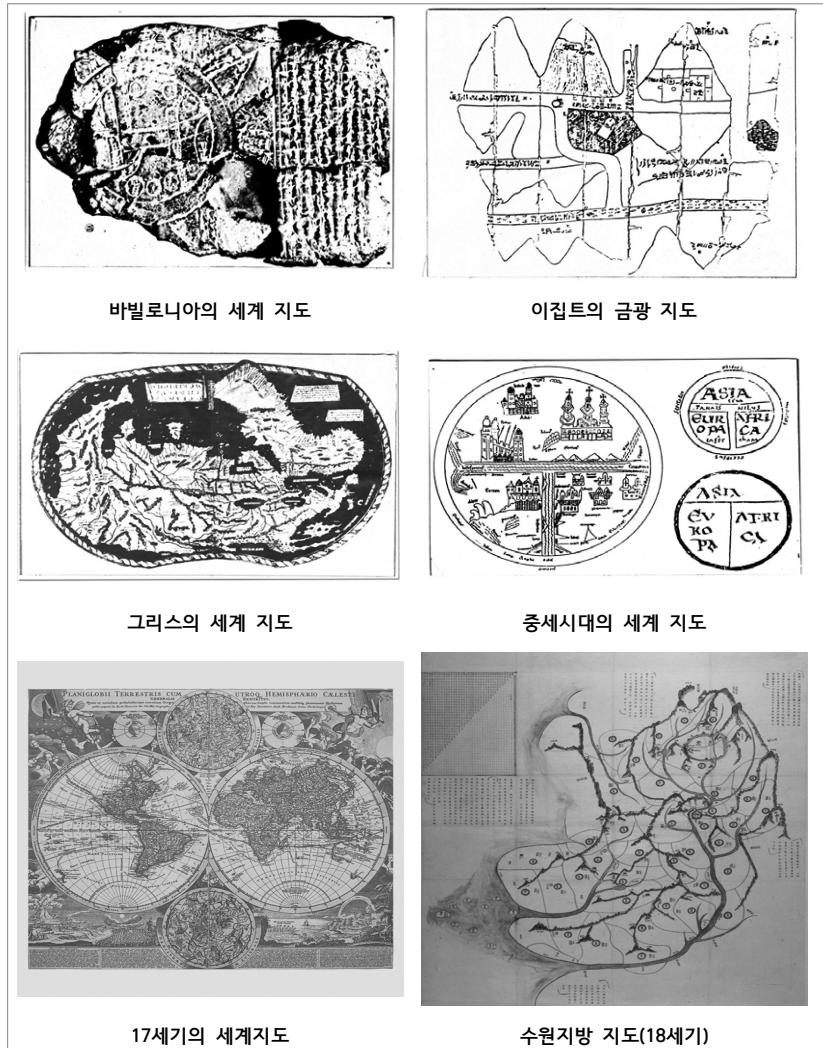
#### 2 지도와 GIS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해왔다. 고대 문명의 기록을 보더라도 소위 ‘지도’ 또는 ‘지도라 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 [그림 2-1]에서 고대 및 중세 지도의 예를 볼 수 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측량이나 지도제작 등의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였고,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전자지도’로까지 진전되었다. 이 전자지도야말로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토대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전자지도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 저장되기 때문에 수치지도라 부르기도 한다. 수치지도는 [그림 2-2]와 같이 지형 지물을 도로, 하천, 시설물, 지형 등 각각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중첩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 유형별 분류를 ‘레이어(layer)’라 부른다. 수치지도는 이 레이어를 통하여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즉, 도로와 같은 특정 레이어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레이어만을 갱신함으로써 전체를 갱신하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림 2-3]은 레이어를 중첩시킨 수치지도의 예이다.

[그림 2-1]  
과거의 지도



바빌로니아의 세계 지도

이집트의 금광 지도

그리스의 세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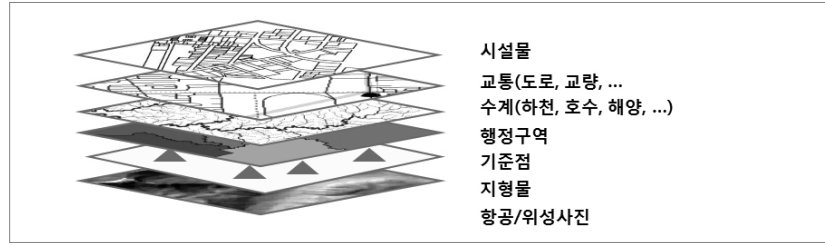
중세시대의 세계 지도

17세기의 세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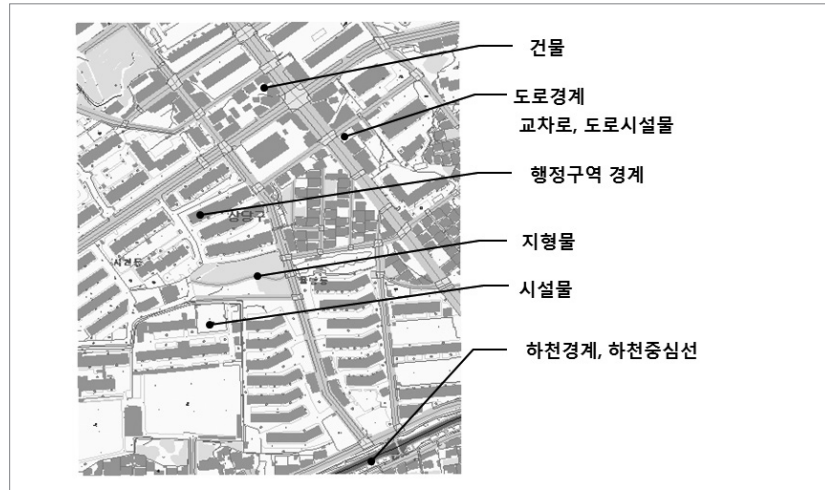
수원지방 지도(18세기)



[그림 2-2]  
수치지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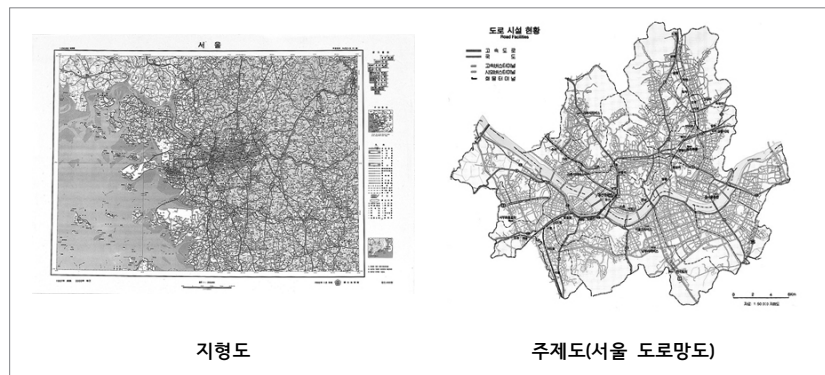


[그림 2-3]  
수치지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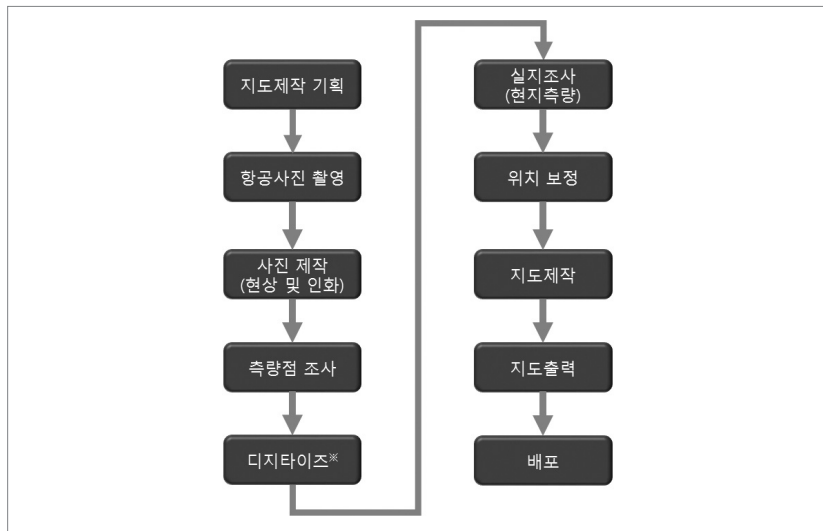
지도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지형도와 주제도로 나뉘는데, 지형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지역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이며, 주제도는 지형보다는 지도 안에 어떤 지형지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주제도는 따라서 지도를 제작하는 목적, 즉 어떤 주제를 택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갖게 된다.

[그림 2-4]  
사용 목적에 따른  
지도의 분류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수치지도는 얼마간 아픈 곳이 있다. 1990년대 말,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 IMF시대가 오히려 수치지도의 바탕이 마련된 시기라는 점이다. 당시 지도제작을 담당하던 부처인 국토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국 단위의 수치지도를 완성하였다. 이 수치지도가 나중에 포털이나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표시에 사용된 것은 다른 나라와 같으며, 이 지도를 위치정확성이 검증된 지도라는 점에서 국가 표준지도라 한다. 위치정확성이란 지도상에 있는 건물,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의 위치가 실제의 위치와 일치하는 정도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지도는 [그림 2-4]와 같은 단계를 거쳐 생산되어 위치정확성이 검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에서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한 지도를 바탕으로 포털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각자의 목적에 맞게 가공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그림 2-5]  
수치지도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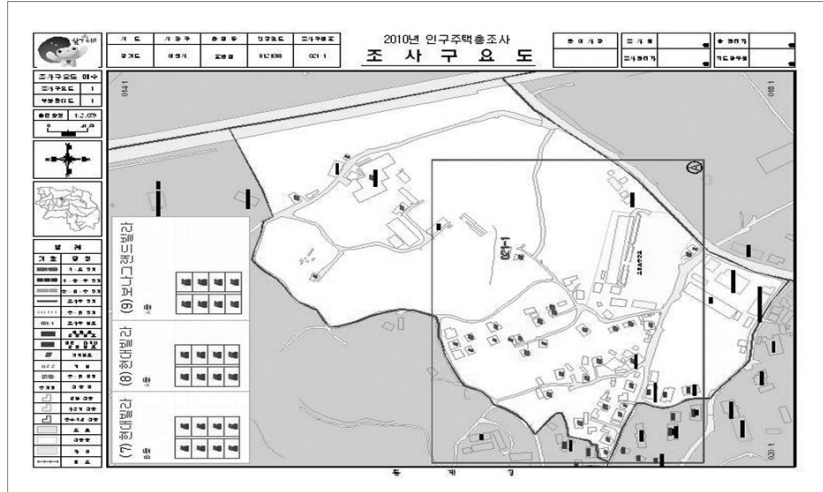


※ 디지털타이즈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으로, 여기서는 사진에 찍힌 지형지물의 경계선을 벡터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표준지도를 각 기관이 각자의 용도에 맞게 추출,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청도 이 국가 표준지도를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청에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에 따라 건물, 도로, 철도, 하천과 같은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사구 경계 등 통계조사를 위한 각종 경계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실제 조사에 사용하는 지도의 예로, 대규모 통계조사를 위해 전국을 미리 정해진 기

준(조사대상의 숫자)에 따라 일정하게 구획해 놓은 것이다. 이 지도를 조사원이 조사 대상을 방문할 때 휴대하여 조사대상의 위치 파악, 조사경로 선정, 조사여부 기입 등에 활용하며,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지도의 갱신과 공간통계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그림 2-6]  
조사용 지도의 예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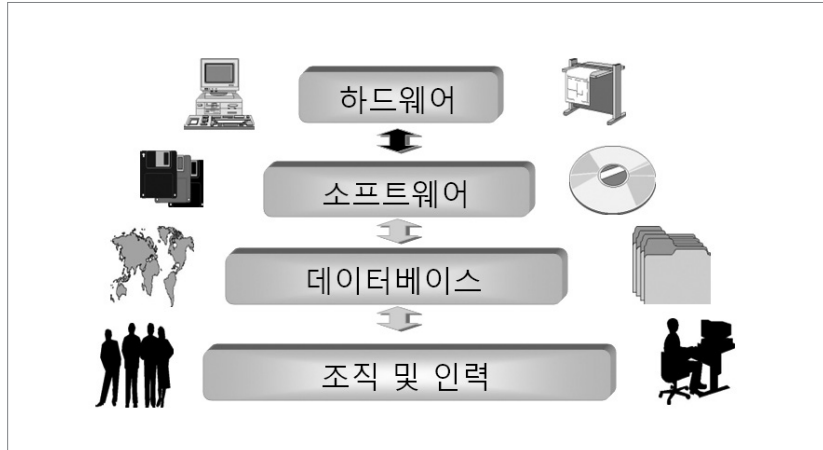


[그림 2-7]  
조사용 지도의 예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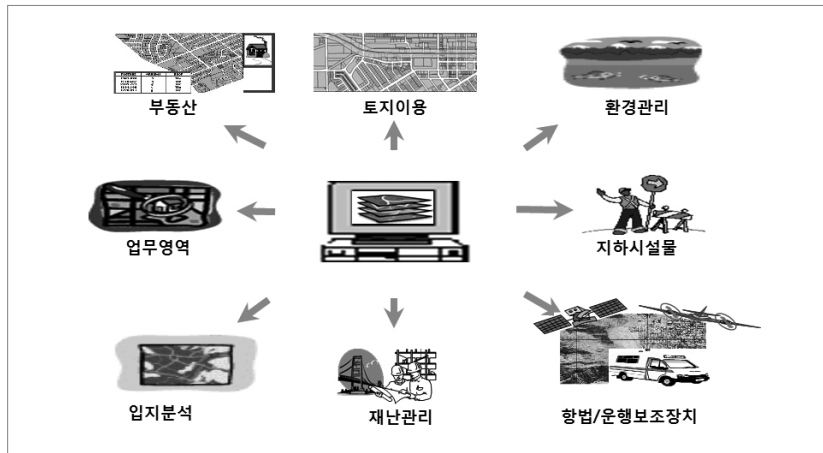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수치지도를 포함한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이 있다. GIS는 다른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그림 2-8]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있는 집합체로 그 활용영역은 [그림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으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림 2-8]  
GIS의 구성요소



[그림 2-9]  
GIS의 활용 영역



이러한 영역의 확대의 배경에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불어온 소위 스마트폰의 광풍이 있다.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자체는 기술적으로 전혀 새로운 물건이라 할 수 없지만, 그 발상은 꽤 혁신적이었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른다면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위치정보의 일상화일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개방에 따라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위치정보의 일상화를 통해서는 각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GIS와 이러한 스마트폰의 융합으로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지도를 보여주는 단계를 지나 [그림 2-10]과 같이 위치정보와 해당 위치의 각종 정보, 그리고 실제의 영상이 결합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까지도 선보이게 되었다. 향후 이런 융합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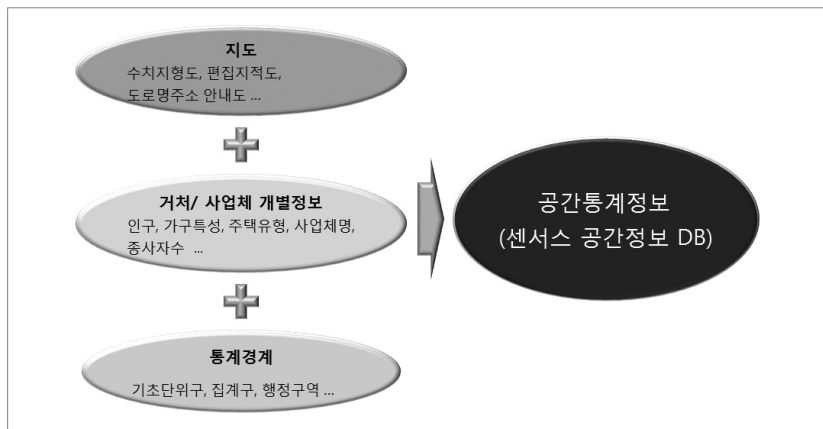
[그림 2-10]  
GIS와 스마트폰의  
융합으로 나타나게 된  
증강현실



### 3 공간통계정보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 활용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공간통계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공간통계정보는 개념적으로 [그림 2-11]과 같이 지도, 거처/사업체 개별정보 및 통계경계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통계정보는 센서스 공간정보DB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림 2-12]와 같은 절차로 생성/갱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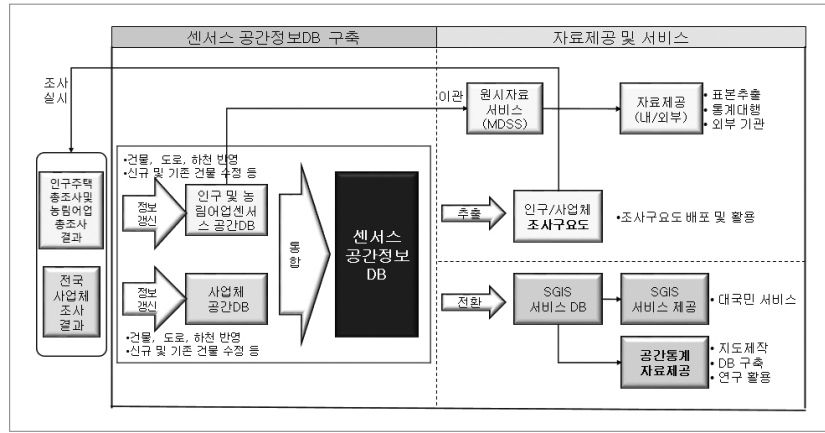
[그림 2-11]  
공간통계정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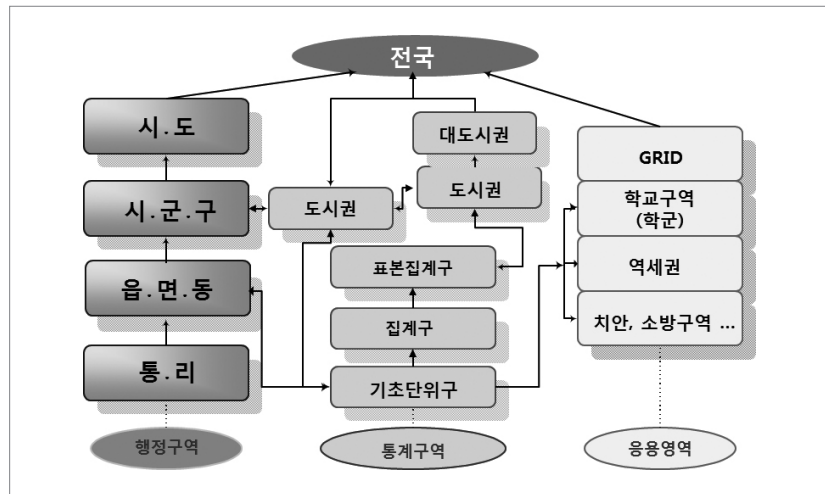
여기서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 형태로 만들어진 지형도이며, 편집지적도는 지번별로 그려진 지적도를 전국 단위로 합쳐서 편집한 지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별정보란 거처 또는 사업체 하나하나가 가진 가구원수, 주택종

류, 종사자 수 등의 개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며, 통계경계는 [그림 2-13]와 같은 체계로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2-12]  
공간통계정보 생성  
사이클



[그림 2-13]  
통계경계 체계도



행정구역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구역이라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통계구역이나 응용영역은 별도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통계구역은 통계자료의 수집, 제공 및 활용을 위해 구획한 것이며, 응용영역은 통계구역을 바탕으로 실제의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획한 영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계와는 큰 관련 없이 구획되어 있다. 통계구역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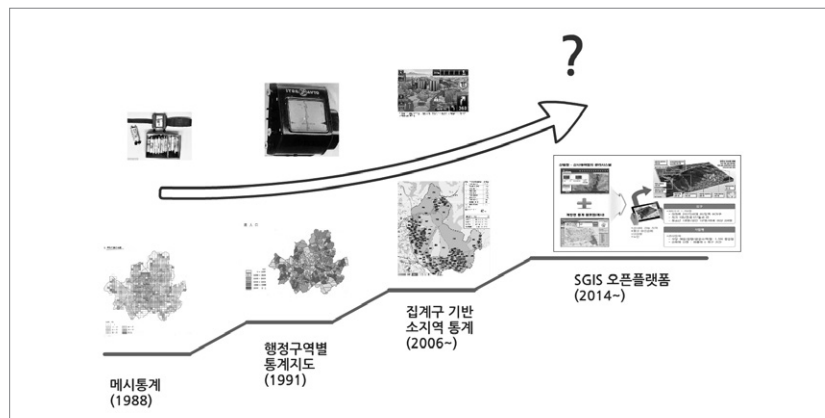


<표 2-1>  
통계구역의 개념

명 칭	개 념
기초단위구 (Basic Unit Areas)	- 도로, 하천 등 준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획정한 최소 통계단위구역으로 다른 통계구역을 획정하는 기본단위구역 - 읍면동별로 가구 수에 관계없이 간선도로, 주요하천, 산 능선과 같은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기초단위구 대구역을 구획하고, 대구역 내에서 다시 기초단위구(소구역)를 구획
집계구 (Output Areas)	-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구축된 기초단위구를 결합하여 구축한 통계서비스 구역 - 소지역의 통계 공표를 위한 최소단위로 통계집계공표구역을 의미하며, 인구지수(최적 500명), 사회동질성지수(지목, 지가), 형상지수(면적-둘레지수)를 고려하여 획정
표본집계구 (Sample Output Areas)	- 당초 총조사(전수조사)가 아닌 표본통계조사의 집계구로 활용될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표본조사의 한계 상 지역 대표성 등의 문제로 사용되지 않음
도시화지역 (Urbanized Areas)	- 행정구역상 지역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도시화,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 - 인구밀도 및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을 기준으로 기초단위구를 결합하여 구획
도시권/대도시권 (Urban/Metro-politan Areas)	-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 통근, 통학 등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가진 도시의 기능을 하는 권역 -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도시와 주변 교외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 지역 간 통근율과 역통근율을 고려하여 획정됨

#### 4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간략한 역사

[그림 2-14]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발전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GIS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간행물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988년 일본의 메시통계를 본따서 만든 것을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1991년에는 행정구역별 통계지도를 만들었고, 2005년 통계지리정보과를 신설하고 2006년 통계GIS사업 기본계획 수립, 통계내비게이터 시범서비스 실시로부터 현재와 같은 체계의 통계지리정보 구축 사이클의 정립과 집계구 기반의 소지역 통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SGIS 오픈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SGIS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SGIS 오픈플랫폼은 기존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 달리 통계청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지리정보를 융합하여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축하고 있다.

## **5 SGIS 오픈플랫폼, SGIS+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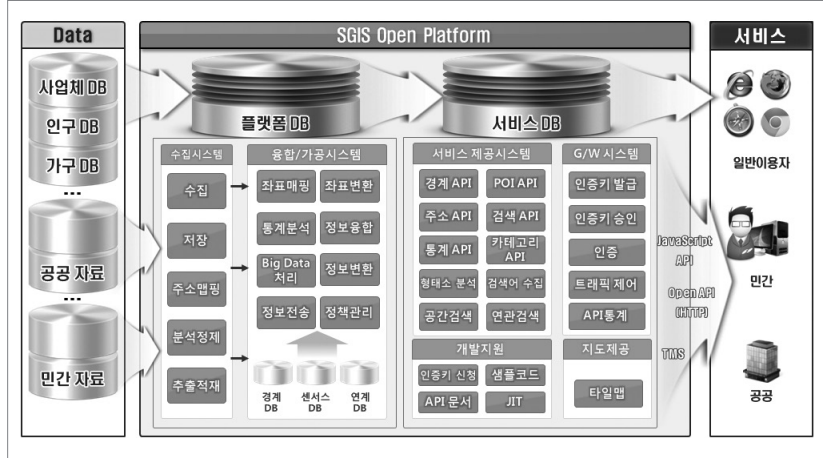
SGIS+Plus는 공공/민간의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지도 위에서 연계·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통계플랫폼으로 위치기반 통계데이터 융복합 허브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확충해왔으며, [그림 2-15]는 현행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SGIS 오픈플랫폼의 구축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홈페이지도 [그림 2-16]과 같이 개편하고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재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아래에서 홈페이지의 메뉴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가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림 2-15]  
현행 SGIS+Plus  
시스템 구성도



[그림 2-16]  
현행 SGIS+Plus  
서비스 홈페이지

지역명 검색어 or 검색어 에서는주시 연구

통계주제도 대화형통계지도 활용사례 분석지도 알림마당

Thematic Maps  
**통계주제도**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주제의 통계 지도를 설정 없이 조회

Interactive Map  
**대화형통계지도**  
사용자가 원하는 지도영역에 각종 통계항목을 간편하게 조회

Case of Application  
**활용 사례**  
개방본인 자료를 직접 활용한 다양한 사례 공유

인구와 주거, 복지여 문제, 일제 산업, 환경공로 결과 발표, 인터넷정보 사해발 대응활동 계몽...

연구통계, 주거통계, 주택통계, SGIS+Plus 정식서비스 실시  
SGIS기 시험서비스 중인 SGIS 오픈플랫폼과 통합하여 '15.9.10(목) 19:00'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날짜 : '15.9.10

최근 게시물, 우수원용 사례, 지도제공 및 개발지원

SGIS 이용안내, 이메일 집안 수검거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 통계청 주요서비스

통계청 STATISTICS KOREA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콜센터 TEL:02-2012-9144 / SGIS 담당자 TEL : 042-481-2342 / 자료제공담당자 : 042-481-2438  
Copyright statistics korea. all rights reserved.since 1996

## 1. '대화형 통계지도' 메뉴

먼저 홈페이지의 '대화형 통계지도' 메뉴는 센서스 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위치 기반으로 융합하여 소지역단위로 통계 생성 및 지역 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공간통계검색시스템으로 집계구 통계와 행정구역 통계를 각각 또는 조합하여 지도상에서 분석하거나 이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플랫폼에 올려 분석하고 관련통계를 검색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성별, 연령, 산업분류 등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필요한 통계의 검색 및 지도나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통계조회 및 시각화, 동일한 통계로 지역 간 비교 또는 동일한 지역을 서로 다른 통계로 비교하는 통계수치 비교, 여러 조사에서 수집된 통계자료를 한 지도에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자료 결합분석 기능이 있다. 통계자료 결합분석에는 서로 다른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통계자료 각각의 집계수치가 전반적으로 크고 작음을 나타내기 위해 범례를 하나의 지도에 중첩하여 표시하거나 동일한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각 자료를 위치 기반으로 결합 후 각각의 검색조건을 결합하여 필터링 후 집계하여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49개 테마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하는 사업체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는 생활연관 사업체정보 보기, 이용자가 보유한 다양한 자체데이터의 위치정보를 표시해주는 지도 위에서 사용자데이터 보기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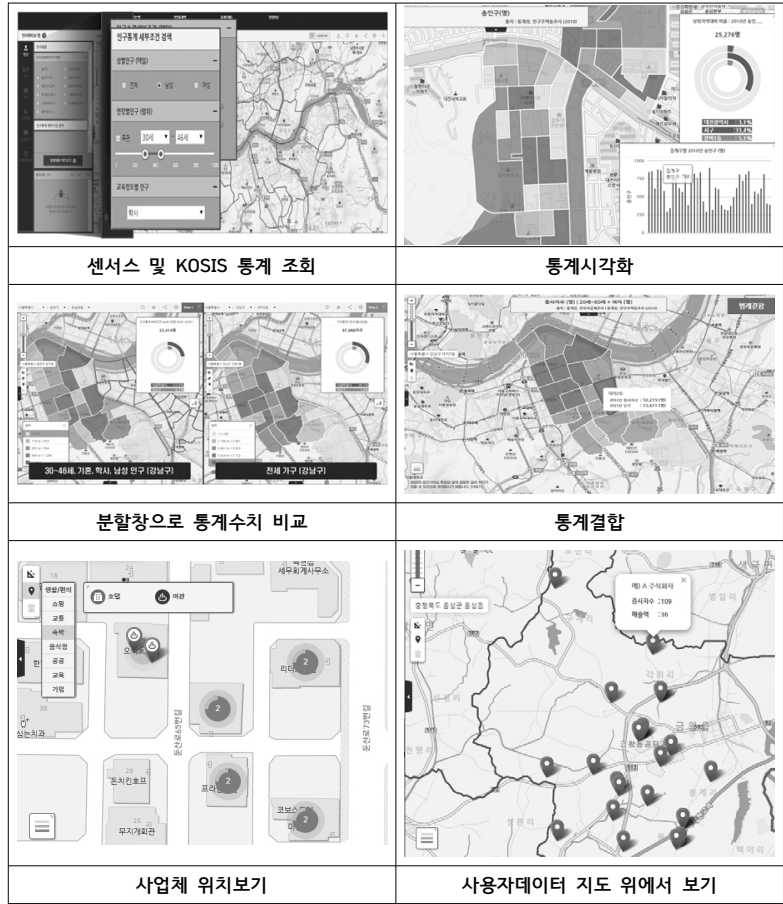
이 서비스에서는 <표 2-2>에 정리한 것과 같이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농림어업/임업과 같은 센서스 통계(집계구 단위)와 37개 통계조사, 2,700개 지역통계를 행정구역 단위로 수록한 KOSIS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표 2-2>  
제공자료

분류	통계항목	자료원
인구	성, 연령, 교육정도, 종교, 혼인상태	인구주택총조사 (‘00, ‘05, ‘10)
가구	방/거실/식당 수, 난방시설, 점유형태, 세대구성	
주택	건축년도, 연건평, 주택유형	
사업체	사업체수(창업연월/산업분류), 종사자 수 (산업분류)	사업체총조사 (‘00~‘13)
농림어업/ 임업	성/연령별 가구원, 경지규모별 농가, 임가인구 등	농림어업총조사 (‘00, ‘05, ‘10)
KOSIS 통계(행정구역 단위) : 2700개 지역통계(37개 통계조사)		

[그림 2-17]는 이 서비스 각 기능별 화면을 보인 것이다.

[그림 2-17]  
서비스 화면



## 2. '통계주제도'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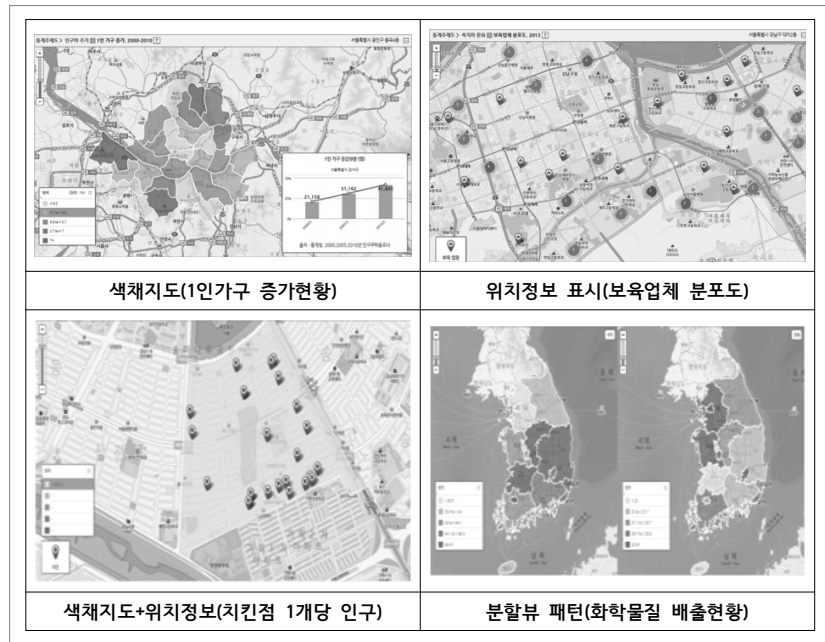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한국사회가 변화해 온 모습과 관련된 통계를 색채 지도와 위치정보로 알기 쉽게 4개 부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주제목록은 <표 2-3>과 같이 총 24종이다.

<표 2-3>  
‘통계주제도’ 메뉴

부문	통계 주제 목록	
인구와 주거 (6종)	- 인구분포현황 - 65세 이상 고령자 증가	- 1인가구 증가 - 다문화가구현황 등
복지와 문화 (6종)	- 보건시설 1개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 보육업체 분포도	- 기초생활수급자 분포현황 - 문화시설 1개당 인구 등
일과 산업 (9종)	- 지역별 농림어가 청장년인구 변화 - 제과점 변화	- 치킨점 1개당 인구수 - 주택유지보수 업체변화 등
환경과 안전 (3종)	- 화학물질 배출 현황 - 3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현황	- 20/30대 여성 1인가구와 치안시설 분포현황

[그림 2-18]은 이 서비스의 각 기능별 화면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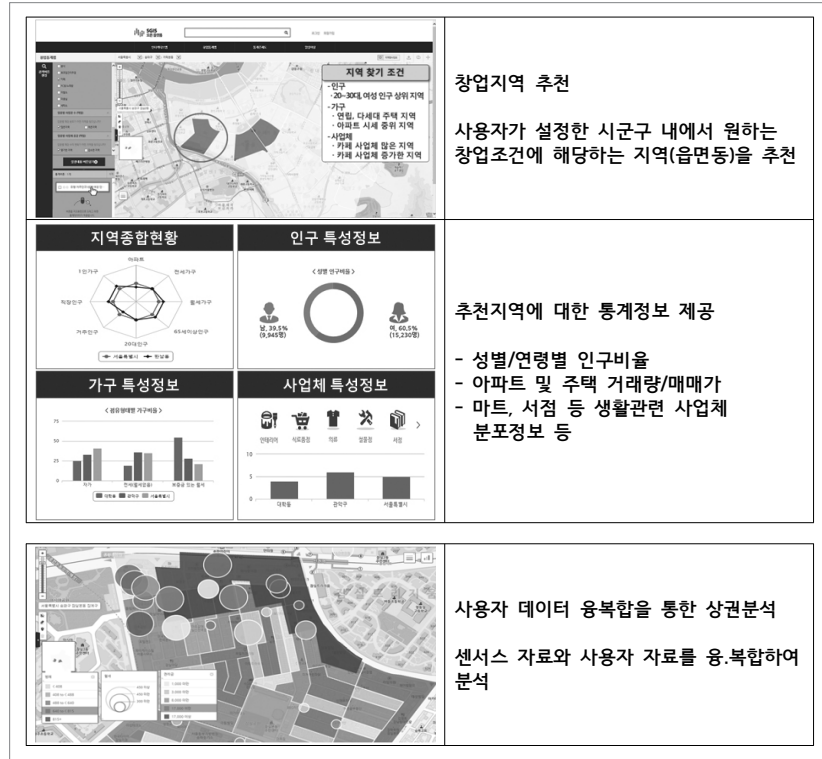
[그림 2-18]  
서비스의 각 기능별  
화면(시각화)



### 3. ‘활용사례’ 메뉴

센서스 자료와 민간 자료의 융합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구현한 플랫폼 활용 시범사례로, 센서스 자료 및 플랫폼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창업통계맵 외에 활용갤러리, 통계지도 체험서비스를 [그림 2-19]와 같이 제공한다.

[그림 2-19]  
플랫폼 활용 시범사례  
서비스 화면



이 중 창업통계맵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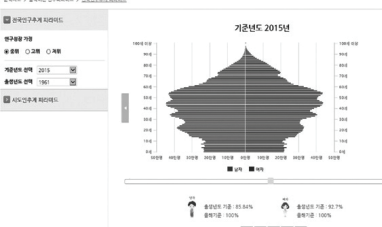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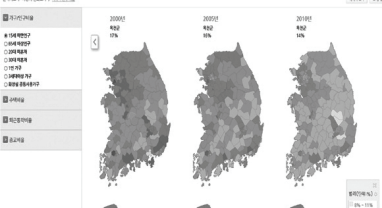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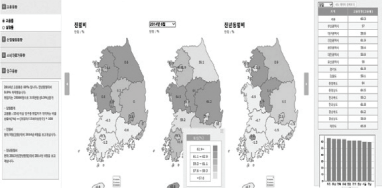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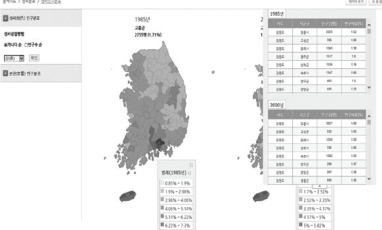
<표 2-4>  
창업통계맵 활용  
자료 목록

통계청	'10 인구주택총조사, '13 사업체조사
지자체	'13, '14 지하철 이용현황
한국교육개발원	'13 교육기본통계(유초중등고등통계)
국토부	'14 버스정류장 위치정보, '13 주택실거래가
중기청	'10 전국 주요상권 유동인구 DB
문체부	'14 전국 축제현황

#### 4. '분석지도' 메뉴

분석지도 메뉴에서는 사회현상과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를 시각화하고 관련정보를 시계열로 표출한다. 이 메뉴의 서비스 화면은 [그림 2-20]과 같다. 이 서비스들은 SGIS 오픈플랫폼 구축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림 2-20]  
분석지도 서비스 화면

	<p><b>움직이는 인구피라미드</b></p> <p>추계 인구를 기반으로 1960-2060년까지 인구구조의 변화를 피라미드 모형으로 시각화</p>
	<p><b>지방의 변화보기</b></p> <p>'95년부터 '10년까지 5년 주기로 지방의 변화되는 모습을 제공</p>
	<p><b>고령화 현황보기</b></p> <p>고령화 현황 지역간 비교, 추세 분석, 노인 복지시설 등 고령화 관련 통계와 보도자료를 제공</p>
	<p><b>월간통계</b></p> <p>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등 월간 주요통계 보도자료를 당월통계,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형태로 제공</p>
	<p><b>성씨분포</b></p> <p>전국 및 지역별로 성씨분포 및 본관분포 인 구비율을 제공</p>

### 5. '자료제공' 메뉴

이용자가 자체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연구, 분석할 수 있도록 센서스자료, 경계 및 지도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무료)로 제공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서비스도 SGIS 오픈플랫폼 구축 이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자료의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표 2-5>  
대외제공 자료 목록

분류	자료목록	기준년도	형식
집계구별	인구 · 가구 · 주택	'00, '06, '10	txt
통계	사업체	'00~'13(1년 단위)	txt
통계경계	행정구역경계	'75, '80, '85, '90, '95, '00~'13(1년 단위)	shp
	집계구경계	'13	shp
	도시화지역, 도시권경계	'05	shp
센서스지도	하천, 도로, 건물, 철도, 등고	'13	shp

## 6. 'Open API' 메뉴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개발 초기부터 외부의 개발자가 통계지리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API를 제공해왔다. 이후 지리정보 표준에 맞도록 Open API를 개선하고, 제공하는 기능도 확충하여 2014년 37종의 Open API 및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pen API는 크게 지도API와 통계API로 나눌 수 있는데, 지도API는 지도 이동, 생성, 줌 및 윈 그리기 등 7종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API는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농가, 어가, 임가 등 30종의 API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Open API 기능목록은 [그림 2-21]과 같다.

[그림 2-21]  
제공되는 Open API  
기능 목록

구분	API 목록	설명	구분	API 목록	설명
인중	· 인증 API	· 발급된 인증키(OAuth 인증)를 통한 인증 처리	지역통계	· 지역찾기 API	·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는 API
	· 지도 제공 API	· Javascript 기반 지도 API 제공		· 지역 종합 정보 제공 API	· 센서스 기반 지역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좌표	· 좌표 변환 API	· 비유평경위도/AMCS84경위도/TM(중/서부)/UTM-X(GRS80) 좌표계간의 변환	집업통계	· 거주인구 제공 API	· 명명대별 거주인구 정보를 제공
	· 인구통계 API	· 중앙구, 남대내미,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부양비		· 성별 인구 비율 제공 API	· 거주 인구의 성별 정보 제공
통계	· 인구통계 조건검색 API	·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의 조건으로 조회	주 소 경 계	· 거주 정보 제공 API	· 거주 종류별 정보 제공
	· 산업분류 API	· 산업 분류코드(세세분류) 조회		· 거주 외국인 정보 제공 API	· 거주 외국인의 비율 정보 제공
	· 사업체통계 API	· 사업체 수, 평균종사자 수 조회		· 가구 점유 정보 제공 API	· 자기/친세/월세 정보 제공
	· 사업체 조회	· 개별 사업체의 위치 및 정보 조회		· 사업체분포정보 API	· 업종별 사업체 비율 정보 제공
	· 가구통계 API	· 세대구성별, 점유유형별, 방수별 통계 조회		· 사업체업력정보 API	· 업종별 사업체 업력 정보 제공
	· 주택통계 API	· 주택유형, 건축년도, 건평 등을 제공		· 소상공인사업체중간정보제공API	· 업종별 사업체 중간 정보 제공
	· 농가통계 API	· 농가농가인구, 농지비율, 연작, 시설물연적 제공		· 단계별 주소조회 API	· 행정동 및 도로명 주소에 대해 단계별 조회 가능 제공
	· 임가통계 API	· 임업현황, 임산물생산량, 임가수, 임가인구 수 제공		· 지오코딩 API	· 입력된 주소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 어가통계 API	· 어업현황, 어가 수, 어가인구 수 제공		· 리버스 지오코딩 API	· 입력된 좌표의 주소를 제공
	· 가구원통계 API	· 성별/연령별 인구 수 제공		· 행정구역 경계 정보 제공	· 행정동 경계정보 제공
검색	· 연관검색 API	· 행정구역 단위의 KOSIS 통계정보 제공	· 집계구 경계 정보 제공 API	· 집계구 경계정보 제공 API	
	· SOP 검색 API	· SOP가 제공하는 통계 정보 검색	· 임의 영역내 경계 제공 API	· 사용자가 설정한 영역내 행정구역 또는 집계구 경계 제공 API	
	· KOSIS 검색 API	· KOSIS가 제공하는 통계 정보 검색			
	· POI검색 API	· POI데이터(카페, 레스토랑, 주유소, 편의점 등) 검색			





# 제 3 장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 (MDSS)

## 3-1.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MDSS)

### 학습목표

- 국가자산인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통계 이용자의 폭넓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한다.

### 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란

통계청이 작성하는 58종의 통계 중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제공하는 공표자료 이외의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 등)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MDSS, <http://mdss.kostat.go.kr>), 통계쇼핑몰(<http://www.kostat.go.kr/shopmall/index.jsp>)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는 심층적인 경제, 사회현상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통계자료 제공은 1993년 오프라인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때는 자료 이용자가 문서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자료를 처리하여 플로피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CD 등의 매체에 담아 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자료의 제공은 이용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와 민간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로 나뉘는데, 공공기관인 경우는 통계청의 담당 직원이 직접 자료를 처리하여 무료로 제공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시 문서로 자료요청을 통계진흥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무료제공은 예산의 세입, 세출문제와 관련이 있다.

2005년이 되어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의 구축이다. 2005년은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6년에 MDSS 서비스를 개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자기테이프 기반의 저장형태를 하드디스크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전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자기테이프로 관리함으로써 자기테이프의 관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업무가 되어 전담직원이 배치될 정도의 업무량이었다. 자기테이프는 지구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된 내용이 소멸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기테이프의 내용을 읽어내어 다시 기록하는 이른바 복원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시스템 구축은 파일 기반의 서비스라는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았다. 당시 통계자료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통계조사 시스템은 이미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행한 상태로 마이크로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일부러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야 했고, 파일 관리와 요청자료의 처리를 위해 서버 자원의 상당부분을 사용해야 했다. 이 한계점은 2008년 DW기반의 MDSS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해소되었고, 2010년에는 원격접근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통계자료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

식 하에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산, 인력, 정보 시스템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수록·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표 3-1>은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의 간단한 연혁이다.

**<표 3-1>  
마이크로  
데이터서비스 연혁**

1993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시(오프라인)
1996년	통계자료제공규정 제정, 자료제공심의회 구성 및 운영
2005년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구축
2006년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서비스 개시
2007년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MDAC) 단계적* 설치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2008년	DW기반 MDSS 서비스 개시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설치(동북,동남,호남청,KDI, 제주사무소)
2010년	MDSS 시스템 개편 및 원격접근서비스(RAS) 개시
2014년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장소 변경 ※동북, 동남, 호남청 폐지, KDI 세종시 이전, 서강대 신규설치('14.5~)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은 통계법시행령 및 통계청통계자료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통계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각 통계조사별 자료제공범위 설정, 자료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통계자료제공심의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4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주체는 통계청이며, 제공은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MOU체결기관, 자료교환 기관 등에 대해 제공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다.

현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에서는 사업체, 가구, 인구 및 농어가부문의 총 40종 통계조사자료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 자료목록은 <표 3-2>와 같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대상 통계조사라 하더라도, 각각의 통계조사별, 조사시기별로 제공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각각의 조사마다 조사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제공범위를 정하는 데에 기인한다. 데이터 생산부서에서 정한 제공범위는 다시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담당 부서와 데이터 생산부서 모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료제공 범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2]는 자료제공범위의 예이다.

<표 3-2>  
제공 중인  
마이크로데이터 목록

부문	통계조사명	
가구부문(11종)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4)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2000)
	사교육비조사(2007~2012)	사회조사(1990, 1992, 1993, 1995~ 2013)
	생활시간조사 (1999,2004,2009)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2013)
	지역별고용조사(2008~2013)	가계동향조사(1982~2014)
	인력실태조사(2006~2007)	녹색생활조사(2011,2013)
	외국인고용조사(2012~2013)	
인구부문(5종)	인구총조사(1995, 2000, 2005, 2010)	주택총조사(1995, 2000, 2005, 2010)
	국내인구이동통계 (1995~2013)	인구동향조사(1991~2012)
	사망원인통계조사 (1997~2012)	
사업체부문(11종)	건설업조사(2000~2012)	광업제조업조사(1992~2012)
	도소매업조사(1997~2000, 2002~2009, 2011~2012)	서비스업조사 (2002~2004, 2006~2009, 2011~2012)
	전국사업체조사(1994~2012)	운수업조사 (2004~2009,2011~2012)
	서비스업총조사 (1996,2001,2005)	경제총조사(2010)
	산업총조사(1993,1998,2003)	기업활동조사(2006~20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2007~2009,2011~2012)	

	농림어업총조사 (2000,2005,2010)	농림어업조사 (2008,2009,2011,2012)
	농가경제조사(1998~2012)	어가경제조사(2003~2010)
농어가부문(12종)	양곡소비량조사(2009~2012)	농산물생산비조사 (2003~2013)
	농어업법인조사(2001~2012)	농작물생산조사(2008~2010)
	어업생산동향조사 (2008~2009)	어류양식동향조사 (2008~2009)
	농업면적조사(2010)	농림어업복지실태조사(2008)
기타(1종)	국부통계(1997)	

[그림 3-2]  
통계조사별  
제공범위의 예

사업체부문    가구부문    인구부문    농림어가부문

광업제조업조사    연간자료    2013    검색

검색결과: 광업제조업조사 > 연간자료 > 2013

설명자료     광업제조업조사\_표준시계열설명세서.xls     2011광업제조업 샘플파일.zip     2013년\_기준\_조사표.pdf     ms\_2013\_...  
    코드 및 설명서.xls

순번	형태	항목	순번	형태	항목	순번	형태	항목
1	숫자	조사기준년도	2	코드	행정구역(시도)	3	코드	행정구역(시군구)
4	코드	행정구역(동읍면)	5	코드	산업분류(미)	6	코드	산업분류(중)
7	코드	산업분류(소)	8	코드	산업분류(세)	9	코드	산업분류(세계)
10	문자	대표자성명	11	문자	창설년	12	문자	창설월
13	문자	조직형태	14	숫자	자산총계	15	숫자	자본금
16	숫자	자본잉여금	17	숫자	조사부문 상용 합계	18	숫자	조사부문 상용 남자 수
19	숫자	조사부문 상용 여자 수	20	숫자	조사부문 상용 급여액	21	숫자	조사부문 임시일용 합계
22	숫자	조사부문 임시일용 남자 수	23	숫자	조사부문 임시일용 여자 수	24	숫자	조사부문 임시일용 급여액
25	숫자	조사부문 자영 합계	26	숫자	조사부문 자영 남자 수	27	숫자	조사부문 자영 여자 수
28	숫자	조사부문 무급 가족 합계	29	숫자	조사부문 무급 가족 남자 수	30	숫자	조사부문 무급 가족 여자 수
31	숫자	조사부문 기타 합계	32	숫자	조사부문 기타 남자 수	33	숫자	조사부문 기타 여자 수
34	숫자	조사부문 파견받은 합계	35	숫자	조사부문 파견받은 남자 수	36	숫자	조사부문 파견받은 여자 수
37	숫자	광업제조업부문.계(①+...+⑤)	38	숫자	광업제조업부문.남(①+...+⑤)	39	숫자	광업제조업부문.여(①+...+⑤)
40	숫자	광업제조업부문.연간급여액 합계(①+...+⑤)	41	숫자	연간총하액-①제조업총하액	42	숫자	연간총하액-②부산물및폐품판매액
43	숫자	연간총하액-③임가공수입액	44	숫자	연간총하액-④수리수입액	45	숫자	연간총하액-합계(①+...+④)

## 2 데이터의 종류

다른 모든 분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먼저 자료를 수집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통계자료 : 통계조사를 통해 취득한 원천자료 (인구센서스 자료 등)
- 행정자료 : 각 부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국세자료 등)
- 공공데이터 = 통계 + 통계자료 + 행정자료
- 공공 빅데이터 :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중 빅데이터 성격을 갖춘 자료
- ※ 빅데이터 = 공공 빅데이터 + 민간 빅데이터 (SNS, 인터넷정보 등)

다음으로 데이터의 가공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면, 가공 정도에 따라 원시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 매크로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원시 데이터(Raw data)는 수집한 상태 그대로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데이터에는 논리적 오류, 항목 누락, 단순 오타 등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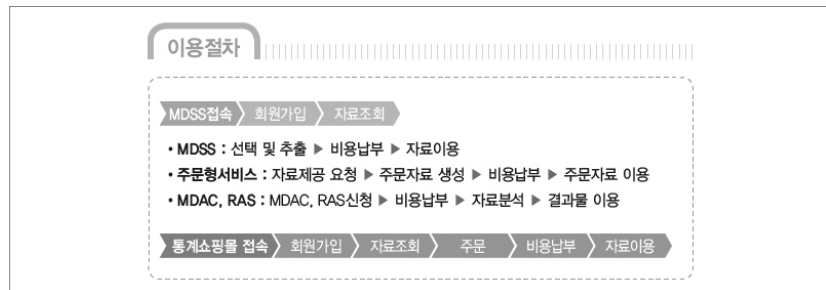
이 원시 데이터를 토대로 내용검토를 통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집계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이 상태의 자료를 마이크로 데이터라 한다. 이 데이터는 공표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마이크로데이터에는 이 외에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응답자가 식별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된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Public Use Micro Data)와 자료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이용 가능한 승인된 마이크로데이터(Licensed Micro Data)가 있다.

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공한 집계자료를 매크로데이터(Macro Data)라 하며, 집계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에서 통합된 자료까지 다양하다.

### 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에는 홈페이지(<http://mdss.kostat.go.kr>)에서 온라인으로 '자료신청' 메뉴를 통하여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추출, 분석, 가공할 수 있는 MDSS 이용, 많이 이용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미리 제작된 CD를 구매하는 통계쇼핑몰 이용,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표를 한국통계진흥원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주문형 서비스 및 CD나 MDSS보다 상세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DAC) 또는 원격접근서비스(RA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이용절차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절차



## 4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신청

마이크로데이터의 자료신청에는 추출, 위탁처리, 원격접근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마이크로데이터 CD가 있다. 이 자료신청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는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등 결제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추출은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가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자료, 다년도 및 시계열로 다시 나뉜다.

연자료는 통계조사의 조사주기별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가공하는 방법([그림 3-4])이며, 다년도는 통계조사의 모든 항목을 가공하는 방법([그림 3-5])이고, 시계열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원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가공하는 방법([그림 3-6])이다.

[그림 3-4]  
연자료 추출절차



[그림 3-5]  
다년도 추출절차



[그림 3-6]  
시계열 추출절차





위탁처리는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분석 작업을 통계청 혹은 한국통계진흥원이 대행해 주는 방법([그림 3-8])이다. 다만, 통계분석은 KOSIS 집계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이용자의 주관적인 통계분석 작업은 위탁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림 3-7]은 위탁처리를 위한 신청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3-7]  
위탁처리 신청절차



[그림 3-8]  
위탁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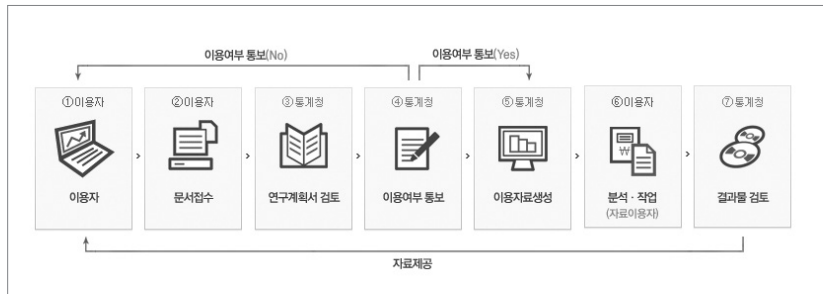


원격접근서비스는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의 원격접근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법([그림 3-9])이다. [그림 3-10]은 원격접근서비스를 위한 신청절차이다.

**[그림 3-9]**  
원격접근서비스 처리 절차



**[그림 3-10]**  
원격접근서비스 신청절차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는 이용자가 통계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지정한 장소란 통계청에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한 통계청 본청(대전), 한국통계진흥원(서울 강남구), 한국개발연구원(세종), 경인청나라샘도서관(서울 강남구), 서강대학교(서울 마포구)를 말한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3-10]의 원격접근서비스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하  
되, 자료이용량(MB)으로 적용하여 산정

- 추가비용 기준표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 비용산출 예) 102MB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MDAC), 원격접근서비스(RAS) 자료제공 시 이  
용환경 설정,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수료 외에 서비스 수수  
료의 10%를 별도 부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 자료이용료 이외에 소프트웨  
어 개발비가 부과된다.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  
학부)고시 제2010-52호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매뉴얼(2013.3.18)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 6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의 미래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14년부터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  
니라 국가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이  
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통계  
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실  
태를 조사하였다. 2012년에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관련 정보전략  
계획(ISP)을 추진하였으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근거 법(통  
계법 개정안 제37조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에 대한 위임 및 위탁)이 12  
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3년 정부3.0 전자정부지원사업(국정과제 134

번)으로 선정되어 2014년~2016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4년 1단계 사업을 통해 통합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현재 정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DB 구축 확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 2017년에는 통계청 40종 및 108개 기관 224종에 대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림 3-12]는 이 사업의 전체 로드맵이다. 2014년 시범서비스로 구축된 데이터는 <표 3-3>에 정리하였다.

**[그림 3-1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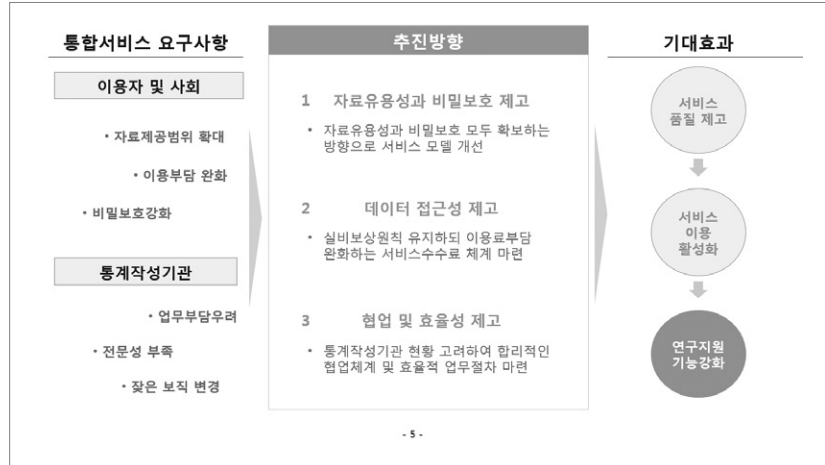


**<표 3-3>**  
2014년  
시범서비스로 구축된  
데이터 목록

작성기관	서비스 종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자료, 교육용 자료 4종 (가계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업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산림청	임가경제조사
서울특별시	도시정책지표조사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2015년에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자료유용성과 비밀보호 제고, 데이터 접근성 제고, 협업 및 효율성 제고를 사업 추진방향으로 하여 통합DB 구축(12개 기관 72종) 및 통합서비스(30여종), 통합서비스 운영절차 수립(서비스지침서, 비밀보호핸드북), 서비스모델 및 서비스수수료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3-13]  
2015년 사업 추진방향



## 제 4 장

# 행정자료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 4-1.

## 행정자료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 학습목표

- 행정자료의 활용 필요성과 활용현황, 통계조사 자료 및 행정자료에 대한 관리 체계와 보호정책을 이해한다.

### 1 행정자료와 행정자료 활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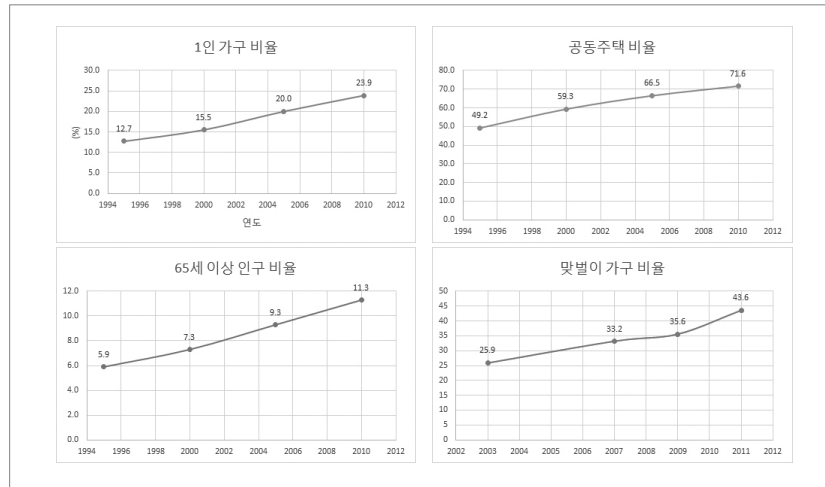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제외된다(※ 예 : 행자부의 주민등록자료,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등).

법률상 유사용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조에 정의된 공공데이터가 있으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예 : 버스운행정보DB, 기상관측 DB, 각 분야의 연구보고서, 연도별 백서·통계연보 등).

행정자료를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아파트, 원룸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는 주택의 증가, 고령화 등 인구·가구·주택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통계조사를 위하여 조사원이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범죄, 금융권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의 증가로 응답자의 응답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 내에서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행정자료의 효율적 활용 요구의 증대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 등 국내 여건 외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이 점점 확대되는 등 국제적 추세도 변화되고 있는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은 필수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도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필요한 5종의 행정통계를 신규 개발한 바 있다.

[그림 4-1]  
인구·가구·  
주택구조의 변화



## 2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주된 원천자료로 이용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거치거나 다른 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을 통해 생성한 자료 및 이를 집계하여 생산한 자료로 신규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 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을 대체, 검증·보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정자료는 당초 행정 본연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어정의, 포괄범위 차이, 결측값 존재 등의 이유로 표준화 작업 및 자료정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측값 보완, 자료 간 연계·통합 등 통계적 가공처리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여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행정자료의 원활한 처리 및 보완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법」에 행정자료(개체식별자료 포함) 활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행정자료 제공에 협



조적이지 않은 부분도 행정자료의 적극적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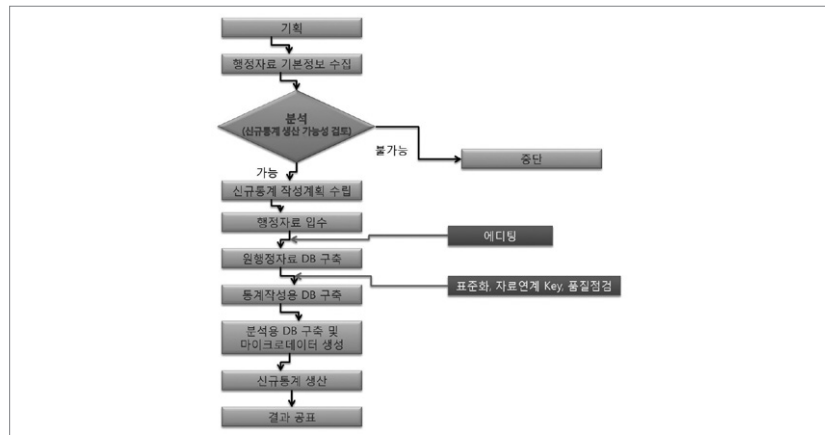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정책수립·추진기관의 수요에 맞는 통계생산 및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검토를 통한 무분별한 통계조사 방지로 통계작성 비용절감과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통계작성에 보다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 결합 등을 통하여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통계의 정확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 행정자료에 기초한 다양한 통계의 생산 및 국민과 수요자 등에게 그 결과자료 제공 및 공개 확대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구현에 기여한다는 점은 행정자료 활용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은 신규통계 작성, 기존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대체, 기존통계조사의 내용 검증·보완으로 구분되며, 이를 위하여 [그림 4-2]와 같은 업무절차가 정의되어 있다.

**[그림 4-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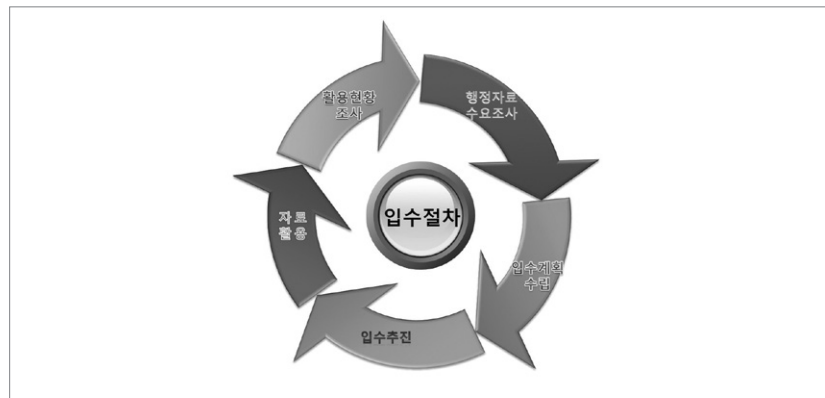


**[그림 4-3]**  
신규통계 생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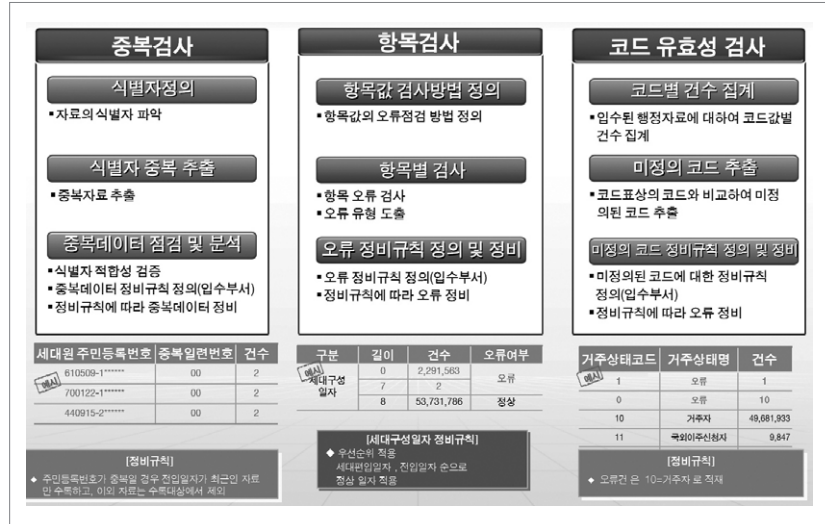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 통계 생산과정은 [그림 4-3]과 같다. 통계조사 과정 대신 행정자료 입수가 들어가고, 행정자료가 가진 한계 상 원행정자료 DB구축이 포함된 점이 일반적인 통계생산 과정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 통계 생산과정 각 단계를 알아보자. 먼저 입수 단계로 행정자료는 통계 생산부서에 기존 통계조사에 활용이 가능하거나 신규통계 생산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수요를 파악하는 수요조사단계, 통계 생산부서의 수요를 반영하여 입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행정자료 입수를 추진하는 입수계획수립단계,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각 행정자료 항목별 통계조사에 필요한 내역을 분석한 후 입수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자료 보유기관과 협의하는 입수협의단계, 입수협의 완료 후 통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문서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의 송·수신시 보안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하는 자료입수단계, 입수한 행정자료에 대해 활용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부서에 제공하는 자료활용단계를 거쳐 입수하게 되며, [그림 4-4]에 그 절차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는 빠져있으나, 입수한 행정자료의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행정자료 입수에 반영하는 피드백 단계도 향후의 행정자료 입수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그림 4-4] 행정자료의 입수절차**



원행정자료 DB는 입수한 행정자료의 원데이터에 대한 DB 구축과 행정자료의 결측값, 이상치에 대한 자료정제를 목적으로 구축하게 되는데, 자료의 레이아웃 및 파일설계서를 작성하여 변수명(한글, 영어), 변수값 등을 검토하여 항목길이, 타입 등 데이터 속성을 분석하고 중복검사, 항목검사, 코드유효성 검사 등을 통해 자료의 오류유형을 파악하여 자료를 정제한다([그림 4-5]).

[그림 4-5] 원행정자료의 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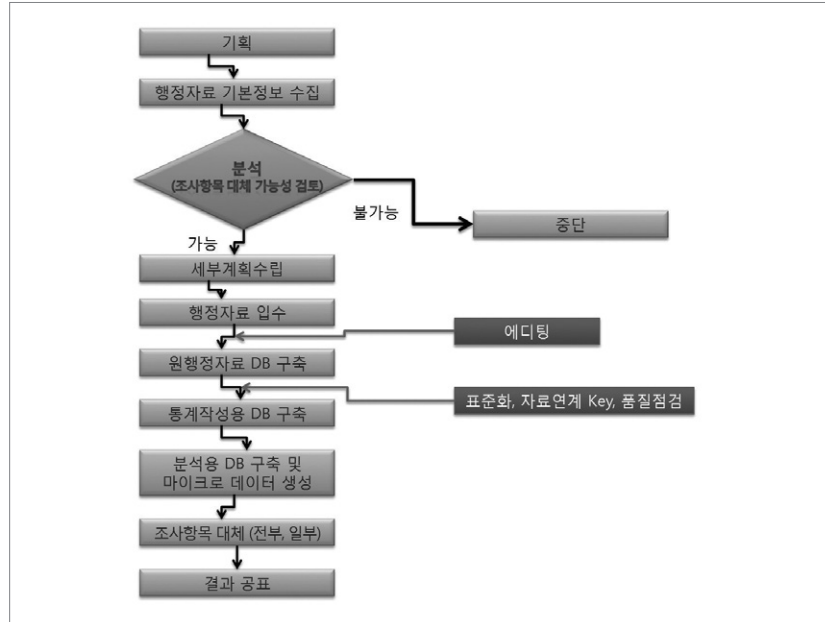


원행정자료의 정제가 끝나면 원행정자료 DB를 통계목적에 맞게 자료를 재구성한다. 여기에는 ① 통계목적의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자료의 정제, 결측값의 통계적 보완·대체 ②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료연계·통합, 분리, 상호보완 등 자료 재구성 ③ 자료특성을 분석하여 산업·직업분류코드와 일치시키고, 주소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통계용 DB로 구축이 포함된다.

다음은 통계적인 분석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분석용 DB를 구축하는 단계로 통계용 행정 DB에서 분석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고, 집계코드, 집계할 항목의 정의, 일반검색, 연계검색, 수준분석, 연계수준 분석이 가능하도록 DB 구축이 이어진다. 다음은 분석용 DB에서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여 통계표 작성하게 된다. 이 이후에는 신규통계 작성 및 승인, 공표 단계가 이어지나 여기서 다룬 내용이 아니어서 생략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의 대체는 기존조사대체, 항목대체(전부, 일부), 검증·보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항목을 대체하는 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총 20종이 있다. [그림 4-6]은 조사항목 대체에 대한 업무흐름이다. 항목대체를 위해서는 입수한 기본 자료의 자료구성, 실제내용, 결측값 유무, 기본분류 등 항목대체를 위한 행정자료의 개념, 포괄범위, 분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입수 이후의 단계는 신규통계 작성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그림 4-6]  
조사항목 대체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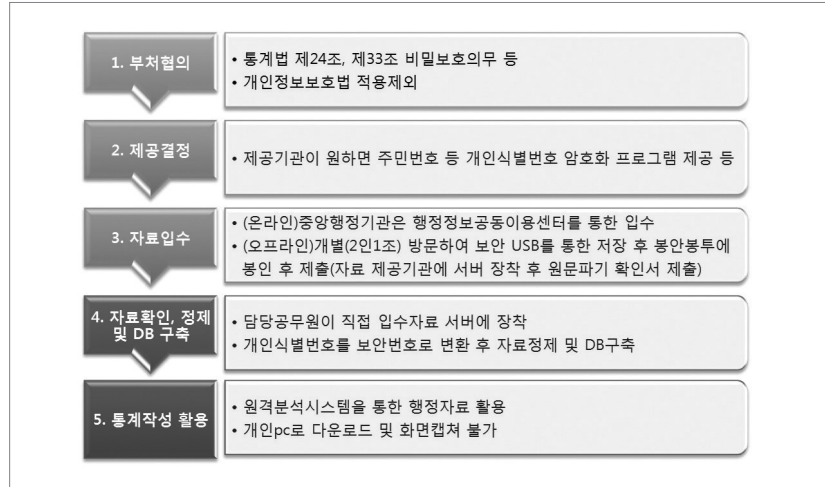


### ③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조치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정보 및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업무전용망을 설치하고, 원격서버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업무는 사전 허가된 자가 원격서버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개인PC에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구성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중 망분리는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보안정책으로 현재 본청과 통계개발원에만 적용되어 있으나, 2015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방청의 지역통계과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추진 중인 지방청통신망개선사업은 그 첫발을 떤 중요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 말까지 본청과 지방청/사무소/분소를 전용망으로 연결하고, 2016년 1월부터 전용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전용망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인터넷 망을 위한 추가적인 회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PC의 확보와 지방청/사무소/분소 내의 망분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남게 된다.

[그림 4-7]은 행정자료 보유 기관과의 부처협의 단계부터 통계작성 활용 단계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 중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조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림 4-7]**  
**개인정보보호 흐름도**



먼저 제공결정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는 1차적으로 통계보안번호 64자리로 변환되고 2차 8자리로 변환된다는 점이다. 행정자료 보유기관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1차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안번호로 변환 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 통계청은 현재 2차 변환에서 3차 변환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입수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중개시스템 역할)를 통하여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송 후 동 센터에서 문서코드(6자리)를 찾아 통계청 서버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서버와 서버 간 자료제공으로 중간 해킹 등 방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자료 입수 방법이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2인 1조로 구성된 통계청 직원이 보안 USB 또는 CD를 사용하여 자료를 입수한다.

이 경우의 입수 및 파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료 보유기관 제공 담당자에게 보안 USB(또는 CD)제출 → 자료다운로드 → 제공기관은 보안USB 또는 CD를 봉투에 넣고 봉인 후 인계인수서 작성 →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에 보안USB 또는 CD 제출 → 담당공무원이 봉인 확인 후 직접 서버에 장착 → 보안USB(또는 CD)에 저장된 원자료 파기(통계데이터기획과) → 제공기관에 공문으로 확인서 제출

### 〈 외부 용역사업 관련 보안조치 사항 〉

- 외부 용역사업 추진 시 계약서\*에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 확인서를 징구
-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대장에 이를 작성하고 무단복사·외부반출을 금지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용역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소거 하는 등 보안조치
- 시스템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
- 상주 용역 인원은 업무개발실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은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지문인식장치 등을 활용한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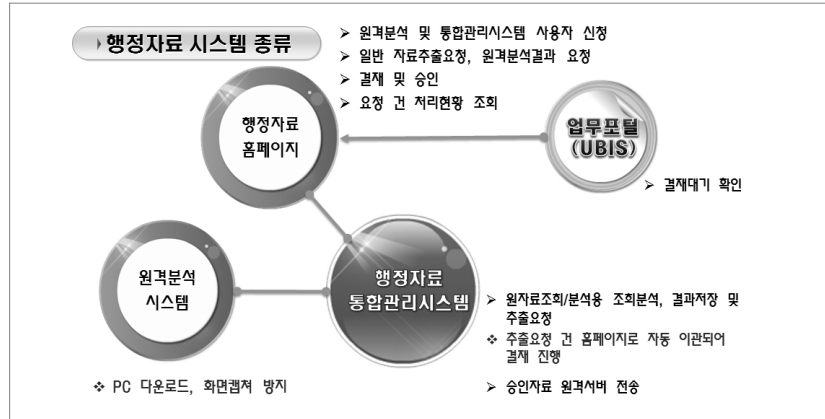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14.3.) 준수

마지막 통계작성 활용 단계에서 통계작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에 제출하면 원격분석시스템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 이용신청부터 자료추출, 원격분석 등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세부 단계마다 통계데이터기획과 보안 담당의 승인이 필요하며, 행정자료는 동 서버에서만 자료 분석이 가능하고 개인PC로의 다운로드나 화면캡처는 차단되어 있다.

행정자료시스템은 [그림 4-8]과 같이 구성되어 행정자료 이용자의 PC가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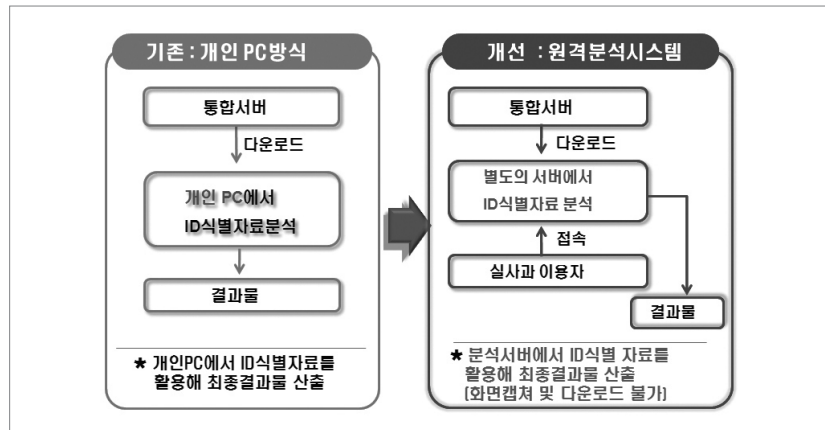
는 행정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중 하나이며, 자료접근권자의 성명/소속/직급, 활용한 행정자료명, 작업내용, 접속시간 등을 체크하여 행정자료 접속기록을 관리, 보관하고 있다.

[그림 4-8] 행정자료시스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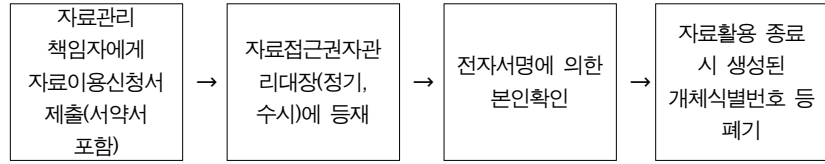
2012년 1월 기존의 개인 PC 접속방식에서 [그림 4-9]와 같이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자료 보안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그림 4-10]은 원격분석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4-9] 원격분석시스템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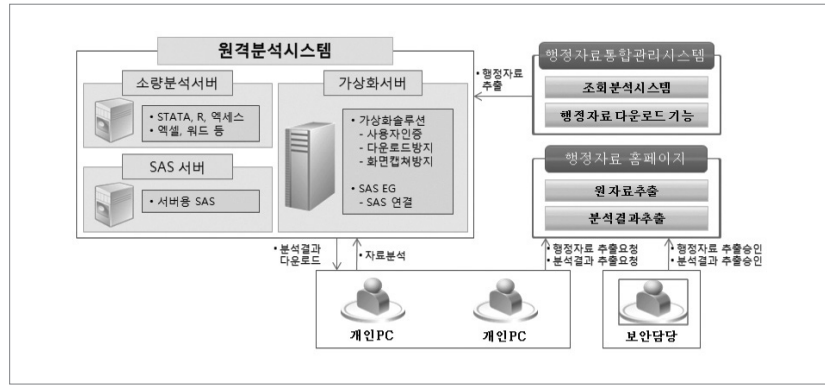


원격분석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표 4-1>에 세부 절차를 정리하였다.





[그림 4-10]  
원격분석시스템  
구성도



<표 4-1>  
원격분석시스템 상세  
이용절차

절차	방법	담당과
사용자 등록신청	[행정자료 홈페이지] • 원격분석시스템 사용자등록 요청	사용자
사용자 등록	[방화벽 설정 요청] • 통계데이터기획과에서 통합전산센터로 방화벽 설정요청	통계데이터 기획과
	[사용자 계정 등록] • 원격분석시스템 및 서버용SAS 사용자 등록	행정자료 관리과
SAS 프로파일 등록	[원격분석시스템] •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서버용SAS에 접속 • SAS 프로파일 등록	사용자
행정자료 추출요청	[행정자료 추출요청] • 행정자료 홈페이지에서 원격분석결과요청	사용자
	[행정자료 추출 승인] • 행정자료 홈페이지에서 원격분석결과 추출 승인	통계데이터 기획과
원격분석	[행정자료 추출] • 유지보수팀에서 추출하여 원격분석시스템에 탑재	행정자료 유지보수팀
	• 원격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원격분석	사용자
분석결과 추출	[분석결과 추출요청] • 행정자료 홈페이지에서 원격분석결과요청	사용자
	[분석결과 추출 승인] • 행정자료 홈페이지에서 원격분석결과 추출 승인	통계데이터 기획과
	[분석결과 추출] • 행정자료 홈페이지에서 분석결과 다운로드	사용자





<표 4-2>  
사이버침해 등급별  
대응내용

<침해 등급별 수행내용>		
침해 등급	대응시간	내용
심각	즉시	악성코드 영향으로 인해 가용중인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경계	30분 이내	위험요소의 증가함이 모니터링 되며, 웜 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빠를 시 대응
주의	2시간 이내	위험에 노출된 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로그의 모니터링 수행. 웜 바이러스 확산 위험 존재 시 대응.
관심	24시간 이내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의심되어 모니터링 수행, 위험도 낮은 웜 바이러스 발생 시 대응

이 외에도 <표 4-3>과 같이 개인정보 담당 체계를 수립,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및 자료제공기관에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시점 및 경위, 개인정보취급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가 1만 명 이상인 정보주체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에 대상 신고 및 홈페이지 공개(7일 이상)를 병행하여야 한다.

<표 4-3>  
개인정보보호 담당  
체계

구분	역 할
통계청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 · 시행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 · 처리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총괄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및 교육업무 전반 -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해 청직원 · 민원인에 공지 -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이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등
부서별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처리 - 부서별 개인정보 취급담당자 지정 -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취급자 교육 · 감독 - 개인정보보호업무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관리 책임관(CPO)에게 수시 보고
개인정보 취급자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취급내역의 로그기록 의무화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 국가통계와 그 서비스를 이용한 시각화 표현,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활용하여 지도로 표현해 보자.

#### 실습순서

1. 국가통계포털을 검색하여 자료를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한다. (예, 시군구별 인구)
2.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통계지도체험하기' 메뉴에서 템플릿(엑셀)을 다운로드한다.
3.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자료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템플릿에 맞게 편집한다.
4. 편집한 엑셀파일을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업로드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 KOSIS, SGIS, MDIS는 각각 서비스 사이트의 활용방법 참고

■ 교재개발 책임연구원

김용환 통계진흥원 부장

■ 교재 집필진

장치성 통계교육원 명예교수

송금영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이승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권순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

유기형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사무관

■ 교재 검토위원

변효섭 통계교육원 명예교수

최봉호 통계교육원 명예교수

안형진 고려대학교 교수

이광진 목원대학교 교수

이기성 우석대학교 교수

백지선 통계개발원 사무관

심규호 통계개발원 주무관

## 국가통계 이해

발행 | 2015년 12월 23일

인쇄 |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 통계교육원장 박성동

발행처 | 통계교육원

기획 | 김병우 · 최병연 · 이정만

주소 |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통계센터 5층 통계교육원

전화 | 042 - 366 - 6232

홈페이지 | <http://sti.kostat.go.kr/>

발간등록번호 11-1240162-000020-01





